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1년 제1호

2021. 7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1년 제1호

2021.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제1부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 동향

I 코로나19 현황 / 3

1. 코로나19 확산 및 백신 관련 현황 3
2. 전 세계 및 조사 대상 국가 코로나19 관련 통계 4

II 코로나19 대응 권고 / 10

1. OECD 10
2. EU 15
3. IMF 17

III 국가별 동향 / 19

1. 미국 23
2. 캐나다 31
3. 영국 35
4. 호주 40
5. 프랑스 45
6. 독일 52
7. 일본 57
8. 중국 61
9. 스웨덴 65
10. 핀란드 70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북미 / 77

1. 미국 77

가. 수동적 국외투자법인(PFIC) 관련 최종 규정 발표 77

나. 직원 유지 크레딧 및 각 경제 소득 세무처리 지침 발표 78

다. 민간 위탁 개인세무추심 프로그램 관련 보고자료 발표 80

라. 코로나19 관련 「미국 구제 계획법」 발효 83

마. 바이든 정부 법인세 개편안 발표 85

바. 개인소득세 개편안 발표 87

사. PPP 대출 기업 관련 공제혜택 제공 89

아. 미국 기업 대상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국가에 대한 관세보복 유예 90

2. 캐나다 91

가. 2020 개인소득세 신고 시 기후변화대응 인센티브 제공 91

나. 2021년 예산안 발표 93

II

유럽 / 97

1. 그리스 97

가. 배당금 및 스톡옵션 관련 일부 과세 기준 확정 97

나. 코로나19 관련 조세정책 발표 98

다. 코로나19 관련 이전가격 지침 발행 99

라. 특별부동산세 법안의 지침서를 법문화 100

마.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및 법인세율 인하 조치 발표 101

목 차

2. 네덜란드	102
가. 배당금에 대한 조건부 원천징수제도 법안 의회 제출	102
나.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지침 이행 법안 채택	103
다. 적격 합병 등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에 관한 세무처리 지침 발표	104
3. 덴마크	105
가. 종업원 이익공유제도 도입 및 R&D 비용 공제 확대	105
나. 탈탄소화 투자 관련 세제혜택 발표	106
다. 지방세율 인상에 따른 최저세율 인하 법안 채택	107
라.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변경 법안 제출	108
마. EU 권고사항을 반영한 CFC Rule 개정안 관보 게재	109
4. 독일	111
가. 세법개정안 2020 승인	111
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법상 즉시상각 허용 발표	112
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3차 세제지원법안 의결	113
라. 「담배세법」 현대화 개정안 연방내각 통과	113
마. 조세회피와 불공정 세금경쟁 방지법안 제출	116
바. 「법인세법」 현대화 개정안 연방내각 심의결의	117
사. 「부동산세 개혁법」 이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 제출	118
아. 「부동산취득세법」 개정	119
자. 제160차 세수추계 결과 발표	120
차. 「원천징수세 감면 절차 현대화법」 발효	121
5. 룩셈부르크	123
가. 이자비용 처리의 세법상 한도 가이드라인 발표	123
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침 신규 발간	124
다. 상호합의 절차(MAP) 실행지침 개정안 발간	125
6. 벨기에	127
가. 국외 소재 부동산 소득에 대한 평가 기준 초안 발표	127
나. 코로나19 관련 국내 부가가치세 최소 환급세액 기준 완화	128

CONTENTS

다. 코로나19 관련 요식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완화	130
라. 코로나19 관련 조세혜택 발표	131
7. 스웨덴	133
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법안 초안 발표	133
나. 개인의 수리 작업 및 자산 임대와 관련한 세제혜택 발표	134
8. 스위스	135
가. 「외채시장 강화안」 의결	135
나. 의무 건강보험료 직접세 공제 한도 인상안 제출	136
9. 스페인	137
가. 금융거래세와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137
나. 코로나19 관련 추가 세제지원 조치	137
다. 금융거래세 납부기한 두 차례 연기	139
라.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관련 EU 지침 수용 등	139
10. 아일랜드	141
가.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임시 인하 종료	141
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승객용자동차 범위 개정	142
다. 자국 법인세율 유지 방침 발표	143
라.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건설비용 세액공제 한시 완화	143
11. 영국	144
가. DAC 6 보고 범위 축소	144
나.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145
다. 부동산 인지세 과세지침 공표	149
라.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 중지	151
12. 이탈리아	151
가. 2021년도 예산안 발표	151
나. 디지털서비스세 최종 지침 발간 및 관련 기한 연기	154
다. 디지털서비스세 납기일 다시 연기	155
라. 추가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수정안 제정	156

목 차

마. 코로나19 관련 추가 세제지원 조치	156
바. 코로나19 관련 추가 지원 조치 법률 제정 및 관보 게재 등	158
사. 설탕세 시행규칙 발표	161
13. 포르투갈	162
가. 2021년도 직접세 관련 예산 법안 수정사항 발표	162
나. 항공 및 해상여행에 새로운 탄소세 시행	163
다. 코로나19 관련 VAT 납부 완화	165
라.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165
마. 코로나19 관련 소비축진 프로그램 발표	166
14. 프랑스	167
가. 법인세율 인하 및 중소기업 경감 법인세율 적용범위 확대	167
나. 새로운 세무 준수 검토 프로세스 도입	168
다. 과세관청의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168
라. EU 역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전자신고 도입	170
마. 코로나19 관련 202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171
15. 핀란드	173
가. 종업원 주식매입제도 개정 및 세법상 거주자 범위 확대	173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 175

1. 뉴질랜드	175
가.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법안 통과	175
나. 주거용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조세제도 개정안 발표	176
다.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	179
라. 최저생계보장세액공제 기준 금액 인상	179
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범위 발표	180
2. 싱가포르	181
가. 2021년 예산안 발표	181

나.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 간소화 방안 발표	183
다.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발표 및 공개협의 개시	184
3. 인도	185
가.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추가 연장 및 탈세제보포털 출시	185
나. 2021년 예산안(Union Budget) 발표	187
다. 재정정책에 대한 법률안 개정 가결	189
라. 디지털세의 적용 대상에 대한 지침 발표	189
4. 인도네시아	191
가. 2021년 코로나19 대응 세제혜택 발표	191
나. 코로나19 대응 기업 세제혜택 적용방안 발표	192
다. 부동산 및 자동차 부문 등의 구입에 관한 조세혜택 실시	193
5. 일본	194
가. 2021년 세제개편안 발표	194
나. 「소득세법」 등 개정안 가결	195
6. 중국	197
가.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개정안 발표	197
나.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년)계획 초안 발표	199
다.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년)계획 세부지침 발표	201
라. 과학 홍보물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발표	203
7. 호주	204
가. 역외금융조직 제도 폐지법안 국회제출	204
나. 코로나19 대응 영상 제작자 세액공제 인상	204
다. 재무부 2021/22 예산안 제출	205
8. 홍콩	207
가. 2021~2022년 예산안 발표	207

목 차

IV

국제기구 / 210

1. OECD	210
가. 코로나19 관련 이전가격 지침 보고서 발표	210
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제 조세조약 지침 재검토	210
다. BEPS Action 5에 관한 2021~2025 상호 검토 절차 발표	212
라. BEPS Action 6 조세조약 쇼핑 방지에 관한 3차 상호검토 결과 발표 ·	213
2. EU	214
가. EU 디지털세 도입 관련 로드맵 발표	214
나. EU 행정협력지침 개정안(DAC7) 유럽의회 승인	215
다. 필수품 및 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 유럽의회 제출	216
라. 의료 및 보호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217
마. 유럽 의회, 재정 프로그램 법안 최종 승인	218
바. 유럽 집행위원회, 새로운 조세정책 제안	218

제1부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 동향

〈표 II-1〉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조세정책 유형	11
〈표 III-1〉 주요국의 조세정책 동향 요약	20
〈표 III-2〉 미국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24
〈표 III-3〉 캐나다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31
〈표 III-4〉 영국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36
〈표 III-5〉 영국의 코로나19 대응자금 지원 프로그램(2020년)	37
〈표 III-6〉 호주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41
〈표 III-7〉 호주 소득세 세율구간 변경내역	43
〈표 III-8〉 프랑스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46
〈표 III-9〉 독일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52
〈표 III-10〉 독일의 코로나19 이후의 결손금 공제제도	54
〈표 III-11〉 일본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57
〈표 III-12〉 일본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책 대상 소득, 비용 및 만료기한	58
〈표 III-13〉 중국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62
〈표 III-14〉 스웨덴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66
〈표 III-15〉 핀란드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71
〈표 III-16〉 핀란드의 근로소득세	73

표 목 차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표 I-1〉 「미국 구제 계획법」에 따른 개인 대상 세액 및 소득공제 변경 사항	84
〈표 I-2〉 2021년 캐나다 연방 정부 기후변화대응 인센티브 각 주별 지급액	92
〈표 I-3〉 캐나다 4개 주의 가구당 연방 정부 탄소세 영향 비용 및 인센티브 각 주별 지급액 비교	92
〈표 II-1〉 2022년도에 적용될 법인(소득)세율과 납부세액 비교	102
〈표 II-2〉 덴마크의 개인소득세율	108
〈표 II-3〉 「담배세법」 현대화 개정안을 통한 예상 세수	114
〈표 II-4〉 평균 수입대료 수준에 따른 편차 보정률의 기존안과 개선안 비교표	119
〈표 II-5〉 2021년 5월 제160차 세수추계 결과	121
〈표 II-6〉 벨기에 부가가치세 최소 환급세액 완화 기준	129
〈표 II-7〉 영국의 주거용 부동산 인지세	148
〈표 II-8〉 영국의 개인소득세	149
〈표 II-9〉 추가 근로소득 공제금액	156
〈표 II-10〉 IVAucher 활용방법	166
〈표 III-1〉 뉴질랜드의 주거용 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 보유기간 기준	177
〈표 III-2〉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비용 소득공제 축소·폐지안	178
〈표 III-3〉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산업 세제혜택 개정안	198
〈표 III-4〉 영세·소형기업 기업소득세율	200

그림목차

제1부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 동향

[그림 I-1]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2021년 6월 말 기준)	5
[그림 I-2]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2021년 6월 말 기준)	6
[그림 I-3]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2021년 6월 말 기준)	7
[그림 I-4]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2021년 6월 말 기준)	7
[그림 I-5] 코로나19 백신 투여 횟수(2021년 6월 말 기준)	8
[그림 I-6]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2021년 6월 말 기준)	9



제1부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 동향



I 코로나19 현황

1 코로나19 확산 및 백신 관련 현황

- ▾ 2019년 12월 처음으로 보고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함¹⁾

 - ▶ 2021년 6월 말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8천만명, 누적 사망자 수는 390만 명을 넘어섰음
 - ▶ 2021년 6월 셋째 주 기준, 하루 평균 37만 건 이상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²⁾

- ▾ 각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발생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거나 락다운(lockdown)과 같은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 락다운 기간 동안에는 국가 간 여행 제한, 교육기관 폐쇄, 음식점/병원/약국 등을 제외한 사업장 폐쇄, 외출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짐³⁾

-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 안정성 및 효능, 품질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의 사전적격심사(Prequalification: PQ)를 마친 후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하고 있음⁴⁾

1) WHO, "Timeline: WHO's COVID-19 response,"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interactive-timeline#event-0>, 검색일자: 2021. 7. 28.; ProMED, "UNDIAGNOSED PNEUMONIA - CHINA (HUBEI): REQUEST FOR INFORMATION," (Dec 30, 2019), <https://promedmail.org/promed-post/?id=6864153%20=COVID19>, 검색일자: 2021. 7. 29.

2) WHO, "COVID-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Jun 29, 2021),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weekly-epidemiological-update-on-covid-19---29-june-2021>, 검색일자: 2021. 7. 26.

3)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34_134992-5cqpaak6j3&title=Employment-Outlook-2020-Highlights, 검색일자: 2020. 9. 4.

4) WHO, "COVID-19 advice for the public: Getting vaccinated,"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covid-19-vaccines/advice>, 검색일자: 2021. 7. 30.; WHO, "WHO lists additional COVID-19 vaccine for emergency use and issues interim policy recommendations," (May 7, 2021), <https://www.who.int/>

- ▶ 2021년 6월 말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사용목록(Emergency Use Listing: EUL)에 등재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텍, 아스트라제네카/옥스포드, 얀센,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임⁵⁾
-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2019년 코로나19 최초 발생 이후 여러 유전형으로 변이되어 왔으며, 세계보건기구는 병원체의 전파력과 중증도, 백신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를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하고 있음⁶⁾
- ▶ 주요 변이 바이러스(Variants of Concern: VOC)는 2021년 6월 말 현재 알파, 베타, 감마, 델타형으로 구분됨
- ▶ 2021년 6월 말 현재 알파 변이 바이러스는 172개국, 베타 변이 바이러스는 120개국, 감마 변이 바이러스는 72개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96개국에서 보고됨
 -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기존에는 관심 변이 바이러스(Variants of Interest: VOI)였으나, 해당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가 심해지면서 2021년 5월 11일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됨

2 전 세계 및 조사 대상 국가 코로나19 관련 통계

- ▣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21년 6월 말 현재 약 1억 8천만명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남⁷⁾

news/item/07-05-2021-who-lists-additional-covid-19-vaccine-for-emergency-use-and-issues-interim-policy-recommendations, 검색일자: 2021. 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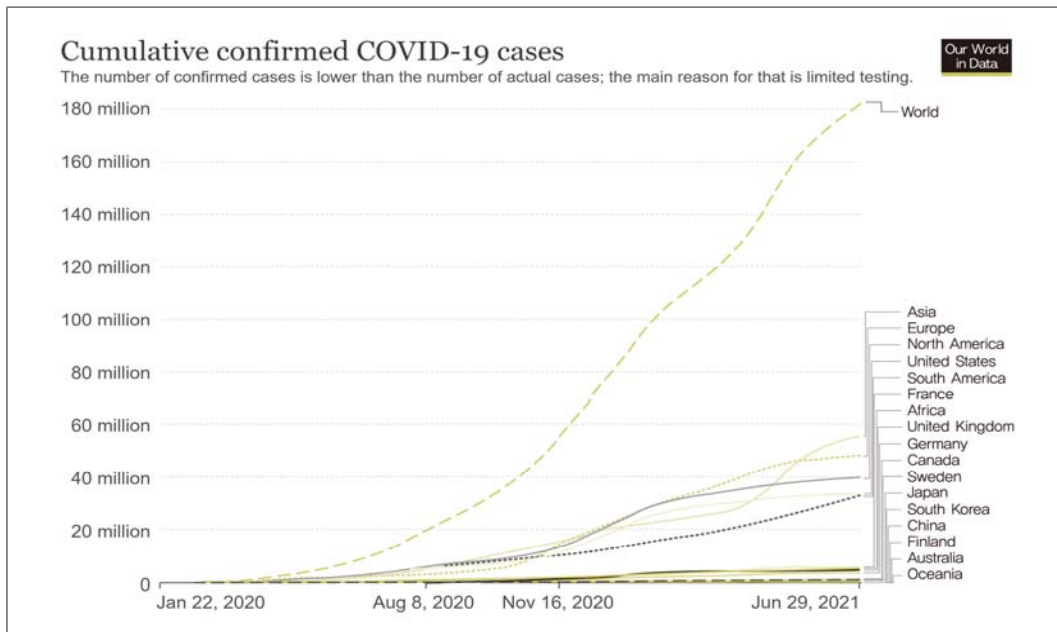
5) 각 코로나19 백신의 WHO 긴급사용 승인일은 화이자/바이오엔텍 2020년 12월 31일, 아스트라제네카/옥스포드 2021년 2월 15일, 얀센 2021년 3월 12일, 모더나 2021년 4월 30일, 시노팜 2021년 5월 7일, 시노백 2021년 6월 1일임. WHO, "Status of COVID-19 Vaccines within WHO EUL/PQ evaluation process," (Jul 15, 2015), https://extranet.who.int/pqweb/sites/default/files/documents/Status_COVID_VAX_15July2021.pdf, 검색일자: 2021. 7. 29.

6) WHO, "COVID-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Jun 29, 2021),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weekly-epidemiological-update-on-covid-19--29-june-2021>, 검색일자: 2021. 7. 26.;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 「세계적 변이 바이러스 증가, 예방접종완료·방역수칙 준수 필요(6. 22., 정례브리핑)」,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5575&contSeq=5575&board_id=312&gubun=ALL, 검색일자: 2021. 7. 29.

7) Our World in Data, "Cumulative confirmed COVID-19 cases," <https://ourworldindata.org/covid-cases>, 검색일자:

- ▶ 조사 대상 국가의 확진자 수는 미국 약 3,400만명, 프랑스 약 580만명, 영국 약 480만명, 독일 약 370만명, 캐나다 약 140만명, 스웨덴 약 100만명, 일본 약 80만명, 핀란드 약 9만 5천명, 중국 약 9만 2천명, 호주 약 3만명임
- ▶ 대륙별 누적 확진자 수는 아시아 약 5,500만명, 유럽 약 4,800만명, 북아메리카 약 4천만명, 남아메리카 약 3,300만명, 아프리카 약 550만명, 오세아니아 약 5만 5천명임

[그림 1-1]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2021년 6월 말 기준)



자료: Our World in Data, "Cumulative confirmed COVID-19 cases," <https://ourworldindata.org/covid-cases>, 검색 일자: 2021. 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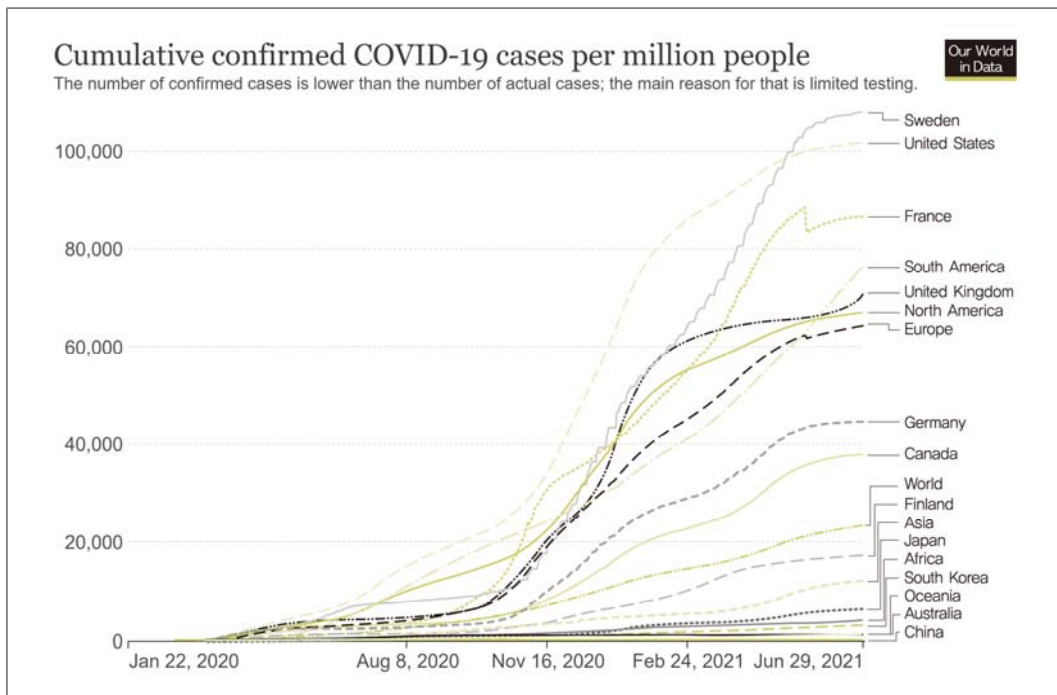
- ▣ 그러나 조사 대상 국가의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2021년 6월 말 현재 스웨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조사 대상 국가의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스웨덴 약 10만 8천명, 미국 약 10만 2천명, 프랑스 약 8만 6천명, 영국 약 7만 1천명, 독일 약 4만 4천명, 캐나다 약 3만 8천명, 핀란드 약 1만 7천명, 일본 약 6,300명, 호주 약 1,200명임⁸⁾

2021. 7. 29.

8) Our World in Data, "Cumulative confirmed COVID-19 cases per million people," <https://ourworldindata.org/covid-cases>, 검색일자: 2021. 7. 29.

- ▶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를 대륙별로 구분해보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2]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2021년 6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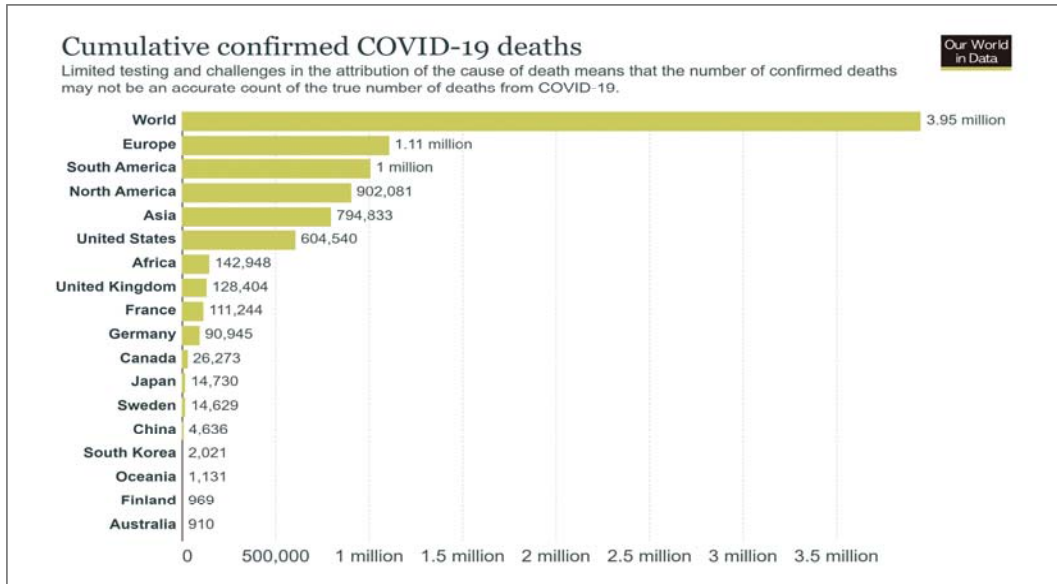


자료: Our World in Data, "Cumulative confirmed COVID-19 cases per million people," <https://ourworldindata.org/covid-cases>, 검색일자: 2021. 7. 29.

- ▣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는 2021년 6월 말 현재 약 394만명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의 사망자 수가 60만명을 넘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 수의 경우 영국에서 1,800여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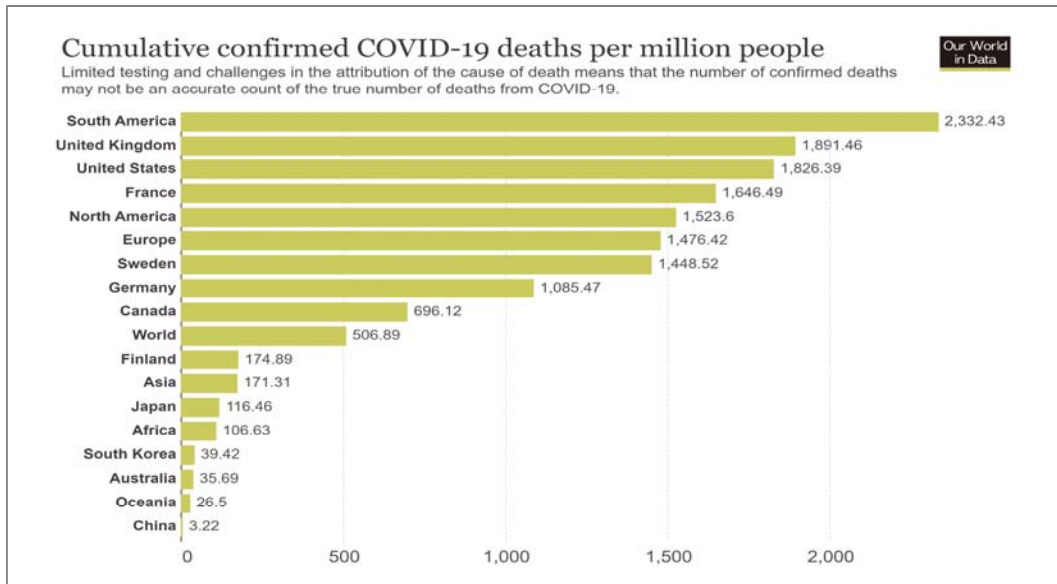
9) Our World in Data, "Cumulative confirmed COVID-19 deaths, Jun29, 2021,"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자: 2021. 7. 29.; Our World in Data, "Cumulative confirmed COVID-19 deaths per million people, Jun29, 2021,"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자: 2021. 7. 29.

[그림 1-3]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2021년 6월 말 기준)



자료: Our World in Data, “Cumulative confirmed COVID-19 deaths, Jun 29, 2021,”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자: 2021. 7. 29.

[그림 1-4]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2021년 6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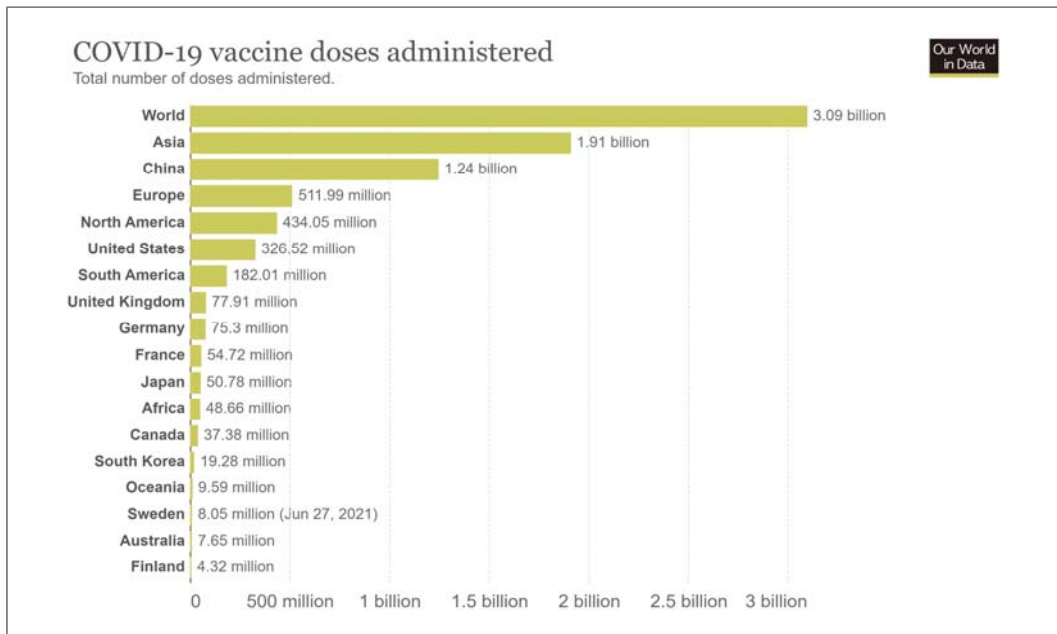


자료: Our World in Data, “Cumulative confirmed COVID-19 deaths per million people, Jun 29, 2021,”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자: 2021. 7. 29.

▣ 코로나19 백신 투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말 현재 전 세계에서 약 31억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투여됨¹⁰⁾

▶ 조사 대상 국가의 백신 투여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약 327만회로 가장 많이 투여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 -5] 코로나19 백신 투여 횟수(2021년 6월 말 기준)



자료: Our World in Data, "COVID-19 vaccine doses administered,"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자: 2021. 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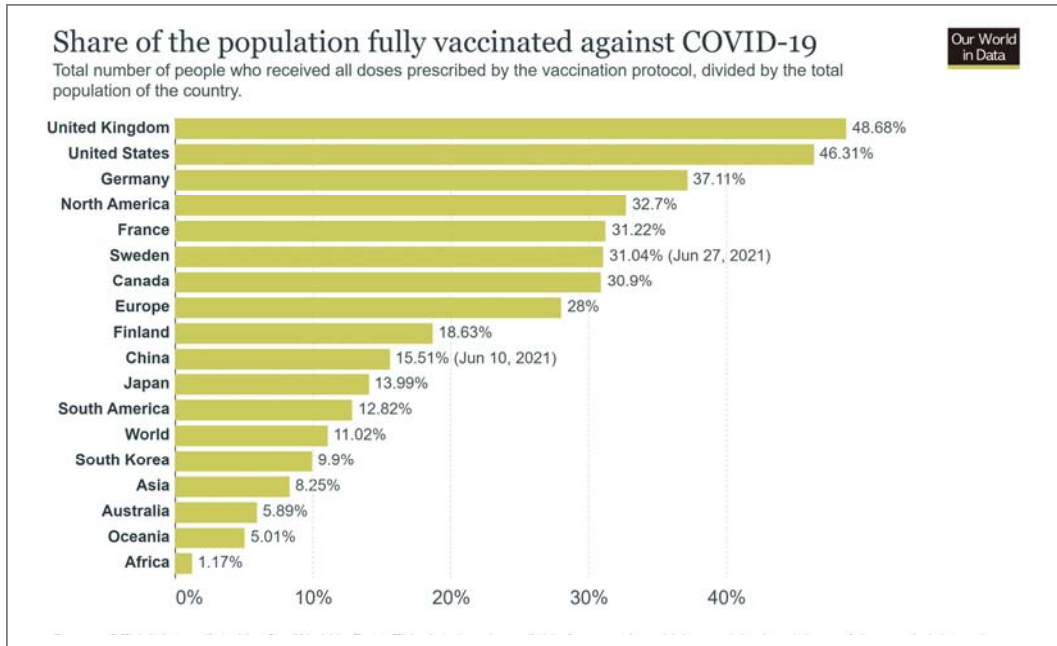
▣ 조사 대상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말 현재 영국의 약 49%의 인구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임

▶ 그 외 조사 대상 국가의 접종 완료율을 살펴보면 미국 약 46%, 독일 약 37%, 캐나다 약 31%, 프랑스 약 31%, 스웨덴 약 31%, 핀란드 약 19%, 중국 약 16%, 일본 약 14%, 호주 약 6%임¹¹⁾

10) Our World in Data, "COVID-19 vaccine doses administered,"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자: 2021. 7. 29.

11) Our World in Data, "Share of the population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Jun 30, 2021,"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자: 2021. 7. 29.

[그림 1-6]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2021년 6월 말 기준)



자료: Our World in Data, “Share of the population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Jun 30, 2021,”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자: 2021. 7. 29.

II 코로나19 대응 권고

- ▾ 본 장에서는 OECD, EU, IMF 등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함
 - ▶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 권고 중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함

1 OECD

- ▾ OECD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련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각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등을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세계)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여 단계별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제안하였으며,¹²⁾ 2021년 4월 추가 코로나19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여 2020년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분석 및 평가하고 향후 조세정책을 제안함
 - ▶ (세정) 2021년 7월 세무행정에 대한 제안 보고서를 발간함
 - ▶ (국제조세) 2020년 12월 이전가격 관련 지침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

가. 세제분야

- ▾ OECD는 2021년 4월 코로나19 대응 추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2020년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을 분석 및 평가하고, 향후 조세정책을 제안함¹³⁾
 - ▶ 2020년 적시성 있는 강력한 재정적 지원으로 기업의 수익 및 고용 유지가 가능하였으며, 광범위한 재정 지원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조세정책은 기업과 가구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함

12)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반기보고서), 2020년 제1호, 2020 참조

13) OECD, "Tax Policy Reforms 2021: Special Edition on Tax Polic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021, p. 18.

- 2020년 상반기에 많은 국가들은 락다운에 대응하여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음
- 또한 상당수의 조세정책은 근로자의 실직, 일시적인 지급 불능,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음
- ▶ 2020년 각 국가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도입하고 사회적인 혜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원 또는 접근권 확대를 포함한 방식을 시행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에 일부 국가의 증세 정책이 보고되고 있음
- ▶ 한편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에 일부 국가의 증세 정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¹⁴⁾
- 증세 정책은 일회성 또는 단기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장기적인 증세 정책을 보고하였으며 장기 정책 중 일부는 유통소비세 및 탄소세와 같이 코로나19 이전의 추세를 이어감
- 반면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이전과는 상반되는 정책인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도입하였고, 최근 경향인 법정 법인세율 인하 정책과는 반대로 영국은 법인세율 인상을 발표함

〈표 II-1〉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조세정책 유형

분류	지원(relief) 정책	회복 집중 촉진 정책	증세 정책
정책 목적	•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력 완화	• 수요 및 투자 촉진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자원 조달
조세정책 주요 유형	• 납부기한 연장 • 신고기한 연장 • 조세 조기 환급 • 결손금 소급공제 • 일시적 조세 면제 • 일시적 세율 경감	•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세 또는 여타 사업세 경감 •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 • 부가가치세율 일시적 경감 • 자산거래세 경감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의료 관련 소비세 인상 • 환경세 인상 • 재산세 인상 • 사업세 인상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1: Special Edition on Tax Polic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021, p. 30.

- ▣ 2021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초기 단계에 도입한 조세정책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면서, 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기업과 가구에 대한 지원방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존재함¹⁵⁾

14) *ibid.*, p. 7.

- ▶ 조세정책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초기 단계에 도입하였던 각종 지원 및 공급을 보충하는 것으로 변화함
- ▶ 코로나19 위기 초기 이후 락다운 및 기타 방지책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각 국가들은 경제 회복에 집중하기 시작함
 - 조세정책으로는 투자 관련 법인세 혜택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은 영역의 기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의 경감이 있음
 - 대부분의 국가는 회복 집중 정책 도입과 동시에 기존 지원 정책의 적용을 연장함

▣ 2021년도 보고서는 향후 각 국가의 조세정책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안함¹⁶⁾

-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은 기업과 가구에 지속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혜택의 중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에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은 기업의 현금 유동성 위기를 재차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단의 시기 및 방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특히 납부기한 연장과 같은 단기적인 조세정책의 중단이 납세자에게 급격한 조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생존에 필수적인 장비 및 백신의 생산과 배분에 대한 조세 경감을 권고함
 - 나아가 국가들은 점차 기존의 넓은 범위의 방지책에서 특정 대상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 조세정책의 혜택은 이러한 혜택이 가장 필요한 납세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중·장기적으로 조세 및 지출 정책을 재평가하여, 기후 변화·보건 위험 증가·디지털화·인구 고령화·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나. 세정분야

▣ 2020년 세정지원은 주로 기업 및 가계의 유동성 개선에 중점을 두었음¹⁷⁾

15) *ibid.*, pp. 7~8.

16) *ibid.*, pp. 62~73.

17)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반기보고서), 2020년 제1호, 2020 참조

- ▶ 구체적인 세정 지원책은 기한 연장, 조기환급, 세무조사 완화, 민원대응 강화 등임
- ▣ 2020년 4월 OECD는 코로나19 환경에서 과세관청의 디지털 회복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¹⁸⁾
 - ▶ 납세서비스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 신고 및 대면 소통이 제한되자,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과세관청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
 - 의무이행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수의 과세관청은 기존 방식의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가상 또는 디지털 환경 조사로 방식을 전환함
 - 락다운으로 인하여 많은 과세관청은 원격근무를 도입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화상 서비스에 익숙해졌으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전환은 과세관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기존에 존재하던 IT 시스템 개선 및 향상이 요구됨
 - ▶ 한편, 과세관청은 정부의 각종 지원책 확대와 관련하여 공조 책임이 요구되어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함
- ▣ 2021년 7월 OECD는 ‘코로나19 이후 각국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대한 제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등 변화된 세무행정을 다루면서 일과 삶의 균형, 강화된 회복력, 비용 경감을 주된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음¹⁹⁾
 - ▶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일부 과세관청은 원격근무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이러한 전환은 가속화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은 보다 강화됨
 - 과세관청에 직원들의 정보통신기술의 투자와 접근성 확대, 정보 보안과 관련한 개선이 요구됨
 - 원격근무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면서 과세관청 직원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함
 - ▶ 납세 서비스의 측면에서 많은 과세관청은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에도 납세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함
 - 과세관청은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의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함
 - 원격근무에 따른 과세관청과 납세자들의 효율적인 소통으로 납세자의 문의에 근무

18) OECD, “Tax Administration: Digital Resilience in the COVID-19 Environment,” 2021.

19) OECD, “Tax Administration: Towards Sustainable Remote Working in a Post COVID-19 Environment,” 2021, pp. 25~29.

시간 이외 또는 상시(24/7)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

- ▶ 과세관청 직원의 복지 향상은 기관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직원 복지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 직원 자기 규율 감시, 효과적인 의사소통체계, 만족도 확인, 재택근무에 따른 성인지 균형 변화 등을 예시로 들고 있음

다. 국제조세 분야

- ▣ OECD는 2020년 4월 코로나19가 조세조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침을 발간함²⁰⁾
 - ▶ 역외거래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 창설, 기업의 납세지 변경, 국외근로자, 개인의 거주상태 변경 등의 쟁점을 다룸
- ▣ OECD는 2020년 12월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전가격지침 보고서’를 발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정상가격원칙, OECD의 이전가격지침의 준수에 대한 명확한 해석, 예시 및 실무적용을 제공함²¹⁾
 - ▶ (비교 가능성 분석) 2020년 비교 가능성 분석 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반영한 매출 등의 분석과 예산상의 재무정보 이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분석에 포함함
 - ▶ (결손 및 코로나19 관련 비용의 배분)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 사이에서의 코로나19 관련 결손 및 비용의 배분과 관련하여, 정상가격에 따른 거래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배분,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적인 운영비용,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룸
 - ▶ (정부지원프로그램) 정부가 재정적 및 비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격 납세자에게 제공한 직·간접적 경제적 혜택(조세감면, 보조금, 투자지원금 등)과 관련한 이전가격 이슈를 다룸
 - ▶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 2020 회계연도 또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을 향후 회계연도의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기존의 APA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기간 내에 관련 과세관청에 이러한 문제점을 알려 협조적인 접근법을 취하여야 함

20)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반기보고서), 2020년 제1호, 2020 참조

21) OECD,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2020.

2 EU

- ▾ EU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경제적 조치, 백신 공급, 공공 보건, 국경 문제, 정보의 불균형 등 다양한 유형의 영역에서 각 회원국에 대응책을 제안함²²⁾

 -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EU 회복 패키지를 발표하였고, 특히 환경 관련 조세정책을 제안함
 - 2021년 1월 1일부터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에 대하여 과세함
 - 2023년부터 EU 차원에서의 탄소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말 입법될 것임
 - EU의 탄소 배출 거래권은 해운업에까지 적용이 확대되고, 항공업에 적용되던 자율권의 적용은 중지될 것임
 - ▶ 한편, 패키지는 7,500억유로²³⁾ 규모의 기금 및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다년간의 예산안을 포함하고 있음

- ▾ EU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20년에 ‘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 지침’의 실행시기를 연기하고 마스크 및 보호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백신, 코로나19 검사 도구에 대한 경감 부가가치세율 또는 영세율(0%) 적용에 합의하였으며, 2021년에는 EU 집행위원회 등이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기타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 「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지침」의 실행시기를 2021년 7월 1일로 연기하여,²⁴⁾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됨²⁵⁾
 - ▶ 2020년 4월 EU는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와 보호 장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합의하였고, 이 정책은 유지되고 있으며 연장될 예정임²⁶⁾

22) European Commission, “Coronavirus response,” https://ec.europa.eu/info/live-work-travel-eu/coronavirus-response_en, 검색일자: 2021. 7. 26.

23) 2021년 8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26조 5,400억원임

24)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반기보고서), 2020년 제1호, 2020 참조

25) EU, “Modernising VAT for cross-border e-commerce,”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modernising-vat-cross-border-e-commerce_en, 검색일자: 2021. 8. 7.

26) European Commission, “Coronavirus response: Commission welcomes agreement on crucial VAT relief for vaccines and testing kit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299, 검색일자: 2021. 8. 7.

- ▶ 2020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에 코로나19 백신 및 검사 도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경감 부가가치세율 또는 영세율(0%)의 적용을 허용하고, 2022년까지 잠정 적용할 계획임²⁷⁾
 - 이전에는 백신에 대하여 경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영세율(0%)은 적용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검사 도구에 대하여 경감 법인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음
- ▶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 및 EU 기관·기구(EU agencies and bodies)²⁸⁾가 특정 재화 및 용역을 수입 또는 구매하여 EU 회원국 및 각 국가의 관청 또는 기관(병원 또는 보건·재난 대응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²⁹⁾
 - 특정 재화로는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실험 장비, 장갑, 호흡기, 마스크, 가운 등 개인 보호 장비, 텐트, 옷, 음식, 구명조끼, 항생제 등과 특정 용역으로는 코로나19 관련 필요 상품 개발 및 생산, 연구 활동 등이 있음
- ▣ EU는 2020년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의 조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승인함³⁰⁾
 - ▶ 2020년 3월 일부 조세 혜택과 중간예납 정책을 허용하고,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은 일부 영역에 대하여 조세 납부기한 연장 및 고용주의 사회보험분담금의 납부 일시 중지를 적용함
 - ▶ 2020년 DAC 6 관련 시기를 연기함³¹⁾
 - ▶ 2020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각 국가의 정책을 승인함
 - (프랑스) 항공 운항에 대한 특정 조세의 납부 연기
 - (독일) 공제 혜택, 과세표준 경감, 조세 납부기한 연장, 세율 인하
 - (이탈리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

27) European Commission, "Coronavirus response: Commission welcomes agreement on crucial VAT relief for vaccines and testing kit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299, 검색일자: 2021. 8. 7.

28) European Union, "Agencies and other EU bodies,"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agencies_en#type-of-agencies, 검색일자: 2021. 8. 7.

29) European Commission, "Coronavirus Response: Commission proposes to exempt vital goods and services distributed by the EU from VAT in times of crisi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1642, 검색일자: 2021. 8. 7.

30) KPMG, "European Union: Tax developments in response to COVID-19,"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20/04/european-union-tax-developments-in-response-to-covid-19.html>, 검색일자: 2021. 8. 7.

31)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반기보고서), 2020년 제1호, 2020 참조

-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국가보조(State Aid)를 허용하여 각 회원국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기업과 영세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Temporary Framework’를 도입하여 네 차례에 걸쳐 정책 및 지원책을 수정함³²⁾
- ▶ 2021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위와 같은 기존 조치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³³⁾

3 IMF

- ▾ IMF는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2020년 보고서를 발간하여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책을 권고함³⁴⁾
 - ▶ 코로나19 이후의 재정문제 해결을 조력하는 조세체계 방안을 담고 있음
 - 코로나19가 주요 조세 원칙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조세체계의 취약한 측면을 강화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 ▶ 조세정책을 ‘포용성(inclusive)’ 및 ‘성장친화성(growth friendly)’ 여부에 따라 평가할 것을 권고함
 - 포용적인 조세정책이란, 평등한 기회 제공 및 형평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누진세에 반영됨
 - 성장친화적인 조세정책이란, 투자, 저축, 고용, 생산성 및 소비의 역효과를 줄이는 것임
- ▾ 코로나19 이후 법인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에 대한 조세정책에 대하여 정책 및 방향성을 제안함³⁵⁾

32) European Commission, “Overview of the Commission’s response,” https://ec.europa.eu/info/live-work-travel-eu/coronavirus-response/overview-commissions-response_en, 검색일자: 2021. 8. 2.; European Commission, “State aid actions,” https://ec.europa.eu/info/live-work-travel-eu/coronavirus-response/jobs-and-economy-during-coronavirus-pandemic/state-aid-cases_en, 검색일자: 2021. 8. 2.

33) European Commission, “State aid: Commission adopts Temporary Framework to enable Member States to further support the economy in the COVID-19 outbreak,”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496, 검색일자: 2021. 8. 2.

34) IMF, “Tax Policy for Inclusive Growth after the Pandemic,” 2020.

35) IMF, “Tax Policy for Inclusive Growth after the Pandemic,” 2020.

- ▶ (법인세) 합리적인 법인세율 설정, 이익보다는 투입 기준에 기반한 법인세 혜택 부여, R&D 관련 세제혜택 제공,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에 대응한 부정경쟁방지법 도입 등을 권고함
- ▶ (개인소득세) 개인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 부과(가족이나 파트너를 기준으로 부과하면 두 번째 소득원에 해당하는 가구원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 적절한 감면 기준 설정, 누진세 구간 설정, 최고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소득세율 설정, 간소화된 소규모 기업 제도 도입 등을 권고함
- ▶ (재산세)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충분한 활용,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에 대한 순자산세 도입 및 상속·증여세의 적절한 활용을 권고함
- ▶ (부가가치세) 단일 부가가치세율 도입, 부가가치세 면제 최소화를 제안하고,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을 적절히 설정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 ▶ (소비세) 알코올 및 담배와 같이 건강 관련 기호식품에 대한 적절한 소비세 부과 및 코로나19 이후 탄소세의 도입으로 세수 확보에 환경세를 활용할 것 등을 권고함

III 국가별 동향

- ▣ 조사 대상 대부분의 국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세제정책을 유지·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증세 또는 과세강화 정책기조를 나타내는 국가도 확인되고 있음

 - ▶ 미국은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고용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실시하였고, 2021년이 되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기존 지원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 정책을 예정하고 있음
 - ▶ 캐나다는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보조금 지원을 통한 현금 유동성 공급 조치가 있었으며, 2021년에도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기존 대책의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유지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조정이 다수 존재함
 - ▶ 영국은 지원정책의 중심 축을 2020년 유동성 공급·고용지원에서 2021년 조세지원책으로 이동시켰고, 증세(법인·개인), 디지털서비스세(2020년), 플라스틱포장세(2022년) 등 세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의 세제 변화를 추진 중임
 - ▶ 호주는 2020년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다수의 지원책을 도입한 후 2021년 지원규모를 대폭 줄였으며, 코로나19 이전에 수립된 감세기조를 2021년 유지하면서 R&D 관련 조세정책을 정비하고 있음
 - ▶ 프랑스는 2020년 기업과 개인에 대한 조세정책, 세정지원 및 경제활성화 2개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였고, 2021년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이어가면서 기존의 코로나19 지원 조세정책을 유지 및 연장 적용하고 추가적인 조세정책을 도입함
 - ▶ 독일은 2020년 말까지 유효한 부가가치세, 법인 및 개인소득세 관련 코로나19 세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성공적인 사회경제 정상화를 위하여 대부분 2021년 3분기나 연말까지로 연장되었음
 - ▶ 일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에 법인 및 개인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고, 대부분의 정책은 2021년 상반기까지 유효하며 추가적인 연장 발표는 없음
 - ▶ 중국은 기업 회복 촉진 및 코로나19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완화를 위한 정책을 2020년에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한시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감된 부가가치세율 적용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월 매출액 기준 확대 등의 세제지원 도입으로 기업 회복촉진 정책을 강화함

- ▶ 스웨덴은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법인세, 소득세 및 기타 조세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관련 법안이 당해 연도에 일몰되었으나, 2021년도에 새로운 세제 안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 핀란드는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법인세, 소득세 및 세무행정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2021년에도 기존의 조세정책을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주정부에 대한 근로소득세율이 인상되는 등 증세 움직임이 보임

〈표 III-1〉 주요국의 조세정책 동향 요약

국가	분류	내 용
미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에 결손금 관련 등의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과 고용·방역 등을 위한 정책을 운영하였으나,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은 2021년에는 중단되고 고용·방역을 위한 지원 등이 유지 및 확대되었음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과 마찬가지로 결손금 관련 등의 사업 전반의 지원은 2021년에 중단되었으나, 개인의 유동성·방역·생계를 위한 지원은 유지, 확대 및 신설되고 있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급여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유지되고 있음 •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최저한세, 국제적 세원이전 방지 등의 증세 정책도 나타나고 있음
캐나다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급여·락다운에 따른 보조금 정책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축소 및 정교한 피해지원 제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보조금 정책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있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의 각 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정책은 2021년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영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에는 조세 및 비(非)조세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주력하였고, 2021년에는 2020년 정책을 축소 유지하면서 투자 특별공제와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 연장 등 조세지원책을 강화하였음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에는 조세지원책보다는 고용유지 보조금에 주력하였고, 2021년 관련 지원책을 축소 연장하였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 인상 연동 중단, 디지털서비스세 및 플라스틱포장세 도입 등 세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의 세제 변화가 있음

〈표 III-1〉 의 계속

국가	분류	내 용
호주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조세상의 지원을 집중하였으며, 2021년 신규 지원책 없이 기존 지원책을 선별적으로 연장하였음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부담이 가장 컸던 고용유지보조금은 2021년 3월 종료되었고, 개인지원책은 종합적으로 볼 때 축소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이전의 감세기조가 아직 유지되고 있으며, R&D 지원·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정책을 정비하고 있음
프랑스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회복 촉진 및 현금 유동성 강화를 위하여 2020년 결손금 소급공제 즉시 환급 허용 및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였고, 2021년 기존의 조세정책을 유지하면서 결손금 소급공제액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고, 경감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신규 지원책을 제공함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료 면제액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등 개인에 대한 조세정책을 2021년도에도 유지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하여 신규 지원책을 제공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 및 기업 생산 관련 조세정책은 2021년도도 동일하게 적용됨 2020년 과세관청의 행정행위 관련 기한 연장은 종료되었으며, 기존의 신고·납부와 관련된 납세자 부담 완화 정책은 2021년도도 유지됨 2021년 사회보장분담금을 조건부 면제 또는 일부 지원함
독일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도에 결손금 소급공제액 한도를 기존 대비 5배 인상하였으며 2021년 도에는 전년 대비 2배 인상함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이나 개인이 코로나19지원금으로 주고받는 보조금이나 수당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도입했던 요식업 및 요양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정책을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함 2020년에 도입했던 강제집행 유예,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책을 2021년까지 유효하도록 갱신함
일본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손금 소급에 의한 환급 특례를 2022년 결손금 분까지 적용하여 시행 중 이나 2020년 대비 변동사항 없음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용자 세액공제의 입주 요건 완화를 시행 중이나 2020년 대비 변동사항 없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으로 2020년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부진
중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즉시상각 등의 세제지원을 도입하였고, 2021년에는 기존 세제지원을 유지하면서 한시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의 세제지원 도입으로 기업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강화함

〈표 III-1〉 의 계속

국가	분류	내 용
중국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에 코로나19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완화를 위해 개인소득세 면제, 적격 기부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도입하였고, 2021년에는 기존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 강화를 위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에 기업 회복촉진 및 코로나19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율 인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지원을 도입하였고, 2021년에는 기존 세제지원을 유지하면서 경감된 부가가치세율 적용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월 매출액 기준 확대 등의 세제지원 도입으로 기업 회복촉진 정책을 강화함
스웨덴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기존 정책을 유지 및 확대하기보다는 새로운 지원책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말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조세혜택이 포함된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세제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기계장치 등 적격 감가상각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함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납세자의 기본 소득공제액을 인상함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특정 가사서비스에 세탁 등을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의 수리 작업 및 자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적용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에 사회보장부담금을 경감하였으며, 2021년에는 경감 대상 및 경감 금액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에 대한 특별 감면을 실시하고, 사회보장금 부과액을 인하하여 고용 및 산업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적격요건을 갖춘 외국 핵심 인력에게 적용되는 특별 세금 감면 혜택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해외 주재원 면세 자격 요건의 판단 기준인 고용 및 체류기간의 산정에 있어, 코로나19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해외 체류가 중단된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EU의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임을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앵귤라, 과테말라,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그 대상임
	코로나19 이외 조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의 이자공제 제한 규정에 대한 조정안을 제출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이자공제 제한 규정과 그룹기여제도를 동시에 변경하여 기업이 특정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휴대전화, 직접회로, 게임 콘솔, 태블릿 PC, 노트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상품가격이 10만크로나를 초과하는 경우에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함

〈표 III-1〉 의 계속

국가	분류	내 용
핀란드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다른 증세 없이 직전연도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있음 - 체납된 세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인하고,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함 - 신규취득 기계장치 등의 가속상각제도를 2년 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함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핀란드 개인의 근로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됨 • 세제혜택으로는 체납된 세금에 대한 연체이자 인하,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등이 있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정사업장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
	코로나19 이외 조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주식매입제도에 관한 과세규정이 개정되어, 적격요건을 충족한 비상장회사 종업원이 매입한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를 도입하는 법률이 발표되어, 거주기업의 범위가 확대됨 • EU의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지침 이행을 위한 법안을 채택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관련 법안이 시행됨

자료: 본문 내용을 표로 정리

1 미국

▶ 미국은 2020년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급여세, 사회보장기여금, 국제조세 등 다양한 세목에 관하여 코로나19관련 세제 조치를 도입한 바 있음³⁶⁾

▶ 미국은 2020년 5차례의 코로나19 긴급 예산법을 통해 유급 휴가 및 병가에 따른 사용자의 공제, 직원 유지 공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함³⁷⁾

36)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3호~제20-6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KPMG, "COVID-19 Global Tax Developments Summary," updated August 30, 2020.; OECD, "COVID-19 tax Policy and other measures," <https://www.oecd.org/tax/covid-19-tax-policy-and-other-measures.xlsm>, 검색일자: 2021. 8. 2.; 「미국 코로나19 대응 정책 종합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7.

3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수당 세금 공제 조치 발표,"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3호, <https://www.kipf.re.kr/kor/Trend/InterTrends/kiTrend/Overseas/view.do?serialNo=5116>, 검색일자: 2021. 8. 2.;

- ▶ 코로나19로 곤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및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무 행정 관련 지원도 제공함
- ▣ 미국은 2021년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일부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었으나, 대부분의 고용 및 방역 관련 기존 지원정책을 유지하고 있거나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증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³⁸⁾
 - ▶ 2021년에 일부 순영업손실(결손금) 관련 지원이나 이자비용공제제한제도 완화의 지원 정책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음
 - ▶ 그러나 대부분의 생계 또는 고용, 방역 등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보다 현실에 맞추어 조정되어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있음
 - 회생세액공제 등의 생계·고용을 위한 지원은 2021년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부양가족 세액공제는 2020년보다 확대되어 지원하고 있음
 - 방역과 관련된 기부 또는 방역물품의 특별소비세(주세) 관련 지원도 2021년에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음
 - ▶ 법인세·개인소득세·국제조세 등의 전 분야에서 세율 인상, 혜택 폐지 등의 대기업과 자산가 등을 대상으로 한 증세 계획이 발표되고 있음

〈표 III-2〉 미국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분류	2020년	2021년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등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 등에 따른 유급휴가 세액공제 - 기부금 간주 및 기부금 공제한도 인상 • 고용 등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보호프로그램 관련 비용 선택 공제 및 급여세액 공제 •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영업손실의 소급공제 및 결손금 공제 한도 유예 - 이자비용공제제한제도 한도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및 고용 등을 위한 지원세제는 유지되거나 확대(급여세액공제)되었음 •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아 종료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코로나19 대응 CARES Act 제정,”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4호, <https://www.kipf.re.kr/kor/Trend/InterTrends/kiTrend/Overseas/view.do?serialNo=5141>, 검색일자: 2021. 8. 2.

38) 백약관, “AMERICAN RESCUE PLAN,” <https://www.whitehouse.gov/american-rescue-plan>, 검색일자: 2021. 8. 2.

〈표 III-2〉 의 계속

분류	2020년	2021년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영업손실의 소급공제 및 결손금 공제 한도 유예 • 유동성 및 (저소득층) 생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퇴직계좌 등의 인출 또는 대출에 따른 과세 면제 - 회생세액공제 지원 • 방역 등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단체 대체 기부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배제 - 기부금 공제 한도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아 종료됨 • 유동성, 생계, 방역 등을 위한 지원은 적격 퇴직계좌 이외에는 유지·확대·신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ETIC 및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의 확대가 이루어짐 - 그 외 기존의 제도는 2021년에도 연장되어 유지되고 있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면제함 • 소득세, 관세(일부 기간), 급여세 등의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물품 소비세 면제를 연장하여 유지함 • 소득세, 급여세 등의 신고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이 이루어졌으나, 관세 관련된 연장은 운영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증세(과세 강화) 계획이 제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 최저한세 도입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자본소득세 세율의 소득세 세율 적용 등 - GILTI 제도 강화, FDII 폐지 및 BEAT의 SHIELD 대체

자료: 본문 내용을 표로 정리

가. 법인

- ▾ 법인에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기존 지원 정책을 연장하지 않은 부분과 고용 등의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연장된 정책이 병존하고 있음
- ▾ 법인의 순영업손실 및 이자비용공제제한제도 등에서의 지원은 2020년의 기존 정책에서는 연장되지 않음
 - ▶ 순영업손실과 관련한 2020년 공개된 특정 기간 소급환급공제 및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유예의 지원은 2021년에는 확인되지 않음
 - 2020년 중 2018~2020년의 순영업손실(net operationg loss)에 대해 5년간 소급하여

환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1년에 연장 또는 관련 추가 지원은 확인되지 않음³⁹⁾

- 2021년 이전 기간에 대해 이월결손금의 당기 과세소득 공제한도 80%를 유예하여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1년에 연장 또는 관련 추가 지원은 확인되지 않음⁴⁰⁾

- ▶ 사업의 이자비용공제제한제도에서 한도 기준인 조정과세소득금액(adjusted taxable income)의 50%로 상향 조정(기존 30%) 등의 2020년(2019년 포함)을 대상으로 완화하였으며, 2021년에 연장 또는 관련 추가 지원은 확인되지 않음⁴¹⁾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지원과 관련되거나 사용자(고용)과 관련된 지원은 대부분 연장 또는 미세 조정이 이루어짐

- ▶ 2020년 중 감염 또는 격리 또는 가족 돌봄으로 인한 유급휴가(paid sick leave)를 제공한 500인 미만의 사용자는 지급 해당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인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백신(접종 및 회복) 등을 추가 사유를 인정하면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⁴²⁾

- 감염 시 일별 511미국달러(최대 5,110달러) 및 격리 등의 경우 일별 200미국달러(최대 2천미국달러)임

- ▶ 2020년 중 사용인의 휴가, 병가 등 대신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행하는 적격 단체에 지급되는 현금 금액을 사용자의 급여지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비용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혜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⁴³⁾

- ▶ 2020년의 특정 기부단체에 대한 현금기부금 공제 한도를 조정 총소득 기준 25%로 상향 조정(기존 10%)하였으며, 2021년까지 연장함⁴⁴⁾

39) IRS, <https://www.irs.gov/newsroom/net-operating-losses>, Net operating losses, 검색일자: 2021. 8. 27.

40) IRS, <https://www.irs.gov/newsroom/net-operating-losses>, Net operating losses, 검색일자: 2021. 8. 27.

41)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8990>, Instructions for Form 8990 (05/2020): Limitation on Business Interest Expense Under Section 163(j), 검색일자: 2021. 8. 27.

42) IRS, "Tax Credits for Paid Leave Under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Overview," <https://www.irs.gov/newsroom/tax-credits-for-paid-leave-under-the-american-rescue-plan-act-of-2021-overview>; IRS, "New FAQs available to aid families and small business under the American Rescue Plan," <https://www.irs.gov/newsroom/new-faqs-available-to-aid-families-and-small-business-under-the-american-rescue-plan>, 검색일자: 2021. 8. 27.

43) IRS, <https://www.irs.gov/newsroom/irs-extends-tax-relief-for-employer-leave-based-donation-programs-that-aid-victims-of-the-covid-19-pandemic>, IRS extends tax relief for employer leave-based donation programs that aid victims of the COVID-19 pandemic, 검색일자: 2021. 8. 27.

44) KPMG,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1/01/tmf-charitable-giving-tax-provisions-tax-measures-enacted->

- ▶ 2020년 중소기업이 차입 후 급여 등의 지출에 사용하여 상환면제된 경우에 공제되지 않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관련 비용에 대해, 2020년에 공제받지 못한 비용항목을 2021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⁴⁵⁾
 - 한편, 급여보호프로그램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1년 3월 승인된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되어 관련 세무처리도 동일하게 연장됨
- ▶ 2020년 500인 미만 사업장 등의 사업 중단 또는 곤경에 처한 법인(및 개인사업자)의 직원고용 유지를 위한 적격 급여(한도 1만 달러)의 50%까지 적용되는 급여세액 공제(Employee Retention Credit: ERC)를 도입하였는데, 2021년 70%의 공제비율 및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상 사용자도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간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⁴⁶⁾

나. 개인

- ▣ 2021년 개인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퇴직계좌 인출 또는 대출 관련 지원이 확인되지 않음
 - ▶ 2020년 개인사업자의 영업손실은 법인과 동일하게 특정 기간 소급 및 결손금 한도 유예가 적용되었으며, 2021년에 연장 또는 관련 추가 지원은 확인되지 않음⁴⁷⁾
 - ▶ 2020년 사용자가 5,250미국달러까지 제공한 학자금에 대해 사용인의 면세를 적용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적격퇴직계좌 인출금 10만미국달러(현행 5만미국달러)까지 조기인출부과금 10%를 면제하면서 3년간 안분하여 과세(인출 금액 재예치 가능)하였으며, 2021년에 연장 또는 관련 추가 지원은 확인되지 않음⁴⁸⁾

end-2020.html, Expanded employee retention credit, charitable-giving provisions among tax measures enacted at end of 2020, 검색일자: 2021. 8. 27.

45) IRS, <https://www.irs.gov/pub/irs-drop/rp-21-20.pdf>, Examination of returns and claims for refund, credit, or abatement; determination of correct tax liability., 검색일자: 2021. 8. 27.

46) IRS, "New law extends COVID tax credit for employers who keep workers on payroll," <https://www.irs.gov/newsroom/new-law-extends-covid-tax-credit-for-employers-who-keep-workers-on-payroll>; "Guidance on the Employee Retention Credit under Section 3134 of the Code and on Miscellaneous Issues Related to the Employee Retention Credit," <https://www.irs.gov/pub/irs-drop/n-21-49.pdf>., 검색일자: 2021. 8. 27.

47) IRS, "Publication 536(2020), Net Operating Losses (NOLs) for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 <https://www.irs.gov/publications/p536>, 검색일자: 2021. 8. 27.

- IRS에서는 적격퇴직계좌 등의 대면 신청 요건에 대한 공증 등의 면제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지만,⁴⁹⁾ 과세 등의 혜택 등 연장은 확인되지 않음

▶ **사용인의 고용 유지 또는 생계 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2020년 대응정책은 2021년에도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있음**

▶ 2020년 자녀가 없는 개인에 대하여 최대 543달러의 근로장려세제(자녀가 있는 개인: 자녀 1인당 2천달러)가 부여되었는데, 2021년 혜택은 일시적으로 규모를 더 확대하고 일부 요건은 완화함⁵⁰⁾

- 2021년 자녀가 없는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는 1,502달러, 6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인당 3천달러(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인당 3,600달러)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수급자 연령을 19세(기존 25세)로 하향 조정, 자녀 연령 제한은 17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확대를 시행함

▶ 2020년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를 단독가구 기준 최대 비용 3천미국달러에 세액공제율을 최대 35% 적용하였으나, 2021년에는 최대 비용 6천미국달러 및 세액공제율 최대 50%로 상향 조정함⁵¹⁾

▶ 2020년 단독가구 기준 조정소득 7만 5천미국달러 이하의 거주자 개인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1,200미국달러(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500미국달러)의 환급 가능한 회생환급세액 공제(recovery rebate credit) 및 추가 지급, 2021년 3차 지급에서는 지급액을 1,400미국달러로 증액하고 자녀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지급액이 경감되는 구간의 조정⁵²⁾이 이루어짐⁵³⁾

- 2020년 2차 제공에서는 단독가구 기준 600미국달러 및 자녀 1인당 600미국달러를 지급함

48) IRS, "Coronavirus-related relief for retirement plans and IRAs questions and answers," <https://www.irs.gov/newsroom/coronavirus-related-relief-for-retirement-plans-and-iras-questions-and-answers>, 검색일자: 2021. 8. 27.

49) IRS, "Extension of Temporary Relief from the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Notice 2021-40," <https://www.irs.gov/pub/irs-drop/n-21-40.pdf>, 검색일자: 2021. 8. 27.

5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Childless" EITC: Temporary Expansion for 2021 Under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ARPA; P.L. 117-2),"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N/IN11610>, 검색일자: 2021. 8. 27.

51) IRS, "New FAQs available to aid families and small business under the American Rescue Plan," <https://www.irs.gov/newsroom/new-faqs-available-to-aid-families-and-small-business-under-the-american-rescue-plan>, 2021. 8. 27.

52) 1차의 초과 조정소득 5% 경감보다는 강화되어, 단독가구 기준 조정소득 8만달러 시 지급받지 못함

53) IRS, "Third Economic Impact Payment;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www.irs.gov/coronavirus/third-economic-impact-payment>; IRS, "Economic Impact Payments,"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oronavirus/assistance-for-american-families-and-workers/economic-impact-payments>, 검색일자: 2021. 8. 27.

- ▶ 2020년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개인은 적격단체 기부금을 300미국달러까지 공제 하고, 항목별 공제를 하는 개인은 조정 총소득의 100%까지 공제하였으며, 이를 2021년 까지 연장함⁵⁴⁾
- ▶ 2020년 중 사용인의 휴가, 병가 등 대신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행하는 적격 단체에 지급되는 현금 금액을 근로소득 등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함⁵⁵⁾
- ▶ 2021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도구(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출 비용을 개인의 의료비 공제 대상 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⁵⁶⁾

다. 기타

- ▣ 세무 행정적 지원으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의 연장을 2020년에 이어 2021년 에도 유지함
 - ▶ 2019 과세연도의 연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2020년 4월 15일에서 2020년 7월 15일로 연장하였으며, 2021년에도 2020년도 연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기존 2021년 4월 15일에서 2021년 5월 17일로 연장함
 - ▶ 2020년 과세연도 납부해야 할 사회보장세(급여세)의 고용주 부담금 납부를 절반씩 2021년 말 및 2022년 말로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2021년 과세연도에 해당 하는 사회보장세에도 추가적으로 납부를 유예함⁵⁷⁾
 - ▶ 2020년 재정난이 심각한 수입업자가 통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 세금, 수수료 납부 기한을 3월과 4월 한시적으로 90일 연장하였으나,⁵⁸⁾ 2021년에는 유예 조치가 없음

54) KPMG, "Expanded employee retention credit, charitable-giving provisions among tax measures enacted at end of 2020,"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1/01/tnf-charitable-giving-tax-provisions-tax-measures-enacted-end-2020.html>, 검색일자: 2021. 8. 27.

55) IRS, "IRS extends tax relief for employer leave-based donation programs that aid victims of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irs.gov/newsroom/irs-extends-tax-relief-for-employer-leave-based-donation-programs-that-aid-victims-of-the-covid-19-pandemic>, 검색일자: 2021. 8. 27.

56) IRS, "Face masks and othe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are tax deductible," <https://www.irs.gov/newsroom/face-masks-and-other-personal-protective-equipment-to-prevent-the-spread-of-covid-19-are-tax-deductible>, 검색일자: 2021. 8. 27.

57) IRS, "Employers can withhold, make payments of deferred Social Security taxes from 2020," <https://www.irs.gov/newsroom/employers-can-withhold-make-payments-of-deferred-social-security-taxes-from-2020>, 검색일자: 2021. 8. 27.

- ▣ 2020년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품에 대한 소비세(주세) 과세면제를 2021년에도 일부 기간 연장함

 - ▶ 2020년 손 소독제 생산에 사용되는 증류주와 반출 시 과세되는 소비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였으며, 이를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⁵⁹⁾

- ▣ 미국은 2021년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을 실행하는 동시에 별개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과세 강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 ▶ 미국의 증세안은 트럼프 정부의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안(2017 Tax Cuts and Jobs Act: TCJA)의 근본적인 개혁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대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임
 - ▶ 2021년 3월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과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y Plan)을 통해 법인세·개인소득세·국제조세 등 다방면에서 과세 강화를 계획하고 있음⁶⁰⁾
 - 법인세 분야에서는 법인세율을 2020년 기준 21%에서 2021년에는 28%로 인상, 연매출 1억미국달러 이상인 법인의 회계이익에 대해 15%의 최저한세 적용, 상장기업 100만미국달러 이상의 고소득 급여자 공제 부인을 5명에서 7명으로 확장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소득세 분야에서는 소득세 최고소득 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 고소득 자본소득세에 현행 20%(+3.8%)에서 소득세 최고소득 구간 세율 적용 등임
 - 국제조세 분야에서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Tax)의 실효세율을 최대 13.125%에서 최소 21%로 인상·국외자산의 10% 소득면제 폐지·전 세계 통산에서 국가별 통산으로 변경, 국외 무형자산 소득공제제도인 FDI(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폐지, 저세율 관할국의 소득이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BEAT(Base Erosion Anti-Abuse Tax)를 SHIELD(Stopping Harmful Inversion and Ending Low-Tax Developments)로 대체함

58)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and CBP Announce Deferment of Duties and Fees for Certain Importers During COVID-19 Response,"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treasury-and-cbp-announce-deferment-of-duties-and-fees-for-certain-importers-during-covid-19-response>, 검색일자: 2021. 8. 27.

59) TTB, "Production of Hand Sanitizer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ttb.gov/public-guidance/ttb-pg-2020-1c>, 검색일자: 2021. 8. 27.

60) IRS, "Tax Reform," <https://www.irs.gov/tax-reform>; The White House, "Briefing Room,"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he Made in America Tax Plan,"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MadeInAmericaTaxPlan_Report.pdf; Department of the Treasury, General Explanations of the Administration's Fiscal Year 2022 Revenue Proposals, May 2021.

2 캐나다

- ▣ 캐나다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은 대부분 세제가 아닌 과세관청이 관할하는 보조금(subsidy)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제도는 일회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지되고 있음
-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1년에도 2020년에 운영한 법인 및 개인에 관한 기존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항을 유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함
 - 그러나 2021년에는 제도 중 일부에서 보다 더 코로나19 피해 대상 집단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세무 행정적 조치인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관세 납부 유예에 관하여는 연장하지 않음

〈표 III-3〉 캐나다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분류	2020년	2021년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급여·락다운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적격 비용의 최대 75%(CEWS), 40%(CERS) - 이전 매출액의 25%(락다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급여·락다운에 따른 지원을 장하여 유지하고 있으나, 지원비율이 축소됨 - CEWS 및 CERS: 최대 20% • CEWS의 환수규정 신설 • 증분보수금액 기준 50% 지원제도인 CRHP 신설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WS, CERS, 락다운, CRHP는 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생 등의 보조금을 2021년도 연장하여 유지 • 장려세제 확대 - 자녀장려세제 4회 추가 지급 - 근로장려세제 소득 기준 금액 상향 조정 • 긴급대응 지원은 유지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생(CRB), 화생보건(CRSB), 돌봄(CRCB) 보조금 지원 • 자녀장려세제에 일시적으로 추가 지급 • 긴급대응지원(CERB) 지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관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없음 • 환경 및 투자 목적 세제 개편 도입

자료: 본문 내용을 표로 정리

가. 법인

- ▣ 2020년 법인의 지원은 대부분 고용 또는 임차료와 관련된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2021년에도 대부분 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다 정밀한 지원을 위한 지원 축소와 세부 조정이 이루어짐
- ▶ 2020년 사용자에게 대한 급여 및 임차료 비용 지원제도인 CEWS(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RS(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락다운 지원(Lockdown Support)을 두 차례 연장하여 2021년 10월 23일까지 확대함⁶¹⁾

 - CEWS와 CERS는 최초 각각 최대 75%, 40%의 지원을 특정 기간마다 매출액이 일정 비율 감소(예, 30%)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원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연장된 기간에는 최대 20%의 하향 조정된 지원이 이루어짐
 - 락다운 지원은 CERS에 해당하는 사용자 중 사업 중단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의 요건 충족 시 주 단위로 코로나19 이전 매출액의 최소 25%를 지원하는 제도임⁶²⁾
- ▶ 2021년 상장기업 및 종속기업의 경우 2021년 특정 경영진의 보상이 2019년 보상액을 초과할 경우 2021년 5월부터 수령한 CEWS를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함
- ▶ 2021년 신규 지원제도로 CEWS와 요건 등이 유사한 CRHP(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⁶³⁾를 도입하여 CEWS를 대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CRHP는 지원의 기준이 절대 보수금액 기준이 아닌 2021년 3~4월 기준에 비해 상대적인 증분 보수금액을 기준으로 50%를 지원함

나. 개인

- ▣ 2020년 대부분의 개인에 대한 지원은 가구의 고용 및 방역에 따른 피해를 보충하기

61) Government of Canada,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CER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rent-subsidy.html>; Government of Canada,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emergency-wage-subsidy.html>, 검색일자: 2021. 8. 25.

62) Government of Canada, "Lockdown Support for Businesses Facing Significant Public Health Restriction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0/11/lockdown-support-for-businesses-facing-significant-public-health-restrictions.html>, 검색일자: 2021. 8. 30.

63) Government of Canada, "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CRHP),"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recovery-hiring-program.html>, 검색일자: 2021. 8. 27.

위한 지원이었으며, 대부분의 지원이 2021년에도 연장되어 유지되고 있음

- ▶ 개인인 사용자의 경우에도 위의 법인에서 기술한 CEWS 등이 적용됨
- ▶ 2020년 캐나다회생지원(Canada Recovery Benefit: CRB), 캐나다회생보건지원(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 캐나다회생돌봄지원(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을 통해 격주 또는 매주 사용인 또는 자영업자의 소득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2021년 10월 23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음
 - CRB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격주로 보조금을 1천캐나다달러(또는 적용기간에 따라 600 캐나다달러) 지원하고 있음⁶⁴⁾
 - CRSB는 감염 또는 격리가 필요한 경우 매주 500캐나다달러를 지원하고 있음⁶⁵⁾
 - CRCB는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매주 500캐나다달러를 지원함⁶⁶⁾
- ▶ 2020년 기존의 자녀장려세제(Canada Child Benefit)에 자녀당 300캐나다달러의 추가 지원을 하였으며, 2021년에는 4회에 걸쳐 소득별로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임⁶⁷⁾
 - 예를 들어, 소득이 12만캐나다달러 미만인 가구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300 캐나다달러가 지급됨
- ▶ 근로장려세제(Canada Workers Benefit)를 2021년 확대하여 저감 구간을 단독가구 기준 상향 조정⁶⁸⁾
 - 2020년 일정 소득구간 공제율을 27%로 인상(기존 26%)함과 동시에 저감구간을 단독 가구 기준 3만 2,244캐나다달러로 상향 조정(기존 2만 4,819캐나다달러)하고 저감율을

64) Government of Canada, "Canada Recovery Benefit (CRB),"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recovery-benefit.html>, 검색일자: 2021. 8. 30.

65) Government of Canada,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recovery-sickness-benefit.html>, 검색일자: 2021. 8. 30.

66) Government of Canada,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recovery-caregiving-benefit.html> 검색일자: 2021. 8. 30.

67) Government of Canada, "Up to \$1,200 more per child for 1.6 million families across Canada,"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2021/05/up-to-1200-more-per-child-for-16-million-families-across-canada.html>, 검색일자: 2021. 8. 27.

68)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expands Canada Workers Benefit to support one million more Canadian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1/06/government-expands-canada-workers-benefit-to-support-one-million-more-canadians.html>; Government of Canada, "Annex 6: Tax Measures - Supplementary Information," <https://www.budget.gc.ca/2021/report-rapport/anx6-en.html#canada-workers-benefit>, 검색일자: 2021. 8. 27.

15%(기존 12%) 상향 조정하며, 장애인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의 기준소득을 상향 조정함

- ▶ 2020년에 2021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이연후직급여제도(Deferred Salary Leave Plans: DSPs)의 여러 휴직기간 제한(예, 6개월 등)과 인가된 퇴직급여제도(Registered Pension Plans: RPP)의 대출 제한 완화 등이 2021년에 2022년 4월까지 연장됨
 - DSP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사용인은 일시에 소득세가 과세되며, RPP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음
- ▶ 2020년 재택근무에 따른 재택근무 관련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일별 2캐나다달러 기준의 단순 공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2021년에는 단순 공제 방법은 확인되지 않음

▾ 개인에 대한 2020년 지원 중 단발성 지원인 CERB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음

- ▶ 2020년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2019년 또는 직전 1년간 소득 5천캐나다 달러 이상인 사용인 또는 자영업자에게 캐나다긴급대응지원(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을 최대 28주 동안 4주마다 2천캐나다달러를 지원하였으나, 2021년에는 종료됨⁶⁹⁾

다. 기타

- ▾ 세무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하였고 2021년에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 2019년도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하여 2020년 9월 30일까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납부기한을 유예하였으나,⁷⁰⁾ (연방 신고와 관련하여) 2021년에는 시행하지 않음

69) Government of Canada,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Closed,"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eb-application.html#h2.03>, 검색일자: 2021. 8. 30.

70) Government of Canada, "The Canada Revenue Agency announces an extension to the payment deadline and offers interest relief on outstanding tax deb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2020/07/the-canada-revenue-agency-announces-an-extension-to-the-payment-deadline-and-offers-interest-relief-on-outstanding-tax-debts-during-the-covid-19-pa.html>, 검색일자: 2021. 8. 27.

- ▶ 자영업자 및 기업의 관세 납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1년에는 시행하지 않음
- ▾ **캐나다**는 코로나19에 관한 조치와는 별개로 2021년 6월 30일 예산안에 대한 왕실의 승인을 발표하면서 정책적 목표에 따른 과세 강화와 지원을 공개함⁷¹⁾
 - ▶ 환경과 관련된 법인에 저세율 또는 가속상각을 허용함
 - 제조 및 가공에 탄소배출 제로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절반 수준(중소기업 4.5%, 일반기업 7.5%)의 연방 법인세 감면세율을 적용함
 - 청정에너지 장비에 대해 30~50%의 가속상각을 적용하여 자본비용공제를 확대하고, 탄소 포집·활용·저장 장치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 2021년 4월부터 2024년까지 캐나다 기업의 취득한 특정 자산에 대해 150만캐나다달러까지 즉시상각을 허용함
 - ▶ 2023년부터 EBITDA의 30%(첫 해는 4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함

3 영국

- ▾ **영국**은 지원정책의 중심축을 2020년 유동성 공급·고용지원에서 2021년 조세지원책으로 이동시켰고, 세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의 세제 변화를 추진 중임
- ▶ 증세(법인(2023년)·개인(~2026년)), 플라스틱포장세(2022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디지털서비스세는 2020년 도입되었으며, 향후 보고 내용에 대한 검증 강화가 예상됨 (일정 미확정)

71) Deputy Prime Minister of Canada, "Budget focused on jobs and growth receives Royal Assent," <https://deputyprime.canada.ca/en/news/news-releases/2021/06/30/budget-focused-jobs-and-growth-receives-royal-assent>, 검색일자: 2021. 8. 2.

〈표 III-4〉 영국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분류	2020년	2021년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업종 중심 지원 - 소매·접객·레저 부동산세 면제 - 유동성 공급용 금융지원(비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全) 산업으로 지원 확대 - 부동산세 면제: 종료 - 금융지원(비조세): 축소 연장 - 신규: 투자특별공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연장(1년→3년)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비조세) 주력 - 고용유지 보조금 - 자영업자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원정책 축소 연장 - 2021년 9월까지 혜택 축소 적용 	
기타	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업종 중심 지원 - 여행·접객 VAT 인하 (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세정책 축소 연장 - 여행·접객 VAT 조정(5%→12.5%, 2021년 10월~2022년 3월) 후 인하 종료
	세무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기 연장 - VAT(약 8개월) - 자영업자 소득세(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기 연장 축소 적용 - VAT: 11개월 월납 허용 - 소득세: 중단
	기타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세제 변화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19%→25%, 2023년~) -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인상연동 중단 (2021~2025회기) - 디지털서비스세(2020년~) 보완 - 플라스틱포장세 2022년 도입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1호, pp. 22-23를 참고하여 작성

가. 법인

- ▶ 2020년에는 피해산업에 대한 조세 및 비(非)조세(금융) 지원에 주력하였고, 2021년에는 전(全) 산업을 아우르는 조세지원책을 도입함
 - ▶ 2020회기에 피해산업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소매·접객·레저 소상공인 사업용 부동산세⁷²⁾를 면제함
 - 동 지원책은 2021회기 연장되지 않음⁷³⁾

72) 과표(rateable value) 5만 1천파운드(2021. 7. 30.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141만원) 이하 시 적용됨

73) Steve Browning 외,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영국 하원 도서관, 2021. 6. 24.

- ▶ 유동성 공급을 위해 2020년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2021년에는 이를 축소 연장함
 - Future Fund와 CCFF는 추가 취급을 중단하였고, CBILS, CLBILS, BBLs는 UK-wide Recovery Loan Scheme⁷⁴⁾으로 대체함⁷⁵⁾

〈표 III-5〉 영국의 코로나19 대응자금 지원 프로그램(2020년)

(단위: 파운드, %)

프로그램명	지원 대상	건별 대출한도 (파운드)	정부보증 (%)	비고
CBILS ¹⁾	중소기업	500만 ²⁾	80%	-
CLBILS ³⁾	대기업	500만	80%	-
BBLs ⁴⁾	모든 기업	5만 ⁵⁾ (매출 25%까지)	100%	-
Future Fund	스타트업	500만	-	민간투자 매칭 조건
CCFF ⁶⁾	대기업	개별 심사	개별 심사	고액여신 취급

- 주: 1) CBILS: 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2)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0억원임
 3) CLBILS: Coronavirus Larger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4) BBLs: Bounce Back Loans
 5)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천만원임
 6) CCFF: Covid19 Corporate Financing Facility

자료: Steve Browning 외,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pp. 27~39, 영국 하원 도서관, 2021. 6. 24.

- ▶ 2021회기에는 투자 특별공제와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연장 등의 세제지원책이 추가 되었음
 - 투자 특별공제를 통해, 2021년 4월~2023년 3월 적격 신규투자에 대해 취득금액의 최대 130%를 즉시상각할 수 있도록 함⁷⁶⁾
 -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연장을 통해, 2020년 4월~2022년 3월 발생 결손금과 관련한 소급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일반 1년)⁷⁷⁾

74) 정부보증 80%, 대출한도 최대 1천만파운드, 여신기간 최장 6년(Steve Browning 외,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영국 하원 도서관, 2021. 6. 24.)

75) 프로그램이 2020년 Local Restrictions Support Grant 및 Closed Businesses Lockdown Payment에서, 2021년 Restart Grants로 대체됨

7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03호, 2020, 영국편, <https://www.kipf.re.kr/kor/Trend/InterTrends/kiTrend/Overseas/view.do>, 검색일자: 2021. 7. 30.

77) (상동)

나. 개인

- ▶ 개인지원을 위해 조세 지원책보다는 고용유지 보조금에 주력하였고, 2021년 관련 지원책을 축소 연장하였음

 - ▶ 고용유지 보조금⁷⁸⁾ 통해, 2020년 강제휴가(furloughed) 종업원에게 월 2,500파운드⁷⁹⁾를 한도로 하여 정상급여의 80%⁸⁰⁾를 보조하였으며, 2021년 이를 축소 연장함

 - 동 제도는 2021년 9월까지 연장되었고, 정부의 정상급여 대비 지원율은 2021년 7월 70%⁸¹⁾, 8~9월 60%⁸²⁾로 축소 예정임
 - ▶ 자영업자 보조금⁸³⁾을 통해, 2020년 피해 자영업자에게 주로 3개월 단위로 합계금액 7,500파운드⁸⁴⁾를 한도로 월평균소득의 80%⁸⁵⁾를 보조하였으며, 2021년 이를 축소 연장함

 - 동 제도는 2021년 9월까지 연장⁸⁶⁾되었고,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여야 월평균소득의 80%를 보조받을 수 있음⁸⁷⁾

다. 기타

- ▶ 소비세 측면의 지원은 2020년 피해업종 위주로 진행되었고, 2021년 지원제도가 축소 연장됨

78) CJRS: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형식상 법인지원으로 볼 수 있지만, 최종 수혜자가 개인이므로 개인지원 항목으로 분류하였음

79)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0만원임

80) 정부보조 비율을 2020년 9월에는 70%(회사는 10%를 추가), 10월에는 60%(회사는 20%를 추가)로 단계적 인하 이후 11월 80%로 복귀하였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회사분은 2020년 3~6월분만 정부가 지원하였음

81) 고용주 추가 10% 부담(Steve Browning 외,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영국 하원 도서관, 2021. 6. 24.)

82) 고용주 추가 20% 부담(상동)

83) SEISS: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고용유지 보조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개인지원 항목으로 분류하였음

84)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00만원임

85) 제2차 지원금(접수 기준 2020년 8월 17일~10월 19일)의 경우 70%(합계한도금액 6,570파운드)

86) 제5차 지원금(상동)

87) 매출이 30% 미만 감소한 경우, 월평균소득의 30%를 지원함(Steve Browning 외,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영국 하원 도서관, 2021. 6. 24.)

- ▶ 여행·접객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2020년 7월부터 5%⁸⁸⁾로 인하하였으며, 2021년 축소 연장됨
 - 동 세율은 2021년 10월~2022년 3월 12.5%로 조정 후 인하 종료됨

- ▣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2020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기 연장이 있었고, 2021년 납기 연장은 부가가치세에 한해 축소 연장됨
 - ▶ 2020년 3/20~6/30일분 부가가치세 납기를 2021년 3월 말로, 2020년 7월 납부분 자영업자 소득세 납기를 6개월 연장하였으며,⁸⁹⁾ 2021년 납기 연장은 부가가치세에만 축소하여 적용됨
 - 2021년 3월 납기 부가가치세를 이후 11개월간 월납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납기 연장계획은 발표되지 않음⁹⁰⁾

-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인상연동 중단, 디지털서비스세 검증 강화,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 등 세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의 세제 변화가 있음
 - ▶ 증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023년 4월부터 25%로 인상되며, 소득세는 2021년 4월~2026년 3월 세율구간 기준금액을 동결함
 - 영국의 2021년 법인세율은 단일세율(19%)이며, 2023년 4월부터는 25만파운드⁹¹⁾ 초과 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이 적용됨^{92),93)}
 - 영국의 소득세 세율구간은 물가 상승에 연동되지만, 2021년 4월~2026년 3월 기간에는 세율구간 기준금액을 동결하면서 사실상 증세효과가 나타남⁹⁴⁾

88) 영국 부가가치세율 20%(영국 정부, VAT rates, <https://www.gov.uk/vat-rates>, 검색일자: 2021. 7. 30.)

89) Steve Browning 외, Coronavirus: Support for businesses, 영국 하원 도서관, 2021. 6. 24.

90) Taxand, "Overview of international tax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 Future developments," 2021. 6., <https://www.taxand.com/wp-content/uploads/2021/05/Taxand-Covid-Report-June-2021.pdf>, 검색일자: 2021. 7. 30.

91)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원임

92) 5만파운드 이하 소득에는 19%의 세율이 적용(영국 정부, "Corporate tax, Guidance,"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e-tax>, 검색일자: 2021. 7. 29.)

93) 영국 재무장관은 2021회기 예산안 연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기업에 1천억파운드를 초과하여 지원하였으므로, 회복을 위해 기업들이 기여하는 것이 공정하고 필수적이라고 언급함(영국 정부, "Budget Speech 2021,"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budget-speech-2021>, 검색일자: 2021. 7. 29.)

94) 영국 정부, "Budget 2021:document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dget-2021-documents>, 검색일자: 2021. 7. 29.

- ▶ 디지털서비스세와 관련하여, 디지털세와 관련한 국제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영국은 독자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운용 및 보완 중임
 - 영국은 2020년 4월부터 디지털서비스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⁹⁵⁾인 다국적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함
 - 영국 국세청은 2021년 3월 정책문서에서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 강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하였음⁹⁶⁾
- ▶ 플라스틱포장세와 관련하여, 2022년 환경목적 조세에 플라스틱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가 추가되며, 유류세 감면 분야는 축소 예정임
 - 영국의 4대(大) 환경목적 조세는 기후변화부담금, 탄소세, 매립세, 골재세이며, 관련 세수는 2019년 31억파운드임⁹⁷⁾
 - 2022년 4월부터 재활용 플라스틱을 30%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의 생산·수입에 대하여 1톤당 200파운드⁹⁸⁾의 플라스틱 포장세를 부과할 예정임⁹⁹⁾
 - 2022년 4월부터 유류세가 감면¹⁰⁰⁾되는 디젤사용 분야를 비(非)도로차량에서 농업·철도·난방으로 축소할 예정임

4 호주

▶ 호주는 2020년¹⁰¹⁾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다수의 지원책을 도입한 후 2021년 지원규모를

95) 그룹 합계 5억파운드(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천억원), 영국 내 2,500만파운드(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0억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영국-2020 Finance Act 제정,” <https://www.kipf.re.kr/kor/Trend/InterTrends/kiTrend/Overseas/view.do>, 검색일자: 2021. 7. 30.)

96) 타 국가와 정보 교환을 통한 탈세방지 목적이며, 협의과정이 필요하며, 관련 법안이 2022년까지 입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함(영국 정부, “Reporting rules for digital platforms,” Policy paper, 2021. 3. 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porting-rules-for-digital-platforms/reporting-rules-for-digital-platforms>, 검색일자: 2021. 7. 29.)

97) 영국 국세청, “Environmental tax measures,” 2021. 2. 12, <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21/02/Environmental-Tax-Measures.pdf>, 검색일자: 2021. 7. 29.

98)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만원임

9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영국-2020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https://www.kipf.re.kr/kor/Trend/InterTrends/kiTrend/Overseas/view.do>, 검색일자: 2021. 7. 30.

100) 유류세: 1리터당 감면 전 0.5795파운드, 감면 후 최대 0.1114파운드(영국 정부, “Reform of red diesel and other rebated fuels entitlement,” Policy paper, 2021. 3. 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form-of-red-diesel-entitlements/reform-of-red-diesel-and-other-rebated-fuels-entitlement>, 검색일자: 2021. 7. 29.)

대폭 줄였으며(고용유지보조금 중단), 코로나19 이전 수립된 감세기조를 2021년에도 유지하면서 R&D 관련 조세정책을 정비하고 있음

- ▶ R&D 지원 강화를 위해 ‘특허박스’ 제도를 2022년 7월 도입할 예정임
 - 특허박스 제도는 의학·바이오 특허 관련 소득에 특혜세율(17%)을 적용하게 됨

〈표 III-6〉 후주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분류		2020년	2021년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위 조세지원 - 소급공제 허용(←기존 불가) - 즉시상각 허용 - 코로나19 관련 부가급여세 면제 - 가속상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지원책 선별 연장 - 소급공제: 기간 연장 - 즉시상각: 기간 연장 - 부가급여세 면제: 연장 - 가속상각: 중단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비조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조세지원을 병행 - 기수립 감세안 조기집행(2년) - 재택근무 비용 공제 - 비조세 지원: 고용유지보조금, 연금 조기인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원책: 연장 • 비(非)조세지원책: 중단
기타	세무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기업 개별신청 기반 지원 - 법인세 납기 연장(6개월) - VAT 조기환급(분기별 → 월별) - 미납지연이자·가산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지원책 선별 연장 - 법인세 납기 연장: 중단 - VAT 조기환급: 연장 - 미납지연이자·가산세 면제: 연장
	기타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세 기조(코로나19 전 수립) 변화 없음 • 의학·바이오 등에 대한 R&D 지원·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정책 정비 중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반기보고서), 2020년 제1호, 2020, pp. 41~42를 바탕으로 작성

가. 법인

- ▣ 법인지원을 위해 2020년 조세상의 지원을 집중하였으며, 2021년 신규 지원책 없이 기존 지원책을 선별적으로 연장하였음

101) 코로나19 대응정책과 관련한 2020년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보고서 호주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반기보고서), 2020년 제1호, 2020,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6494>, 검색일자: 2021. 7. 30.)

- ▶ 결손금 공제는 이월공제가 원칙이나, 2019년 7월~2022년 6월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를 2020년에 허용하였고, 2021년에는 소급공제 가능 결손금 발생기간을 2023년 6월로 1년 연장함
 - 소급공제는 2018년 7월 이후 발생한 과세소득을 차감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 즉시상각을 2020년 허용함으로써 적격 자산을 사용개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으며, 최초 계획은 2022년 6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¹⁰²⁾ 2021년 동 제도를 2023년 6월 까지로 1년 연장함¹⁰³⁾
 - 동 제도는 매출액 50억호주달러¹⁰⁴⁾ 미만 기업이 이용할 수 있음
- ▶ 코로나19 관련 부가급여세를 2020년 면제함으로써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혜택은 부가급여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2021년 동 조치는 연장됨
 - 부가급여세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 일부 항목 외의 혜택에 대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임¹⁰⁵⁾
- ▶ 가속상각과 중소기업 보조금 정책은 2020년에 도입됐으나, 2021년에는 연장되지 않음
 - 가속상각제도하에서, 매출액 5억호주달러¹⁰⁶⁾ 미만 기업은 사용 개시연도에 취득금액의 50%를 상각¹⁰⁷⁾할 수 있으며, 2021년 6월 말까지 적용함¹⁰⁸⁾
 - 중소기업 보조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에 직원급여 원천징수세액의 100% 해당액 (2만~10만¹⁰⁹⁾호주달러)을 보조금으로 지급함

102) 호주 정부, "Budget 2020-21, Budget Paper No.2: Budget Measures," <https://archive.budget.gov.au/2020-21/index.htm>, 검색일자: 2021. 7. 30.

103) 호주 정부, "Budget 2021-22, Budget Paper No.2: Budget Measures"

104) 2020년 3월 이전 5천만호주달러(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2억원), 2020년 3월 이후 5억 호주달러(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00억원), 2020년 10월 이후 50억호주달러(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조 2천억원)로 적용 기업이 확대됨

105) 호주 정부, "Fringe benefits tax(FBT)," [https://www.ato.gov.au/General/fringe-benefits-tax-\(fbt\)/](https://www.ato.gov.au/General/fringe-benefits-tax-(fbt)/), 검색일자: 2021. 7. 30.

106)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00억원임

107) 잔여 취득금액은 최초 취득금액이 50%였다고 가정하고 상각하므로 초년 상각액은 50%를 초과하게 됨 (Taxand, Overview of international tax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 Future developments, 2021. 6., <https://www.taxand.com/wp-content/uploads/2021/05/Taxand-Covid-Report-June-2021.pdf>, 검색일자: 2021. 7. 30.)

108) 호주 정부, Budget 2020-21, Budget Paper No.2: Budget Measures

109)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00만~8,500만원임

나. 개인

▶ 재정부담이 가장 컸던 고용유지보조금¹¹⁰⁾은 2021년 3월에 종료되었고, 이에 개인지원책은 종합적으로 볼 때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0회기에 과표구간 조정방식을 통해 소득세를 감세하였음

- 동 소득세 감세는 당초 2022회기에 예정되었던 실행계획의 시행시기를 2년 앞당겨 시행한 것임

〈표 III-7〉 호주 소득세 세율구간 변경내역

(단위: 호주달러)

소득세율	2019~2020(2019회기) 과표구간	2020~2021(2020회기) 과표구간
0	0 ~ 18,200	0 ~ 18,200 ¹⁾
19%	18,201 ~ 37,000	18,201 ~ 45,000
32.5%	37,001 ~ 90,000	45,001 ~ 120,000
37%	90,001 ~ 180,000	120,001 ~ 180,000
45%	180,000 ~	180,000 ~

주: 1)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각각 AS\$18,200(약 1,500만원), AS\$45,000(약 3,800만원), AS\$120,000(약 1억원, AS\$180,000(1,500만원))임

자료: 호주 국세청, Individual income tax rates, <https://www.ato.gov.au/rates/individual-income-tax-rates/>, <https://www.ato.gov.au/Rates/Individual-income-tax-for-prior-years/>, 검색일자: 2021. 7. 30.

▶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고용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련 추가 비용을 2020년에 공제하기로 하였고, 2021년에 산정방법을 축소하여 연장하였음

- 2021년 7월 이후, 실제 사용금액 및 고정율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간편법은 인정하지 않음¹¹¹⁾

▶ 2020년 도입되었던 하기 비(非)조세 조치들은 2021년 연장되지 않았음

- 고용유지보조금(JobKeeper)제도하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기업 근로자에게 2주 단위로¹¹²⁾ 고용기업을 통해 지급되었으나,¹¹³⁾ 2021년 3월에 종료됨

110) 2020년 830억호주달러, 2021년 60억호주달러가 투입되었음(호주 정부, Budget 2021-22, Budget Paper No.2: Budget Measures)

111) 호주 국세청, "Working from home expenses,"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deductions-you-can-claim/home-office-expenses/>, 검색일자: 2021. 7. 30.

- 연금 조기인출¹¹⁴⁾ 허용 조치(최대 2만호주달러¹¹⁵⁾)는 2021년에는 연장되지 않음¹¹⁶⁾

다. 기타

▣ 세무행정상의 지원책은 2021년에 일부 축소되었음

- ▶ 2020년, 법인세 등에 대한 납기 연장(6개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분기별 → 월별), 미납지연이자·가산세 면제 등의 조치를 피해기업 개별신청·협의 기반으로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는 일부 제도가 연장되었음
 - 납기 연장(6개월)은 2020년에 종료되었고,¹¹⁷⁾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및 미납지연이자·가산세 면제 조치는 지속 운영 중임¹¹⁸⁾

▣ 코로나19 이전의 감세기조가 아직 유지되고 있으며, R&D 지원·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정책을 정비하고 있음

- ▶ 감세기조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이전 수립된 감세기조에 따른 세율정책이 입안 및 집행되어 왔으며, 2021년에 확인된 기조 변화는 없음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18년 법안¹¹⁹⁾에 따라 저소득 구간¹²⁰⁾에 대한 법인세는

112) 2주 단위로 1인당 1차(2020. 3. 30.~9. 27.) AS\$1,500(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7만원), 2차(2020. 9. 28.~2021. 1. 3.) 최대 AS\$1,200(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1만원), 3차(2021. 1. 4.~2021. 3. 28.) 최대 AS\$1,000(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5만원)가 지급되었음(호주 재무부, "JobKeeper Payment," <https://treasury.gov.au/coronavirus/jobkeeper>, 검색일자: 2021. 7. 30.)

113) 최종 수혜자가 개인이므로 개인지원 항목으로 분류하였음

114) 호주 국세청, "COVID-19 early release of super,"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In-detail/Withdrawing-and-using-your-super/COVID-19-early-release-of-super/>, 검색일자: 2021. 7. 30.

115)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00만원임

116) 비과세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반기보고서), 2020년 제1호, 2020, 호주편)

117) 호주 정부, "Tax relief measures for eligible New South Wales businesses impacted by COVID-19," 2021. 5. 24., <https://business.gov.au/grants-and-programs/COVID19-Tax-Relief-Measures-NSW>, 검색일자: 2021. 7. 30.

118) 호주 국세청, "Additional support during COVID-19," 2021. 7. 14., <https://www.ato.gov.au/General/COVID-19/Additional-support-during-COVID-19/>, 검색일자: 2021. 7. 30.

119) 호주 국회, "Treasury Laws Amendment(Lower Tax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Bill 2018,"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bId=r6206, 검색일자: 2021. 7. 30.

120) AS\$50m(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3억원) 미만을 의미하며,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30.0%가 유지되고 있음(호주 국세청, "Changes to company tax rates," <https://www.ato.gov.au/rates/changes-to-company-tax-rates/>, 검색일자: 2021. 7. 30.)

27.5%(2019회기) → 26.0%(2020회기) → 25.0%(2021년 7월~)로 인하여 왔음

- 가계소득 지원을 위한 2018년 법안¹²¹⁾에 따라 2022년 예정되었던 감세계획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2년 당겨 집행(전술)되었고, 2024년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감세가 추가로 계획되어 있음
- ▶ R&D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의학·바이오 등에 대한 R&D 지원·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정책을 정비하고 있음
 - 의학·바이오 특허 관련 소득에 특혜세율(17%)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2022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임¹²²⁾
 - R&D 세액공제율은 2020회기¹²³⁾에 ‘법인세율+최대 18.5%’로 반영되었고, 이는 2019년 법안상 계획인 ‘법인세율+최대 13.5%’ 대비 상향 조정된 것임¹²⁴⁾
 - 호주 국세청이 2021년 5월 공개한 ‘무형자산 국제거래 실무이행지침’ 초안에서는 세무상 고위험 거래 사례들을 제시하였으며, 주로 호주에서 개발된 무형자산이 해외로 이전되는 사례들을 다루고 있음¹²⁵⁾

5 프랑스

- ▣ 프랑스는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락다운 관련 정책을 점차 완화하면서도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함
 - ▶ 2020년에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조세정책 및 세정 지원을 실시하였고, ‘경제 활성화 2개년 계획(France Relance)’을 수립하여 추가적인 조세정책 및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함
 - ▶ 2021년 4월부터 일부 지역 여행 허용, 공공장소 모임 제한 완화 등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121) 호주 Federal Register, “Treasury Laws Amendment (Personal Income Tax Plan) Act 2018,”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8A00047>, 검색일자: 2021. 7. 30.

122) 호주 정부, “Budget 2021-22, Budget Paper No.2: Budget Measures”

123) 2021 회기에도 동일하게 유지됨(Taxand, “Overview of international tax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 Future developments,” 2021. 6.)

124) 호주 국회, “JobMaker Plan—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rp/BudgetReview202021/JobMakerResearchDevelopmentTaxIncentive, 검색일자: 2021. 7. 30.

125) 호주 국세청, “Draft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PCG2021/D4, Intangibles Arrangements),”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DPC/PCG2021D4/NAT/ATO/00001>, 검색일자: 2021. 7. 30.

위한 전면적인 조치를 취하였고,¹²⁶⁾ 2021년 신고·납부기한 연장 정책 등을 지속하여 적용하며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발표하여 신규 조세정책을 도입함

〈표 III-8〉 프랑스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분류		2020년	2021년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회복 촉진 및 현금 유동성 강화 정책 - 결손금 소급공제액 즉시 환급 허용 - 기부금 소득공제액 확대 - 임대료 면제액 세액공제 - R&D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에너지 혁신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조세정책 유지 신규 조세정책 도입 - 결손금 소급공제액 한도 일시적 폐지 - 세액공제액 환급 절차 완화 - 경감 법인세율 적용 기업 요건 확대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및 가게 회복 촉진 정책 - 임대료 면제액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세율 조정 허용 - 최저 및 중간소득 근로자의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조세정책 유지 신규 조세정책 도입 -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율 확대 - 전기차 충전소 설치 세액공제
기타	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 - 의료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조정 면제 - 개인위생용품 부가가치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위생용품 부가가치세율 인하 유지 부가가치세 그룹제도 도입
	기업 생산 관련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생산 관련 조세 혜택 - 사업자자산세 과세표준 경감 - 기업부가가치분담세 세율 인하 - 지역경제분담세 한도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조세정책 유지
	세무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관청의 행정행위 관련 기간 연장 - 부과적기간 등 기간 진행 정지 - 과세관청의 조사·통지 등 기간 자동 연장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허용·면제신청 허용 -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면제 신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납부 관련 정책 유지 법인세·소득세 면제 허용
	사회 보장 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분담금 납부기한 연장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분담금 조건부 면제 또는 지원

126) France Gouvernement, “Les modalités et le calendrier des réouvertures,” <https://www.gouvernement.fr/les-modalites-et-le-calendrier-des-reouvertures>, 검색일자: 2021. 8. 25.

가. 법인

- ▣ 2020년에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및 기부금 소득공제, 임대료 면제액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2021년에 락다운이 해제되고 경제활동이 일부 재개되면서 경감 법인세를 적용 확대 및 세액공제 환급 절차 완화 등 추가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함

 - ▶ 기존의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에 공제액의 즉시 환급을 허용하고, 2021년에 공제 가능한 연도를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함
 - 2020년에 5개 연도의 요건¹²⁷⁾을 요구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즉시 환급을 허용함¹²⁸⁾
 - 2021년에 2020회계연도¹²⁹⁾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한 연도를 직전연도에서 직전 3개 연도로 확대하고, 기존의 100만유로¹³⁰⁾ 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함¹³¹⁾
 - ▶ 2020년 무료 급식, 무료 주거 제공 등 특정 활동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액을 기부금의 40%에서 60%로 확대하였고,¹³²⁾ 2021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함
 - ▶ 2020년에 도입한 임대료 면제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에너지 혁신 세액공제는 2021년에도 적용되며, 2021년에 임대료 면제 세액공제 및 에너지혁신 세액공제액 환급 절차를 완화함¹³³⁾
 - 2020년에 부동산을 임대한 기업의 임대료 면제액 세액공제를 허용하였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면제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¹³⁴⁾

127) 결손금 발생 후 5개 연도가 종료되는 때에 결손금을 모두 공제하지 못한 경우 환급 가능함

128) Légifrance, "LOI n° 2020-935 du 30 juillet 2020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0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176557>, 검색일자: 2021. 8. 18.

129)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을 의미함

130) 2021년 8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 6,972만원임

131) Assemblée nationale,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1,"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115b4215_projet-loi, 검색일자: 2021. 8. 2.

132) Légifrance, "Décret n° 2020-1013 du 7 août 2020,"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42220869/>, 검색일자: 2021. 8. 18.

133) Economie.Gouv.fr, "Entreprises: les principales mesures fiscales pour 2021,"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mesures-fiscales-2021>, 검색일자: 2021. 8. 25.

134) Economie.Gouv.fr, "Crédit d'impôt bailleur," <https://www.economie.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report-paiement-loyers>, 검색일자: 2021. 8. 2.; DGFIP, "DJC - COVID19 - Mesures fiscales spécifiques en période

- 2020년에 도입한 R&D 세액공제액 확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비용에 적용되고, 2021년에도 동일함¹³⁵⁾
- 중소기업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혁신 세액공제(적격 비용의 30%)를 받을 수 있음¹³⁶⁾
- 2021년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2020회계연도 임대료 세액공제 및 에너지 혁신 세액공제)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및 환급 신청 시 신속한 처리 등 절차적 요건을 완화함¹³⁷⁾
- ▶ 2019년부터 시작된 기존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도 15%의 경감 법인세율(2021년도 일반 법인세율은 26.5%, 대기업 적용 법인세율은 27.5%)이 적용되는 기업의 연매출 요건을 763만유로¹³⁸⁾에서 1천만유로¹³⁹⁾로 확대함¹⁴⁰⁾
- ▶ 2021년에는 기존의 조세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기업에 대하여 연대기금 및 고정비 지원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확인됨¹⁴¹⁾

나. 개인

- ▣ 2020년에 부동산 임대료 면제액 세액공제 허용, 개인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조정, 최저 및 중간소득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에 소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며, 2021년에 위 혜택은

de crise sanitaire COVID19 - Crédit d'impôt en faveur des bailleurs consentant des abandons de loyers à certaines entreprises locataires,” <https://bofip.impots.gouv.fr/bofip/12619-PGP.html/identifiant%3DBOI-DJC-COVID19-10-10-20210225>, 검색일자: 2021. 8. 24.

135) Légifrance, “LOI n° 2020-1721 du 29 décembre 2020 de finances pour 2021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article_jo/JORFARTI000042753626?r=VZXMMx7Iie, 검색일자: 2021. 8. 25.

136) Economie.Gouv.fr, “Crédit d'impôt pour la rénovation énergétique des TPE/PME,” <https://www.economie.gouv.fr/plan-de-relance/profils/entreprises/credit-impot-renovation-energetique-tpepme>, 검색일자: 2021. 8. 25.

137) Economie.Gouv.fr, “Délais de paiement d'échéances sociales et/ou fiscales(Urssaf, impôts directs),” <https://www.economie.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delais-de-paiement-decheances-sociales-et-ou-fiscales-urssaf>, 검색일자: 2021. 8. 25.

138) 2021년 8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4억 4,867만원임

139) 2021년 8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6억 9,720만원임

140) Légifrance, “LOI n° 2020-172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753580>, 검색일자: 2021. 8. 18.

141)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Covid-19 : Quelles aides pour les entreprises dans les prochains mois?” <https://www.economie.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covid-19-aides-entreprises-prochains-mois>, 검색일자: 2021. 8. 25.

유지되고 추가적으로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율 확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세액공제를 도입함

- ▶ 2020년에 부동산 임대료 면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였고, 임대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면제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¹⁴²⁾
- ▶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납부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원천징수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에 원천징수세율 조정을 허용하였고, 2021년에도 동일함
- ▶ 2020년에 최저 및 중간소득 근로자의 성과급에 대한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일부 면제하고, 2021년에도 동일함¹⁴³⁾
- ▶ 2021년에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율을 66%에서 75%로 확대하고,¹⁴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세액공제를 도입함¹⁴⁵⁾

다. 기타

- ▣ 2020년에 의료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조정 면제, 개인위생용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였으며, 2021년에 부가가치세율 인하 정책은 유지되고 부가가치세 그룹제도를 신규 도입함
- ▶ 2020년에 의료기관 등에 공급한 의료용품은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 조정(재인상)을 하지 않고, 2020년 5월로 종료함¹⁴⁶⁾

142) Economie.Gouv.fr, “Crédit d’impôt bailleur,” <https://www.economie.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report-paiement-loyers>, 검색일자: 2021. 8. 24.

14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1-06호, 2021, pp. 6~7.; Assemblée nationale,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1,”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115b4215_projet-loi, 검색일자: 2021. 8. 2.

1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1-06호, 2021, pp. 6~7.; Assemblée nationale,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1,”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115b4215_projet-loi, 검색일자: 2021. 8. 2.

145) Economie.Gouv.fr, “Particuliers : ce qui change au 1er janvier 2021,”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changements-1er-janvier-2021>, 검색일자: 2021. 8. 25.

146) IBFD, “COVID-19 pandemic: emergency tax measures - no input VAT adjustment for medical products donated to care facilities and public authorities,” 2021. 4. 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04-08_fr_1%23tns_2020-04-08_fr_1, 검색일자: 2021. 8. 24.; Bulletin Officiel des Finances Publiques-Impôts, “RESCRIT - TVA,” <https://bofip.impots.gouv.fr/bofip/12310-PGP.html/identifiant%3DBOIR-RES-000068-20200407>, 검색일자: 2021. 8. 24.

- ▶ 2020년에 마스크 및 방역복, 개인위생용품 및 이러한 물품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에서 5.5%로 인하하였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¹⁴⁷⁾
- ▶ 2021년에 부가가치세 그룹제도를 도입하여 독립된 사업자들이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단일 납세자로 간주함¹⁴⁸⁾
- ▣ 2020년에 기업이 보유하는 산업시설에 대한 사업자산세(CFE)의 과세표준을 감면하고 기업 부가가치분담세(CVAE)의 세율 및 지역경제분담세(CET)의 한도를 인하함¹⁴⁹⁾
 - ▶ 2020년 ‘경제활성화 2개년 계획’에 포함된 조세정책으로, 2021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됨
 - ▶ 2021년에서 2022년까지 400억유로¹⁵⁰⁾의 EU 지원금을 포함하여 1천억유로¹⁵¹⁾가 조달될 예정임¹⁵²⁾
- ▣ 2020년에 직접세 부과제척 기간 및 관세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행정청의 조사, 통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였으며,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였고 2021년에 기한 연장 및 납부를 계속해서 적용하며 나아가 면제 신청도 허용함
 - ▶ 2020년에 직접세 부과제척 기간, 관세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행정청의 조사, 통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으며, 이는 한시적인 것으로 2021년에는 적용되지 않음¹⁵³⁾
 - 「조세절차법」상의 직접세 부과제척 기간¹⁵⁴⁾ 적용과 관련하여 경정처분 기간, 가산세·벌금 부과기간 및 「관세법」상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을 2020년 3월 12일

147) Légifrance, “Arrêté du 7 mai 2020,”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41857299/>, 검색일자: 2021. 8. 25.

148) Légifrance, “LOI n° 2020-1721 du 29 décembre 2020 de finances pour 2021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753580>, 검색일자: 2021. 8. 25.

149) Economie.Gouv.fr, “Baisse des impôts de production,” <https://www.economie.gouv.fr/plan-de-relance/profils/entreprises/baisse-impots-production>, 검색일자: 2021. 8. 2.

150) 2021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4조 7천억원임

151) 2021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6조 7천억원임

152) Economie.Gouv.fr, “Présentation du Plan de relance,” <https://www.economie.gouv.fr/presentation-plan-relance>, 검색일자: 2021. 8. 2.

153) Légifrance, “Ordonnance n° 2020-306 du 25 mars 2020 relative à la prorogation des délais échus pendant la période d’urgence sanitaire et à l’adaptation des procédures pendant cette même période,”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41755644/>, 검색일자: 2021. 8. 2.

154) 프랑스 「조세절차법(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L.168조~L.189조

부터 2020년 8월 23일까지 정지함

-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6월 23일 사이에 기간이 만료되는 행정청의 행정행위 (조사, 통지 등) 기간은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됨
- ▶ 2020년에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였고, 2021년에도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는 유지되고 추가적으로 법인세 면제 신청을 허용함
 - 2020년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 및 중간예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며, 2021년 4월 이러한 조치는 갱신되어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전체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고,¹⁵⁵⁾ 2021년 법인세 면제 요청도 가능함¹⁵⁶⁾
 - 2020년에 영세기업 및 소규모 기업은 코로나19 기간의 법인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COVID-19 계획’을 신청하여 12개월, 24개월 또는 36개월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¹⁵⁷⁾ 2021년에 분할납부제도의 적용을 연장함¹⁵⁸⁾
- ▶ 2020년에 개인 소득세·사회보장분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허용하고, 2021년에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소득세 면제 신청을 허용함¹⁵⁹⁾
 - 2020년에 개인 소득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였고, 2021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¹⁶⁰⁾
 - 2021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납부를 하지 못하였던 경우 납세자는 ‘COVID-19 계획’을 신청하여 최대 3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소득세 면제 신청도 가능함¹⁶¹⁾

155) Economie.Gouv.fr, “Délais de paiement d’échéances sociales et/ou fiscales (Urssaf, impôts directs),” <https://www.economie.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delais-de-paiement-decheances-sociales-et-ou-fiscales-urssaf#exonerationcotisations sociales>, 검색일자: 2021. 8. 24.

156) Economie.Gouv.fr, “Remise d’impôts directs,” <https://www.economie.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remise-dimpots-directs>, 검색일자: 2021. 8. 24.

157) Economie.Gouv.fr, “Mesure de soutien aux TPE et PME: des plans de règlement pour les dettes fiscales,” <https://www.economie.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soutien-tpe-pme-plans-de-reglement-dettes-fiscales#>, 검색일자: 2021. 7. 23.

158) Economie.Gouv.fr, “Plans de règlement des dettes fiscales: prolongement et extension du dispositif,” <https://www.economie.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plans-reglement-dettes-fiscales>, 검색일자: 2021. 8. 24.

159) Economie.Gouv.fr, “Les réponses du Gouvernement aux difficultés rencontrées par les indépendants,” <https://www.economie.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reponses-gouvernement-difficultes-independants>, 검색일자: 2021. 8. 24.

160) Economie.Gouv.fr, “Les réponses du Gouvernement aux difficultés rencontrées par les indépendants,” <https://www.economie.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reponses-gouvernement-difficultes-independants>, 검색일자: 2021. 8. 2.

161) Impots.gouv.fr, “Foire aux Questions - Actions mises en œuvre par la DGFIP,” https://www.impots.gouv.fr/portail/files/media/cabcom/covid19/faq_mesures_aide/20210602-nid_13644_faq_dgfip.pdf, 검색일자: 2021. 8. 2.

- ▶ 2021년 기업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을 조건부 면제 또는 일부 지원함
 - ▶ 2021년도 사회재정법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을 조건부 면제 또는 지급하고,¹⁶²⁾ 직원이 250명 미만인 기업에 대하여 2021년 6월, 7월, 8월의 사회보장분담금을 지원함¹⁶³⁾

6 독일

- ▶ 독일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2021년 2월까지 세 차례의 세제지원법을 제정하여 특별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 인상, 부가가치세를 인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시행하였음
 - ▶ 국회제정법 외에도 연방재부무 고시(BMF-Schreiben)를 통한 세금신고 및 납부 유예, 집행 유예, 특정 조건하에서의 부가가치세 인하 또는 면제 등의 세제지원책을 마련하였음

〈표 III-9〉 독일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분류		2020년	2021년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공급용 금융지원 및 면세된 보조금 지원(비조세) • 결손금 소급공제 상한 5배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정책 연장 또는 확대 • 신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즉시상각 3년 → 1년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면세된 보조금 지원(비조세) • 결손금 소급공제 상한 5배 인상 • 2020, 2021 과세연도에 대한 재택근무 일괄 소득공제 항목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정책 연장 또는 확대
기타	세무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기연장 • 강제집행 유예 • 2019년, 2020년도 예납세액 감면 • 미납지연이자·가산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정책 연장 • 신규: 2019, 2020 과세연도 납세 신고 기한 일괄 연장

162) Légifrance, “LOI n° 2020-1576,”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665307>, 검색일자: 2021. 8. 25.

163) Economie.Gouv.fr, “Délais de paiement d’échéances sociales et/ou fiscales (Urssaf, impôts directs),” <https://www.economie.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delais-de-paiement-decheances-sociales-et-ou-fiscales-urssaf>, 검색일자: 2021. 8. 25.

〈표 III-9〉 의 계속

분류		2020년	2021년
기타	기타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부가가치세율 인하 • 요식업 및 요양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19%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부가가치세율 인하 종료 • 기존 지원책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식업 및 요양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19% → 7% ~ 2022. 12. 31.) • 신규: 코로나 대응 관련 기부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급)면제

자료: 독일연방재무부(BMF), 「코로나 세제지원 안내 및 질의응답 FAQ “Corona”(Steuern)」, 2021. 7. 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teuern/2020-04-01-FAQ_Corona_Steuern_Anlage.pdf?__blob=publicationFile&v=16

가. 법인

- ▼ 독일 연방의회는 2021년 3월 세제지원 확대 및 연장을 위하여 제3차 코로나19 세제 지원법(Drittes Corona-Steuerhilfegesetz)¹⁶⁴을 의결하며 2020년 기존 대비 5배 인상시킨 결손금 공제한도를 추가로 2배 인상하여 1천만유로¹⁶⁵로 변경함
 - ▶ 최종적으로 인상된 결손금 소급공제(Verlustrücktrag) 한도는 한시적으로 2020, 2021 회계연도에만 적용됨¹⁶⁶
 - 2019년,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신고에서 공제 상한 인상을 통한 유동성 증진 효과를 신속하게 발동시키기 위하여 총소득금액의 30%를 2020, 2021년도 예상 결손금(vorläufiger Verlustrücktrag)으로 일괄 공제하는 방침을 둠

164) 독일 「제3차 코로나19세제지원법」, 독일 연방관보(Bundesgesetzblatt),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1-03-17-Drittes-Corona-Steuerhilfegesetz/4-Verkuendetes-Gesetz.pdf?__blob=publicationFile&v=2, 검색일자: 2021. 4. 15.

165) 2021년 7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6억 2천만원임

166) 독일 「소득세법」 제10d조; 제110조; 제111조

〈표 III-10〉 독일의 코로나19 이후의 결손금 공제제도

공제 방법	공제 대상	공제기한	기존 공제한도	2020년	2021년
이월	(개인) 사업소득	무기한	100만유로 + 100만유로 초과 과세소득의 60%	-	-
소급	법인소득 및 법인소득	1년	100만유로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200만유로)	500만유로 (단,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1,000만유로)	1,000만유로 (단,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2,000만유로)

자료: 독일, 「소득세법」, 제10d조; 제110조; 제111조

- 2021년 1월 1일 이후로 구입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데이터 또는 가공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연수를 3년에서 1년으로 즉시상각함¹⁶⁷⁾

나. 개인

- 개인의 결손금 소급공제는 법인과 동일하게 한도를 확대함(〈표 III-10〉 참조)
- 기존의 1천유로로 일괄 공제되는 근로자 소득공제제도(Arbeitnehmer-Pauschbetrag)에 포함되는 재택근무 일괄 소득공제(Homeoffice-Pauschale)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2020, 2021 과세연도에 대하여 근무일당 5유로, 최대 600유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¹⁶⁸⁾

다. 기타

- 독일 연방재무부는 코로나19 지원 관련 법에 근거한 세 차례의 고시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각 분기별 납부연체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납기 연기, 강제집행 유예, 예납세액 감면 세제지원 정책을 연장해왔음¹⁶⁹⁾

167) 독일 연방재무부 고시, Nutzungsdauer von Computerhardware und Software zur Dateneingabe und-verarbeitung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IV C 3 -S 2190/21/10002 :013

168) 독일 연방재무부, 「2020 세법개정안(Jahressteuergesetz 2020)」

169) 독일 「제2차 코로나19세제지원법」, 「제3차 코로나19세제지원법」; 독일 연방국회, 「2019년 귀속 분에 대한

- ▶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의 납부를 신청에 따라 2021년 9월 30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 과세관청에 2021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강제집행 유예신청 건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유예됨
 - ▶ 2019, 2020, 2021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부가가치세 예납액을 별도의 신청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게 함
 - 납세의무자는 2019, 2020 과세연도 총소득금액의 30%를 일괄 감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2020, 2021 과세연도 예상 결손금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 이상의 감면 조정도 가능함
 - 2019 과세연도에 대한 예납세액은 감면신청 2021년 9월 31일까지이고 2021 과세연도에 대한 예납세액 감면신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 농산림업자의 경우 2019 과세연도 감면 신청기한은 2022년 4월 30일까지임
 - ▶ 위의 세 가지 행정업무를 21년 9월 30일 이후의 기간으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 납부하는 조건하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할 수 있음
 -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과세관청이 연기 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코로나19 피해를 확인함에 있어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없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행정업무 연기를 희망하는 자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같이 피해 사실을 관할 과세관청에 철저히 증명해야 함
- ▼ 독일 연방국회와 연방재무부는 2021년도에 세금신고 기한을 일괄 연장하는 법을 입법하고 관련 시행규정을 담은 고시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기간 동안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신고 유예 근거를 마련함¹⁷⁰⁾

세금신고 기간 연장과 무이자 납부 유예에 대한 법(Gesetz zur Verlängerung der Aussetzung der Insolvenzantragspflicht und des Anfechtungsschutzes für pandemiebedingte Stundungen sowie zur Verlängerung der Steuererklärungsfrist in beratenden Fällen und der zinsfreien Karenzzeit für den Veranlagungszeitraum 2019)»; 독일 연방재무부 고시, IV A 3 - S 0336/20/10001 :037_2020,03,19., IV A 3 - S0336/20/10001 :025_2020,12,22., IV A 3 - S 0336/19/10007 :002_2021, 3, 18.

170) 독일 연방국회, 「2019년 귀속 분에 대한 세금신고 기간 연장과 무이자 납부 유예에 대한 법(Gesetz zur Verlängerung der Aussetzung der Insolvenzantragspflicht und des Anfechtungsschutzes für pandemiebedingte Stundungen sowie zur Verlängerung der Steuererklärungsfrist in beratenden Fällen und der zinsfreien Karenzzeit für den Veranlagungszeitraum 2019)»; 독일 연방재무부 고시, IV A 3 - S 0261/20/10001:010, Anwendungsfragen zur Verlängerung der Steuererklärungsfrist und der zinsfreien Karenzzeit durch das Gesetz vom 15. Februar 2021.

- ▶ 2020년에 대한 각종 코로나19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이 복잡하게 얽힘으로써 독일 세무사협회가 정부에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통상 기한인 2021년 2월 28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유예됨
 - 세무전문인¹⁷¹⁾을 통할 때에만 유예된 신고기간을 적용받음
- ▶ 2020년도 귀속분에 대한 신고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로 유예됨
 - 세무전문인을 통할 때에만 유예된 신고기간을 적용받으며 비세무전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신고기한이 2021년 11월 2일까지로 유예됨
- ▣ 독일의 맥주세, 에너지세, 주세, 항공세, 자동차세 징수는 연방재무부가 아닌 관세행정총국(Generalzolldirektion)이 관할하지만 연방재무부의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한 세제대응 - 2021.03.18.고시”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담당 세목의 납기를 2021년 9월 30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확정된 예납세액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
- ▣ 「제3차 코로나19 세제지원법」에 따라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요식업과 돌봄 서비스업종(Restaurant und Verpflegungsdienst - leistungen)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에 기존 19%에서 5% 인하했었던 부가가치세율을 7%로 상향 조정하고, 조정된 부가가치세율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 단, 요식업체에서 판매되는 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인하 대상에 속하지 않음
 - ▶ 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정상화될 예정임
 - ▶ 2020년 7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던 모든 부가가치세 부과 항목에 대한 기존 19%에서 16%로의 세율 인하 정책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됨
-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소매업체(Einzelhändler)가 비영리기관에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기부한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¹⁷²⁾

171) 세무사, 회계사의 법정 세무전문인이 있으며, 비세무전문인이라도 세무대리인이 될 수 있음

172) 독일 연방재무부 고시, III C 2 - S 7109/19/10002 :001, Keine Umsatzbesteuerung von Sachspenden von Einzelhändlern an steuerbegünstigte Organisationen vom 1. März 2020 bis zum 31. Dezember 2021.

- ▶ 합리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현대화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대두되었던 「담배세법」, 원천징수세 감면 절차 관련 법, 「법인세법」, 「부동산세법」, 「부동산취득세법」의 현대화 개정법을 제정하고 적용하였음
- ▶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재정지출을 상쇄하기 위한 증세의 움직임으로 개정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 개정 대상 세법이 국제화나 디지털화가 심화된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에 그침
- ▶ 다만, 「담배세법」 현대화 개정안에는 2022~2027년까지의 전자담배에 대한 신규 과세와 기존 담배세 인상, 그에 따른 약 145억유로¹⁷³⁾의 추가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음

7 일본

- ▶ 일본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납세유예 특례, 결손금 소급 환급 특례, 재택근무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시행하였음
- ▶ 이러한 지원책 중 대부분은 2020년 2월~ 2021년 1월 또는 2월에 발생한 소득 및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며, 추가적인 연장 발표는 없음

〈표 III-11〉 일본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분류	2020년	2021년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에 의한 법인 부담 완화 - 납세유예제도 특례 - 결손금 소급에 의한 환급 특례 - 재택근무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연장 발표 부재 및 기존 조세정책 유지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의 문화·사회적 피해 경감 - 중지된 문화 예술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 환급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기부금 공제 적용 - 주택 용자 공제의 적용 요건 탄력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의 과세 선택의 변경에 관한 특례 • 특별 용자에 관한 계약서의 인지세 비교세 	

자료: 본문 내용을 표로 정리

173) 2021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조 4020억원임

〈표 III-12〉 일본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책 대상 소득, 비용 및 만료기한

정책	기한 또는 대상
납세유예제도 특례	2020년 2월 1일~2021년 2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의 세목(인지세 등 일부 제외)
결손금 소급에 의한 환급 특례	2020년 2월 1일~ 2022년 1월 31일 사이에 완료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재택근무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세제	2017년 4월 1일~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한 설비 ¹⁷⁴⁾
문화 예술·스포츠 이벤트를 중지 등을 한 주최자에 대한 환불 청구권을 포기한 관객 등에게 기부금 공제 적용	2020년 2월 1일~2021년 1월 31일까지 중지, 취소된 문화 예술·스포츠 이벤트의 환불하지 아니한 금액
주택 용자 공제의 적용 요건의 탄력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가 지연된 주택
소비세 과세 사업자 선택 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2020년 4월 30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기간 대상
특별 용자에 따른 소비 대차 계약서의 인지세 비과세	2022년 3월 31일까지의 해당 인지세

자료: 본문 내용을 표로 정리

가. 법인

- ▼ 일본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2020년 코로나19에 의한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 유예제도와 결손금 소급 환급 특례, 재택근무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세제를 신설하였는데, 결손금 소급에 의한 환급특례를 제외한 세제는 2021년 3월 이전까지 유효함
 - ▶ 납세 유예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영향을 받은 사업자의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를 대상으로 무담보, 가산세 없이 1년간 납세를 유예함¹⁷⁵⁾

174) 일본 국세청, “No.5434 中小企業経営強化税制(中小企業者等が特定経営力向上設備等を取得した場合の特例償却又は税額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434.htm>, 검색일자: 2021. 7. 28.

175) 일본 국세청,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により納税が困難な方へ,” https://www.nta.go.jp/taxes/nozei/nofu_konnan.htm, 검색일자: 2021. 7. 28.

- 이미 체납된 세금의 경우 기존 8.8%의 가산세를 2021년의 기간에 한하여 1.0%로 경감함
- ▶ 재택근무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세제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 경영 강화 세제의 대상을 재택근무 등을 위한 설비투자까지 확대한 것임
- 중소기업 경영 강화 세제의 대상 설비는 생산성 향상 시설과 수익성 강화 시설의 2개의 유형이 대상이었으나 디지털화 설비를 추가함
- ▣ 일본 정부는 결손금 소급에 의한 환급 특례를 2022년 1월 31일까지 완료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해당 특례를 유지 중임
- ▶ 특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에만 허용하던 결손금 소급공제를 자본금 10억엔¹⁷⁶⁾ 이하의 법인으로 확대한 것임¹⁷⁷⁾
- ▶ 이러한 공제는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 사이 완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소급공제를 허용함
- 단, 대규모 법인(자본금이 10억엔을 초과하는 법인)의 100% 자회사 또는 기업 그룹의 여러 대기업에 의해 발행 주식 또는 출자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일반 법인, 그리고 투자 법인, 특정 목적 회사는 해당 소급공제가 배제됨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지원의 소급공제 확대의 경우 일반 소급공제와 마찬가지로 청색신고서에 의한 확정신고를 통해 적용됨

나. 개인

- ▣ 일본은 개인의 소득세와 관련하여 코로나19에 의한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문화 관련 이벤트 취소 시 환불 청구권을 포기한 관객 등에 대한 기부금 공제, 주택 용자공제의 적용 요건 탄력화를 신설하였는데, 주택용자공제를 제외한 세제는 2021년 1월까지의 사례에 대해서만 유효함

176) 2021년 7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4억 8천만원임

177) 일본 국세청, “欠損金の繰戻しによる還付,”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763.htm>, 검색일자: 2021. 7. 29.

자에 대하여 실시한 특정 금전 대부에 따른 소비 대차 계약서 중 2022년 3월 31일까지 작성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됨¹⁸⁰⁾

- ▶ 비과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소비 대차 계약은 공적 대출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다른 금전의 대부 조건에 비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의 금전의 대부 시 생성되는 소비 대차 계약서를 의미함

▾ 일본은 증세에 대한 언급은 일부 확인되나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논의가 확인되지는 않음

- ▶ 2013년부터 25년간 소득세에 2.1%가 가산되는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 소득세를 시작으로 2019년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는 등 지속적인 증세를 실시해 왔음
- ▶ 또한 코로나19 재난의 전망 또한 쉽지 않아 증세 논의가 어렵다는 발언도 있음¹⁸¹⁾

8 중국

▾ 중국 재무부 및 국세청은 2020년 2월 후베이성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조세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함¹⁸²⁾

- ▶ 지속되는 코로나19로 2021년 3월 제13차 중국인민정치협상 4차 회의에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조세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발표함¹⁸³⁾
- ▶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회복촉진 강화 및 특정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도 발표함

- <표 III-13>에 중국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을 비교함

180) 일본 국세청, “特別貸付けに係る契約書の印紙税の非課税について,”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kansensho/keizaitaisaku/inshi/index.htm>, 검색일자: 2021. 7. 29.

181) 산케이비즈, “欧米かいらむ人気がない政策「法人税引き上げ」コロナで減税競争一転” <https://www.sankeibiz.jp/business/news/210509/bsm2105090745001-n1.htm> 검색일자: 2021. 7. 28.

18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반기보고서), 2020년 제1호, 2020, pp. 36~38.

183) China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0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ON THE 2021 DRAFT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ourth Session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2021. 3. 5., pp. 1~5.

〈표 III-13〉 중국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분류	2020년	2021년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 적격업종의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 코로나19 관련 적격비용 즉시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조세정책 유지 및 한시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의 세제지원 도입으로 정책 강화 특정 산업 고도화를 위한 조세정책으로 법인세 면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 도입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완화정책 -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하여 근무하는 의료진이 받은 수당은 개인소득세 면제 - 적격 기부금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조세정책 유지 	
기타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회복 촉진 및 코로나19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완화정책 병행 -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관련 적격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후베이성 지역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조세정책 유지 및 경감된 부가가치세율 적용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율 매출액 기준 확대 등의 세제지원 도입으로 기업 회복 촉진 정책 강화
	세무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첫 번째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음 - 세금 납부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 2021년도 신고납부기한에 재납부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상반기까지 유효하나, 추가 연장을 위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음
	기타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호물품의 수입은 관세, 소비세를 면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조세정책 유지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반기보고서), 2020년 제1호, 2020, p. 38.

가. 법인

2020년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적격업종의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¹⁸⁴⁾ 적격 비용 즉시상각¹⁸⁵⁾ 등의 세제지원을 도입함

184)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은 운송업, 케이터링, 숙박업, 관광업 등의 업종은 202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기존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으며, 신기술산업 관련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결손이 크게 난 경우 해당 결손금을 최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함(IBFD, “China COVID-19 relief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cn_s_1.&refresh=1629260849984%23cta_cn_s_1.1., 검색일자: 2021. 8. 15.)

185)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물품 등의 공급을 위한 기계설비에 지출된 비용은 100% 즉시상각 가능함(상동)

- ▶ 2021년에도 법인 관련 기존 조세정책을 유지하면서 영세기업¹⁸⁶⁾ 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의 세제지원 도입으로 기업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함¹⁸⁷⁾
- ▶ 연간 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영세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했는데, 과세 대상 표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¹⁸⁸⁾ 미만인 영세기업의 실효세율은 2.5%, 100만원 이상 300만원¹⁸⁹⁾ 미만인 영세기업의 실효세율은 10%임 - 이외의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기존 25%로 유지함
-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외에도 특정 산업 고도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면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2021년에 도입함¹⁹⁰⁾
- ▶ 신기술 관련 공공 인프라 구축, 환경보호,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등과 관련된 기업의 고도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10%p 인하함
-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관련 제조업체는 최대 10년간 법인세 면제가 가능함¹⁹¹⁾
- ▶ 신기술·신제품·신공예 등을 개발할 때 발생한 적격 연구개발비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전액 소득공제도 가능함

186) 영세기업이란, 중국 내 기업들 중 연간 과세소득 300만원 미만, 직원 수 300명 미만, 총 자산가치 5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말함(상동)

18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1-03호, 2021, “중국 -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년)계획 초안 발표,”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1654Zv9_0&rs=/viewer/result/kiTrend/202104///, 검색일자: 2021. 8.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1-04호, 2021, “중국 -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년)계획 세부지침 발표,”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1850Je5_0&rs=/viewer/result/kiTrend/202105///, 검색일자: 2021. 8. 2.

188) 2021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800만원임

189) 2021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3,400만원임

19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1-03호, 2021, “중국 -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년)계획 초안 발표,”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1654Zv9_0&rs=/viewer/result/kiTrend/202104///, 검색일자: 2021. 8.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1-04호, 2021, “중국 -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년)계획 세부지침 발표,”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1850Je5_0&rs=/viewer/result/kiTrend/202105///, 검색일자: 2021. 8. 2.

19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1-01호, 2021, “중국 -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개정안 발표,”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1279Mi8_0&rs=/viewer/result/kiTrend/202102///, 검색일자: 2021. 8. 2.

나. 개인

- ▾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함
 - ▶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하여 근무하는 의료진이 받은 수당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함
 - ▶ 개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개인소득세에서 전액 소득공제함
 - ▶ 2021년에도 개인 관련 기존 조세정책은 유지하나, 정책 강화를 위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음¹⁹²⁾

다. 기타

- ▾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와 관련해서 기업 회복촉진 및 코로나19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완화 조세정책을 병행해서 실시함
 - ▶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0년에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관련 적격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¹⁹³⁾
 - 또한, 후베이성 지역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3%에서 1%로 2%p 인하함
 - ▶ 2021년에는 기존 조세정책을 유지하면서, 경감된 부가가치세율 적용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월 매출액 기준 확대 등의 세제지원 도입으로 기업 회복 촉진 조세정책을 강화함
 - 2020년에 후베이성 지역에만 적용되던 경감된 부가가치세율(1%)을 2021년에는 소규모 납세자(Small-Scale Taxpayer)¹⁹⁴⁾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함
 - 그리고,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월매출액 한도를 10만위안¹⁹⁵⁾ 이하에서

192) IBFD, "China(People's Rep.)-Individual Tax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cn, 검색일자: 2021. 8. 15.

193) IBFD, "China (People's Rep.)-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3. Value Added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cn_s_013.html, 검색일자: 2021. 8. 15.

194) 중국 중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로 구분되는데, 연간 매출액 규모가 500만위안 이하(월 매출액 약 41만 6천위안 이하)일 경우 소규모 납세자로 분류함(상동)

195) 2021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80만원임

15만위안¹⁹⁶⁾ 이하로 한시적으로 인상함¹⁹⁷⁾

- ▶ 세무행정의 경우 2020년에 실시한 코로나19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완화 조세정책이 2021년 상반기까지 유효하나, 정책 강화를 위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음
 - ▶ 기타 조세의 경우는 기존 조세정책을 유지하나, 정책 강화를 위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음
- ▼ 중국의 경우 기업 회복 촉진 및 코로나19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완화로 자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유지 및 강화 중이나, 증세·환경세 인상 등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대응을 위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음¹⁹⁸⁾

9 스웨덴

- ▼ 스웨덴은 2020년 보조금 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등 간접적인 조세지원 정책을 운영 하였으며, 2021년에는 투자세액공제 도입 및 소득공제 확대 등 직접적인 조세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력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 ▶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통해 각종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등 조세정책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2020년 4월 예산안을 통해 사회보장부담금의 경감 등을 시행함
 - ▶ 2020년 9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조세 혜택이 포함된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세제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음

196) 2021년 8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69만원임

19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1-03호, 2021, “중국 -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년)계획 초안 발표,”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1654Zv9_0&rs=/viewer/result/kiTrend/202104///, 검색일자: 2021. 8. 2.

198) China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0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ON THE 2021 DRAFT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ourth Session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2021. 3. 5., pp. 5~7.

〈표 III-14〉 스웨덴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분류		2020년	2021년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주력 임대료 리베이트 기업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지원정책 연장 및 별도 지원정책 도입 임대료 리베이트: 연장 기업 전환 지원: 연장 신규: 투자세액공제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력 완화정책 준비금 예치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지원정책 만료 및 별도 지원정책 도입 준비금 예치 한도 기존대로 축소 (100% → 30%) 신규: 소득공제 확대
기타	국제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력 완화정책 덴마크 관할권 통근자의 비과세 요건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지원정책 유지 및 별도 지원정책 도입 덴마크 관할권 통근자의 비과세 요건 기준 완화: 유지 신규: 국외 거주자 특별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 해외 주재원 면세 자격 요건 완화
	기타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부담금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지원정책 확대 경감 대상 및 경감금액 확대
	세무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기연장 및 납부유예제도 도입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유예 	확인 가능한 별도 지원 대책 없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반기보고서), 2020년 제1호, 2020, p. 31을 참조하여 작성

가. 법인

▣ 2020년에는 기업 관련 보조금 정책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1년에는 직접적인 세계 관련 법안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피해산업에 대한 임대료 리베이트 제도(hyresrabatt)가 2020년에 도입되었으며, 2021년 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음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소비재, 호텔, 요식업과 같은 기업에 대한 임대료 리베이트(hyresrabatt) 제도를 도입하여, 리베이트 금액의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20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음¹⁹⁹⁾

19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반기보고서), 2020년 제1호, 2020, p. 31.

- 2021년 1분기까지 연장되어 시행되었으며, 2021년 6월에 임대료 리베이트 제도를 3분기까지 연장하는 제안이 포함된 추가 수정예산안을 결정하여, 9월 30일까지 시행될 계획임²⁰⁰⁾
- ▶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전환지원(omställningsstöd)을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도 연장 운영되고 있음
- ▶ 2021년에는 기업의 회복 촉진 등을 위해,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추가로 도입되었음²⁰¹⁾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기계장치 등 적격 감가상각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임²⁰²⁾

나. 개인

- ▣ 소득세와 관련하여 2020년에 확대되었던 준비금 예치 한도가 2021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다시 축소되었으며, 소득공제와 관련된 세제지원 정책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 2020년에 준비금 예치 한도액을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나, 2021년 이를 다시 축소함
 - 개인사업자 및 법인 파트너의 경우 100만크로나²⁰³⁾를 한도로 2019년 과세소득 전액을 장래 발생할 결손금에 대비하여 준비금으로 예치 가능하였음
 - 2021년에는 해당 제도가 일몰되어, 관련 세제혜택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며 기존의 준비금 제도와 동일하게 30%만 예치 가능함²⁰⁴⁾

200) 유럽연합, "State aid: Commission approves €453 million Swedish rent rebate scheme to support sectors affected by coronavirus outbreak,"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663, 검색일자: 2021. 8. 17.; 스웨덴 정부, "Förlängningar av hyresstödet anmält till EU-kommissionen,"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1/06/forlangningar-av-hyresstodet-anmalt-till-eu-kommissionen/>, 검색일자: 2021. 8. 17.

201) IBFD, "Government Provides Targeted Stimulus in Budget for 2021," 2020. 9.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9-22_se_1.html, 검색일자: 2021. 7. 30.

202) IBFD, "Government Proposes Employment Incentives, Risk Tax on Banks, Changes to Interest Deduction Rules," 2020. 9.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9-18_se_1.html, 검색일자: 2021. 6. 22.; 스웨덴정부, "Sänkt skatt för företag som investerar i inventarier i år,"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1/06/sankt-skatt-for-foretag-som-investerar-i-inventarier-i-ar/>, 검색일자: 2021. 6. 22.

203) 2021년 8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396만원임

- ▶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와 관련된 세제지원 정책이 추가로 도입되었음²⁰⁵⁾
 -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 간 차이를 없애기 위해 65세 이상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 소득공제액을 인상함²⁰⁶⁾
 - 2020년 기준으로 소득금액에 따라 2만 4,100²⁰⁷⁾~9만 9,100SEK²⁰⁸⁾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21년에는 1만 4천²⁰⁹⁾~11만 600SEK²¹⁰⁾로 최대 기본공제수당(grundavdrag)을 인상함
 -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특정 가사서비스에 세탁을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21년 4월에는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개인의 수리작업 및 자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컴퓨터와 관련된 상품 등의 수리작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개인 자산의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적용함

다. 기타

- ▣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2020년 덴마크 관할권 통근자의 비과세 요건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2021년도 동일하게 운영 중이며 새로운 세제지원 정책이 추가로 도입되었음
- ▶ 덴마크와 스웨덴은 조세조약을 통하여 코로나19로 통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근자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 2021년에는 국외 거주자에 대한 특별 세금 감면 적용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추가 도입하였음²¹¹⁾

204) 스웨덴국세청, "Periodiseringsfond," <https://www.skatteverket.se/foretag/drivaforetag/foretagsformer/enskildnaring/sverksamhet/periodiseringsfond.4.361dc8c15312eff6fd2b8f2.html>, 검색일자: 2021. 8. 17.

205) IBFD, "Government Provides Targeted Stimulus in Budget for 2021," 2020. 9.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9-22_se_1.html, 검색일자: 2021. 7. 30.

2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09호, 2021, "스웨덴 - 2021년도 예산안 발표"

207)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3만원임

208)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30만원임

209)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8만원임

210)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85만원임

211) IBFD, "Government Provides Targeted Stimulus in Budget for 2021," 2020. 9.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9-22_se_1.html, 검색일자: 2021. 7. 30.

- 적격 요건을 갖춘 외국 핵심 인력에게 적용되는 특별 세금 감면 혜택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채택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020년 5월 31일 이후 스웨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여 과세 대상 소득의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해외 주재원 면세 자격 요건의 판단 기준인 고용 및 체류 기간의 산정에 있어, 코로나19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해외 체류가 중단된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사회보장부담금의 경우, 기존의 정책에서 감면 대상 및 감면금액을 확대하기로 결정함

- ▶ 2021년 7월 1일부터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에 대한 특별 감면이 실시되어, 고용주는 월 최대 23만SEK²¹²⁾ 한도 내에서 10%의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²¹³⁾
-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부담금 부과액을 기존 31.42%에서 19.76%로 11.66%p 인하하였으나, 2021년 5월 예산안을 추가 수정하여 19세에서 23세 사이의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 인하 법안을 일시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함²¹⁴⁾
- ▶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사회보장부담금의 경우 10.21%의 노령임금만 부과하여 고용 및 산업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코로나19 이외의 조세정책을 살펴보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와 관련된 개정 사항이 존재함

- ▶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의 이자공제 제한 규정에 대한 조정안(på justerande bestämmelser avseende avdrag för koncernbidragsspärrade underskott och negativt räntenetto)이 제출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²¹⁵⁾
- 그룹 내 결손금 및 음의 이자수익에 대한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전년도 적자가 발

212)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78만원임

213) Sweden - Corporate Taxation sec. 4.2., Country Tax Guides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se_s_4.&refresh=1633571816130%23cta_se_s_4(accessed 30 July 2021).

214) 스웨덴정부,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proposition/2021/05/prop.-202021202/>, 검색일자: 2021. 6. 22.

215) Deloitte, "Förslag på justerande bestämmelser avseende avdrag för koncernbidragsspärrade underskott och negativt räntenetto," <https://www2.deloitte.com/se/sv/pages/tax/articles/Promemoria-justerande-bestammelser-avseende-avdrag-for-koncernbidragssparrade-underskott-och-avdrag-for-negativt-rantenetto.html>, 검색일자: 2021. 7. 30.

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룹기여제도 내 공제한도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스웨덴 재무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EBITDA의 30%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음
-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통신과 관련된 휴대전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VAT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 12월 9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되었음
 -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며, VoIP의 경우 법안 도입으로 인해 관련 회사에 과도한 행정적 업무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적용 대상은 10만크로나²¹⁶⁾를 초과하는 휴대전화, 직접회로장치, 게임 콘솔, 태블릿 PC, 노트북임
 - 해당 법안은 B2B 거래를 그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안 도입을 통해 탈세 및 경쟁 왜곡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VAT 탈세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0 핀란드

- ▣ 핀란드는 2020년 체납세금 가산금을 인하, 코로나19 관련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 등의 조세지원을 실시하였고, 2021년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주정부에 대한 근로소득세율을 인상할 계획임
- ▶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관련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가산세율 인하,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납부 조정 신청 허용,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등의 정책을 도입함
- ▶ 2021년 4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에 따른 부채 증가율 반전을 목표로 2022-2025 재정계획(2022~2025 julkisen talouden suunnitelmasta)을 결정하였으며, 다양한 정책 이행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계획임²¹⁷⁾

216)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42만원임

217) 핀란드 국가평의회청, “Hallitus päätti vaalikauden lopun linjauksista ja vuosien 2022 - 2025 julkisen talouden

- 재정 부담에도 추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 중에 있음
- 코로나19 지원과 관련된 법인세 인상 계획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3년까지 디젤에 대한 세금 보조금을 폐지할 예정으로 약 8,700만 유로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으며, 담배세를 인상하는 등의 계획이 존재함

〈표 III-15〉 핀란드의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 비교

분류	2020년	2021년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세금에 대한 연체 이자 인하 • 가속상각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세정책 유지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된 세금에 대한 연체 이자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원정책 유지 및 별도 지원정책 도입, 증세계획 발표 - 신규: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 증세계획: 주정부에 대한 근로소득세율 인상 	
기타	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완화 정책 - 코로나19 관련 물품 등의 부가가치세율 인하(0의 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세정책 유지 - 2021년 말까지 연장
	기타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 가능한 별도 지원 대책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사업장에 대한 지침 발표
	세무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세정책 유지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반기보고서), 2020년 제1호, 2020, p. 36을 참조하여 작성

가. 법인

- ▣ 2020년에 체납된 세금에 대한 연체이자 인하 및 가속상각제도 도입 등의 조세정책을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 ▶ 2020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기존 7%에서

suunnitelmasta,” <https://valtioneuvosto.fi/-/10616/hallitus-paatti-vaalikauden-lopun-linjauksista-ja-vuosien-2022-2025-julkisen-talouden-suunnitelmasta>, 검색일자: 2021. 6. 23.

2.5%로 인하하였으며, 2021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화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됨^{218), 219)}

- ▶ 2020년부터 신규 취득 기계장치 등의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4월 추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함
- 적격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25%에서 2배 증가한 50%의 연간 감가상각률을 적용받음²²⁰⁾

나. 개인

- ▣ 소득세와 관련하여 기존 조세정책 유지 및 새로운 세제지원책이 추가되었으며, 2023년부터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증세 계획이 존재함
- ▶ 연체 이자와 관련하여 법인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 2020년부터 2.5%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 2021년부터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고용주에게 제공받은 출퇴근용 자전거 관련 유지비용이 포함되어 연간 최대 1,200EUR²²¹⁾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²²²⁾
- ▶ 복지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지출 구조를 변화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주정부로 이전함으로써 2023년 이후에는 주 예산 지출 수준을 크게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정부로 귀속되는 핀란드 개인의 근로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될 예정임
- 다만, 지방자치세의 경우 2023년부터 2022년보다 13.26% 인화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는 크지 않음

218) IBFD, "Government Provides Targeted Stimulus in Budget for 2021," 2020. 9.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9-22_se_1.html, 검색일자: 2021. 7. 30.

219) IBFD, "COVID-19 Pandemic: Tax Authorities Reduce Temporarily Late Payment Interest for Repayment Arrangements," 2021. 4.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4-15_fi_1, 검색일자: 2021. 7. 30.

220) Finland - Corporate Taxation sec. 1.7.1.,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30 July 2021).

221) 2021년 7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5만원임

222) Finland - Individual Taxation sec. 1.3.1.,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2 August 2021).

〈표 III-16〉 핀란드의 근로소득세

(단위: %, EUR)

2021. 1. 1.~2022. 12. 31.		2023. 1. 1.~	
과세구간	소득세	과세구간	소득세
18,600 이하	0	18,100 이하	과세표준 × 13.26%
18,600~27,900	8EUR + 18,600EUR 초과 금액의 6%	18,100~27,200	2,400.06EUR + 18,100EUR 초과 금액의 19%
27,900~45,900	566EUR + 27,900EUR 초과 금액의 17.25%	27,200~44,800	4,129.06EUR + 27,200EUR 초과 금액의 30.75%
45,900~80,500	3,671EUR + 45,900EUR 초과 금액의 21.25%	44,800~78,500	9,541.06EUR + 44,800EUR 초과 금액의 34.50%
80,500 초과	11,023.5EUR + 80,500EUR 초과 금액의 31.25%	78,500 초과	21,167.56EUR + 78,500EUR 초과 금액의 44.50%

자료: IBFD, "President Ratifies Welfare Reform Including Tax Amendments for 2023," 2021. 7. 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7-02_fi_1, 검색일자: 2021. 8. 2.

다. 기타

- ▣ 소비세의 경우, 코로나19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부가가치세 인하정책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함

 - ▶ 2020년 6월 코로나19 검사,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급되는 적격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0%)이 적용되었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됨
- ▣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핀란드 세무당국은 2021년 4월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고정사업장 (PE)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음²²³⁾

 - ▶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의 변화가 고정사업장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힘
 -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하여 건설 현장 근로자의 핀란드 입국 금지 등의 상황이

223) IBFD, "COVID-19 Pandemic: Tax Administration Opines on PEs in Finland," 2021. 4.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20_fi_1.html, 검색일자: 2021. 7. 30.

발생하여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고정사업장 판단 작업기간에 중단된 작업기간은 산입되지 않아야 함

- ▣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2020년에 국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 것과 같은 취지로 회계 연도가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 사이에 종료된 회사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함
- ▶ 기존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납부가 완료되어야 했으나, 1개월 더 연장하여 5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완료되어야 함²²⁴⁾

224) Finland - Corporate Taxation sec. 1,8,2.,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30 July 2021).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북미

1 미국

가. 수동적 국외투자법인(PFIC) 관련 최종 규정 발표

[조세동향 21-01호]

- ▶ 미국 IRS와 재무부는 2021년 1월 15일 수동적 국외투자법인(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이하 PFIC)과 관련한 최종 규정 TD 9936을 발표함²²⁵⁾
- ▶ 내국세법의 PFIC 규칙은 미국 거주자가 외국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동적 소득²²⁶⁾을 창출하는 상황에 대해 다루며, 본 규정을 통해 PFIC 기준이 되는 소득 대상을 확정함
 - ▶ 외국법인의 과세연도 총소득의 최소 75%가 수동적 소득(이자, 배당금 등)이거나 과세연도 중 수동적 소득을 생산하는 자산이 최소 50% 이상인 경우 PFIC로 간주하고 있음²²⁷⁾
 - ▶ PFIC 목적상 수동적 소득은 내국세법 Section 1297(b)(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최종 규정을 통해 이를 1986년 이전의 Section 954(c)에 따른 외국인 개인 지주 회사 소득(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FPHCI)과 같은 종류의 소득으로 한정함
 - 종전에는 시점의 설정 없이 Section 954(c)를 참조하여 해당 조항의 개정에 따라 수동적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새롭게 포함된 항목이 존재함
 - 참조시점을 Section 1297이 발효된 1986년 이전으로 제한함으로써 이후 개정으로 포함된 개인 서비스 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제외되고, 제외되었던 부동산 임대료 및 로열티는 다시 포함됨²²⁸⁾

225) IBFD, "United States - Treasury Publishes Final Regulations on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1-01-15_us_10, 검색일자: 2021. 1. 18.

226) 이자, 배당 소득 및 이와 유사한 유형의 소득

227) IRC Section 1297(a)

228) Federal Register, "Guidance on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https://www.federalregister.gov/>

- ▶ 직원 유지 크레딧의 지원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됨
- ▶ 직원 유지 크레딧 적용 대상 및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됨
 -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율을 기존 50%에서 20%로 완화함
 - 직원당 공제 가능한 적격 임금의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인상함
 - 직원당 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만달러²³²⁾에서 분기별 1만달러로 인상함
 - 따라서 당해연도에 공제 가능한 최대 ERC 금액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총 1만 4천 달러임²³³⁾, ²³⁴⁾

▾ **각 경제 소득에 관한 세무처리 규정을 발표함²³⁵⁾**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고용형태(Gig Economy)가 확산되면서, 과세체계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각 경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소득세·사회보장세·추가 메디케어세를 납부해야 함
 - 근로계약이 체결된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에서 별도로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임시직(Gig Worker)의 경우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함²³⁶⁾
 -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됨
 - 독립계약자의 경우, 홈오피스 공제(Home Office Deduction)를 통해 사업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31) IBFD, "COVID-19 Pandemic: IRS Provides Guidance on Newly-Extended Employee Retention Credit," 2021. 1.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1-27_us_1.html, 검색일자: 2021. 2. 15.

232) 2021년 2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110만원임

233) 2021년 2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550만원임

234) IRS, "New law extends COVID tax credit for employers who keep workers on payroll," <https://www.irs.gov/newsroom/new-law-extends-covid-tax-credit-for-employers-who-keep-workers-on-payroll>, 검색일자: 2021. 2. 25.

235) IBFD, "IRS Reminds Taxpayers to Report Gig Economy Income on Tax Returns," 2021. 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19_us_2.html, 검색일자: 2021. 2. 22.

236) IRS, "Manage Taxes for Your Gig Work,"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manage-taxes-for-your-gig-work>, 검색일자: 2021. 3. 5.

다. 민간 위탁 개인세무추심 프로그램 관련 보고자료 발표

[조세동향 21-03호]

- ▾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 Research Service: CRS)은 2021년 2월 24일 국세청(이하 IRS)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개인세무채무추심 프로그램(The Internal Revenue Service's Private Tax Debt Collection Program)과 관련한 보고자료를 발표함²³⁷⁾

 - ▶ IRS는 현재 개인소득세 채무와 관련하여 징수에 필요한 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채무추심기관(이하 PCA)에 특정 체납자에 대한 추징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 본 자료는 지금까지 세 차례(1996~1997년, 2006~2009년, 2016~현재)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민간 위탁 세무추심 프로그램의 운영방식과 성과 및 손실에 대해 작성함

- ▾ 첫 번째 시도는 1996~1997년 '외부 위탁 징수 프로젝트(Contracting Out Collection Agencies Project)'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미흡한 성과와 클린턴 행정부의 반대로 도입 1년 만에 종료함

 - ▶ 이 프로젝트는 1996년 「재무부, 우편 서비스 및 일반정부 세출법(Treasury, Postal Service, and General Government Appropriations Act of 1996)」에 근거하여 자금이 지원됨
 - ▶ 1997년 1월까지 수행된 프로그램의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의 평가 결과, PCA에 지불한 수수료, 프로젝트의 기회비용, 설계 및 시작·관리 비용 등 프로젝트에 투입된 총비용은 2,110만달러²³⁸⁾인 데 반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5개 PCA가 징수한 체납 세금은 310만달러²³⁹⁾에 불과하였음

- ▾ 2006년에 보다 정비된 형태의 민간 위탁 체납 세금 징수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나 3년간 유지 후 2009년 종료됨

 - ▶ 2006년에는 2004년 「미국 일자리 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에 근거하여 추가된 내국세법 Section 6306 조항에 따라 IRS가 자원 부족으로 추징하지 못한

237) CRS Reports, "The Internal Revenue Service's Private Tax Debt Collection Program," 2021. 2. 24.,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0339>, 검색일자: 2020. 3. 22.

238)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8억 9,153만원임

239)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억 1,013만원임

체납 개인 소득세 부채추심과 관련하여 적격 PCA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

- ▶ 이를 통해 징수된 세금은 회전기금(revolving fund)으로 불입되었으며, 이 중 최대 25%를 PCA에 서비스 수수료로 지급하고 25%를 집행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함

▣ 2009년 당시 IRS 청장이었던 Doug Shulman은 IRS가 민간 징수기관보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프로그램 종료 이유를 밝힘

- ▶ 민간 위탁 세무채무추심에 발생한 총비용이 징수를 완료한 체납금액을 초과하였음
 - 2004년 1분기와 2009년 1분기 사이에 IRS가 민간 위탁 징수 프로그램을 설계·구현 및 관리하는 데 소요한 비용은 총 8,290만달러²⁴⁰⁾로, PCA가 징수한 8,250만달러²⁴¹⁾를 초과함
- ▶ 2009년 IRS가 외부 검토인과 함께 실시한 분석에서 동일 체납 사례를 처리하는 데 IRS가 PCA보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 재정적으로 곤란한 납세자들에 대한 체납 징수와 관련하여 PCA는 IRS만큼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음
 - PCA와 달리 IRS는 체납 세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들과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타협 제안을 연장하는 등 유연한 대처방안들을 활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실패를 바탕으로 「미국 지상교통 개선법(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이하 FAST Act)」 Section 32102 조항을 통해, 2016년부터 변경된 민간 위탁 개인 세무채무추심 프로그램이 재시행됨

- ▶ 본 법은 IRS가 법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미납 비활성 세액(inactive tax receivables)에 대해 PCA와 적격 위탁 추심 계약을 체결하게 함
 - PCA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추심액의 최대 25%를 수수료로 지급받음
- ▶ 위탁 징수 대상 체납 채권은 ① IRS에 징수할 자원이 없거나, 체납자를 찾지 못해 현재 IRS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② 10년 체납 시효의 1/3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③ IRS 직원에게 아직 할당되지 않은 체납건, ④ IRS가 납세자와의 과세 징수 관련 마지막 연락 이후 365일 이상이 경과했을 때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함

240)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38억 6,767만원임

241)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34억 1,475만원임

- ▶ PCA는 다음과 같은 납세자에게는 체납 세금을 추심할 수 없음
 - 18세 미만인 자, 전투지역 근무자 또는 신분 도용과 관련된 세금 환급 사기의 피해자
 - 보류 중이거나 현재 진행 중인 IRS와의 타협 제안 또는 분할 납부 계약이 있는 자
 - 배우자와 관련된 무고한 체납자, 적극적인 조사, 소송, 범칙 수사, 항소가 진행 중이거나 부담금과 관련된 체납자
- ▶ 2006년 민간 위탁 체납 징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IRS는 징수된 체납 세액의 최대 25%까지 집행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특별 준법감시인’의 고용 및 훈련과 관련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함
 - 특별 준법감시인은 현장 추심 담당자 또는 IRS의 자동 추심 시스템의 대리인 역할을 함
- ▶ 매년 3월 IRS 청장은 PCA 수수료 상세 및 IRS에 발생한 비용 등 프로그램 비용과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체납액의 세부사항을 하원의 조세무역위원회와 상원 재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재시행된 민간 위탁 개인세무채무추심 프로그램은 2019년까지 1억 7천만달러²⁴²⁾의 수익을 발생시킴

- ▶ 2019년 9월 30일까지 4개 PCA는 총 3억 180만달러²⁴³⁾의 체납 세액을 징수하였으며, 해당 기간까지의 프로그램 비용은 총 1억 3,170만달러²⁴⁴⁾가 소요됨
 - 비용에는 PCA에 지불한 수수료 5,460만달러²⁴⁵⁾와 특별 준법감시인 고용 및 훈련과 관련한 기금의 유지비용 1,150만달러²⁴⁶⁾가 포함되며, 나머지 수익은 재무부 일반 기금으로 이전됨

▾ 민간의 개인세무추심 프로그램은 저소득 납세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 제정된 「납세자 우선법(Taxpayer First Act)」에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둠

- ▶ 실질적 소득이 전부 보완적 사회보장급여 또는 사회보장성 장해보험급여로 이루어져 있거나, 조정된 총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최대 200% 수준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242)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24억 9,100만원임

243)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17억 8,850만원임

244)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91억 5,025만원임

245)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18억 3,450만원임

246)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0억 2,375만원임

IRS는 PCA에 체납 징수를 위탁할 수 없음

- ▶ 기존에는 PCA 추심 대상 납세액이 과세 부채가 평가된 후 1년이었으나, 2년 이상 경과한 채무로 재정의함
- ▶ 분할 납부를 기존의 5년에서 7년까지 확대함
- ▶ 상기 변경된 사항들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PCA에 징수를 위해 회부된 체납 건부터 적용됨

라. 코로나19 관련 「미국 구제 계획법」 발효

[조세동향 21-03호]

- ▼ 2021년 3월 1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국민 경제, 보건, 주 및 지방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구호방안을 제공하는 「미국 구제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HR 1319))」에 최종 서명함^{247), 248)}
- ▼ 개인과 관련하여 2021년 과세기간 동안 아동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EITC) 및 보육 관련 비용 소득공제 등의 세금공제 적용 대상 및 감면액을 확대함
 - ▶ 1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최대 2천달러^{249), 250)}를 적용하던 아동세액공제 금액을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1인당 최대 3,600달러,²⁵¹⁾ 6세 이상 17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1인당 최대 3천달러²⁵²⁾까지 인상함
 - ▶ 자격 연령 및 세액공제 산출식을 수정하여 무자녀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적용액을 543달러²⁵³⁾에서 1,502달러²⁵⁴⁾까지 확대함

247) Congress.Gov, "All Information (Except Text) for H.R.1319-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1319/all-info>, 검색일자: 2021. 3. 22.

248) IBFD, "United States - COVID-19 Pandemic: President Signs Additional Pandemic Relief Legislation," 2021. 3.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1-03-15_us_1, 검색일자: 2021. 3. 22.

249) Investopedia, "Child Tax Credit," <https://www.investopedia.com/terms/c/childtaxcredit.asp>, 검색일자: 2021. 4. 6.

250)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6만 3천원임

251)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7만 7천원임

252)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9만 8천원임

253)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1만 5천원임

254)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0만 1천원임

- ▶ 부양가족 세액공제 기준을 확대하여 비용 및 소득에 따른 최대 공제액을 2,100달러²⁵⁵⁾에서 8천달러²⁵⁶⁾로 인상하고, 환급이 가능하도록 함
- ▶ 적격 납세자의 보육 관련 비용의 최대 소득 공제액을 5천달러²⁵⁷⁾에서 1만 500달러²⁵⁸⁾로 인상함
- ▶ 공적부조공제(Premium Tax Credit: PTC)와 관련하여 2021년과 2022년에는 빈곤 소득 기준 400% 이하의 소득 상한액 요건을 폐지하고,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2~9.5%²⁵⁹⁾였던 납부 요율 역시 한시적으로 0~8.5%로 완화함²⁶⁰⁾
- ▶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월 1일 사이에 실행된 중등 과정 이후 학자금 대출은 총소득에서 제외함

〈표 1-1〉 「미국 구제 계획법」에 따른 개인 대상 세액 및 소득공제 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아동세액공제	17세 미만 최대 2,000달러	6세 미만 최대 3,500달러 6세 이상 17세 이하 최대 3,000달러
무자녀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534달러	최대 1,502달러
부양가족 세액공제	최대 2,100달러	최대 8,000달러
보육비용 소득공제	최대 5,000달러	최대 10,500달러
공적부조공제	빈곤 소득의 400% 이하 소득자 대상	소득 상한액 요건 폐지
학자금 대출 소득공제	적용사항 없음	2020. 12. 31. ~ 2026. 1. 1. 실행된 중등 과정 이후의 학자금 대출

자료: 본문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작성

- ▶ 사업자 및 고용주와 관련하여 유급 휴가 및 고용 유지와 관련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 혹은 확대하였으며, 일부 정부 지원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255)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7만 8천원임

256)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06만원임

257)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56만 3천원임

258)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89만 1천원임

259) Internal Revenue Code §36B (b)(3)(A)

260)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Part 7-Premium Tax Credit, §9661

- ▶ 유급 병가 혹은 유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고용주 급여세 공제를 2021년 9월 30일 까지 연장함
- ▶ 2021년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 유지 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
 - 2020년 2월 15일 이후 설립된 연수입 100만달러²⁶¹⁾ 이하의 스타트업 기업은 공제 액이 분기당 최대 1만달러²⁶²⁾에서 5만달러²⁶³⁾로 인상됨
 - 2019년 동일 분기 수입의 10% 미만의 수입이 발생하는 고용주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결정할 때 모든 임금을 적격 임금으로 처리함
- ▶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통해 지급된 환급이 필요하지 않은 선지급금과 레스토랑 활성화 기금의 추가 보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과세 대상 총소득에서 제외함
- ▣ 이외에도 본 법안을 통해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제3자 결제기관의 거래신고 의무 기준을 강화함
 - ▶ 2021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외국세액공제 한도액 산출 시 미국 및 해외 소득의 공제 배분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내국세법 Section 864 조항을 폐지함
 - ▶ 제3자 결제기관(카드사, 전자결제 시스템 등)의 경우 수취인의 거래신고 의무 기준을 기존의 연간 2만달러²⁶⁴⁾에서 2022년부터 연간 600달러²⁶⁵⁾로 강화함

마. 바이든 정부 법인세 개편안 발표

[조세동향 21-04호]

- ▣ 미국 백악관은 2021년 3월 31일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개편 계획과 관련한 요약자료를 발표함²⁶⁶⁾

261)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억 3,250만원임

262)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32만 5천원임

263)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662만 5천원임

264)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65만원임

265)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8만원임

266) The White House,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31/fact-sheet-the-american-jobs-plan>, 검색일자: 2021. 4. 19.

- ▶ 기업의 평균 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정책과 함께 수익과 일자리를 해외로 이동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안(2017 Tax Cuts and Jobs Act: TCJA)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함
 - 대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장려함
- ▣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과세소득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회계 이익에 대해서도 15%의 최저한세를 적용함
 - ▶ 본 인상을 통해 법인세 세수를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 인프라, 청정에너지, R&D 관련 투자에 지원하고자 함
- ▣ 기업 업무를 국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함
 - ▶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조항을 강화함
 - 기존에는 이윤과 일자리를 국외로 이전시키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국외 자산에 대한 첫 수익의 10%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국내 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과세하였으나, 첫 수익의 10%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21%로 인상함
 -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국가마다 별도로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지불한 세금을 통해 조세 피난처에서 얻은 이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됨
 - ▶ 오프쇼어링과 관련한 비용공제를 폐지하고, 본국 내 생산활동에 대한 세금공제를 제안함
 - ▶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미국에 있는 기업이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조세피난처로 고정사업장을 명목상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어렵게 함
 - ▶ 미국 법인세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외국에 본사를 둔 경우 외국 기업 관련 공제혜택을 제한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자간 협상을 통한 글로벌 합의를 모색하고자 함
 - ▶ 자산의 해외 이전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여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는 국외 무형자산소득(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에 대한 공제를 폐지함
- ▣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국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화석연료 산업에 부여되어온 보조금과 각종 세금공제를 폐지함
 - ▶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에 적용되던 특별 외국 세액공제와 프로젝트 초기 시추 비용

공제를 폐지함²⁶⁷⁾

- ▶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및 공제의 폐지로 추가 확보되는 세수는 오염 산업이 정화 비용을 공정하게 충당할 수 있도록 공해 방지 사업을 위한 슈퍼펀드(Superfund)에 불입할 계획임
- ▾ 이외에도 현재 조세회피에 남용되고 있는 세법 조항들을 삭제하고, 세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광범위한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바. 개인소득세 개편안 발표

[조세동향 21-05호]

- ▾ 미국 백악관은 2021년 4월 28일, American Families Plan 보도자료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소득세제 관련 개편안을 공개함²⁶⁸⁾
 - ▶ 자산이 아닌 근로에 보상을 주는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을 성장시키고, 조세 관련 혜택을 전 계층에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상속과세표준 조정 등의 과세 강화와 동시에 자녀 및 근로 세제지원을 확대함
- ▾ 세율 인상, 비과세 대상 축소, 공제 한도액 설정 등 자본 소득 관련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계층 간 과세 형평성을 실현함
 - ▶ 연소득 100만달러²⁶⁹⁾ 이상인 납세자에게 투자 및 근로 소득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39.6%의 세율을 적용함
 - 고소득자들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본 이득 및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어 온 세율은 20%로, 근로소득의 세율보다 낮았음
 - ▶ 상속을 통한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 후 상속된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267) Bloomberg Green, "Biden Tax Plan Targets Fossil Fuel Subsidies Worth \$35 Billion"(8, April, 202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4-07/biden-tax-plan-targets-fossil-fuel-subsidies-worth-35-billion>, 검색일자: 2021. 4. 20.

268) The White House, Briefing room, "Fact Sheet: The American Families Plan," 2021. 4. 2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8/fact-sheet-the-american-families-plan>, 검색일자: 2021. 5. 18.

269) 2021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억 1,700만원임

경우 상속인 인수 전에 발생한 자본 이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스텝업 관행을 폐지함

-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가족 소유 사업체와 농장 등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유지됨

▶ 내국세법 Section 1031에 근거한 유사종 교환 규칙(like-kind exchange rules)과 관련하여 공제 한도액을 설정함

- 부동산 매도 후 발생한 자금을 모두 사용하여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매도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으나, 본 개편안을 통해 50만달러²⁷⁰⁾의 공제 한도를 둠

▣ 아동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아동 및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American Rescue Plan의 주요 감세 조항들의 대상 및 한도액, 기한 등을 확대함

▶ 아동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였던 상한액을 기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함

- 아동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7세 미만에서 17세 이하로 변경함
- American Rescue Plan에서는 아동세액공제 한도액을 기존 2천달러²⁷¹⁾에서 6세 이상의 경우 1인당 3천달러,²⁷²⁾ 6세 미만의 경우 1인당 3,600달러²⁷³⁾로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음

▶ 아동 및 부양가족 공제(CDCTC)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해당 공제를 영구 도입함

- 연소득 12만 5천달러²⁷⁴⁾ 미만인 가구의 적격 보육 지출액의 절반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함
- 13세 이하의 아동 1인당 최대 3천달러, 2인 이상일 경우 최대 6천달러²⁷⁵⁾였던 상한액을 1인당 최대 4천달러,²⁷⁶⁾ 2인 이상일 경우 최대 8천달러²⁷⁷⁾로 인상함

270) 2021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5,850만원임

271) 2021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3만원임

272) 2021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5만원임

273) 2021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2만원임

274) 2021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천 396만원임

275) 2021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70만원임

276) 2021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6만원임

277) 2021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93만원임

- ▶ 이외에도 American Rescue Plan에서 임시로 도입하였던 무자녀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를 영구 도입함
- ▾ 현재 고소득자 일부만 납부하고 있는 의료보험세(Medicare tax) 의무를 전반적으로 적용함
 - ▶ 원칙적으로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모든 근로자 및 투자자들은 3.8%의 의료보험세를 납부해야 하나, 일관성 있는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존에는 S Corporation이나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포함됨²⁷⁸⁾

사. PPP 대출 기업 관련 공제혜택 제공

[조세동향 21-05호]

-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1년 4월 22일, 코로나19 1차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 대출을 실행한 기업의 비용 공제와 관련한 지침인 Revenue Procedure 2021-20을 발표함²⁷⁹⁾
 - ▶ 미국의 중소기업청(SBA)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차 PPP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2021년 「통합세출법」을 통해 PPP 대출의 이자 및 상환금에 대해 익년도 소득신고 시 비용공제를 허용함
- ▾ 본 지침은 2021년 「통합세출법(CAA)」 제정 전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여 PPP 대출 관련 비용을 공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세이프 하버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²⁸⁰⁾

278) ThinkAdvisor, "Biden Budget Boosts Health Subsidies, Broadens Net Investment Income Tax," 2021. 6. 1., <https://www.thinkadvisor.com/2021/06/01/biden-budget-boosts-health-subsidies-broadens-net-investment-income-tax/>, 검색일자: 2021. 6. 2.

279) IRS, "Treasury Department and IRS provide safe harbor for small businesses to claim deductions relating to first-round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s," 2021. 4. 22.,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department-and-irs-provide-safe-harbor-for-small-businesses-to-claim-deductions-relating-to-first-round-paycheck-protection-program-loans>, 검색일자: 2021. 5. 18.

280) Journal of Accountancy, "Expenses paid with 2020 PPP loans can be deducted on 2021 tax returns," 2021. 4. 23., <https://www.journalofaccountancy.com/news/2021/apr/ppp-loans-forgiven-in-2020-can-be-deducted-on-2021-tax-returns.html>, 검색일자: 2021. 5. 26.

- ▶ 2021년 12월 27일 혹은 그 이전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개정된 신고서 또는 행정 조정 요청을 제출하지 않고 공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함
- ▣ 본 세이프 하버 조항은 PPP 대출을 실행하고, 2020년 과세연도 동안 적격한 경비가 발생하였거나 지출한 기업에 한해 적용됨²⁸¹⁾
- ▶ 적용 대상 납세자의 PPP 대출 관련 비용지출 일자 및 금액과 함께, 2020년 과세연도의 세금 신고서상에 기재한 적격 비용에 대해 금액 및 설명을 포함한 목록을 제출해야 함
 - 이때 적격 비용이란, 기업이 급여비용, 적격 모기지 혹은 임대료에 대한 이자나 비용, 설비 관련 비용 등을 의미함

아. 미국 기업 대상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국가에 대한 관세보복 유예

[조세동향 21-06호]

-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 6월 2일 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및 영국(이하 '이 사건 6개국'이라고 함)이 미국 글로벌 IT기업에 부과한 디지털서비스세(DST)로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히며, 이 사건 6개국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함²⁸²⁾
- ▶ USTR은 2021년 1월 특정 국가들이 채택한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 그중 이 사건 6개국에서 채택한 디지털서비스세가 국제 조세원칙을 위반한 채 미국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 또는 비합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 USTR은 「통상법」 제301조²⁸³⁾, ²⁸⁴⁾에 근거하여 이 사건 6개국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국가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것을 밝힘

281) 상동

282)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Announces, and Immediately Suspends, Tariffs in Section 301 Digital Services Taxes Investigations," 2021. 6. 2.,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1/june/ustr-announces-and-immediately-suspends-tariffs-section-301-digital-services-taxes-investigations>, 검색일자: 2021. 6. 15.

283) 「통상법」 제301조란, 미국 교역 상대국이 국제무역협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때 해당 정책,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무역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법규 또는 행정명령을 말함

284) Federal Register,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s of Digital Services Taxe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6/05/2020-12216/initiation-of-section-301-investigations-of-digital-services-taxes>, 검색일자: 2021. 6. 15.

- ▶ 다만, OECD 및 G20을 통해 디지털세 관련 협상 추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180일 동안 관세보복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만일 국제적 협의를 통해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제재 관세를 실행할 것임을 경고함

2 캐나다

가. 2020 개인소득세 신고 시 기후변화대응 인센티브 제공

[조세동향 21-01호]

- ▣ 캐나다 정부는 2020년 12월 16일, 4개 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확정함²⁸⁵⁾
 - ▶ 캐나다는 2018년부터 연방 차원의 탄소세를 도입하여 주별로 탄소세를 자율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탄소세를 운영하지 않는 주의 경우 연방 탄소세 시스템을 따르고 있음
 - ▶ 연방 정부는 각 주에서 징수한 탄소세 수입을 연방 정부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기후변화대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주 또는 영토에 반환함
 - 이에 따라 온타리오,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앨버타 주에서는 탄소세 세수의 약 90%를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해당 주의 주민들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10%는 소규모 기업, 학교, 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함
- ▣ 상기한 4개 주의 주민들은 2020 개인소득세 신고 시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음

285) Government of Canada, "News - 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Amounts for 2021,"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0/12/climate-action-incentive-payment-amounts-for-2021.html>, 검색일자: 2021. 1. 19.

〈표 1-2〉 2021년 캐나다 연방 정부 기후변화대응 인센티브 각 주별 지급액

(단위: 캐나다달러)

구분	온타리오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앨버타
독신 성인 (혹은 부부 중 첫 번째 성인)	300	360	500	490
부부 중 두번째 성인 (편부모일 경우 첫 번째 자녀)	150	180	250	245
18세 미만 자녀 1인당	75	90	125	123

주: 1. 캐나다 통계청이 정의하는 인구조사상 대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적격 개인 및 가족에게는 10%의 추가 금액이 제공됨
 2. 2021년 1월 27일 기준 1캐나다달러는 한화 863.93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자료: 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Amounts for 2021,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0/12/climate-action-incentive-payment-amounts-for-2021.html>, 검색일자: 2021. 1. 27.

▶ 캐나다 연방 정부의 탄소세 시스템은 개별 가구에 미친 탄소세 영향 비용 이상의 인센티브를 환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개별 가구에 미친 탄소세 영향 비용은 연방 정부 탄소세가 적용된 연료 혹은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정함
- ▶ 2021년에 연방 탄소세 시스템에 대한 각 주의 가구당 평균 영향 비용 추정치와 가구당 기후변화대응 인센티브 평균 지급액을 비교하면 〈표 1-3〉과 같음

〈표 1-3〉 캐나다 4개 주의 가구당 연방 정부 탄소세 영향 비용 및 인센티브 각 주별 지급액 비교

(단위: 캐나다달러)

구분	온타리오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앨버타
연방 탄소세 시스템이 미치는 가구당 평균 영향 비용(추정)	439	462	720	598
가구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	592	705	969	953

주: 2021년 1월 27일 기준 1캐나다달러는 한화 863.93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자료: 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Amounts for 2021,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0/12/climate-action-incentive-payment-amounts-for-2021.html>, 검색일자: 2021. 1. 27.

▶ 빠르면 2022년부터 기후변화대응 인센티브를 캐나다 국세청 복지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

나. 2021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1-04호]

- ▶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2021년 4월 19일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함²⁸⁶⁾
- ▶ 온라인 상거래와 관련하여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비거주자 기업이 캐나다 내 온라인 사용자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캐나다 과세 당국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서비스세(DST)의 시행을 제안함²⁸⁷⁾
 - ▶ 특정 연도에 캐나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2천만캐나다달러²⁸⁸⁾ 이상의 매출(revenue)이 발생하고, 그 직전 연도에 7억 5천만유로²⁸⁹⁾ 이상의 글로벌 수익이 발생한 사업체들이 디지털서비스세의 납부 대상임
 - ▶ 캐나다의 온라인 마켓, 소셜 미디어, 온라인 광고를 비롯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판매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에 대해 3%의 세율로 부과됨
 - ▶ 12개월 동안 캐나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제품 혹은 서비스 매출이 3만캐나다달러²⁹⁰⁾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거주자 공급자 및 유통 플랫폼 운영자는, 간소화된 GST/HST 프레임워크에 기업을 등록하고 과세공급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
 - 본 프레임워크에 등록된 공급자는 부실 채권 및 주별 HST 즉시 환급액에 대해 구매자에게 공제할 자격이 있음
 - ▶ 플랫폼 운영자는 GST/HST에 등록되지 않은 공급자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급자가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음

286) Government of Canada, "Budget 2021," <https://www.budget.gc.ca/2021/report-rapport/toc-tdm-en.html>, 검색일자: 2021. 4. 20.

287) IBFD, "Canada - Canada to Impose 3% Digital Services Tax Pending Action at OECD," April 21,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4-21_ca_5%23tns_2021-04-21_ca_5%23tns_2021-04-21_ca_5%23tns_2021-04-21_ca_5, 검색일자: 2021. 4. 27.

288)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9억 1,280만원임

289)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55억원임

290)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22만원임

- 공급자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세금 부과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공급자와 플랫폼 운영자에게 공동 및 연대 책임이 부여되나,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의 정보에 타당하게 의존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됨
 - ▶ 2021년 6월 1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용 가능한 다자간 접근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장려세제, 장애세액공제, 북부 주민 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확대함
- ▶ 저임금 및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세제(Canada Workers Benefit: CWB)의 공제 상한액과 순조정소득의 임계값²⁹¹⁾은 단독가구의 경우 각각 1,381캐나다달러²⁹²⁾와 1만 3,064캐나다달러²⁹³⁾에서 1,395캐나다달러²⁹⁴⁾와 1만 3,194캐나다달러²⁹⁵⁾로, 가족의 경우 2,370캐나다달러²⁹⁶⁾와 1만 7,349캐나다달러²⁹⁷⁾에서 2,403캐나다달러²⁹⁸⁾와 1만 7,522캐나다달러²⁹⁹⁾로 인상됨
 - ▶ 장애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DTC)는 2021년 기준으로 1,299캐나다달러³⁰⁰⁾가 적용되며, 세액공제 자격 중 일상 기능에 필요한 정신 기능과 생활 유지 치료의 범위를 넓혀 대상자를 확대함
 - ▶ 과세연도 기간 중 캐나다 북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여행한 경우 북부 주민 공제(Northern Residents Deductions)를 청구할 수 있음
 - 지불한 총경비와 최저 왕복항공료 등이 공제 대상이며, 연간 최대 2회의 여행 및 거주에 대해 최대 1,200캐나다달러³⁰¹⁾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됨
 - ▶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조금 등에 대해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291) 캐나다의 근로장려세제는 3천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1캐나다달러당 26캐나다센트가 공제되고, 순조정소득이 특정 임계값에 이르면 공제 비율이 감소함

292)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5만원임
 293)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51만원임
 294)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7만원임
 295)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69만원임
 296)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8만원임
 297)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26만원임
 298)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2만원임
 299)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49만원임
 300)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4만원임
 301)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49만원임

해당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상환 연도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허용되나 추후 보조금 수령 연도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임

▣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자본비용공제 확대와 함께 탄소 배출 저감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세율을 적용하며, 바람직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 협의를 계획하고 있음

▶ 캐나다 민간기업(CCPC)이 인수한 적격 부동산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최대 150만캐나다달러³⁰²⁾의 즉시 비용공제가 가능함

▶ 제조 및 가공에 탄소배출 제로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절반 수준의 연방 법인세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일반 기업의 경우 7.5%, 중소기업의 경우 4.5%의 세율로 과세함

- 이 밖에도 청정에너지 장비에 대해서는 30~50%의 가속화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자본비용 공제혜택을 확대함

▶ 세금 탈루 등 조세회피를 계획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함께,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12에 있는 기업의 의무보고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국제 조세에서 이자공제 및 혼성불일치 계약과 관련한 BEPS Action Plan에서 권장하는 모범 사례 구현을 제안함

▶ Action 4의 권고사항에 따라 순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 비용 등을 적용하기 전 순이익(EBITDA)의 고정 비율로 제한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최대 20년까지 이월이 허용됨

- 2021년 말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안을 발표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 Action 2에 제안된 혼성불일치 협정에 따라 캐나다 기업이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금액이 다른 국가에서 과세 목적상 공제되거나 일반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에서는 공제혜택이 허용되지 않음

- 비거주 기업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 역시 외국에서 이미 과세 목적상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캐나다에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302)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억 1,077만원임

- 2021년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안을 발표하며, 2022년 이후 적용할 예정임

▾ 이외에도 소비세와 재산세를 인상하거나 신규 세제를 도입함

- ▶ 2020년 4월부터 담배세를 200개피당 4캐나다달러³⁰³⁾를 인상하고, 2022년 1월부터 고급 자동차, 개인 항공기 및 보트에 특별소비세를 도입함
 - 10만캐나다달러³⁰⁴⁾ 이상의 고급 자동차 및 개인항공기에는 10만캐나다달러까지 10%, 그 이상부터는 20%의 세율이 적용됨
 - 25만캐나다달러 이상의 보트는 25만캐나다달러까지³⁰⁵⁾ 10%, 그 이상부터는 20%의 세율이 2022년 1월부터 적용됨
- ▶ 2022년부터 비거주자의 주거 부동산에 대해 1%의 재산세를 부과함

303)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363원임

304)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409만원임

305)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3,522만원임

II 유럽

1 그리스

가. 배당금 및 스톡옵션 관련 일부 과세 기준 확정

[조세동향 21-01호]

- ▼ 그리스 세무당국은 2021년 1월, 배당금 및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일부 상황에 대하여 과세 기준을 확정함³⁰⁶⁾
- ▼ 특별 연대 부금이 부과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명확히 함
 - ▶ 2020년 10월 27일 그리스 의회에서 제정한 L.4738/2020 제29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별 연대 부금이 부과되지 않고 2021년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별 연대 부금이 부과되어야 함³⁰⁷⁾
 - ▶ 배당금 배분 결정이 2020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 2021년에 배당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 연대 부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발표함
 - 면제 여부를 지급인의 이익이 발생한 시기가 아니라 수령인이 받을 권리를 획득한 시기로 결정함
 - 결산배당뿐 아니라, 중간배당 및 간주배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 스톡옵션의 형태로 부여된 주식의 과세 대상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함
 - ▶ 스톡옵션의 형태로 법인의 직원,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부여된 주식을 특정 상황이

306) IBFD, "Greece-Greece Clarifies the Dividend Exemption from the Special Solidarity Contribution and the Treatment of Stock Options Plans,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1-01-05_gr_2, 검색일자: 2021. 1. 13.

307) Deloitte, "Special solidarity contribution abolished for certain income for FY 2020 and 2021," <https://www.taxathand.com/article/15649/Greece/2020/Special-solidarity-contribution-abolished-for-certain-income-for-FY-2020-and-2021>, 검색일자: 2021. 1. 26.

완료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자본이득이 아닌 고용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정 상황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음

- 회사 설립 후 5년 이후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옵션 취득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옵션 취득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이때에 과세 대상 고용소득은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됨

- 옵션의 취득시점: 회사가 권리를 부여한 시점
- 옵션의 가격: 옵션 행사시점의 주식의 시장가치

나. 코로나19 관련 조세정책 발표

[조세동향 21-02호]

- ▼ 그리스 정부는 2021년 2월 5일과 2월 16일에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거주자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 조세 조치를 발표함
- ▼ 외국인 거주자의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농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정 소득에 대해 특별 연대부금 부과를 면제함^{308), 309)}
 - ▶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던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기한을 2021년 2월 26일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추가적으로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함
 - ▶ 2020년에 농민에게 지급된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해서는 특별 연대부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
 - 현재 그리스의 경우 농업활동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1만 2천유로³¹⁰⁾를 초과하면 특별 연대부금이 부과됨³¹¹⁾

308) IBFD, "Greece Plans to Extend Filing Deadlines for 2019 Income Tax Returns of Foreign Residents," 2021. 1.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1-28_gr_2#tns_2021-01-28_gr_2, 검색일자: 2021. 2. 15.

309) IBFD, "Greece Extends 2019 Income Tax Returns Filing Deadlines for Foreign Residents," 2021. 2.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2-10_gr_1, 검색일자: 2021. 2. 25.

310) 2021년 3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615만원임

311) OECD iLibrary, "Chapter 18. Greece," <https://www.oecd-ilibrary.org/sites/25d3a2fd-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25d3a2fd-en>, 검색일자: 2021. 3. 5.

- ▶ 커피 및 무알콜 음료 등에 대한 부가세 감면정책을 발표함³¹²⁾
 - ▶ 커피 및 무알콜 음료, 교통, 영화관 및 연극 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³¹³⁾
 - ▶ 관광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 티켓가격 안정화 및 구매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동물원 티켓의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24%에서 13%로 인하함

다. 코로나19 관련 이전가격 지침 발행

[조세동향 21-03호]

- ▶ 그리스 세무당국은 2021년 3월 10일, 코로나19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기업을 위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 지침을 발표함³¹⁴⁾
 - ▶ 해당 지침은 ① 비교 가능성 분석, ② 코로나19의 특정 비용에 대한 손실과 할당내역, ③ 정부지원 정책, ④ 기존의 이전가격 사전 협약(APAs) 등을 담음
 - ▶ 해당 지침은 2020년 12월 18일에 발표된 COVID-19 OECD의 이전가격지침에 대부분 기초하고 있음
- ▶ 그리스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규칙을 적용하는 납세자와 해당 신청서를 평가할 세무 당국이 2020 회계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정책을 비교 분석할 때 해당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 코로나19 전염병 발생 시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특히 코로나19 이전 기간에 발생한 판매량과 비교한 분석
 - ▶ 다국적 기업(MNE) 그룹 및 통제된 거래 또는 독립 당사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용량 활용도 변화 분석

312) IBFD, "COVID-19 Pandemic: Greece Extends Reduced VAT Rates for Coffee and Non-Alcoholic Beverages and Announces Sixth and Seventh Rounds of Repayable State Cash Advance Scheme," 2021. 2.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16_gr_2.html, 검색일자: 2021. 2. 21.

313) IBFD, "COVID-19 Pandemic: Greece Extends the VAT Reduced Rate for Transport, Coffee, Non-Alcoholic Beverages and Cinema Tickets," 2020. 10. 21.,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0-10-21_gr_2.html#tns_2020-10-21_gr_2, 검색일자: 2021. 2. 25.

314) IBFD, "COVID-19 Pandemic: Greece Issues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Affected Compan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16_gr_2.html, 검색일자: 2021. 3. 18.

- ▶ 통제된 거래의 당사자(관련 당사자 또는 관련 없는 당사자) 또는 다국적 기업 전체에 의해 부담되는 증분 또는 예외적인 비용에 관한 특정 정보
- ▶ 정부 지원을 받은 정도
- ▶ 통제된 거래의 가격 및 성과에 영향을 준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
- ▶ 통제된 거래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범위 내에서 국가별 GDP 데이터 또는 중앙은행, 정부기관, 산업 또는 무역 협회의 산업지표와 같은 거시경제 정보
- ▶ 매출, 비용, 수익성과 관련된 내부 예산과 예산 데이터 비교 및 실제 결과 비교
- ▶ 매출, 원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산업계 기업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분석 등

라. 특별부동산세 법안의 지침서를 법문화

[조세동향 21-05호]

- ▶ 그리스 당국은 2021년 4월 16일, 특별부동산세법에 대한 지방 세무서와 납세자의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특별부동산세법을 법문화하였고 이를 4646/2019 법안에 새로 실음³¹⁵⁾, ³¹⁶⁾

 - ▶ 특별부동산세는 3091/2002 법안에서 도입되었으며 그리스에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가진 기업과 신탁 등 기타 법인에 적용됨
 - 재산의 목적가치에 대해 연간 15%의 세율이 부과됨
 - ▶ 세무당국은 해당 법문에서 납세 대상자, 감면 대상자, 적용세율, 과세물건 및 과도기 조항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
- ▶ 4646/2019 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종사하는 기관과 기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세 면제 혜택이 추가로 도입됨

 - ▶ 부동산세 면제 적용 대상은 2278/1999 법안의 부동산 뮤추얼 펀드, 2992/2002 법안의 벤처 캐피탈 펀드, 유러피안 장기 투자 펀드(ELTIFs), 대체투자펀드 매니저(AIMFs),

315) IBFD, "Greece Codifies Special Real Estate Tax Legislation," 2021. 4.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28_gr_2.html, 검색일자: 2021. 5. 13.

316) 그리스 정부, "ΘΕΜΑ: Διοικητική Κωδικοποίηση των διατάξεων του Ειδικού Φόρου επί των Ακινήτων (Ε.Φ.Α.)," 2021. 4. 16., https://www.aade.gr/sites/default/files/2021-04/e_2079_2021ada.pdf, 검색일자: 2021. 5. 20.

대체투자펀드(AIF), 집단투자를 위한 사업(UCITS), 유럽 벤처 캐피탈 펀드(EUVECA) 및 유럽 사회 기업가 펀드(EUSEF) 등이 있음

마.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및 법인세율 인하 조치 발표

[조세동향 21-05호]

- ▶ 그리스 정부는 2022년 4월 22일, 사업 유동성 증가와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 세제 조치로 개인 및 법인세 소득 신고기한 연장과 법인세율 및 중간예납 비율의 인하 조치를 발표함^{317), 318)}
- ▶ 개인 및 법인 소득세 신고기한을 2021년 8월 27일까지 연장함^{319), 320)}

 - ▶ 2020년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세금은 매월 8회 분납할 수 있으며, 첫 분납은 2021년 4월 27일까지 납부해야 함
 - ▶ 또한 2021년 7월 28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2021년 7월 30일까지 납부되는 경우 개인 소득세의 3%를 감면하도록 법률을 제정함
- ▶ 2021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재 24%에서 2022년부터 22%로 인하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중간예납(the advance payment of tax) 시 적용되는 세율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의 100%에서 각각 55%와 80%로 인하됨

 - ▶ 중간예납 시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하여 법인의 경우 2021년 한시적으로 100%에서 70%로 인하됨

317) IBFD, "Greece Announces Reduced 22% Corporate Income Tax Rate From 2022," 2021. 4.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28_gr_1.html, 검색일자: 2021. 5. 13.

318) 그리스 재무부, "Δήλωση του Υπουργού Οικονομικών κ. Χρήστου Σταϊκούρα," 2021. 4. 28., https://www.minfin.gr/web/guest/deltia-typou/-/asset_publisher/4kqvD0lBldee/content/delose-tou-ypourgou-oikonomikon-k-chrestou-staikou-18?inheritRedirect=false&redirect=https%3A%2F%2Fwww.minfin.gr%2Fweb%2Fguest%2Fdeltia-typou%3Fp_p_id%3D101_INSTANCE_4kqvD0lBldee%26p_p_lifecycle%3D0%26p_p_state%3Dnormal%26p_p_mode%3Dview%26p_p_col_id%3Dcolumn-2%26p_p_col_count%3D1, 검색일자: 2021. 5. 13.

319) IBFD, "COVID-19 Pandemic: Greece Further Extends Deadline for Payment of VAT Liabilities," 2021. 5.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03_gr_1.html, 검색일자: 2021. 5. 13.

320) 그리스 정부, "ΝΟΜΟΣ ΥΠ' ΑΡΙΘΜ. 4797," 2021. 4. 23., p.12, http://www.et.gr/idos-nph/search/pdfViewerForm.html?args=5C7QrtC22wEzH9d6xfVpRXdtvSoClrL8ZgIn3pl6MeDtlI9LGdkF53UIxss942CdyqxSQYNuqAGCF0lfB9HI6qSYtMQEeHLwnFqmgJSA5WIsluV-nRwO1oKqSe4BlOTSpEWYhszF8P8UqWb_zFijPw-MOB9CMEGdnj5H8zoiA1uPF63dQmlBmAaOVU3em60, 검색일자: 2021. 5. 20.

- ▶ <표 II-1>은 2021 과세연도 1만유로³²¹⁾ 매출 법인과 2022년도에 적용될 개인납세자의 법인세율 및 납부세액을 비교한 표임

<표 II-1> 2022년도에 적용될 법인(소득)세율과 납부세액 비교 (단위: 유로)

대상	구분	세율	납부세액
법인	기존	법인세율 24% + 중간예납(법인세율의 100%) 24%	4,800
	변경	법인세율 24% + 중간예납(법인세율의 80%) 17.6%	3,960
개인 사업자	기존	소득세율 9% + 중간예납(소득세율의 100%) 18%	1,800
	변경	소득세율 9% + 중간예납(소득세율의 55%) 13.95%	1,395

자료: 그리스 정부, “ΘΕΜΑ: Διοικητική Κωδικοποίηση των διατάξεων του Ειδικού Φόρου επί των Ακινήτων (Ε.Φ.Α.),” 2021. 4. 16., https://www.aade.gr/sites/default/files/2021-04/e_2079_2021ada.pdf, 검색일자: 2021. 5. 20.

2 네덜란드

가. 배당금에 대한 조건부 원천징수제도 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1-04호]

-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21년 3월 26일 배당금에 대한 조건부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³²²⁾
 - ▶ 법안 도입 근거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조건부 원천세 법안(Wet Bronbelasting 2021)과 동일함
 -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저세율 적용 대상 지역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이자 및 로열티의 지급에 대해서는 최고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³²³⁾

321) 2021년 5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75만원임

322) IBFD, “Netherlands Proposes Conditional Withholding Tax on Dividends from 2024,” 26 March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26_nl_1.html, 검색일자: 2021. 4. 15.

323) IBFD, “Tax Plan 2020 - conditional withholding tax on interest and royalties,” 18 September 2019,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19-09-18_nl_5.html#tns_2019-09-18_nl_5, 검색일자: 2021. 4. 26.

- ▶ 네덜란드 과세관청은 저세율 적용 대상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들을 겨냥하여 위 법안을 도입하였고, 배당금에 대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자 신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저세율 적용 대상 지역이란,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된 정의와 그 내용이 동일하며, 9%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는 지역 또는 EU의 조세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을 의미함
-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아래의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배당금 지급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 법인소득에 대한 법정 세율이 9% 미만인 저세율 적용 대상 구역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 ▶ 네덜란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 ▣ 네덜란드 상장기업 등의 회사는 특정 상황과 관련된 배당금 지급 시 최고 법인세율인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 과세 대상 배당금수익에는 주식에 대한 배당뿐 아니라, 청산 수익금 및 기타 이익의 분배가 포함됨
 - ▶ 일반적인 배당금 원천세와 달리 조건부 원천세의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용공제 역시 불가능함

나.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지침 이행 법안 채택

[조세동향 21-04호]

- ▣ 네덜란드 의회는 2021년 4월 6일 EU의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지침(VAT e-commerce package) 이행을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함³²⁴⁾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5월 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VAT 전자상거래 패키지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 EU의 지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VAT 전자상거래 개정 법안이 시행될 예정임

324) IBFD, "Netherlands Adopts New VAT Rules on E-Commerce," 6 April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06_nl_1.html, 검색일자: 2021. 4. 15.

- ▣ 위 법안은 COUNCIL DIRECTIVE (EU) 2017/2455 및 COUNCIL DIRECTIVE (EU) 2019/995의 전자상거래 관련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VAT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가가치세법」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2017년 12월 5일에는 ‘재화의 원격 공급과 용역 공급에 관한 의무’와 관련한 개정이, 2019년 11월 21일에는 ‘재화의 원격 공급과 특정 역내 재화 공급’과 관련한 개정이 있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325), 326)}

 - 2015년 시행된 MOSS(Mini One Stop Shop) 제도를 확대 적용한 OSS(One Stop Shop) 제도를 도입하여, EU 회원국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모든 국가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이 자국에서의 사업자등록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게 함
 - 방송 및 전자 서비스(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and Electronic services: TBE)의 EU 내 공급에 대해서는, 플랫폼과 같은 전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과세 대상을 확대함
 - 전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이 아닌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로 간주되어 VAT 납부의무가 발생함
-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VAT 의무를 단순화하고,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국가의 과세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지급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³²⁷⁾

다. 적격 합병 등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에 관한 세무처리 지침 발표

[조세동향 21-05호]

-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1년 5월 7일, 적격 합병 및 분할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의 세법상 실현을 위한 법정 요건을 명확히 함³²⁸⁾

325) Avlara VATlive, “EU July 2021 ecommerce VAT Package,” 2021. 1. 19., <https://www.avalara.com/vatlive/en/vat-news/eu-2021-e-commerce-vat-package.html>, 검색일자: 2021. 4. 15.

326) EU, “Modernising VAT for cross-border e-commerce,”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modernising-vat-cross-border-e-commerce_en, 검색일자: 2021. 5. 6.

327) Kotra 해외시장뉴스, 「EU, 2021년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규정 도입」, 2020. 8. 3.,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3532>, 검색일자: 2021. 4. 15.

- ▶ 기존에는 합병 등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법인의 경우 미실현손실의 실현을 통해 법인세 절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 합병 등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미래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미실현손실과 상계 가능한 이익은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 전 이익잉여금이 아닌, 합병 후 발생한 과세소득이어야 함
 - 즉, 손실의 상계에 관한 일반 규칙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신설된 합병법인이 합병 등으로 획득한 사업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이익에 대해서만 상계 가능한 것임
 - 따라서 손실 상계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합병 등으로 인한 미실현손실은 세법상 실현 가능하지 않음
- ▾ 관련 규정은 법인 간의 합병뿐 아니라 분할 및 사업 합병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2021년 4월 28일까지 소급하여 적용됨

3 덴마크

가. 종업원 이익공유제도 도입 및 R&D 비용 공제 확대

[조세동향 21-01호]

- ▾ 덴마크 의회는 2020년 12월 21일 스타트업 기업에 종업원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스타트업 기업은 종업원 연봉의 최대 50%까지 주식, 옵션 및 신주인수권을 지급할 수 있음³²⁹⁾

328) IBFD, "Ministry of Finance Updates Decrees on Mergers, Split-Ups and Split-Offs," 2021. 5.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07_nl_2.html, 검색일자: 2021. 5. 13.

329) IBFD, "Government Introduces Employee Share Scheme for Start-Up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23_dk_1.html, 검색일자: 2021. 1. 20.

- ▶ 해당 이익은 개인소득세(최대 세율 약 56%)가 아닌 자본이득세(최대 세율 42%)로 과세됨
- ▶ 종업원은 회사 지분의 25% 이상 또는 의결권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
- ▶ 본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2020년 12월 21일 덴마크 의회는 2020년 및 2021년 R&D 비용의 13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채택함³³⁰⁾

- ▶ 기존의 2020년 103%, 2021년 105% 공제율에서 130%로 확대함
- ▶ 공제액은 5천만덴마크크로네³³¹⁾로 제한됨
- ▶ 본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나. 탈탄소화 투자 관련 세제혜택 발표

[조세동향 21-03호]

▣ 덴마크 정부는 2021년 2월 24일 기업의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초안을 발표함³³²⁾

- ▶ 탄소 절감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자산 구입에 대한 감가상각 한도를 상향 조정함
 - 기업이 기계장치 등 새로운 녹색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한도를 기존 1만 4,100덴마크크로네³³³⁾에서 3만덴마크크로네³³⁴⁾로 인상함
 -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운영투자의 경우, 4년의 내용연수 동안 최대 취득가액의 116%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함
 - 화석연료 사용 기계장치, 승용차 및 선박은 관련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330) IBFD, "Parliament Adopts Extension to R&D Incentive,"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23_dk_2.html, 검색일자: 2021. 1. 20.

331) 2021년 1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9억 8,620만원임

332) IBFD, "Denmark Proposes Measures To Support Business Decarbonization,"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25_dk_1.html, 검색일자: 2021. 3. 19.

333) 2021년 3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6만원임

334) 2021년 3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45만원임

- ▶ 탄소저감 기술 등에 지출된 연구개발비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출액의 130%까지 공제할 수 있음
- ▶ 저탄소 전환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에너지 집약 업종 기업의 경우, 유탄세 부과 시 최저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확대되어 적용됨

다. 지방세율 인상에 따른 최저세율 인하 법안 채택

[조세동향 21-04호]

- ▣ 덴마크 의회는 2021년 4월 15일 개인소득세 최저세율(bundskat)³³⁵⁾ 인하를 발표함³³⁶⁾
 - ▶ 2020년 10월 16일에 채택된 지방세 인상안³³⁷⁾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소득세 최저세율을 인하하기로 함³³⁸⁾
 - 지방자치단체는 1% 이상의 지방세 세수 증대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세수 증가액은 약 1억 7,500만덴마크크로네³³⁹⁾로 추정됨
- ▣ 변경된 법안(L 142, Forslag til lov om ændring af personskatteloven)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기존 12.11%에서 0.02%p 인하된 12.09%의 최저세율을 적용받게 됨
 - ▶ 현재 덴마크 납세자의 대부분은 최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8세 이상 납세자가 연 4만 6,700덴마크크로네³⁴⁰⁾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 지방소득세와 별도로 12.09%의 최저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달 급여명세서상에 지방소득세와 최저세 또는 최고세를 적용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공제됨

335) 개인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덴마크 납세자의 경우, 변경된 법안 기준으로 최저 12.09%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336) IBFD, "Denmark Reduces Personal Income Tax Rate," 15 April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15_dk_1.html, 검색일자: 2021. 4. 16.

337) Gentofte Kommune 지방자치단체, "Budgettet for 2021 vedtaget," 16 October 16., <https://www.gentofte.dk/da/Om-kommunen/Nyheder/2020/10/Budgettet-for-2021-vedtaget>, 검색일자: 2021. 4. 26.

338) 덴마크 의회, "L 142 Forslag til lov om ændring af personskatteloven,," <https://www.ft.dk/samling/2020/1/lovforslag/1142/index.htm>, 검색일자: 2021. 4. 16.

339) 2021년 4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8억원임

340) 2021년 4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8만원임

- ▶ 2022년과 그 이후부터는 12.10%의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이며, 인하된 소득세율은 2021년 4월 1일부터 발효됨
- ▶ 「개인소득세법」 제8조c에 의거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2021년에 4.09%, 2022년 및 그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4.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³⁴¹⁾

〈표 11-2〉 덴마크의 개인소득세율

(단위: %, 덴마크크로네)

~2021. 3. 31.		2021. 4. 1. ~ 2021. 12. 31.		2022. 1. 1. ~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46,700	0	좌동	0	좌동	0
46,701~544,800	12.11	좌동	12.09	좌동	12.10
544,801~	15	좌동	15	좌동	15

자료: PwC, "Denmark Individual - Taxes on personal income," <https://taxsummaries.pwc.com/denmark/individual/taxes-on-personal-income>, 검색일자: 2021. 4. 26.

라.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변경 법안 제출

[조세동향 21-05호]

- ▶ 덴마크 세무부 장관은 2021년 5월 5일, EU의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지침 이행을 위한 법안을 제출함³⁴²⁾
- ▶ Council Directive (EU) 2020/262와 Council Directive (EU) 2019/2235 및 Council Directive (EU) 2020/1151에 명시된 지침을 덴마크 세법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Council Directive (EU) 2020/262는 소비세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 EU 회원국 내 자유로운 상품 이동을 위하여, 소비세 이동 및 제어 시스템(Excise Movement and Control System: EMCS)의 재정 보증 요구사항을 일부 수정함
 - ▶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수송에 대해서는 보증을 면제함

341) 덴마크 의회, "Lov om ændring af personskatteloven,"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1/532>, 검색일자: 2021. 4. 16.

342) IBFD, "Denmark Proposes Changes to Excise Duty and VAT Rules," May 14,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14_dk_1.html, 검색일자: 2021. 5. 17.

- ▶ 상품의 완전한 파괴 또는 복구 불가능한 손실 외에도 상품의 특성으로 인한 부분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설정된 공통 부분 손실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공통 임계값은 상품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함

- ▾ Council Directive (EU) 2019/2235는 군대에 대한 특정 공급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 공동 방위 노력을 촉진하고 EU의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군대에 대한 특정 공급품의 부가가치세 및 기타 소비세를 면제함
 - EU 활동을 위해 수행되는 방위 노력에 참여할 때,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가 면제됨

- ▾ Council Directive (EU) 2020/1151는 알코올 및 알코올성 음료에 대한 소비세 구조의 조화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 개인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와인 및 맥주에 대해서도 소비세 면제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알코올성 음료의 소비세 면제에 대한 균형을 맞춤

- ▾ 법안 초안은 위 지침 사항을 포함하여, 기업이 소비세 상품 면제 가능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조회하는 오픈 디지털 액세스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마. EU 권고사항을 반영한 CFC Rule 개정안 관보 게재

[조세동향 21-06호]

- ▾ 덴마크 정부는 2021년 6월 3일,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EU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2016/1164) 제7조 및 제8조의 이행을 위한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6월 9일 해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³⁴³⁾
 - ▶ 제7조는 특정 외국법인 과세제도(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³⁴⁴⁾ 적용 대상 외국

343) IBFD, "Denmark Adopts Changes to CFC Legislation," 2021, 6,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4_dk_1.html, 검색일자: 2021. 6. 17.

344) CFC 제도는 저세를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

법인에 대한 규칙이며, 제8조는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Computation of controlled foreign company income)에 대한 규칙임³⁴⁵⁾

▣ 기존에 존재하던 CFC 제도를 기반으로, 다음의 사항을 추가함

- ▶ 외국 자회사가 금융회사인 경우 배당금, 이자, 로열티 같은 수동소득이 총소득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CFC Rule이 적용됨³⁴⁶⁾
- ▶ CFC 적용 대상에는 법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함
 - 즉, 덴마크 모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 및 지분율에 관계 없이 경제적·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자회사를 포함함
- ▶ CFC 수입의 정의에는 지식재산권(IP) 등의 기타 수입이 포함되며,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부분 실체 검사(Partial substance test)를 거쳐 CFC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³⁴⁷⁾
 - 외국 자회사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중요한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과거에 수행했어야 함
 - 외국 자회사는 덴마크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세 목적상 거주해야 함
 - 덴마크 모회사는 해당 외국 자회사와 관련하여 실체 테스트를 사용해야 함을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이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부분 실체 검사와 그 조건은 과도한 CFC 제도의 적용을 배제함과 동시에, 덴마크 과세 기반의 침식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또한, 모회사에 필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덴마크 세무당국의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함

▣ 채택된 법안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과세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임

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함

345) European Union Anti-Tax Avoidance Directive (2016/1164) (ATAD) (2016)

346) 덴마크 법률 정보시스템, “Lov om ændring af selskabsskatteoven og fondsbeskatningsloven,”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1/1180>, 검색일자: 2021. 6. 17.

347) EY, “Danish Government revises proposed CFC legislation,” <https://taxnews.ey.com/news/2021-0841-danish-government-revises-proposed-cfc-legislation>, 검색일자: 2021. 6. 17.

4 독일

가. 세법개정안 2020 승인

[조세동향 21-01호]

- ▣ 독일 의회는 2020년 12월 18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2020 세법개정안을 승인함³⁴⁸⁾

 - ▶ 전자 인터페이스 운영자를 위한 전자상거래 VAT 세부 규칙의 개정
 - ▶ 중소기업의 사업자산에 대한 투자공제의 확대
 - ▶ 고용주에게 부여된 코로나 특별 혜택에 대한 연장

- ▣ EU의 VAT 전자상거래 패키지 지침의 완전 적용을 포함한 VAT 개정안

 - ▶ 해당 전자상거래 지침은 상품의 원거리 판매 및 특정 국내상품 공급과 관련된 조항이며 이는 공급자와 비과세 소비자 간 상품판매에 대한 VAT 보고 및 지불 의무가 포함됨³⁴⁹⁾
 - ▶ 이러한 사항은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OECD 보고서³⁵⁰⁾의 정책들의 방향과 일치함

- ▣ 중소기업의 사업자산에 대한 투자 공제를 확대함

 - ▶ 세법개정안의 투자공제 개정에 의하면 사업자산 비용의 50%를 공제할 수 있고 사업 목적을 위한 사용 요건이 완화되어 50%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투자공제 가능
 - 종전의 투자비용 공제의 경우 사업자산 비용의 40%를, 사업자산의 사용 용도가 사업 목적을 위한 사용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취득 또는 제조 이전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었음

348) IBFD, "German Parliament Approves Annual Tax Ac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 solver/static/tns_2020-12-17_de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20solver/static/tns_2020-12-17_de_1), 검색일자: 2021. 1. 25.

349) IBFD, "Detailed VAT e-commerce rules for electronic interface operators-publishe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12-02_e2_1.html, 검색일자: 2021. 1. 25.

350) OECD(2019), "OECD report on role of digital platforms for collecting VAT," <http://www.oecd.org/tax/consumption/the-role-of-digital-platforms-in-the-collection-of-vat-gst-on-online-sales.pdf>, 검색일자: 2021. 1. 25.

- ▶ 고용주가 부여받았던 특별 코로나 혜택에 대한 면세가 연장됨³⁵¹⁾
 - ▶ 고용주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500유로³⁵²⁾까지 부여한 특별 코로나 혜택에 대한 면세가 2021년 6월 30일로 연장됨
 - ▶ 코로나 조세 감면법에 의해 도입된 단기 근로 및 계절별 단기 근로에 대한 고용주의 보조금에 대한 일시적인 면세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됨

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법상 즉시상각 허용 발표

[조세동향 21-02호]

- ▶ 독일 재무부 장관은 2021년 1월 21일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법상 즉시상각을 허용할 예정임을 발표함³⁵³⁾
 - ▶ 민간 차원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컴퓨터와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의 감가상각에 대해 내용연수 기간을 통한 상각이 아닌 구입 시 즉시상각을 허용함
 - 컴퓨터 하드웨어와 표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존에는 3년간의 내용연수를 통해 정액법(straight-line)으로 상각했음(표준화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사례에 따라 판단함)
- ▶ 본 감가상각 관련 세법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
 - ▶ 해당 시행안은 2021년 1월 21일 발표되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구매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상각에도 허용되어 시행안 발표일 전까지의 구매분에도 소급 적용됨
- ▶ 세법 개정안은 의회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5년간 조세수입을 115억유로³⁵⁴⁾ 줄일 것으로 추정됨

351) PWC, "German Bundesrat approved Finance Bill 2020," <https://blogs.pwc.de/german-tax-and-legal-news/2020/12/28/german-bundesrat-approves-finance-bill-2020/>, 검색일자: 2021. 1. 20.

352) 2021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201만원임

353)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101 Number 4, "Germany Allows Immediate Write-Off Of Computers and Software," 2021

354) 2021년 2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5조 4,428억원임

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3차 세제지원법안 의결

[조세동향 21-03호]

- ▼ 독일 연방국회는 2021년 2월 26일 제3차 「코로나19 세제지원법(Drittes Corona- Steuerhilfegesetz)」안을 의결함³⁵⁵⁾
 - ▶ 본 법안은 최종적으로 2021년 3월 17일 공포됨³⁵⁶⁾
 - ▶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특히 피해를 입은 특정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요식업과 돌봄서비스업종(Restaurant-und Verpflegungsdienstleistungen)에 대해 19%에서 7%로 인하된 부가가치세를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제1차 코로나19 「조세지원법」으로 7%로 인하된 뒤, 제2차 「조세지원법」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로 완화된 바 있음
 - ▶ 2021년도에 대한 소득세의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상한액 또한 개인과 부부에 대하여 각각 500만유로³⁵⁷⁾에서 1천만유로,³⁵⁸⁾ 1천만유로에서 2천만유로³⁵⁹⁾로 확대함

라. 「담배세법」 현대화 개정안 연방내각 통과

[조세동향 21-03호]

- ▼ 독일 연방내각은 2021년 3월 24일 연방재무부가 발의한 「담배세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Tabaksteuergesetzes)을 의결하여 연방참사원에 송부함³⁶⁰⁾

355) 독일 연방재무부, "Drittes Gesetz zur Umsetzung steuerlicher Hilfsmaßnahmen zur Bewältigung der Corona-Krise (Drittes Corona-Steuerhilfegesetz),"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1-03-17-Drittes-Corona-Steuerhilfegesetz/4-Verkuendetes-Gesetz.pdf?__blob=publicationFile&v=2, 검색일자: 2021. 3. 18.

356) 기민(여당)/기사당 및 시민당으로 이루어진 재정위원회(Finanzausschuss)에서 발의함

357)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7억원임

358)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4억원임

359)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8억원임

360) 독일 연방정부, "Entwurf eines 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Tabaksteuergesetzes," 독일의 담당행정부에서 발의한 법률안을 담당부서안(Referentenentwurf)이라고 함. 내각심의·연방참사원·연방의회·다시 연방참사원을

- ▶ 「담배세법」 현대화 개정안에는 2022~2027년까지의 전자담배에 대한 신규 과세와 기존 담배세 인상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존 담배세의 과세 대상이라 함은 쥘련, 엽쥘련, 각련, 파이프담배를 말함
- ▶ 전자담배(erhitzter Tabak)는 현재까지 법적으로 파이프담배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mg 단위인 니코틴 소모 물질에 대하여 kg단위로 과세되어 세수가 현저하게 낮았음
 - 개정 전 니코틴 물질은 1kg당 1만 5,66유로³⁶¹⁾에 추가적으로 소매가격의 13.13%가 과세되며, 최소세율은 1kg당 22유로³⁶²⁾임
- ▶ 정부는 본 개정안을 통해 세수 확대, 담배세수의 예측 정확성 확보, 니코틴 소비 감소를 통한 공중보건 증진을 달성하고자 함
 - 전자담배가 특히 밀수, 개인반입 등으로 징세가 어려운 각련에 대한 대체재로 유력하기 때문에 세입 증대와 세입집계가 정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됨
- ▶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2022년부터 약 12억 4,300만유로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II-3〉 「담배세법」 현대화 개정안을 통한 예상 세수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상세수	12억 4,300만유로	17억 9,500만유로	25억 6,500만유로	30억 3,900만유로	35억 3,800만유로
	약 1.6조원	약 2.4조원	약 3.4조원	약 4.5조원	약 4.7조원

자료: 독일재무부, “「담배세법」 현대화 개정 연방정부안,”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II/19_Legislaturperiode/2021-03-24-TabStMoG/2-Regierungsentwurf.pdf?__blob=publicationFile&v=2, 검색일자: 2021. 3. 24.

- ▾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전자담배에 대한 신규 과세와 기존 담배에 대한 점진적 세율 인상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 ▶ 전자담배(erhitzter Tabak, 신규)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담배세율이 적용되며 파이프담배 세율에 추가적으로 쥘련담배세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과 파이프담배세를 적용했을 때의 세액의 차이를 합산한 값임

거처 통과되면 법률로 확정됨(<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themen-im-bundeskabinettergebnisse-1880224>, 검색일자: 2021. 3. 24.)

361)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만원임

362)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원임

- 2022년 7월 1일부터는 소모품으로 쓰이는 니코틴 물질에 또한 추가적인 소비세가 부과됨
- 니코틴 물질에 부과되는 세율은 2023년까지 0.02유로³⁶³⁾/mg, 2024년부터 0.04유로/mg³⁶⁴⁾가 적용됨
- ▶ 쾰런(Zigaretten)에 대한 소비세 인상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행 1개피당 9,82센트³⁶⁵⁾에 추가적으로 소매가의 21.69%를 부과하던 것을 2027년 2월 14일 이후부터는 최종 목표세율인 1개피당 11,11센트³⁶⁶⁾에 추가적으로 소매가의 21.44%를 부과하는 것임
- ▶ 엽쾰런(Zigarren und Zigarillos)에 대한 소비세 인상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행 1개피당 1,4센트³⁶⁷⁾에 추가적으로 소매가의 1.47%를 부과하던 것은 유지하나 1개피당 5,760센트³⁶⁸⁾였던 최소세율을 2023년 1월 1일부터 7,504센트³⁶⁹⁾로 인상하는 것임
- ▶ 각련(Feinschnitt)에 대한 소비세 인상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행 1kg당 48.49유로³⁷⁰⁾에 추가적으로 소매가의 14.76%를 부과하던 것을 2027년 2월 14일부터 최종 목표세율인 1kg당 57.60유로³⁷¹⁾에 추가적으로 소매가의 17.26%를 부과하는 것임
- ▶ 파이프담배(Pfeifentabak)에 대한 소비세 인상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행 1kg당 15.66유로³⁷²⁾에 추가적으로 소매가의 13.13%를 부과하는 것은 유지하나 1kg당 22유로인 최소세율을 2023년 1월 1일부터 26유로³⁷³⁾로 인상하는 것임

363)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7원임
 364)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4원임
 365)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1원임
 366)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8원임
 367)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원임
 368)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6원임
 369)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원임
 370)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만 5천원임
 371)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 7천원임
 372)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만원임
 373) 2021년 3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4천원임

마. 조세회피와 불공정 세금경쟁 방지법안 제출

[조세동향 21-03호]

- ▼ 독일 연방재무부는 2021년 2월 15일 조세회피와 불공정한 세금경쟁 방지법안과 기타 관련 법의 개정안을 내각심의회에 제출함³⁷⁴⁾
- ▶ 조세회피와 불공정한 세금경쟁 방지법안의 목적은 EU 이사회에서 협의된 조세분야 비협조국 목록에 대한 규제와 EU 이사회의 “기업 대상 과세에 있어서의 대책위원회 (Code of Conduct Group)”가 마련한 조치를 국내 입법화하는 것임

 - 국제적으로는 EU 이사회의 정책과 방향성을 맞추는 조치이고 국내적으로는 2009년 제정된 「조세회피방지법(SteuerhinbekG)」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기본법」에 대하여 설정했던 규제들을 본 신규법안으로 신설하여 산발적으로 제정된 규정(Vorschriften)들을 대체하고자 함
 - EU법의 연방법령화를 통해 EU에서 마련한 제재의 강제성을 강화하여 조세 투명성과 BEPS의 최소 기준 충족을 추구하고 불공정 조세경쟁을 보다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짐
- ▶ 조세회피와 불공정한 세금경쟁 방지법은 제3장 방지 조치(Abwehrmaßnahme)에서 EU 이사회가 국내 입법화를 제안한 네 가지 제재 모두를 반영함

 - 블랙리스트 지역의 업무 제휴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지출공제 제한
 - 블랙리스트 지역에서 개인이 10% 이상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여가 있는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국내 공제 제한
 - 조세 협력적 지역 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 적용
 - 블랙리스트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업 관련 이익배당분 공제혜택(Schachtelprivileg) 제한

374) 독일 연방재무부, “Gesetz zur Abwehr von Steuervermeidung und unfairem Steuerwettbewerb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https://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_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1-02-15-StVermeidAbwG/0-Gesetz.html, 검색일자: 2021. 3. 22.

바. 「법인세법」 현대화 개정안 연방내각 심의결의

[조세동향 21-04호]

- ▶ 독일 연방재무부는 2021년 3월 24일 「법인세법」 현대화 개정안을 내각심의회에 제출함³⁷⁵⁾

 - ▶ 2022년 1월 1일부터 인적회사인 가족기업(Familienunternehmen)이 자본회사처럼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상의 “선택권(Option)”과 제3국에서 기업형태 전환을 조세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인적 회사는 투과과세 단체로서 주주에 대한 실제 배당과는 관계 없이 회사의 이익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자동으로 개인주주에게 부과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제1a조의 신설을 통해 가족기업의 전형적인 형태인 파트너십 형태의 합자회사(KG) 또는 개방형 합명회사(OHG)³⁷⁶⁾도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배당세(Kapitalertragsteuer)상에 있어서 「기업전환세법(UmwStG)」³⁷⁷⁾상 철회 불가한 자본회사로 형태 전환을 한 것으로 여겨짐
 - 과세방식 전환은 “선택 연도” 바로 앞의 종료된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이때 전환으로 발생하는 직전 연도에 대한 결손금 세액공제액 환급은 불가함
 - 자본회사가 인적회사로 과세될 수 있도록 하는 “역선택권(Rückoption)” 또한 「법인세법」 제1a조 제4항에 마련하였으며, 과세 적용시기는 인적회사의 자본회사 전환 때와 같음
 - ▶ 2021년 12월 31일 이후부터 해외의 주주 대출과 관련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환손실을 영업지출로 공제할 수 있음
 - ▶ 「기업전환세법」의 “인격”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EU/EEU 밖의 제3국으로 확대하여 기업들이 제3국에 있는 자회사와의 합병, 분할 및 기타 구조조정 업무 또한 조세 중립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75) 독일 연방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1-04-19-KoeMoG/0-Gesetz.html, 검색일자: 2021. 4. 20.

376) 자본인적회사(GmbH & Co. KG)와 파트너회사(PartG)도 포함되며 개인회사(GbR)와 투자펀드(Investmentfonds)만 제외됨

377) 독일에서 기업의 합병, 분할, 재산의 승계, 회사형태의 변경은 「상법(Handlungsgesetzbuch)」이 아닌 「기업전환법(Umwandlungsgesetz)」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된 징세의 근거는 「기업전환세법(Umwandlungssteuergesetz)」에 마련되어 있음

사. 「부동산세 개혁법」 이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 제출

[조세동향 21-04호]

- ▶ 독일 연방재무부는 2021년 3월 22일 「부동산세 개혁법」 이행을 위한 「가치평가법」, 「부동산세법」 관련 개정안을 내각심의회에 제출함³⁷⁸⁾

 -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11일 통일 이전의 동서 격차가 조정되지 않은 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초래한 불평등한 부과체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부동산세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를 명령한 바 있음
 - ▶ 개혁된 부동산세 관련 조치들은 「부동산세 개혁법(GrStRefG)」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2025년 1월 1일 정상 적용을 목표로 함
 - ▶ 새로운 부동산세 과표를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가치 측정(Hauptfeststellung)이 2022년 1월 1일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관련 법의 부재로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규정을 신설함
 - 「부동산세 개혁법(GrStRefG)」에 경제단위로서의 부부와 동거인, 농림산업 종사자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이를 「가치평가법(BewG)」 제26조, 제34조 제4~6항의 정의로 임시 대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 더불어, 새로운 부동산 가치측정 과표가 마련되기까지 공정한 과세를 위해 도입한 지역별, 거주형태별, 건축 연도에 따른 평방미터당 순임대료³⁷⁹⁾ 산정 기준표를 최신화함³⁸⁰⁾
 - 순임대료 산정기준표 도입 당시 2014년도 연방통계청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데, 현재 2018년도 인구조사 데이터가 발표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이후에도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아울러 주거급여 등 주거보장 정책 집행에 있어 순임대료의 지역별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 수준표의 편차 보정률도 최신 데이터에 따라 수정되었음³⁸¹⁾

378) 독일 연방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1-04-22-GrStRefUG/0-Gesetz.html, 검색일자: 2021. 4. 20.

379) 독일에서 순임대료(Nettokaltmiete)란 난방비, 전기세 등의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은 임대료를 뜻함

380) 「가치평가법(BewG)」 부록39 표 1.

381) 전국 지역공동체의 순임대료 평균값을 7개 수준으로 나누고 수준(Mietstufe)3을 전국 평균으로 함.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州) 내에서도 블룸베르크(Blumberg)는 임대료 평균이 구간 1에 해당되는 반면,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인 튀빙겐(Tübingen)은 구간 7에 해당됨

〈표 II-4〉 평균 순임대료 수준에 따른 편차 보정률의 기존안과 개선안 비교표¹⁾

(단위: %)

평균 임대료 수준	기존안	개선안
1	- 22,5	- 20,0
2	- 10,0	- 10,0
3	+/- 0	+/- 0
4	+ 10,0	+ 10,0
5	+ 20,0	+ 20,0
6	+ 32,5	+ 30,0
7	+ 32,5	+ 40,0

주: 1) 지역별로 책정되는 평균 순임대료 수준에 따라 주거보장수당을 보정하여 지급함
 자료: 연방 인터넷 법률정보, 「가치평가법」 부록 39(Bewertungsgesetz Anlage 39), http://www.gesetze-im-internet.de/bewg/anlage_39.html, 검색일자: 2021. 4. 28.

- 「부동산세법(Grundsteuergesetz)」의 「가치평가법(BewG)」 제249조 제1항 제1~4목에 해당하는 건축물³⁸²⁾ 대한 세율을 0.34%에서 0.31%로 인하함³⁸³⁾

아. 「부동산취득세법」 개정

[조세동향 21-05호]

- ▶ 독일 연방재무부가 발의한 「부동산취득세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21일 연방국회에서 가결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됨³⁸⁴⁾
 - ▶ 독일 사회에서는 한 법인 내의 주주 간 수익증권 거래(Share deal)를 통한 부동산취득세 우회가 빈번하여 심각한 문제였고 2019년부터 대책 마련에 착수해 왔음
 - ▶ 이러한 부동산취득세 우회는 특히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가 고가의 부동산을 이전할 때 많이 남용되고 있었으므로 인적회사의 지분변경에 관한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함

382) ① 단독주택(Einfamilienhäuser), ② 두가구주택(Zweifamilienhäuser), ③ 주거용임대부동산(Mietwohngrundstücke), ④ 주택소유권(Wohnungseigentum)

383) 정확한 인하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384) 독일 연방재무부,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erwerbsteuergesetzes," 2021. 5. 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1-05-17-G-Aenderung-GrunderwerbStG/0-Gesetz.html, 검색일자: 2021. 5. 26.

- ▣ 인적법인의 지분구조를 이용한 법인 내 부동산 양도에 과세하기 용이하도록 조건을 수정함

 - ▶ 기존 법령에서는 기존 주주 구성의 95%가 새로운 주주로 재구성되는 경우 회사 소유 부동산이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이 비율을 90%로 낮춤
 - ▶ 거래되는 역내 부동산이 회사자산이 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 과세한다는 조건을 10년 이내인 경우로 대폭 확장함

- ▣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이미 5년이 지난 경우와 2021년 7월 1일 전의 지분 변경에는 해당되지 않음

자. 제160차 세수추계 결과 발표

[조세동향 21-05호]

- ▣ 연방재무부 소속 세수추계위원회(Arbeitskreis Steuerschätzungen)는 2021년 5월 12일, 2021~2025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세수추계를 발표함³⁸⁵⁾, ³⁸⁶⁾

 - ▶ 2021~2025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 세제지원 정책으로 인해 약 830억유로³⁸⁷⁾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추계치보다 100억유로³⁸⁸⁾ 증가한 4,236억유로³⁸⁹⁾의 총세입을 전망함

385) 독일 연방재무부, "Scholz: „Wir sind auf Kurs und können durchstart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05/2021-05-12-ergebnisse-der-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1. 5. 26.

386) 독일 연방재무부는 통상 5월과 11월 두 차례 세수추계를 발표함. 세수추계는 연방재무부를 축으로 하여 연방에너지부, 5대 경제연구소,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 재무부 및 기초자치단체 전국연합회가 함께 산정함

387) 2021년 5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3조 6천억원임

388) 2021년 5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조 6,891억원임

389) 2021년 5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9조 7,317억원임

〈표 II-5〉 2021년 5월 제160차 세수추계 결과¹⁾

(단위: 억유로,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계
연방정부	293.8 (3.8)	314.6 (7.1)	330.9 (5.2)	344.2 (4.0)	356.2 (3.5)	-
주정부	324.6 (2.6)	339.5 (4.6)	352.4 (3.8)	367.9 (4.4)	381.0 (3.6)	-
기초자치단체	112.5 (4.7)	116.0 (3.1)	122.9 (6.0)	129.8 (5.6)	135.3 (4.3)	-
유럽연합 ²⁾	42.7 (30.1)	42.0 (-1.5)	42.3 (0.5)	43.5 (2.9)	45.1 (3.7)	-
총세입	773.5 (4.6)	812.1 (5.0)	848.4 (4.5)	885.4 (4.4)	917.5 (3.6)	4,236.8

주: 1) () 안은 직전 추계치 대비 증감률이며, 2021~2025년 해당 수치는 추정치임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자료: 독일 연방재무부, "Ergebnis der 160.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2021. 5. 1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sitzung-arbeitskreis-160-steuerschaetzung.g.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1. 5. 26.

▾ 본 세수추계는 코로나19 위기를 안정적으로 대응한 결과 예견되는 2025년까지의 경제 성장에 근거하였음

- ▶ 명목GDP의 예상 성장률은 2021년 +5.3%, 2022년 +5.2%, 2023~2025년 +2.6%임
- ▶ 수익 의존 세금항목의 중심적 세목인 사업 및 투자소득(UVE)³⁹⁰⁾이 2021년도에 12.9%의 가파른 성장을 한 후에도 2022년(5.4%)과 2023~2025년(각 2.8%)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차. 「원천징수세 감면 절차 현대화법」 발효

[조세동향 21-06호]

▾ 독일 연방재무부가 지난 2020년 11월 20일 발의했던³⁹¹⁾ 「원천징수세 감면 절차 및

390) 가계, 기업, 국가의 배당금, 임대료, 지대, 이자로부터 얻은 모든 소득을 말함

39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12호, 2020, "독일-원천징수세액 감면 절차 현대화 법안 초안 발표,"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1003Ny9_0&rs=/viewer/result/kiTrend/202101///, 검색일자: 2021. 6. 21.

자본소득세 원천공제인증서에 대한 현대화법(AbzStEntModG)이 수정을 거쳐 연방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021년 6월 8일부터 발효됨³⁹²⁾

- ▶ 독일 정부는 해당 법을 통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을 받는 제한 납세의무자의 자본소득(Kapitalertrag)과 「소득세법(EStG)」 제50a조에 해당되는 소득³⁹³⁾에 대한 원천징수세 감면 신청 절차를 단순화 및 디지털화함

- 독일 정부는 디지털화 작업을 위하여 일회성 집행비용으로 약 4,517만유로³⁹⁴⁾가 소요되며 시스템 정착 후에는 연간 약 147만유로³⁹⁵⁾의 집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 연방국회 재정위원회의 수정을 거친 최종 법안에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본소득세 의무전자신고 항목 확대와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관련 추가 규정이 포함됨

- ▶ 「소득세법」 제45b~c조를 수정하여 제한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무제한 납세의무자에게도 자본소득세 신고 시 인증되지 않은 자본소득세에 대한 정보, 면제된 세금공제액에 대한 정보, 세금공제를 위한 통합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45a조 제7항에 자본소득세 원천공제 확인서 발급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 「소득세법」 제50c조를 신설하여 자본소득에 대한 선택적 약식 원천징수 절차(Kontrollmeldeverfahren) 삭제, 면세확인서(Freistellungsbescheinigung) 발급 후 세금 신고 내용 변경 또는 면세액 환급의 양자택일 규정 삭제, 제한 납세의무자가 설립한 투자펀드에 대한 지불청구자가 면세액을 환급받을 때 추가로 존재하던 절차를 삭제함

- ▣ 또한 이전가격규제 보안을 위한 「기업전환세법(UmwStG)」 개정이 포함됨

- ▶ 「국제조세법(AStG)」 제1-1a조 “이전가격(Verrechnungspreise)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업전환세법(UmwStG)」에 제2조 제5항 “이전가격을 통한 손실상쇄 금지규정”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392) 독일 연방재무부, “Gesetz zur Modernisierung der Entlastung von Abzugsteuern und der Bescheinigung der Kapitalertrag-steuer,”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1-06-08-AbzStEntModG/0-Gesetz.html, 검색일자: 2021. 6. 21.

393) 제한납세의무자(beschränkt Steuerpflichtige)가 국내에서 기술적 특허 및 로열티, 저작권, 문화체육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규정함

394) 2021년 6월 25일 기준 원화환산 시 약 608억 7천만원임

395) 2021년 6월 25일 기준 원화환산 시 약 19억 8천만원임

5 룩셈부르크

가. 이자비용 처리의 세법상 한도 가이드라인 발표

[조세동향 21-02호]

- ▾ 룩셈부르크 세무 당국은 2021년 1월 8일 이자비용 처리의 세법상 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³⁹⁶⁾

 - ▶ 가이드라인에서는 300만유로³⁹⁷⁾와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3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비용만 세법상 비용으로서 이익에 대해 차감할 수 있음을 밝힘
 - 납세자의 차입비용에는 모든 형태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이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타 비용,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됨
 - ▶ 해당 가이드라인은 EU의 2016 - 조세회피 방지 명령(EU's 2016 anti-tax-avoidance directive)을 준수함
- ▾ 적용되는 이자비용은 금융상품과 파생상품 등에 관련된 이자비용 또한 포함됨

 - ▶ 세법상 한도가 적용되는 이자비용에는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함
 - 금융상품의 발행 및 상환 프리미엄
 - 선물, 옵션 및 스왑 계약을 포함한 파생상품의 차입 비용
 - 관련 자산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본화된 이자 또는 자본화된 이자의 상각
- ▾ 차감에 사용되지 않은 이자비용은 이월규정에 따라 이월됨

 - ▶ 이월 이자비용의 차기 공제는 EBITDA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300만유로 이상의 차입비용이 발생한 납세자만이 해당 이자비용을 이월할 수 있음
 - ▶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할 수 있고, 시간 순으로 먼저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공제함

396) IBFD, "Luxembourg Clarifies Application of Interest Limitation Rule Under ATA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1-14_lu_1.html. 검색일자: 2021. 2. 3.

397) 2021년 2월 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억 4천만원임

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침 신규 발간

[조세동향 21-03호]

- ▶ 녹셈부르크 과세관청은 2021년 2월 23일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신규 제도에 대한 지침을 발간함³⁹⁸⁾

 - ▶ 특히 기업과 소비자(B2C) 간의 EU 내 전자상거래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규정의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음
 - ▶ 2015년부터 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및 전자 용역 제공에만 적용되었던 VAT MOSS (Mini One-Stop-Shop)를 다른 영역으로 적용범위를 확장한 것임

- ▶ 지침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가능한 국가 등을 규정하고, MOSS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절차적인 변경 등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함

 - ▶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소비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납부되어야 하며, 1만유로³⁹⁹⁾ 이하의 부가가치세는 공급 기업이 설립된 EU 회원국에서 납부할 수 있음
 - ▶ 통합된 부가가치세제도는 재화와 용역의 역외 운송에도 적용되며, 간소화되고 통합된 시스템은 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적용되며, VAT OSS(One-Stop-Shop)⁴⁰⁰⁾를 통하여 EU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음

- ▶ 지침에 따르면 MOSS의 적용범위는 확장되어 모든 유형의 역외 용역 및 원거리 상품 판매에도 적용됨

 - ▶ MOSS의 적용범위는 EU 내의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역외 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수행되는 EU 내 원거리 판매와 특정 국내 판매에도 적용될 것임
 - ▶ 새롭게 적용되는 수입 MOSS 제도는 운송을 통하여 제3국에서 수입된 150유로⁴⁰¹⁾를 초과하지 않는 원거리 상품 판매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398) Portail de la Fiscalité Indirecte, "OSS - De nouvelles règles de TVA entreront en vigueur en juillet 2021," <https://pfi.public.lu/fr/actualites/2020/OSSnr.html>, 검색일자: 2021. 3. 29.; IBFD, "Luxembourg Explains New VAT Rules on eCommerce,"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10_lu_1.html, 검색일자: 2021. 3. 22.

399)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32만원임

400) MOSS 이전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등록 및 신고 프로그램임

401)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만 9천원임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상품의 수입 시점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임

- ▼ MOSS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VAT MOSS 도입 이후에도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은 일정한 기능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임
 - ▶ 부가가치세의 전자 신고 및 납부가 납세자가 등록된 EU 회원국의 MOSS를 통하여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함
 - 모든 MOSS의 거래 내역은 10년간 보유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22유로⁴⁰²⁾ 이하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폐지됨
 - ▶ VAT MOSS의 적용범위 확장의 결과 기존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단일 프로그램으로 작용하며, 2021년 7월 1일 이후에도 일정한 기능은 계속해서 적용됨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정
 -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EU 역외 또는 EU에 용역 공급과 관련한 지불
 - OSS 서비스 제공
- ▼ EU는 2021년 전자상거래(통신, 방송, 전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도입하였고,⁴⁰³⁾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의 지침은 이를 반영한 것임
 - ▶ 유럽위원회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판매 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의무를 단순화하고자 노력하고, 위원회는 두 단계로 나누어 법안 도입 결정을 내림
 - 1단계: VAT MOSS 도입
 - 2단계: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및 플랫폼 등 전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원거리 판매

다. 상호합의 절차(MAP) 실행지침 개정안 발간

[조세동향 21-04호]

- ▼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은 2021년 3월 11일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402) 2021년 3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만 9천원임

403) European Commission, "Guide to the VAT mini One Stop Shop,"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sites/default/files/taxud-2013-01228-02-01-en-ori-00-en.pdf, 검색일자: 2021. 3. 29.

MAP) 실행지침 개정안⁴⁰⁴⁾을 발간하여 상호합의 절차 개시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및 실행 절차를 제공함⁴⁰⁵⁾

- ▶ 지침은 양자조약과 관련한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만을 다루고, 룩셈부르크 국내법과 연관된 쟁점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함
- ▶ 실행지침 개정안은 2017년에 발간한 지침을 대체함
 - 권한 있는 당국의 계약 상대국에 상호합의 절차 개시 요청 사실 통지기한이 4주에서 2개월로 연장됨

▣ 지침은 상호합의 절차 개시가 거부될 수 없는 특정 상황을 제시함

- ▶ 권한 있는 당국은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3개 이상의 관할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상호합의 절차도 관할국이 각각 양자조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허용됨
- ▶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은 조세조약상 신청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신청인의 거주국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될 수 없으며, 지침은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거부할 수 없는 특정 상황을 제시함
 - 상호합의 절차 개시는 신청이 과세관청의 조세조약 또는 국내법에 의한 조세회피 조항을 적용한 결과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거부할 수 없음
 -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따른 조정을 수락하여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대상인 납세자를 위하여 거부할 수 없음
 - 이전 가격(TP)과 관련하여 이중 과세가 가능한 관련 쟁점 사건으로 개시될 수 있음
 - 거주 기업이 계약 상대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하였어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

▣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 시 신청인의 의무와 상호합의 절차와 여타 절차의 동시 여부를 다룸

- ▶ 신청인은 상호합의 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쟁점을 특정해야 하며, 신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특정 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국 또는 양 계약 상대국의 해석을 명시하여야 함

404) Circular L.G.-Conv. D.I. No. 60 of March 11, 2021.

405) Tax Notes International, *Luxembourg Clarifies MAP Access, Implementation in New Guidance*, March 22, 2021, pp. 1599-1600; IBFD, "Luxembourg Administration for Direct Taxes Publishes Circular on Mutual Agreement Procedure Under Luxembourg Tax Treaties," March 15,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15_lu_1.html, 검색일자: 2021. 4. 20.

- 신청인이 상호합의 절차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도록 하며 관련 조약의 특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함
- 룩셈부르크 또는 여타 관할국 법원의 관련 판결이나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상호합의 절차와 국내 소송 절차, 상호합의 절차와 EU 중재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나, EU 조세분쟁해결지침(2017/852)하의 절차가 개시되면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는 개시될 수 없음
- ▣ OECD Action 14 상호검토(peer review process)는 룩셈부르크 상호합의 절차가 최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징수 유예 권한 및 다년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
- ▶ OECD는 Action 14 상호검토에서 룩셈부르크가 최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진행 중인 Action 14 상호검토의 일환으로 상호합의 절차의 개선점을 권고함
 - 2단계 상호검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은 1단계 상호검토에서 식별된 개선점을 거의 다 해결하였으며, 남아 있는 개선점은 양자조약상의 문제로 룩셈부르크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없음
 - 룩셈부르크의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징수 유예 권한이 없으며, 다년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공식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점이 개선점으로 지적됨

6 벨기에

가. 국외 소재 부동산 소득에 대한 평가 기준 초안 발표

[조세동향 21-02호]

- ▣ 벨기에 정부는 2021년 1월 27일 국외 소재 부동산 소득의 과세가격 결정 기준에 대하여 국내 소재 부동산 소득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함^{406), 407)}

406) IBFD, "Belgium Proposes Alignment of Income Rules for Rented and Unrented Buildings," 2021. 2. 12.,

- ▶ 2020년 11월 12일 Comm. v. Belgium (Case C-110/17)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 되면서, EU 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위하여 국내 및 국외 소재 부동산 소득에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 규칙 마련이 필요해짐
 - ▶ 국외 소재 부동산의 가치평가 기준을 국내 소재 부동산의 가치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시장 가치가 아닌 지적 가치(cadastral value)로 평가할 것을 제안함
 - 시장 가치에 따를 경우 실질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지적 가치를 따를 경우 바닥 면적 및 예상 임대료와 같은 여러 요인을 기반으로 세금이 부과됨⁴⁰⁸⁾
 - ▶ 다만, 일부 지적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헥타르(hectare)당 2유로⁴⁰⁹⁾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예정임
- ▼ 국외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는 4개월 이내에 세무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 ▶ 신고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최소 250유로⁴¹⁰⁾에서 최대 3천유로⁴¹¹⁾의 과태료가 부과됨

나. 코로나19 관련 국내 부가가치세 최소 환급세액 기준 완화

[조세동향 21-04호]

- ▼ 벨기에 정부는 2021년 3월 31일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유동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부가가치세 최소 환급세액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을 제정함⁴¹²⁾
- ▶ EU 회원국 내에 설립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수준으로 국내 부가가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12_be_1.html, 검색일자: 2021. 2. 15.

407) KPMG, "Belgium - Income Tax,"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belgium-income-tax.html>, 검색일자: 2021. 2. 15.

408) The Brussels Times, "Belgium fined €2 million over taxation of rental income," <https://www.brusselstimes.com/news/business/140418/belgium-fined-e2-million-over-taxation-of-rental-income/>, 검색일자: 2021. 2. 25.

409) 2021년 2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2,700원임

410) 2021년 2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33만원임

411) 2021년 2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405만원임

412) E justice, "29 MARS 2021. - Arrêté royal modifiant les arrêtés royaux nos 1, 4, 24 et 41 relatifs à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et portant des mesures de soutien en raison de la pandémie du COVID-19," [http://www.ejustice.just.fgov.be/eli/arrete/2021/03/29/2021020715/moniteur%20\(in%20French\)](http://www.ejustice.just.fgov.be/eli/arrete/2021/03/29/2021020715/moniteur%20(in%20French)), 검색일자: 2021. 4. 19.

치세의 최소 환급세액 기준을 완화함⁴¹³⁾

- 2021년 분기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첫 분기 또는 2021년 3월 예정신고의 경우, 기존의 환급세액 기준에는 못 미치나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함
- 법령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 부가가치세 최소 환급세액은 분기별, 월별 예정신고 환급신청 시기에 따라 50유로⁴¹⁴⁾ 또는 400유로⁴¹⁵⁾로 완화됨

〈표 II-6〉 벨기에 부가가치세 최소 환급세액 완화 기준

(단위: 유로)

환급신청 시기	개정 전	개정 후
당해 연도 마지막 예정신고 시	245	50
분기별 예정신고 납세자가 첫 3개 분기에 예정신고 시	615	400
월별 예정신고 납세자가 마지막 월에 예정신고 시	1,485	400
월별 환급이 승인된 월별 예정신고 납세자가 월별 예정신고 시	245	50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월별 예정신고 납세자가 월별 예정신고 시	245	50

자료: News IBFD, “COVID-19 Pandemic: Belgium Lowers Minimum Amounts for Domestic VAT Refund,” April 9,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09_be_1.html, 검색일자: 2021. 4. 19.

-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이 악화된 기업을 위한 각종 여타 조치의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여행사 특별부가가치세 제도 지침(Circular 2020/C/44)의 실행을 연기함
-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이 악화된 기업은 납세기한 연장, 납부지연 이자 및 가산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신청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 ▶ 여행사 특별부가가치세 제도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거래가격에 고정세율(거래의 성격에 따라 6%, 8%, 13% 또는 18%)을 적용하여 결정됨⁴¹⁶⁾

413) IBFD, “COVID-19 Pandemic: Belgium Lowers Minimum Amounts for Domestic VAT Refund,” April 9,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09_be_1.html, (accessed April 19, 2021); EY, “Belgium reduces minimum amounts for domestic VAT refunds,” April 15, 2021, https://www.ey.com/en_gl/tax-alerts/belgium-reduces-minimum-amounts-for-domestic-vat-refunds, 검색일자: 2021. 4. 19.

414)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만 6,900원임

415)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3만 5,800원임

416) IBFD, “Belgium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2. Special Schemes - 12.3. Travel Agents,” April 15,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be_s_12.3.%23evat_be_s_12.3., 검색일자:

- 특별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정의에 따른 여행사에만 적용되는데, 정의규정에 의하면 여행사란, 자신의 이름으로 제3자가 제공한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여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자임
- 여행사 특별부가가치세 제도는 새로운 여행상품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 1월 1일로 제도 도입을 연기함

다. 코로나19 관련 요식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완화

[조세동향 21-05호]

- ▣ 벨기에 정부는 2021년 4월 23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요식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의 일시적인 경감을 제정하는 법령을 승인함⁴¹⁷⁾
 - ▶ 요식업(식사 없이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 출장 뷔페 및 식당 내 소비를 위한 음료의 공급에 대하여 기존 21%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에서 6%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 2021년 5월 8일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 일시적으로 적용됨
 - ▶ 주류의 공급에는 21%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이 계속하여 적용됨
 - 주류의 공급이란, 실질 알코올 농도가 0.5% 이상인 맥주 및 실질 알코올 농도가 1.2% 이상인 기타 음료의 공급을 의미함
- ▣ 상품 및 용역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은 21%, 12%, 6%, 0%로 구분됨⁴¹⁸⁾
 - ▶ 일반 부가가치세율(21%)은 경감 부가가치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적용됨
 - ▶ 경감 부가가치세율의 적용 대상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2021. 4. 27.

417)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DIMINUTION TEMPORAIRE DU TAUX DE TVA DANS LE SECTEUR DE L’HORECA,” 2021. 4. 23., <https://finances.belgium.be/fr/Actualites/diminution-temporaire-taux-tva-secteur-horeca-2021>, 검색일자: 2021. 5. 18.; IBFD, “COVID-19 Pandemic: Belgium Proposes Temporary Reduction of VAT Rates on Restaurant and Catering Services,” 2021. 4.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29_be_1.html, 검색일자: 2021. 5. 18.

418) PWC Worldwide Tax Summaries, “Belgium : Corporate - Other taxes,” 2021. 2. 2., <https://taxsummaries.pwc.com/belgium/corporate/other-taxes>, 검색일자: 2021. 5. 27.

- 12%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은 식물의약품, 특정 가연성 물질, 임대주택 및 특정 개조 공사 등에 적용됨
- 6%의 경감 부가가치세율은 식품 및 일반의약품, 운송 용역, 예술품, 치료용 특정 장치 공급, 저작권 등에 적용됨
- 영세율(0%)은 수출 및 특정 관련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여객 운송 등에 적용됨

라. 코로나19 관련 조세혜택 발표

[조세동향 21-06호]

- ▼ 벨기에 과세관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감 부가가치세율 적용기한 연장,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 공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기업의 신주인수 주주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등의 조세혜택을 발표함

 - ▶ 벨기에 과세관청은 2021년 5월 18일 마스크 등에 대한 경감 부가가치세율 적용 등 각종 조세정책의 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⁴¹⁹⁾
 - 마스크 및 위생용품에 대한 6%의 경감 부가가치세율 적용
 - 임대업자가 2021년 7월, 8월, 9월의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에 대하여 30%의 소득공제 허용
 - 일시적 실업 조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15%의 경감 원천징수세 적용
 - 개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및 중간예납세 미납 시 사회보장부담금, 가산세 등 관련 제재를 적용하지 않고 재납부 계획 가능
 - ▶ 벨기에 과세관청은 2021년 5월 31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 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함⁴²⁰⁾

419) News,Belgium, "Prolongation des mesures de soutien économique jusqu'au 30 septembre 2021," <https://news.belgium.be/fr/prolongation-des-mesures-de-soutien-economique-jusquau-30-septembre-2021>, 검색일자: 2021. 6. 28.; IBFD, "COVID-19 Pandemic: Belgium Extends Application of Reduced 6% VAT Rate for Face Masks and Hydroalcoholic Gels," 2021. 5.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31_be_1.html, 검색일자: 2021. 6. 17.

420) MyMINFIN, "Circulaire 2021/C/50 sur les mesures COVID-19 pour le paiement des cotisations sociales d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https://eservices.minfin.fgov.be/myminfin-web/pages/fisconet/document/71a8e085-4285-4865-ba2b-b9f111c9bd21>, 검색일자: 2021. 6. 28.; IBFD, "COVID-19 Pandemic: Belgium Clarifies Deductibility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for Self-Employe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3_be_2.html, 검색일자: 2021. 6. 17.

- 2020년도 사회보장부담금의 납부기한은 1년 연장되며 이를 2021년도에 납부한 경우 경감 가능함
- 사회보장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 개인납세자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되며, 2022년도 사회보장부담금은 2020년도, 2021년도의 사회보장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될 것임
- 2020년도 사회보장부담금을 2021년에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는 12개월의 분할 납부가 가능함
- ▶ 벨기에 과세관청은 2021년 6월 14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의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2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정책의 적용기한을 연장함⁴²¹⁾
 - 2020년 3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받은 기업의 신주를 인수한 거주 및 비거주 주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주인수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20%의 세액공제가 허용됨
 - 한도는 10만유로⁴²²⁾이며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주주는 제외됨
 - 이러한 조치의 적용기한은 2021년 1월 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8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함
- ▣ 벨기에 정부는 2021년 6월 7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보장부담금 경감, 미판매 수제 맥주에 대한 소비세 환급 등의 조치를 담은 법안을 제정함⁴²³⁾
- ▶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주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장부담금이 2021년 7월 1일부터 경감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경감액은 근로자 5인당 2,400유로⁴²⁴⁾임
 - 심각한 영향을 받은 근로자란, 2021년 첫 분기의 업무량이 2020년 첫 분기의 50% 미만이거나 2020년도 마지막 분기의 업무량이 2019년도 마지막 분기 업무량의 50%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421) IBFD, "COVID-19 Pandemic: Belgium Announces Temporary Tax Reductions for Individuals Acquiring New Shares in Affected Companies," 2021. 6.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14_be_2.html, 검색일자: 2021. 6. 17.

422) 2021년 7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400만원임

423) De Kamer, "PROJET DE LOI portant des mesures de soutien temporaires en raison de la pandémie du COVID-19," <https://www.dekamer.be/FLWB/PDF/55/2002/55K2002001.pdf>, 검색일자: 2021. 6. 27.; IBFD, "COVID-19 Pandemic: Belgium Propose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Reductions and Other Measures," 2021. 6.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9_be_1.html, 검색일자: 2021. 6. 17.

424) 2021년 6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3만 5천원임

▶ 미판매 수제 맥주에 대한 소비세를 환급함

-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 사이에 저장고에 투입되고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교체된 수제 맥주에 적용되며, 자세한 환급 절차는 추후 제정하는 법령에서 정함
- 수제 맥주는 저장고 등에 담아 판매하는 특성상 소비를 위하여 저장고에 투입되는 시점에 소비세가 부과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 등으로 맥주를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교체해야 하고 교체 시 다시 소비세 납부 의무가 있어 이 경우의 소비세를 환급하는 것임

7 스웨덴

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법안 초안 발표

[조세동향 21-03호]

▼ 스웨덴 정부는 2021년 3월 16일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법안 초안을 발표함⁴²⁵⁾

- ▶ 스웨덴 재무부장관은 탈세에 대한 EU 지침 이행의 일환으로, 국가 간 세법 차이로 인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국경 간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무역거래 관련 법안을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함
 - 혼성불일치 거래에 대한 OECD BEPS Action 2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응방안을 입법화함
- ▶ 스웨덴 무역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특정 외국법인의 경우, 거주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웨덴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함
 - 특정 외국법인은 스웨덴 무역회사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을 의미함
- ▶ 해당 법안은 2021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임

425) 스웨덴 정부, "Förslag om förstärkta åtgärder mot gränsöverskridande skatteplanering till riksdagen,"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1/03/forslag-om-forstarkta-atgarder-mot-gransoverskridande-skatteplanering-till-riksdagen/>, 검색일자: 2021. 3. 22.

나. 개인의 수리 작업 및 자산 임대에 관한 세제혜택 발표

[조세동향 21-05호]

- ▼ 스웨덴 정부는 2021년 4월 30일,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개인의 수리 작업 및 자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함⁴²⁶⁾

 - ▶ 스웨덴은 2017년 1월 1일부터 특정 제품의 재사용을 장려하고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리 작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자전거, 신발, 가죽 제품, 의류 및 가정용 린넨 등의 수리
 - 해당 상품에 대한 모든 종류의 수리 작업에 대해서는 기존 25%에서 13%p 인하된 12%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⁴²⁷⁾

- ▼ 컴퓨터와 관련된 상품 등의 수리 작업도 VAT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수리 작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하기로 함

 - ▶ 컴퓨터 및 정보기술기기,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등과 관련된 작업의 수리 및 유지보수에 관해서도 부가세 감면 정책을 적용하기로 함
 - ▶ 추가 법안의 발의로 해당 제품의 수리 작업뿐 아니라, 작업과 관련된 조언 및 감독 등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용역에 포함됨
 - 다만, 해당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배송료는 배송서비스가 수리 작업의 일부인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됨

- ▼ 개인 자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적용함

 - ▶ 기존에는 개인 자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직접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하였으나,⁴²⁸⁾ 신규 법안의 발의로 임대소득이 2만SEK⁴²⁹⁾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가 과세됨

426) IBFD, "Sweden Proposes Tax Reduction for Repair Work and Tax-Free Amount for Rental of Personal Assets," May 6,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06_se_1.html, 검색일자: 2021. 5. 14.

427) 스웨덴 국세청, "Reducerad skattesats på reparationer av vissa varor,"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360638.html?date=2017-02-15&q=+reparera++beskatta>, 검색일자: 2021. 5. 27.

428) 스웨덴 국세청, "Uthyrning av bil, båt och liknande,"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1.7/371698.html?q=+hyra+av+personliga+tillg%C3%A5ngar>, 검색일자: 2021. 5. 27.

429) 2021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9만원임

▶ 제안된 법안은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8 스위스

가. 「외채시장 강화안」 의결

[조세동향 21-04호]

- ▶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2021년 4월 14일 회기에서 외채시장과 다국적 대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스위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외채시장 강화안(Stärkung des Fremdkapitalmarkts)」을 의결함⁴³⁰⁾
 - ▶ 국내 발행 채권에 대한 배당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세(Verrechnungssteuer)를 대안 없이 폐지함
 -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지금까지 해외에서 이루어지던 채권 발행이 향후 스위스로 유인 되어 스위스 외채시장이 강화되고 기업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더불어, 해외에 거점을 둔 다국적 대기업의 배당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신고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령을 개정함
 -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이 조치가 기업에 세금감면 효과를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지만 유동성 방해 요인을 제거해줌으로써 기업들에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함
 - ▶ 국채에 대한 국내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매상세(Umsatzabgabe)⁴³¹⁾를 폐지함
 -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이에 따라 국내 증권 중개인을 통해 국채를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 ▶ 스위스 정부는 배당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폐지의 최초 시행 시 1억프랑⁴³²⁾의 세수를,

430) 스위스 연방평의회, “Verrechnungssteuergesetz, Stärkung des Fremdkapitalmarkts,” <https://www.parlament.ch/de/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i?AffairId=20210024>, 검색일자: 2021. 4. 20.

431) 매상세는 국내의 증권업자에 의해서 거래되는 국내와 외국의 유가증권 구입과 판매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임. 국내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1.5%가 부과되고 외국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3%가 부과됨

432) 2021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16억원임

국채에 대한 수익세 폐지는 매년 2,500만프랑⁴³³⁾의 세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정책은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촉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행 5년차에는 세수의 자기금융(selbstfinanzierend)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나. 의무 건강보험료 직접세 공제 한도 인상안 제출

[조세동향 21-06호]

- ▣ 스위스 연방내각은 2021년 6월 11일, 연방의회에서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인상된 의무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연방직접세⁴³⁴⁾에서 의무 건강보험료와 산업 재해보험료의 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함⁴³⁵⁾
 - ▶ 부부는 기존 3,500프랑⁴³⁶⁾에서 6천프랑⁴³⁷⁾까지, 그 외 납세자는 기존 1,700프랑⁴³⁸⁾에서 3천프랑⁴³⁹⁾까지, 어린이와 간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한도액이 기존 700프랑⁴⁴⁰⁾에서 1,200프랑⁴⁴¹⁾으로 인상됨
 - ▶ 동시에 기존에 존재하던 의무 가입금액을 넘어서는 추가 건강보험 또는 생명보험 상품이나 저축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함
 - ▶ 해당 조치를 통해 스위스 연방직접세 세수는 연간 2억 9천만프랑⁴⁴²⁾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433) 2021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4억원임

434) 스위스의 의무 건강보험료는 연방직접세인 소득세에서 원천납부됨

435) 스위스 연방재무부, "Abzug für die Krankenkassenprämien soll erhöht werden," https://www.efd.admin.ch/efd/de/home/das-efd/nsb-news_list,msg-id-83929.html, 검색일자: 2021. 6. 21.

436)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0만원임

437)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0만원임

438)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9만원임

439)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9만원임

440)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6만원임

441)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8만원임

442)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71억원임

9 스페인

가. 금융거래세와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조세동향 21-02호]

▶ 스페인 재무부는 1월 11일 금융거래세와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해 납부기한의 연장을 발표함⁴⁴³⁾

- ▶ 2020년 첫 분기에 의결된 금융거래세와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함
 - 금융거래세는 시가 총액이 10억유로⁴⁴⁴⁾ 이상인 스페인 기업의 주식 매입액에 대해 0.2%가 부과되며, 매월 징수된 후 차월 10~2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함
 - 디지털서비스세는 국내와 해외 총수입의 합계액이 7억 5천만⁴⁴⁵⁾유로를 초과하고, 스페인 국내에서의 수입이 300만유로⁴⁴⁶⁾를 초과하는 대기업들의 수익(revenue)의 3%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1분기 징수분에 대한 납부기한은 4월이고, 상반기 징수분에 대한 납부기한은 7월까지임

▶ 납부기한의 연장 이유는 해당 세금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의 승인 절차와, 납세자들이 새로운 세금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임

- ▶ 납부기한의 연장은 발표되었지만, 정확한 지급 일정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음

나. 코로나19 관련 추가 세제지원 조치

[조세동향 21-04호]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3월 13일, 2021년 1분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443) Bloomberg, "Spain Delays Financial Transaction Tax, Digital Tax Payment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384PB60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lCl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ZTZiYWE3MmE3NzRjMmUzYjk4YmU1MTJiMDU3NDU3NGYiXV0-1677e4496d46b8ef0d7ab62b7e2b3879a0972a98&bna_news_filter=daily-tax-report, 검색일자: 2021. 2. 8.

444) 2021년 2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347억원임

445) 2021년 2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10억 2,500만원임

446) 2021년 2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억 410만원임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납부 유예와 자금 조성 등의 추가 조치를 승인함^{447), 448)}

- ▶ 추가 조치는 기존의 법안(Royal Decree-Law 35/2020 of 22 December 2020)에 포함되며 승인 당일 즉시 발효됨⁴⁴⁹⁾

▣ 자본 재확보 기금(a recapitalization fund)⁴⁵⁰⁾과 관련하여 공증인, 부동산 또는 상업 등록기관이 관여하는 경우에 한해 국세, 지역 또는 지방세 등을 면제함

- ▶ 면제 대상은 관계기업을 자본화하거나 재무구조 조정을 위해 수행하는 자본증자 또는 기여금 등을 포함하여 기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식 양도, 기업 운영 및 파생된 행위 등을 포함함
- ▶ 추가적으로 공증인, 부동산 또는 상업 등록기관이 관여하여 발생한 수수료 또한 면제됨

▣ 재정난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공적 보증 금융거래는 만기일 연장을 공식화하는 공공 행위일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 ▶ 만기일 연장의 선택권은 각료협의회가 정한 약관에 따라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채무 재협상 협정에 사용할 수 있음

▣ 자율납세신고 또는 과세관청이 심사한 세금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기한이 총 6개월 연장됨

-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세금은 납부기한이 연장됨
 -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
 - 2020년 매출액이 601만 121.04유로⁴⁵¹⁾를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로서 납부예정 세금이 총 3만유로⁴⁵²⁾를 초과하지 않을 것

447)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Approves Extraordinary Measures to Support Businesses' Solvency,"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22_es_1.html, 검색일자: 2021. 4. 13.

448) 스페인 정부, "Real Decreto-ley 5/2021, de 12 de marzo, de medidas extraordinarias de apoyo a la solvencia empresarial en respuesta a la pandemia de la COVID-19," <https://www.boe.es/boe/dias/2021/03/13/pdfs/BOE-A-2021-3946.pdf>, 검색일자: 2021. 4. 14.

449) 스페인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조치에 대한 최초 법안은 "Royal Decree-Law 7/2020 of 16 March 2020"임

450) 자본 재확보 기금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스페인의 비금융회사의 요청으로 임시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 부속 기금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규모는 약 10억유로(2021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455억 4천만원)에 달함

451) 2021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0억 8,012만원임

452) 2021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33만원임

- ▶ 기존 조치의 경우 최초 3개월 간 연체이자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4개월로 연장됨

다. 금융거래세 납부기한 두 차례 연기

[조세동향 21-04호]

- ▶ 스페인 국세청은 2021년 3월 27일, 2020년에 신설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함⁴⁵³⁾
 - ▶ 금융거래세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납부기한은 최초 2월이었으나 4월로 한차례 연장되었고 현재 6월 10일에서 20일 사이로 총 두 차례 연장됨
 - 국세청은 향후 추가적인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 금융거래세는 시가 총액이 10억유로⁴⁵⁴⁾ 이상인 스페인 기업의 주식 매입액에 대해 0.2%가 부과되며, 매월 징수된 후 차월 10~2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함

라.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관련 EU 지침 수용 등

[조세동향 21-05호]

-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4월 27일, 상품의 EU 내 원거리 판매와 특정 국내 상품의 공급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 EU의 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 패키지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⁴⁵⁵⁾
 - ▶ EU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은 Directive 2017/2455와 Directive 2019/1995임

453) Bloomberg Tax, "Spain Again Delays Transaction Tax Payment Deadline (1),"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8RFAA08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YWUwNDA3OWY5YTVkOTNkNDk1M2EyMmZiNWQ2ZTZjODciXV0-a8073f285a677124a37d630a64ed6611ca80c41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 검색일자: 2021. 4. 13.

454) 2021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344억원임

455) IBFD, "Government Transposes EU VAT Directives Related to E-Commerce and Further Extends Zero VAT Rate Applicable to Sanitary Products," 2021. 5.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04_es_1.html, 검색일자: 2021. 5. 13.

- ▶ 신규 대책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이 해당 회원국에서 소비되는 경우 목적지 회원국의 과세 원칙이 적용됨

 - ▶ 모든 유형의 기업 대 소비자(B2C) 간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전자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급되는 상품 및 특정 국내 물자의 EU 내 원거리 판매 등을 포함함

- ▶ 또한 전기통신, 방송 및 전자서비스에 대한 기업 대 소비자(B2C) 간 거래에 대해 EU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제도인 원스톱 샵(One Stop Shop: OSS) 제도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

 - ▶ 기업은 하나의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EU 전체에 걸쳐 기업이 제공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포함됨

- ▶ 스페인 정부는 원스톱 샵(OSS)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서비스 종류와 유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일부 개정할 예정임

 - ▶ Régimen exterior de la Unión: EU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가 또는 전문가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 Régimen de la Unión: EU에 설립되었지만 최종 소비자의 회원국이 아닌 기업가 또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EU 내 원거리 상품 판매 및 전자적 인터페이스에 의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특정 국내 상품
 - ▶ Régimen de importación: 제3국 수입물품을 EU 내 원거리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제3국에서 EU로 150유로 이하(소비재 제외)의 물품을 직접 또는 EU에 설립된 중개자를 부가가치세 책임자로 임명하여 판매
 - 이 경우 해당 수입물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받음
 -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적용을 위해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함
 - 판매 등 운영기록에 대해 10년간 보관의무를 가짐
 - 스페인을 유일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국가로 선정한 경우, 판매 등 운영과 관련된 모든 송장(invoice) 등을 발행해야 함
 - 전자적 인터페이스 소유자와 해당 시장에 대해 특정 규칙과 준수 요건이 제공됨

- ▶ 한편, 스페인은 코로나19 관련 위생용품의 부가가치세율을 영세율로 적용하는 시행 조치를 기존 2021년 4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 관련 법령은 Royal Decree Law 7/2021임

10 아일랜드

가.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임시 인하 종료

[조세동향 21-03호]

- ▶ 아일랜드 재무부 장관은 2021년 2월 9일,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임시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⁴⁵⁶⁾
- ▶ 아일랜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23%에서 21%로 임시 인하하였음
 - 아일랜드는 13.5%, 9%의 두 가지 경감세율을 두고 있는데, 동 기간 내에 경감세율 세율은 조정하지 않았음⁴⁵⁷⁾
- ▶ 임시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2021년 3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동일한 23%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 재무부 장관은 표준세율을 임시로 인하하기로 한 당시 정책 목적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체제(Covid Restrictions Support Scheme: CRSS)를 구축하였기에 재무부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힘⁴⁵⁸⁾

456) RTE(Ireland's National Public Service Media), "No plans' to extend reduced VAT rate, Donohoe says," <https://www.rte.ie/news/business/2021/0209/1196095-no-plans-to-extend-reduced-vat-rate-donohoe-says/>, 검색일자: 2021. 3. 16.

457) 그밖에 단일세율 구조를 적용받는 농부, 가축에 대해 5.4%와 4.8%의 특별세율을 적용하나 생략함(아일랜드 재무부, "Current VAT rates," <https://www.revenue.ie/en/vat/vat-rates/search-vat-rates/current-vat-rates.aspx>, 검색일자: 2021. 3. 30.)

458)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체제(Covid-19 Restrictions Support Scheme: CRSS)는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어 소득이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1주에 최대 5천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임(아일랜드 정부, "Covid Restrictions Support Scheme(CRSS)," <https://www.gov.ie/en/covid-19-restrictions-support-scheme/>)

- ▶ 단, 숙박서비스업과 여행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임시 인하 조치는 원안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함⁴⁵⁹⁾
- ▶ 숙박서비스업, 여행업 등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13.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9%의 경감세율을 적용함⁴⁶⁰⁾

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승객용자동차 범위 개정

[조세동향 21-03호]

-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21년 2월 16일 부가가치세 환급(recovery) 대상인 적격 승객용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함^{461), 462)}
- ▶ 승객용자동차(passenger motor vehicle)는 사업용으로 최소 60% 이상 사용된 자동차를 의미함
 - 승객용자동차는 1인용 자동차를 포함하나 16인(운전수 포함) 이상을 운송하기 위한 용도의 자동차, 밴 등은 포함하지 않음
- ▶ 아일랜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등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용자동차에 대해 취득 시 과세된 부가가치세액의 최대 20%를 환급하는 제도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음⁴⁶³⁾
- ▶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156g/km)을 개정하지

//www.revenue.ie/en/self-assessment-and-self-employment/crss/index.aspx, 검색일자: 2021. 3. 18.)

459) RTE(Ireland's National Public Service Media), "No plans' to extend reduced VAT rate, Donohoe says," <https://www.rte.ie/news/business/2021/0209/1196095-no-plans-to-extend-reduced-vat-rate-donohoe-says/>, 검색일자: 2021. 3. 16.

460) 아일랜드 정부, "Minister Donohoe announces Tourism and Hospitality VAT Rate to move to 9% on Sunday," <https://www.gov.ie/en/press-release/a773d-minister-donohoe-announces-tourism-and-hospitality-vat-rate-to-move-to-9-on-sunday/>, 검색일자: 2021. 3. 16.

461) IBFD, "Revenue Updates Definition of "Qualifying Vehicle" Under VAT Partial Recovery Relief for Passenger Motor Vehicl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01_ie_1.html, 검색일자: 2021. 3. 16.

462) 아일랜드 재무부, "Partial recovery of VAT on qualifying passenger motor vehicles(Document last updated February 2021),"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value-added-tax/part03-taxable-transactions-goods-ica-services/Goods/partial-recovery-of-VAT-on-qualifying-passenger-motor-vehicles.pdf>, 검색일자: 2021. 3. 16.

463) 해당 차량의 처분시기에 따라서 납세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음. 동 제도는 구입·수입 등을 통해 취득한 날로부터 24개월 이상 사용한 뒤 처분할 것이라는 전제로 20%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그러나 처분시기가 취득일로부터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기간 이내라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의 2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기간 이내라면 5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기간 이내라면 75%, 6개월 미만 기간 이내라면 전액을 반납해야 함

않았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승객용자동차에 대해 강화된 기준(140g/km)을 적용하도록 개정함

다. 자국 법인세율 유지 방침 발표

[조세동향 21-05호]

- ▾ 아일랜드 재무부 장관은 2021년 4월 21일, 자국의 법인세율을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힘^{464), 465)}
 - ▶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최근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고 다국적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minimum corporate tax rate)을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⁴⁶⁶⁾
 - ▶ 아일랜드 재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자국의 12.5%라는 법인세율은 공정한 수준이며 건전한 조세경쟁 범위 내에 속하므로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자국은 오랜 기간 법인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유지해 왔으며 법인세 인하 경쟁시기에도 인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⁴⁶⁷⁾
 - 또 규모가 큰 국가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는 만큼, 아일랜드와 같은 소규모 국가는 저세율 정책을 활용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함

라.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건설비용 세액공제 한시 완화

[조세동향 21-05호]

-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21년 4월 28일, 코로나19 지원책으로서 연구개발 건설비용 세액

464) 아일랜드 정부, "Speech by Minister for Finance, Paschal Donohoe TD, to Virtual Seminar on International Taxation with the Department of Finance," <https://www.gov.ie/en/speech/3dc0d-speech-by-minister-for-finance-paschal-donohoe-td-to-virtual-seminar-on-international-taxation-with-the-department-of-finance/>, 검색일자: 2021. 5. 10.

465) The Journal.ie, "Paschal Donohoe defends Ireland's corporation tax rate after US treasury secretary's remarks," <https://www.thejournal.ie/exchequer-returns-tax-5402056-Apr2021/>, 검색일자: 2021. 5. 10.

466) Guardian, "Ireland will resist global corporate tax rate, says finance minister,"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1/apr/21/ireland-will-resist-global-corporate-tax-rate-says-finance-minister>, 검색일자: 2021. 5. 10.

467)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기존에 32%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12.5%로 인하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었음 (Deloitte, "Ireland's expensive tax cost in doing business," <https://www2.deloitte.com/ie/en/pages/tax/articles/irelands-expensive-tax-cost-in-doing-business.html>, 검색일자: 2021. 5. 10.)

공제 기준 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한시 조치를 도입함⁴⁶⁸⁾, ⁴⁶⁹⁾

- ▶ 연구개발 건설비용 세액공제는 일정 기준 기간에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이 지출한 건물 건설비용의 최대 2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
 - 적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건물을 건설(기존 건물의 개보수 포함)하였으며 4년의 관련 기준 기간(해당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사업용으로 처음 구입한 날·보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기산) 동안 연구개발 활동용으로 35% 이상을 사용해야 함⁴⁷⁰⁾
 - 해당 건물이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면, 총 건설비용에 그 비율을 곱한 값을 대상에서 제외함
- ▶ 동 조치를 통해 2020 과세연도에 코로나19로 인해 적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기업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기간을 조정함
 - 기준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한시 연장하되, 2020 과세연도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총 4개 과세연도에 적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11 영국

가. DAC 6 보고 범위 축소

[조세동향 21-02호]

- ▼ 2020년 12월 31일 영국과 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서 영국의 EU 강제보고 의무(DAC 6) 범위가 축소됨⁴⁷¹⁾

468) IBFD, "COVID-19 Pandemic: Revenue Provides Extension of Period To Be Eligible for R&D Tax Credit for Costs Incurred on Qualifying Construction Work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29_ie_1.html, 검색일자: 2021. 5. 10.

469) 아일랜드 재무부,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ax Credit,"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income-tax-capital-gains-tax-corporation-tax/part-29/29-02-03.pdf>, pp. 29~30; p. 59.

470) 만일 4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건물을 양도하였거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중단(ceases to be used for R&D)했다면 납세자는 기존에 공제받았던 세액을 전액 반환해야 함. 또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후에도 공제할 수 없음(withdraw any unused tax credits)

- ▶ 영국은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더 이상 EU DAC 6을 적용하지 않으며, OECD의 강제보고규정(Mandatory Disclosure Rules: MDR)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 이에 영국은 국제거래(Cross-boarder arrangement) 중 자동정보교환과 수익적 소유자와 관련된 지표인 Category D에 관해서만 OECD의 강제보고규정에 따라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DAC 6을 적용할 의무가 없음
 - Category D는 투명하지 않은 법적·수익적 소유권 사슬(chain)을 이용한 거래 및 자금 세탁방지법 규정이 강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를 활용한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⁴⁷²⁾
- ▶ 변경사항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소급 적용됨

나.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21-03호]

- ▾ 영국 재무부 장관은 2021년 3월 11일 2021년도 예산안(Budget 2021)을 의회에 제출함⁴⁷³⁾
 - ▶ 법인세 기본세율 인상,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한시 연장, 설비기계·장치에 대한 즉시상각 한시 적용,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 완화 조치 종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법인세 기본세율을 2023년 4월 1일부터 19%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함^{474), 475)}
 - ▶ 영국은 재원 확보와 자국 법인세제의 국제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기본 세율을 25%로 6%p 인상하기로 함

471) 영국정부, "The International Tax Enforcement (Disclosable Arrangements) (Amendment) (No. 2) (EU Exit) Regulations 2020," <https://www.legislation.gov.uk/ukxi/2020/1649/contents/made>, 검색일자: 2021. 3. 2.; KPMG, DAC 6-Significant reduction in scope of the UK implementation, <https://home.kpmg/uk/en/home/insights/2021/01/tmd-dac6-significant-reduction-scope-of-the-uk-implementation.html>, 검색일자: 2021. 2. 18.

472) 삼일회계법인, "Samil Global Tax Update," https://www.pwc.com/kr/ko/publications/global_tax_update/samil_pwc_global-tax-update_mar2020.pdf, 검색일자: 2021. 2. 19.

473) 영국 정부, "Budget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dget-2021-documents/budget-2021-html>, 검색일자: 2021. 3. 19.

474) 영국 정부, "Budget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dget-2021-documents/budget-2021-html>, 검색일자: 2021. 3. 19.

475) KPMG UK, "Corporation tax rate to increase to 25 percent," <https://home.kpmg/uk/en/home/insights/2021/03/tmd-corporation-tax-rate-to-increase-to-25-percent.html>, 검색일자: 2021. 3. 15.

- 영국 정부는 자국의 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G7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힘
 - ▶ 25%의 기본 세율은 매출액이 25만파운드⁴⁷⁶⁾를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매출액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
 - 매출액이 5만파운드⁴⁷⁷⁾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율(small profits rate) 19%를 적용함
 - 매출액이 5만파운드 이상 2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를 두기로 함
 - ▶ 영국 정부는 약 70%의 기업에 세율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함
- ▣ 2020/21, 2021/22년도에 발생한 사업결손(trade loss)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함⁴⁷⁸⁾
- ▶ 기존 제도는 사업결손을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은 전년도로 소급(carried-back)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ied-forward)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해왔음
 - ▶ 2020/21년도와 2021/22년도에 발생한 사업결손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2년 더 추가하여 3년으로 연장함
 - 2021년도 예산안은 소급공제에 대해서만 임시조치를 두고 이월공제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두지 않음
 - 결손금 소급공제를 전년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에 한도를 두지 않되, 전전년도와 전전전년도에 적용하는 경우 연간 200만파운드⁴⁷⁹⁾를 한도로 함
- ▣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신규 투자한 설비기계·장치에 대해 130% 또는 50%를 즉시상각할 수 있는 특례를 두기로 함⁴⁸⁰⁾

476)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8,994만원임

477)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798만원임

478) IBFD,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 1.5. Losses (Last Reviewed: 3 March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a_uk_s_1.5.1.#gtha_uk_s_1.5.2, 검색일자: 2021. 3. 18.

479)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억원임

480) 영국 정부, "New temporary tax reliefs on qualifying capital asset investments from 1 April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ew-temporary-tax-reliefs-on-qualifying-capital-asset-investments-from-1->

- ▶ 영국은 설비·기계장치를 종류에 따라 기본그룹과 특별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각각 18%, 6%의 상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제도를 운영해왔음⁴⁸¹⁾
 - 기본그룹(main rate pool)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설비·기계장치를 포함함
 - 특별그룹(special rate pool)은 내용연수가 장기(25년 이상⁴⁸²⁾)인 것, 건물·구조물의 일부인 종합구조물 등을 포함함
- ▶ 기업의 설비투자를 진작하기 위해 기본그룹에 대해서는 130%(기존 18% 적용 대상), 특별그룹에 대해서는 50%(기존 6% 적용 대상)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한도 없이 즉시 상각할 수 있도록 함
 - 동 특례는 해당 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중고품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
- ▼ 숙박·관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시 감면 조치를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함⁴⁸³⁾, ⁴⁸⁴⁾
 - ▶ 2020년 7월 8일부터 숙박·관광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5%의 세율로 과세하는 감면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동 조치는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함
 - ▶ 또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2.5%의 세율로 과세하는 추가 감면 조치를 도입함
 - ▶ 2022년 4월 1일부터는 기존과 같이 20%의 표준세율로 과세할 예정임
- ▼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 과세 기준을 2020년 7월부터 일시 완화하였으나 2021년 10월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하기로 함⁴⁸⁵⁾, ⁴⁸⁶⁾

april-2021/new-temporary-tax-reliefs-on-qualifying-capital-asset-investments-from-1-april-2021, 검색일자: 2021. 3. 18.

481) 영국 정부, “Work out your capital allowances,” <https://www.gov.uk/work-out-capital-allowances/rates-and-pools>, 검색일자: 2021. 3. 18.

482) 영국 「자본공제법(Capital Allowances Act 2001)」, Section 91.

483) IBFD, “United Kingdom Extends 5% Reduced VAT Rate for Hospitality Industry Through September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3-04_uk_4#tns_2021-03-04_uk_4, 검색일자: 2021. 3. 18.

484) 영국 정부, “Introduction of a new reduced rate of VAT for hospitality, holiday accommodation and attraction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tion-of-a-new-reduced-rate-of-vat-for-hospitality-holiday-accommodation-and-attractions/introduction-of-a-new-reduced-rate-of-vat-for-hospitality-holiday-accommodation-and-attractions>, 검색일자: 2021. 3. 18.

485) 영국 정부, “Stamp Duty Land Tax,” <https://www.gov.uk/stamp-duty-land-tax/residential-property-rates>, 검색일자: 2021. 3. 18.

- ▶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는 잉글랜드·북아일랜드에서 일정 한도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동산거래세임
- ▶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이 크게 침체하자 영국 정부는 2020년 7월 8일부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 과세기준 금액을 인상하고 1개의 과세구간 및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일시적 완화 조치를 도입함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과세기준 금액을 기존 12만 5천파운드⁴⁸⁷⁾에서 50만파운드⁴⁸⁸⁾로 인상했으며 과세구간을 기존 5단계(0%, 2%, 5%, 10%, 12%)에서 4단계(0%, 5%, 10%, 12%)로 조정했음
- ▶ 영국 정부는 해당 조치로 인해 새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중 약 90%가 인지세 전액을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함⁴⁸⁹⁾
- ▶ 2021년 10월 1일부로 완화 조치를 전면 종료하고 다시 기존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본래 4월 1일부터 완화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거용 부동산 관련 사업 및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함
 - 과세기준 금액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는 25만파운드,⁴⁹⁰⁾ 2021년 10월 1일부터는 기존과 같은 12만 5천파운드로 함

〈표 11-7〉 영국의 주거용 부동산 인지세

(단위: %, 파운드)

~2020. 7. 7.		2020. 7. 8.~2021. 6. 30.		2021. 7. 1.~2021. 9. 30.		2021.10.1.~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125,000	0	~500,000	0	~250,000	0	~125,000	0
125,001~250,000	2					125,001~250,000	2
250,001~925,000	5	500,001~925,000	5	250,001~925,000	5	좌동	5

486) 영국 정부, "Extension of the temporary increase to the Stamp Duty Land Tax nil rate band for residential properti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tension-of-the-temporary-increase-to-the-stamp-duty-land-tax-nil-rate-band-for-residential-properties/extension-of-the-temporary-increase-to-the-stamp-duty-land-tax-nil-rate-band-for-residential-properties>, 검색일자: 2021. 3. 19.

487)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9,490만원임

488)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7,972만원임

489) 영국 정부, "Budget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dget-2021-documents/budget-2021-html#fnref:129>, 검색일자: 2021. 3. 19.

490)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8,986만원임

〈표 II-7〉 의 계속

(단위: %, 파운드)

~2020. 7. 7.		2020. 7. 8.~2021. 6. 30.		2021. 7. 1.~2021. 9. 30.		2021.10.1.~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과세구간	세율
925,001~1,500,000	10	좌동	10	좌동	10	좌동	10
1,500,000 초과	12	좌동	12	좌동	12	좌동	12

자료: 영국 정부, “Stamp Duty Land Tax,” <https://www.gov.uk/stamp-duty-land-tax/residential-property-rates>, 검색일자: 2021. 3. 18.

▶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을 2021년 4월 6일부터 1만 2,570파운드,⁴⁹¹⁾ 고세율 과세 기준 금액을 5만 270파운드⁴⁹²⁾로 인상하기로 함⁴⁹³⁾

▶ 세율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와 같은 개정내용은 2025/26년까지 적용함

〈표 II-8〉 영국의 개인소득세

(단위: %, 파운드)

구간	세율	과세기준 금액		
		2020/21	2021/22	2022/23~2025/26
기본 공제액	0	12,500	12,570	좌동
기본 세율	20	12,501~50,000	12,571~50,270	좌동
고세율	40	50,001~150,000	50,271~150,000	좌동
추가 세율	45	150,000 초과	좌동	좌동

자료: 영국 정부, “Income 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https://www.gov.uk/guidance/income-tax-and-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 검색일자: 2021. 3. 18.

다. 부동산 인지세 과세지침 공표

[조세동향 21-04호]

▶ 영국 정부는 2021년 3월 15일, 비거주자에 대해 주거용 부동산 인지세를 2%p 추가 과세

491)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60만원임

492) 2021년 3월 3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840만원임

493) 영국 정부, “Income 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https://www.gov.uk/guidance/income-tax-and-national-insurance-contributions>, 검색일자: 2021. 3. 18.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인지세 과세지침」을 공표함⁴⁹⁴⁾

- ▶ 영국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세를 조정하고 영국 거주자들의 주택취득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주거용 부동산 인지세 추가 과세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예산안(Budget 2020)에서 동 규정을 확정함
 - 추가 과세율에 대해 초기에는 1%p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⁴⁹⁵⁾ 집권 보수당이 2019년 조기 총선에서 3%p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바,⁴⁹⁶⁾ 2020년 예산안에서 2%p로 최종 결정함⁴⁹⁷⁾
- ▶ 비거주자가 2021년 4월 1일 이후 구매한 주거용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며, 부동산 인지세법상 비거주자는 아래와 같은 자들을 포함함⁴⁹⁸⁾
 - 공동구매자(자연인 또는 비자연인): 구매자 중 한 명이더라도 비거주자라면 모든 구매자를 비거주자로 간주함
 - 개인: 거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83일 이상 영국에 체재하지 않은 경우
 - 기업: 영국 「법인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법인인 경우
- ▶ 단, 구매자가 이후 「부동산 인지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추가(surcharge) 납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거래일 전후 2년 이내⁴⁹⁹⁾에 속하는 연속 365일 중 최소 183일 이상 영국에 체재해야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공동구매자의 경우 모든 구매자가 개인이어야만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494) 영국 정부, "Stamp Duty Land Tax Manu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stamp-duty-land-tax-manual/sdlm09730>, 검색일자: 2021. 4. 12.

495) 영국 국세청, "Stamp Duty Land Tax: non-UK resident surcharge consultation(February 2019),"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77877/NRSDLT_Consultation_web.pdf, 검색일자: 2021. 4. 12.

496) 영국 보수당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런던 소재 신축주택 구매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그중 13%가 비거주자였다고 함(영국 보수당, "Stamp Duty Land Tax surcharge for non-UK residents to make housing fairer," <https://www.conservatives.com/news/stamp-duty-land-tax-surcharge-for-non-uk-residents-to-make-housing-fairer>, 검색일자: 2021. 4. 12.).

497)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Spring 2020 Budget: key property announcements SDLT,"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24-4007?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24-4007?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 검색일자: 2021. 4. 12.

498) 주거용 부동산 인지세는 영국 잉글랜드·북아일랜드 지역에 소재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함

499) 거래일로부터 364일 이전부터 거래일로부터 365일 이후까지가 대상임

라. ▶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 중지

[조세동향 21-05호]

- ▼ 영국 국회는 4월 13일,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등의 기준금액 인상을 중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1 예산안을 수정 승인함⁵⁰⁰⁾

 - ▶ 영국 재무부는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고세율 과세기준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을 지난 3월 제출했으나, 국회는 2020/21년 기준 금액을 2025/26년까지 유지·적용하도록 결정함⁵⁰¹⁾

12 이탈리아

가. ▶ 2021년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1-01호]

- ▼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 12월 30일 2021년도 예산안을 관보에 게재함⁵⁰²⁾

 - ▶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도입함
 - ▶ 기업의 법인세, 개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 조세와 관련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함
- ▼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2021/22 회계연도에 이루어질 영업자산 및 R&D 활동에 대한 투자로 확대함⁵⁰³⁾

500) 영국 국회, "Budget 2021: personal allowance & higher rate threshold,"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186/>, 검색일자: 2021. 5. 13.

501) 영국 재무부가 제출한 기존 예산안의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1-03호, 2021을 참조

502) 이탈리아 재무부, "Legge di Bilancio 2021," <https://www.mef.gov.it/focus/Legge-di-Bilancio-2021/>, 검색일자: 2021. 1. 27.; News IBFD, "Italy Enacts Tax Measures to Relaunch Economy in Budget Law for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1-18_it_1.html, 검색일자: 2021. 1. 19.

503) IBFD, "Budget Law for 2021: Italy Extends Application of Several Tax Credits and Incentiv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1-18_it_2#tns_2021-01-18_it_2, 검색일자: 2021. 1. 27.

- ▶ 이탈리아 내 거주기업과 고정사업장이 이탈리아 내에 위치한 공장이나 시설에 사용될 새로운 유형자산에 대하여 투자한 경우 자산 유형, 취득비용, 취득시기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⁵⁰⁴⁾
 - 이는 기존의 세제혜택 제도를 수정한 것으로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적용함
 - 판매자로부터의 관련 매입 주문 승인과 구매가격의 최소 20%를 실제 지급하는 것 모두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 R&D 개발 활동, 친환경적인 산업 전환, 기술혁신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활동의 유형 및 투자액에 따라 10%에서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 개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임대차 관련 대체세 선택권 및 에너지 효율성 확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연장함⁵⁰⁵⁾
 - ▶ 2021 회계연도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각 회계연도에 최대 4개 주택까지 관련 소득에 대하여 21% 세율이 적용되는 대체세(cedolare secca)를 선택할 수 있음
 - ▶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부동산의 지진 위험 경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로 연장함
 - 다만 2022년에 발생할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4년에 걸쳐 적용될 것임
-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배달 및 포장 음식에 대하여 경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코로나19 관련 상품 및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며 영수증 복권제도의 도입시기를 연기함⁵⁰⁶⁾
 - ▶ 즉시 소비, 배달, 포장을 위하여 준비된 음식의 공급에 대하여 경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함
 - ▶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품 및 용역에 영세율(0%)을 적용함

504) IBFD, "Budget Law for 2020-details of corporate income tax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01-15_it_1#tns_2020-01-15_it_1, 검색일자: 2021. 2. 3.

505) IBFD, "Budget Law for 2021: Italy Confirms Additional Earned Income Credit,"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1-18_it_3#tns_2021-01-18_it_3, 검색일자: 2021. 1. 27.

506) IBFD, "Budget Law for 2021: Italy Introduces Zero VAT Rate on Supplies of Vaccines and Diagnostic Equipment Related to COVID-19 Pandemic,"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1-18_it_4#tns_2021-01-18_it_4, 검색일자: 2021. 1. 27.

- 조건을 충족하는 코로나19 진단장비 및 이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
- 공인된 코로나19 백신 및 이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
- ▶ 영수증 복권의 실행이 2021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1년 2월 1일 발표될 특별 규칙과 함께 과세관청은 새로운 실행일을 발표할 예정임
- 영수증 복권제도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하여 도입될 예정이며, 18세 이상의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과세관청에서 발급받은 복권코드를 보여주면 해당 코드 및 거래내역이 금전등록기를 통해 자동으로 과세관청으로 송신됨⁵⁰⁷⁾
- ▼ 기타 조세와 관련하여 플라스틱세 및 설탕세의 실행시기를 연기하고, 특정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사회보장분담세를 면제함⁵⁰⁸⁾
- ▶ 플라스틱세의 실행시기는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7월 1일로, 설탕세의 실행시기는 2021년 1월에서 2022년 7월 1일로 연기함
- 플라스틱세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에 대하여 1kg당 0.45유로⁵⁰⁹⁾를 부과함⁵¹⁰⁾
- 설탕세란 제조자, 유통업자, 개인 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무료 공급하는 탄산음료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완제품은 1헥토리터(hectoliter)⁵¹¹⁾당 10유로,⁵¹²⁾ 희석 제품의 경우 1kg당 0.25유로⁵¹³⁾임
- ▶ 2021/22 회계연도에 35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사회보장분담세를 면제함
- 35세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최대 36개월 및 연 6천유로⁵¹⁴⁾까지 사회보장분담세를 면제함

507) KPMG, "Italy: Updates on e-invoicing, tax receipt lottery,"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11/tmf-italy-updates-e-invoicing-tax-receipt-lottery-daily-payments.html>, 검색일자: 2021. 1. 27.

508) IBFD, "Budget Law for 2021: Italy Postpones Entry into Effect of Plastic Tax and Sugar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1-18_it_5#tns_2021-01-18_it_5, 검색일자: 2021. 1. 27.

509) 2021년 2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7원임

510) Deloitte - Tax at Hand, "2020 budget law introduces new consumption taxes on plastic and sugar," <https://www.taxathand.com/article/12866/Italy/2020/2020-budget-law-introduces-new-consumption-taxes-on-plastic-and-sugar>, 검색일자: 2021. 2. 2.

511) 1헥토리터(hectoliter)는 100리터(liter)를 의미함

512) 2021년 2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3,490원임

513) 2021년 2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7원임

514) 2021년 1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00만원임

-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최대 12개월(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18개월) 및 연 6천유로⁵¹⁵⁾까지 사회보장분담세를 면제함

나. 디지털서비스세 최종 지침 발간 및 관련 기한 연기

[조세동향 21-01호]

- ▶ 이탈리아 과세관청은 2021년 1월 15일 디지털서비스세 최종 지침을 발간함⁵¹⁶⁾
 - ▶ 지침에서는 디지털서비스세의 적용 대상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 글로벌 총매출이 7억 5천만유로,⁵¹⁷⁾ 이탈리아 내에서의 디지털 서비스의 매출이 550만 유로⁵¹⁸⁾ 이상인 그룹 또는 개별 기업에 적용됨
 - 디지털 콘텐츠, 그룹, 비협조 국가,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자, 타겟광고 등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 ▶ 이탈리아 디지털서비스세는 2020년도 예산안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디지털서비스세와 관련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내 디지털서비스세는 자동으로 폐지될 예정임⁵¹⁹⁾
- ▶ 디지털서비스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나 이탈리아 과세관청은 납부 및 신고기한을 연기함⁵²⁰⁾
 -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후 처음으로 실행하는 2020 회계연도의 디지털서비스세와 관련하여 납부 및 신고기한을 연기함
 - 납부기한 및 월간보고서 제출기한은 매출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2월 16일이며, 2020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2021년 3월 16일로 연기함

515) 2021년 1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00만원임

516) EY, "Italian Tax Authorities issue final guidelines on Digital Services Tax," https://www.ey.com/en_gl/tax-alerts/italian-tax-authorities-issue-final-guidelines-on-digital-servic, 검색일자: 2021. 1. 26.

517) 2021년 1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74억 5,250만원임

518) 2021년 1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3억 8,790만원임

519) Bloomberg Tax, "INSIGHT: Italy Taxes the Digital Economy,"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insight-italy-taxes-the-digital-economy>, 검색일자: 2021. 1. 27.

520) EY, "Italian Government announces deferrals for DST payments for 2020," https://www.ey.com/en_gl/tax-alerts/italian-government-announces-deferrals-for-dst-payments-for-2020, 검색일자: 2021. 1. 20.

- 신고기한 및 연례보고서 제출기한은 매출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의 3월 31일이며, 2020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2021년 4월 30일로 연기함
- ▶ 기업 그룹은 매년 그룹의 대표를 선정해야 하며 대표는 이탈리아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이거나 과세 가능한 자(이탈리아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비협조 국가에서 설립한 과세 가능한 자는 제외함)이어야 함

다. 디지털서비스세 납기일 다시 연기

[조세동향 21-03호]

- ▼ 이탈리아 재무부는 2021년 3월 9일,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 납부와 신고기한을 두 달 더 연장함⁵²¹⁾
 - ▶ 2020 회계연도의 디지털서비스세 납부기한은 기존 3월 16일에서 5월 16일로, 세금 신고기한은 기존 4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각각 연장함
 - ▶ 디지털서비스세는 연간 전 세계 매출이 최소 7억 5천만유로⁵²²⁾이며 이탈리아 내 매출이 최소 550만유로⁵²³⁾인 기업으로, 온라인 광고와 중간 플랫폼을 제공하고 디지털 인터페이스 활동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 디지털서비스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20 회계연도의 납부 및 신고기한을 연기함⁵²⁴⁾
 - ▶ 국회가 2018년 12월 세금을 승인했지만 정부가 시행 규정을 공표하지 않아 당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
 - ▶ 2019년 12월 16일 상원이 통과시킨 2020년 예산안에는 세제 도입방안이 포함됨

521) Taxnotes, "Italy to Postpone Digital Services Tax Deadlines,"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101, MARCH 15, 2021, p. 1451.

522) 2021년 3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74억 5,250만원임

523) 2021년 3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3억 8,790만원임

524) Taxnotes, 상동

라. 추가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수정안 제정

[조세동향 21-03호]

- ▾ 이탈리아 국회는 2021년 3월 2일, 개인 소득세에 대한 추가 근로소득공제 조치를 시행령 제183/2020호(Decree No. 183/2020)으로 제정함⁵²⁵⁾

 - ▶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31일 법령으로 제정된 2021년 예산안에 추가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시행령 제21/2020호에 의한 기본 근로소득 공제액보다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음⁵²⁶⁾
 - 해당 법안은 2021년 2월 26일 법률 제21호와 함께 2021년 3월 1일 관보 제51호에 게재되었음

〈표 11-9〉 추가 근로소득 공제금액

(단위: 유로)

연도	연간 과세소득	추가 공제금액
2021	28,000 이하	1,200
	28,000 ~ 35,000	$960 + 240 \times [(35,000 - \text{과세소득}) / 7,000]$
	35,000 ~ 40,000	$960 \times [(40,000 - \text{과세소득}) / 5,000]$
2020	28,000 이하	600
	28,000 ~ 35,000	$480 + 120 \times [(35,000 - \text{과세소득}) / 7,000]$
	35,000 ~ 40,000	$480 \times [(40,000 - \text{과세소득}) / 5,000]$

자료: IBFD, "Parliament Enacts Amendments to Additional Earned Income Credit,"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05_it_1.html, 검색일자: 2021. 3. 17.

마. 코로나19 관련 추가 세제지원 조치

[조세동향 21-04호]

- ▾ 이탈리아 정부는 2021년 3월 22일,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납세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525) IBFD, "Parliament Enacts Amendments to Additional Earned Income Credit,"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05_it_1.html, 검색일자: 2021. 3. 17.

526) IBFD, "Earned income credits - amendments enacted,"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04-06_it_1, 검색일자: 2021. 4. 5.

위해 추가 긴급 조치를 제공하는 법령 제41/2021호(Decree No. 41/2021)를 관보에 게재함⁵²⁷⁾, ⁵²⁸⁾

- ▶ 해당 법령은 2021년 3월 22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3일부터 시행되었음
- ▣ 과세처분을 일시정지하고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하였으며, 가산세와 이미 정지된 처분 등에 대한 통지기한과 소멸시효를 연장 조치함
 - ▶ 과세관청의 과세처분(납부통지)으로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경우 그 처분을 일시 정지하며 세금납부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함⁵²⁹⁾
 - ▶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된 미납세액(tax debt) 관련 지급명령과 이미 정지된 기타 처분 등에 대해서는 그 통지기한이 12개월 연장되고 소멸시효 또한 24개월 연장됨
 - 위와 동일하게 2019년에 신고한 세금 환급과 관련된 통지기한도 12개월 연장됨
- ▣ 세금채무 정산(settlement of tax liabilities)의 분할납부 기한을 연장 조치함
 - ▶ 법령 119/2018(개정 136/2018)에 의해 도입된 세금채무 정산을 위한 특정 절차 내에서 분할납부 기한이 2020년 분할납부의 경우 2021년 7월 31일까지 연장되며 2021년 분할납부의 경우 2021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됨
- ▣ 2019 회계연도의 과세소득이 3만유로⁵³⁰⁾를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의 가산세로서 5천유로⁵³¹⁾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 조치함
 - ▶ 200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함
- ▣ 세무당국은 적격 납세자와 이탈리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신고 작성 편의를 제공함

527) IBFD, "COVID-19 Pandemic: Italy Gazettes Further Support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26_it_1.html, 검색일자: 2021. 4. 13.

528) 이탈리아 정부, "La riscossione nel periodo di emergenza COVID-19," <https://www.agenziaentrateriscossione.gov.it/it/Per-saperne-di-piu/covid-19/>, 검색일자: 2021. 4. 19.

529) 기존의 조치보다 각각 2개월씩 더 연장되었음

530) 2021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33만원임

531) 2021년 4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72만원임

- ▶ 자격을 갖춘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된 소득세 신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수정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세무당국에 전송할 수 있음
- ▶ 이탈리아 소재 과세 대상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전 작성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2021년 7월 1일부터 수행되는 공급 관련 매출과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원장과 분기별 부가가치세 계산서
 - 2022년 1월 1일부터 수행되는 공급 관련 연간 부가가치세 환급액

바. 코로나19 관련 추가 지원 조치 법률 제정 및 관보 게재 등

[조세동향 21-06호]

- ▶ 이태리아 의회는 2021년 5월 21일, 법령 제41/2021호를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납세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세제 조치를 법률로 제정함⁵³²⁾
 - ▶ 법령 제41/2021호의 기존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과 일정 조건의 납세자의 가산세 취소 조치 등임
 - 해당 법령은 2021년 5월 21일 법률 제69/2021호(Law No. 69 of 21 May 2021)로 전환됨
- ▶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 조치는 특정 사업용 자산 장부가액 상향, 문화예술기업의 세액공제혜택 도입, 면세 가능 현물급여 기준 상향 및 부동산 지방세 분납 취소 등이 있음
 -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진행 중인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특정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회계 목적으로 상향하는 자산 재평가는 2021년 관련 재무제표에 자격 있는 기업에 의해 행사될 수 있으며, 이는 일정한 제한을 받음⁵³³⁾

532) IBFD, "COVID-19 Pandemic: Parliament Enacts Further Support Measures," 2021. 6.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4_it_1.html, 검색일자: 2021. 6. 15.

533) 물가의 현저한 상승이나 자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대로 자산의 가치가 증대된 경우 장부가액의 원가를 고수하기보다 실질가치 파악을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흑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등 조세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고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무상증자 재원이 발생해 주주이익이 확보됨(시사경제용어사전, 「자산재평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9761&cid=43665&categoryId=43665>, 검색

-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토지, 특정 부동산, 설비, 특허, 상표, 영업권 및 기타 무형 자산 등임⁵³⁴⁾
- 자격 있는 기업이란, 이탈리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ITA GAAP)을 채택한 이탈리아 기업과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는 기업을 의미함⁵³⁵⁾
- ▶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연극 및 라이브 공연에 종사하는 기업은 기업활동과 공연 및 이들의 디지털 방식 등의 수행을 위해 2020년에 발생한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2021 회계연도의 직원의 현물급여는 516.46유로(기존 258.23유로)⁵³⁶⁾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됨
- ▶ 기업이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2021년 만기 부동산재산(Imposta Municipale Propria: IMP)에 대한 지방세 1차 분납은, 2019년 대비 2020년 최소 30%의 매출 감소를 겪는다면 취소됨
- ▼ 이탈리아는 또한 2021년 5월 25일, 법령 제73/2021호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납세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세제 조치를 관보에 게재함⁵³⁷⁾
- ▼ 관보의 주요 세제 조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소비에 대한 세금의 시행시기 연기 조치와 명목이자비용공제(ACE)⁵³⁸⁾의 제공 및 기타 세제지원의 연장 등이 있음
- ▶ 적격기업은 2020년 12월 31일의 회계 순 자본 대비 2021년 순 자본의 15%에 해당하는 명목이자율을 공제하는 강화된 명목이자비용공제(ACE)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명목이자비용공제(ACE)란, 기업이 순 자본에서 명목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비용만큼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뜻하며, 이탈리아의 명목이자율은 2019 회계연도 기준 1.3%임⁵³⁹⁾

일자: 2021. 7. 1.)

534) EY, "Italy extends accounting step-up election to financial year 2021," 2021. 5. 26., <https://taxnews.ey.com/news/2021-1080-italy-extends-accounting-step-up-election-to-financial-year-2021>, 검색일자: 2021. 7. 1.

535) 상동

536) 2021년 6월 15일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70만원, 약 35만원임

537) IBFD, "COVID-19 Pandemic: Italy Gazettes Further Support Measures," 2021. 6.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11_it_1.html, 검색일자: 2021. 6. 15.

538) 영어로는 'notional interest deduction'이며 이탈리아어로 'aiuto alla crescita Economica'로 쓰임

539) 딜로이트, "Law decree provides significant enhancements to notional interest deduction regime," 2021. 6. 3., <https://www.taxathand.com/article/18715/Italy/2021/Law-decree-provides-significant-enhancements-to-notional>

- 강화된 ACE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순 자본의 최대 범위는 기업당 500만유로이며, 이에 따라 15%가 적용된 최대 75만유로가 공제 대상임⁵⁴⁰⁾
-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순 자본 상승은 일반적인 ACE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거주자로서 기업은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는 모든 유형의 세금에 대해 사용 가능한 ACE 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음
- 세액공제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반환할 수도 있음
- ▶ 적격기업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적격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의 60%(복잡한 서비스 계약이나 임대계약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대상 기업은 2019 회계연도에 수익이 1,500만유로⁵⁴¹⁾ 이하였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비해 월평균 매출액이 최소 30%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적격기업도 2019년 같은 달에 비해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의 개보수 및 접근성 증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2 회계연도로 확대함
- ▶ 섬유·패션·신발·피혁 업종에 종사하는 적격기업은 회계연도 말 재고금액과 이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재고금액의 차액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적격기업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백신을 포함한 혁신 의약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액은 각 수혜기업에 대해 연간 최대 2천만유로⁵⁴²⁾까지 가능함
- ▶ 개인이 혁신창업기업 및 중소기업(SMEs)의 적격 지분 매각을 통해 실현한 시세차익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됨
- 공제 대상 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식자본청약을 통해 취득되며 최소 3년간 보유된 것에 한함

l-interest-deduction-regime, 검색일자: 2021. 7. 1.

540) 2021년 6월 16일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67억 7,500만원, 약 10억 1,625만원임

541) 2021년 6월 17일 원화 환산 시 약 203억 670만원임

542) 2021년 6월 16일 원화 환산 시 약 270억 9,620만원임

-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식자본청약을 통해 혁신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시세차익을 1년 이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거주기업과 비거주기업에 대한 적격 지분 매각에 대해 개인이 실현하는 자본이익은 개별소득세를 면제함
- ▶ 과세 대상자는 파산 또는 채무불능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게 고객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대손상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 ▶ 2021 회계연도 납세자의 납부세액에 대해 최대 200만유로(이전에는 70만유로)⁵⁴³⁾까지 세액공제액이 확대됨
- ▶ 35세 이하 개인에게 최초 주거지로 적격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주택담보세, 지적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 플라스틱세 시행시기가 2022년 1월 1일(이전에는 2021년 7월 1일)로 연기됨
- ▶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전에는 2021년 4월 30일) 만료되는 과세관청의 지급명령에 따른 세금납부 기한이 일시 정지되었으며, 세금납부는 2021년 8월 2일(이전에는 2021년 5월 31일)까지 단일 분할 상환으로 이행해야 함

사. 설탕세 시행규칙 발표

[조세동향 21-06호]

- ▶ 이탈리아 정부는 2021년 5월 27일, 2020년 예산법에 도입된 가당음료(설탕세)에 대한 세율 시행 규칙을 관보 제125호로 발표함⁵⁴⁴⁾, ⁵⁴⁵⁾
 - ▶ 설탕세는 당 함유 음료 및 농도 1.2% 이하의 알코올 음료의 완제품 및 희석제품에 적용되며 1L당 각각 0.1유로, 0.25유로가 부과됨⁵⁴⁶⁾
 - 부과 대상 음료범위는 HS code 2009호의 과일, 채소 및 콩과의 야채주스, 2202호의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나 향료가 첨가된 물 및 비알코올 음료임

543) 2021년 6월 16일 원화 환산 시 각각 약 27억 1,096만원, 약 9억 4,883만원임

544) IBFD,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ssues Implementing Rules on Sugar Tax," 2021. 6.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1_it_1.html, 검색일자: 2021. 6. 15.

545) 이탈리아 관보, "Imposta di consumo sulle bevande edulcorate," 2021. 5. 27.,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gu/2021/05/27/125/sg/pdf>, 검색일자: 2021. 6. 15.

546) 2021년 6월 1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5원, 약 338원임

- ▼ 해당 규칙은 가당음료 거래에 대한 적격한 설탕세 납부의무자, 설탕세 관련 등록 및 환급 절차 등 기타 적용 가능한 행정 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함
 - ▶ 이탈리아에서 제조업체가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가당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그 제조업체가 설탕세를 납부해야 함
 - ▶ 이탈리아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생산한 가당음료의 경우, 제3자가 이탈리아에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가당음료를 판매했다면 그 제3자가 설탕세를 납부해야 함
 - ▶ EU 회원국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 및 수출에 대한 설탕세는 면제됨

- ▼ 이탈리아 설탕세는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13 포르투갈

가. 2021년도 직접세 관련 예산 법안 수정사항 발표

[조세동향 21-01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1년 1월, 2021년 직접세 관련 예산 법안 수정사항을 발표함⁵⁴⁷⁾

- ▼ 법인세와 관련하여,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차량유지비에 대한 저세율 부과 조항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집행정지를 허용함
 - ▶ 「법인세법」상 저세율 부과 적용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
 - 외부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았을 때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차량 (최소 주행거리 50km 이상, 탄소 배출량 50gm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만 저세율 부과 특례 규정이 적용됨
 - 법인 소유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기타 차량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에

547) IBFD, "Portugal - Direct taxation on Budget Law for 2021: Portugal Modifies the Criteria for the Reinvestment of Gains Obtained from the Sale of Permanent Residence,"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1-01-05_pt_2, 검색일자: 2021. 1. 13.

대하여 더 낮은 자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⁵⁴⁸⁾

- ▶ 코로나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부과 집행정지를 허용함
-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특정 자본이득의 과세 면제에 대한 기준을 수정하고, 본인 소유 가사용 자산을 사업적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과도기적 제도를 도입함
 -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영주권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기로 기준을 수정함
 - 영주권자가 다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 재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어야 함
 - 보험계약에 대한 재투자일 경우, 생명금융보험이어야 함
 - 대상자가 연금 수급자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미혼인 파트너가 과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로 포함되어야 함
 - 특정 자산에 이익을 재투자할 때, 최소 10년 동안 각각의 수혜자에게 정기적으로 투자혜택이 향유되어야 함
 - ▶ 2021년 1월 1일까지 사업용으로 전환된 개인 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 기준이 아닌 기존의 과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됨⁵⁴⁹⁾
 - 해당 자산이 실제로 매각될 경우의 자본이득과 해당 자산이 사업용에서 가사용으로 재전환될 경우 자본이득을 비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나. 항공 및 해상여행에 새로운 탄소세 시행

[조세동향 21-03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1년 2월 16일, 항공과 해상여행에 적용되는 탄소세(Carbon tax, Ordinance No. 38/2021)를 신설함⁵⁵⁰⁾

548) DOI, "The Autonomous Taxation of Corporate Expenses in Portugal," <https://doi.org/10.1515/ael-2019-0023>, 검색일자: 2021. 1. 25.

549) IBFD, "Portugal - Personal Income Tax in the Budget for 2021: Government No Longer Taxes Business-Related Immovable Property When Allocated to Individuals,"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0-10-15_pt_3.html#tns_2020-10-15_pt_3, 검색일자: 2021. 2. 2.

550) IBFD, "Government Implements New Carbon Tax on Air and Sea Travel," <https://research.ibfd.org/#/doc?>

- ▶ 탄소세는 상업용 항공편과 여객선에 승객 1인당 2유로로 산정되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과세됨

- ▣ 항공 여행에 대한 탄소세 부과 대상은 포르투갈 영토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 승객이며, 탄소세 징수 방법은 탄소세를 해당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여 항공사가 대신 징수하는 형태임
 - ▶ 항공사는 다음 달 20일까지 포르투갈 관할 당국(ANAC)에 징수한 탄소세를 전달해야 함
 - ▶ 탄소세가 면제되는 승객 또는 항공편의 대상은 아래와 같음
 - 만 2세 이하의 어린이, 목적지가 마데이라 및/또는 아조레스 자치구인 여객기
 - 기술적, 기상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해 포르투갈 영토에 강제 착륙한 승객
 - 공공서비스 의무에 따른 여객 항공편

- ▣ 해상 여행에 대한 탄소세 부과 대상은 화석연료로 구동되는 여객선으로 포르투갈 본토에 위치한 터미널에 양륙하는 승객에 대해 부과하며, 탄소세 징수방법은 여객선의 연료와 보수(repairing) 시 또는 및 승객들의 승선 또는 하선 시 탄소세를 여행가격에 포함시켜 선박회사가 징수함
 - ▶ 선박회사는 여객선이 항구를 사용한 후 즉시 징수된 탄소세를 포르투갈 항구 당국으로 전달해야 함
 - ▶ 탄소세가 면제되는 승객 또는 여객선의 대상은 아래와 같음
 - 만 2세 이하의 어린이
 - 승무원 교체를 전용으로 하는 입항 여객선
 - 부상자나 사망자의 하선
 - 구조된 사람 및 의료행위가 필요한 승무원 또는 그러한 승객의 입항을 위해 입항하는 여객선
 - 포르투갈 법률로 정한 로로선(Role On Role Off ship)
 - 강 수송(river transport)

다. 코로나19 관련 VAT 납부 완화

[조세동향 21-03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1년 2월 25일,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2020년도 마지막달 또는 분기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⁵⁵¹⁾

 - ▶ 월별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우 기존의 매출 감소 조건과 관계 없이 매 1건당 25유로 이상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3회 또는 6회로 분할하여 가산금 없이 납부할 수 있음
 - 이번 새로운 조치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① 중소기업이거나, ② 문화, 숙박, 식당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거나, ③ 2020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자임
 - ▶ 분기별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우 매 1건당 25유로 이상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3회 또는 6회로 분할하여 가산금 없이 납부할 수 있음

라.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조세동향 21-05호]

- ▶ 포르투갈 정부는 2021년 4월 23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2021년 4월과 5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20년 법인 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 조치하고 이를 Order no. 133/2021-XXII으로 발표함⁵⁵²⁾, ⁵⁵³⁾, ⁵⁵⁴⁾

 - ▶ 월별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용하면서 전년도 (65만유로⁵⁵⁵⁾ 이상의 매출을 이룬 기업의

551)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Eases VAT Payments Related to Last Month or Quarter of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02_pt_1.html, 검색일자: 2021. 3. 18.; 포르투갈 국세청, "DESPACHO N.º 52/2021-XXII," https://info.portaldasfinancas.gov.pt/pt/informacao_fiscal/legislacao/Despachos_SEAF/Documents/Despacho_SEAAF_52_2021_XXII.pdf, 검색일자: 2021. 3. 22.

552)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Extends Submission Deadlines for VAT and Corporate Income Tax Returns," 2021. 4.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26_pt_1.html, 검색일자: 2021. 5. 13.

553) 포르투갈 정부, "DESPACHO 133/2021-XXII," https://info.portaldasfinancas.gov.pt/pt/informacao_fiscal/legislacao/Despachos_SEAF/Documents/Despacho_SEAAF_133_2021_XXII.pdf, 검색일자: 2021. 5. 17.

554) Bloomberg Tax, "Spain Again Delays Transaction Tax Payment Deadline (1)," 2021. 3. 27.,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8RFAA08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lCl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YWUwNDA3OWY5YTUkOTNkNDk1M2EyMmZiNWQ2ZTJjODciXV0-a8073f285a677124a37d630a64ed6611ca80c41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 검색일자: 2021. 5. 13.

555) 2021년 5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억 9,220만원임

2021년 4월과 5월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기존보다 10일 연장되어 각각 6월 20일 및 7월 2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또한 기존보다 10일 연장되어 각각 6월 25일 및 7월 25일까지임⁵⁵⁶⁾

- ▶ 2020년 법인세 신고기한은 기존보다 1달 연장되어 2021년 6월 30일까지임
- ▶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인보이스 서류를 PDF 형식으로만 수용하는 예외적인 조치는 기존에 비해 3개월 더 연장한 2021년 9월 30일까지 수용함

마. 코로나19 관련 소비촉진 프로그램 발표

[조세동향 21-06호]

▣ 포르투갈 재무부 장관은 2021년 6월 7일, 2021년 예산법에 도입된 IVAucher 활용방법을 조례 제119/2021호로 발표함⁵⁵⁷⁾, ⁵⁵⁸⁾

- ▶ IVAucher란,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산업에서의 소비촉진을 위한 임시 프로그램임
 - 소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숙박, 문화 및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누적하고, 향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누적된 금액을 쿠폰(voucher)처럼 사용할 수 있음

〈표 II-10〉 IVAucher 활용방법

구분	기간	활용방법
1단계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 소비자가 해당 기간 동안 숙박, 문화 및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무 당국 웹 사이트를 통해 신고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평가
2단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 1단계에서 평가된 혜택을 사용

자료: IBFD, "Government Announces Deadlines for 'IVAucher' Programme," 2021. 6.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8_pt_1.html, 검색일자: 2021. 6. 15.

556) Diario de Noticias, "Empresas com mais tempo para entregarem IVA e IRC," 2021. 4. 23., <https://www.dn.pt/dinheiro/empresas-com-mais-tempo-para-entregarem-iva-e-irc-13603772.html>, 검색일자: 2021. 5. 17.

557) IBFD, "Government Announces Deadlines for 'IVAucher' Programme," 2021. 6.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8_pt_1.html, 검색일자: 2021. 6. 15.

558) 포르투갈 재무부, "Portaria n.º 119/2021," 2021. 6. 7., <https://dre.pt/application/conteudo/164712120>, 검색일자: 2021. 6. 15.

14 프랑스

가. 법인세율 인하 및 중소기업 경감 법인세율 적용범위 확대

[조세동향 21-01호]

-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12월 30일 관보에 2021년도 예산안을 게재하여 법인세율을 인하고 중소기업 경감 법인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함⁵⁵⁹⁾

 - ▶ 매출이 2억 5천만유로⁵⁶⁰⁾ 미만인 기업의 2021 회계연도의 기본 법인세율은 26.5%, 매출이 2억 5천만유로 이상인 기업의 기본 법인세율은 27.5%임
 - 이에 따라 비거주 기업에 지급한 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6.5%로 경감됨
 - 2020년도에는 매출 2억 5천만유로 미만의 기업의 기본 법인세율은 31%, 매출 2억 5천만유로 이상인 기업의 기본 법인세율은 33.3%, 과세소득의 첫 50만유로⁵⁶¹⁾에 대하여는 28%의 세율이 적용되었음⁵⁶²⁾
 - ▶ 3만 8,120유로⁵⁶³⁾의 이익까지 적용되는 15%의 경감 법인세율의 적용범위를 연 매출이 763만유로⁵⁶⁴⁾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서 1천만유로⁵⁶⁵⁾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으로 확대함

559) Légifrance, “LOI n° 2020-1721 du 29 décembre 2020 de finances pour 2021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753580>, 검색일자: 2021. 1. 26.; News IBFD, France Lowers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Extends Scope of Reduced Rate for SM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1-05_fr_2.html, 검색일자: 2021. 1. 19.

560) 2021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54억 6,250만원임

561) 2021년 2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7,750만원임

562) KPMG, “France: Corporate tax provisions in 2020 Finance Law,”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1/tnf-france-corporate-tax-provisions-enacted-finance-law-2020.html>, 검색일자: 2021. 1. 27.

563) 2021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115만원임

564) 2021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2억 3,830만원임

565) 2021년 1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4억 1,850만원임

나. 새로운 세무 준수 검토 프로세스 도입

[조세동향 21-02호]

- ▣ 2021년 1월 14일 프랑스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세금 확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 세무 준수 검토(Examen de Conformité Fiscale: ECF) 프로세스를 도입함⁵⁶⁶⁾

 - ▶ 세무 준수 검토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외부 감사인이 세법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기업과 외부 감사인 두 주체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짐
 - ▶ 기업은 매출액 또는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예: 세무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세금 준수 검토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 ▶ 검토범위는 전자 회계 파일의 적합성 및 품질, 현금 등록 소프트웨어, 보관 요구사항, 법인세 및 부가세, 상각 등 회계처리와 관련된 10개 항목으로 제한됨
 - ▶ 검토 후 감사인은 검토 수행 보고서를 발행하며,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당국에 보고서를 전자 제출함
 - ▶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다. 과세관청의 소셜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조세동향 21-03호]

- ▣ 프랑스 정부는 2021년 2월 11일 법령(Décret 2021-148)을 제정하여 과세관청에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⁵⁶⁷⁾

 - ▶ 프랑스 과세관청은 소셜미디어와 기타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566) 프랑스 정부, “Décret n° 2021-25 du 13 janvier 2021 portant création de l'examen de conformité fiscale,”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963367>, 검색일자: 2021. 2. 18.; IBFD, France Introduces Voluntary Tax Audit by Private Audito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1-14_fr_1.html, 검색일자: 2021. 2. 18.; KPMG, “France: New tax compliance audit process; increased tax certainty for taxpayers,”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1/01/tnf-france-new-tax-compliance-audit-process-increased-tax-certainty-for-taxpayers.html>, 검색일자: 2021. 2. 18.

567) Légifrance, “Décret n° 2021-148 du 11 février 202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3129895>, 검색일자: 2021. 3. 22.; Tax Notes International, “French Tax Authorities Can Use Social Media Data to Catch fraud,” Volume 101, March 15, 2021, pp. 1445~1446.

개인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음

- ▶ 2020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처음 규정하고 2021년에 법령화한 것임
- ▾ 과세관청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베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적으로 허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무료로 사용하여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잠재적인 조세 포탈을 방지할 수 있음
 - ▶ 이와 같은 새로운 권한은 과세관청이 수집 데이터의 성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텍스트, 이미지, 사진, 비디오 및 기타 개인이 인터넷에 표현한 여러 유형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과세관청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개인정보 데이터뿐만 아니라 직업활동 수행 또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한 데이터까지 포함됨
 - ▶ 과세관청은 개인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등의 경우 거주지와 일치 여부를 위하여 개인의 지리정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 위반으로 결정할 수 있음
- ▾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정보 보유기간이 상이하 며,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데이터에는 과세관청의 접근 권한이 없음
 - ▶ 민감하거나 관련 없는 데이터가 우연히 수집된 경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파기하고, 필요한 데이터는 보안 서버에 수집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저장되며, 기타 다른 데이터는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에 파기됨⁵⁶⁸⁾
 - 다만 형사 및 관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할 수 있음
 - ▶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데이터가 비밀번호로 보호되거나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계정을 생성해야만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함
- ▾ 법령 제정 이전과 비교하여 과세관청의 데이터 접근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과거에도 과세관청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수집 기술 및 도구 등을 개발해 왔음
 - ▶ 법령 제정 이전에 과세관청은 과세관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만을 사용할 수 있었음

568) Décret n° 2021-148 du 11 février 2021 제8항

- 은행 계좌 파일, 자산, 생명보험 계약서 등
- 기타 프랑스 정부 기관 또는 국외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파일
- ▶ 과세관청은 2013년 이후로 데이터 수집 기술과 도구를 개발해왔으며, “위험 분석을 위한 데이터 평가”라고 불리는 자동화된 사기 방지 처리 절차를 운영해 왔고, 과세관청, 데이터베이스, 기타 무료 접근 가능한 저장매체로부터 조세 관련 데이터에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음

▣ 법령에 따른 과세관청의 데이터 접근 및 수집은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 과세관청의 소셜미디어 데이터 접근권을 규정한 2020년도 예산안⁵⁶⁹⁾은 프랑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된 바 있음
- ▶ 법령의 실행으로 여전히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는 이러한 제한은 조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정당하고 비례적”이라고 하였음

라. EU 역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전자신고 도입

[조세동향 21-05호]

▣ 프랑스 정부는 2021년 4월 27일, EU 역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전자신고를 도입함⁵⁷⁰⁾

- ▶ EU 역외 사업자는 프랑스에 등록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전자신고해야 함
 - 세무대리인은 송장 등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는 합계표를 전자신고서에 첨부해야 함

569) Légifrance, “LOI n° 2019-1479 du 28 décembre 2019 de finances pour 2020 (1),”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39793153/, 검색일자: 2021. 3. 22.

570) Légifrance, “Décret n° 2021-507 du 27 avril 2021 modifiant l'article 242-0 Z septies de l'annexe II au code général des impôts relatif aux modalités de dépôt des demandes de remboursement de TVA pour les professionnels non établis dans un pays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2021. 4. 29.,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3426778>, 검색일자: 2021. 5. 18.; IBFD, “France Introduces Electronic Filing for VAT Refund Requests for Non-EU Businesses,” 2021. 5.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10_fr_1.html, 검색일자: 2021. 5. 18.

- 법령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 환급세액이 1천유로⁵⁷¹⁾ 이상인 경우 송장 등 증명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유류 관련 비용과 관련된 경우 기준액은 250유로⁵⁷²⁾임
 - 송장 등 증명자료의 원본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 EU 역외 사업자는 프랑스 내에 본사, 고정사업장 또는 상거소가 없으며 프랑스 내로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음⁵⁷³⁾
 - ▶ EU 역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연도로부터 6월 이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함
 - ▶ EU 역외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신고기간에 따라 50유로⁵⁷⁴⁾ 또는 400유로⁵⁷⁵⁾ 이상인 경우에 환급됨

마. 코로나19 관련 202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조세동향 21-06호]

- ▾ 프랑스 정부는 2021년 6월 2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존 결손금 소급공제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함⁵⁷⁶⁾
 -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은 2020 사업연도⁵⁷⁷⁾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공제액의 한도 없이 향후 5개 연도 동안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거나 5개 연도가 종료되는 때에 환급 신청할 수 있음

571) 2021년 5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6만 8천원임

572) 2021년 5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만 2천원임

573) Légifrance, “Code général des impôts, annexe 2; B: Assujettis établis hors de l’Union européenne (Articles 242-0 Z quater à 242-0 Z decies),”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69569/LEGISCTA000023149895/#LEGISCTA000023149895, 검색일자: 2021. 5. 27.

574) 2021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만 8천원임

575) 2021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4만 5천원임

576) Assemblée nationale,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1,”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l15b4215_projet-loi, 검색일자: 2021. 7. 5.; IBFD, “COVID-19 Pandemic: Government Proposes Temporary Softening of Loss Carry-Back in Amending Finance Bill for 2021,” 2021. 6.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04_fr_1.html, 검색일자: 2021, 6, 16.

577)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회계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를 말함

- 공제액이란, 초과이익(직전 3개 사업연도의 과세이익에서 2020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조세기본법」 제219조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임
 - 공제액을 차감하거나 환급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적용(일반 법인세율은 25%)될 것임
 - 위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려는 기업은 2021년 9월 30일까지 과세관청에 신청해야 함
 - 이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2021년 5월 18일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제도를 완화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며, 권고는 공제액의 한도가 있으나 프랑스는 한도를 없앴⁵⁷⁸⁾
 - ▶ 기존의 제도에 따르면 기업은 직전연도의 과세이익에 대하여 100만유로⁵⁷⁹⁾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가 허용되며, 공제방식은 위 금액을 향후 5개 연도 동안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5개 연도가 종료되는 때에 환급받는 것임(「조세기본법」 제220조의 5)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의 결손금 소급공제액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즉시 환급을 허용하였음⁵⁸⁰⁾
- ▣ 2021년도 수정예산안은 또한 최저 및 중간소득 근로자의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 ▶ 최저 및 중간 소득 근로자가 지급받은 성과급(1천유로⁵⁸¹⁾ 이하 또는 특정한 경우 2천유로⁵⁸²⁾ 이하)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보장분담기여금 면제기한을 연장함
 - 최저 및 중간 소득 근로자란, 소득이 3 SMIC(법정 최저 임금)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1 SMIC는 시간당 10.25유로⁵⁸³⁾임⁵⁸⁴⁾

578)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default/files/communication_on_business_taxation_for_the_21st_century.pdf, 검색일자: 2021. 6. 28.; IBFD, "European Commission Presents ATAD 3, EU Single Corporate Tax Rulebook and Business Tax Agenda for Next Years," 2021. 5.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5-19_e2_1%23tns_2021-05-19_e2_1, 검색일자: 2021. 6. 28.

579) 2021년 6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억 4천만원임

580) Légifrance, "LOI n° 2020-935 du 30 juillet 2020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0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176557>, 검색일자: 2021. 7. 5.

581) 2021년 6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4만 7천원임

582) 2021년 6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9만 5천원임

583) 2021년 7월 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3,700원임

584) Service-Public, "Smic(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300>, 검색일자: 2021. 7. 5.

- ▶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2021년도 554유로⁵⁸⁵⁾ 한도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66%에서 75%로 확대함

15 핀란드

가. 종업원 주식매입제도 개정 및 세법상 거주자 범위 확대

[조세동향 21-01호]

- ▼ 핀란드 정부는 2020년 12월 23일 종업원 주식매입제도에 관한 과세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비상장회사 종업원의 매입 주식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⁵⁸⁶⁾
 - ▶ 단,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종업원은 비상장회사 주식의 수학적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지 않으며, 종업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및 의결권은 회사 지분의 10%를 넘지 않아야 함
 - 수학적 가치는 비상장회사의 조정 순자산 금액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⁵⁸⁷⁾
 - ▶ 종업원 주식매입제도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함
 - 회사는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한 국가 또는 핀란드가 세금정보 교환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여 핀란드 과세 관청의 관련 정보 획득이 가능해야 함
 - 주식매입제도가 실행되는 시점에 회사는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자산은 사업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불함
 - 핀란드 국세청 선납부에 등록된 법인이거나, 선납 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

585) 2021년 6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4만 6천원임

586) IBFD, "Law on Amendments to 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Publishe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23_fi_1.html; 핀란드 의회, "Asian käsittelytiedot HE 73/2020 vp," https://www.eduskunta.fi/FI/vaski/KasittelytiedotValtiopaivaasia/Sivut/HE_73+2020.aspx, 검색일자: 2021. 2. 2.; Finlex, "Tuloverolaki 66 a § (Työsuhteeseen perustuva osakeanti muussa kuin julkisesti noteeratussa osakeyhtiössä)," <https://finlex.fi/fi/laki/ajantasa/1992/19921535#O3L4P66a>, 검색일자: 2021. 2. 3.

587) Finlex, "Lag om värdering av tillgångar vid beskattningen 9 § (Aktiers matematiska värde)," <https://finlex.fi/sv/laki/ajantasa/2005/20051142#L2P9>, 검색일자: 2021. 2. 2.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법인임

▶ 2021년 1월 1일 이후 매입하는 주식부터 적용됨

▾ 핀란드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 「소득세법」에 거주자 정의를 도입하는 법률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세법상 거주기업의 범위가 확대됨⁵⁸⁸⁾

▶ 핀란드에 등록되거나 설립된 법인 및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핀란드에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목적상 핀란드 거주기업으로 간주함

- 기존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았음

▶ 본 법률은 2021년 1월 1일 발효됨

588) IBFD, "Finland Widens Scope of Corporate Tax Residency,"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1-04_fi_2.html, 검색일자: 2021. 1. 20.; IBFD, "Government Proposes Widening Scope of Corporate Tax Residency,"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0-10-02_fi_1#tns_2020-10-02_fi_1, 검색일자: 2021. 1. 20.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가.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법안 통과

[조세동향 21-02호]

- ▶ 뉴질랜드 의회는 2021년 2월 16일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법안을 통과시킴⁵⁸⁹⁾
 - ▶ 코로나19 재기지원금(COVID-19 Resurgence Support Payment: CRSP)제도 신설과 최소 소득가정 세액공제(Minimum Family Tax Credit) 기준 재설정이 조세지원법안에 포함됨

- ▶ 코로나19 재기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은 납세자를 지원하는 조세지원제도이며 뉴질랜드 국세청에서 관리·감독함⁵⁹⁰⁾
 - ▶ 코로나19 경고레벨이 2 이상으로 증가하고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활성화됨
 - ▶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급 대상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최대 30%의 수익 감소를 겪은 기업이어야 함
 - 수익 감소 여부는 재기지원금제도가 활성화되는 시점의 전 6주 동안과 코로나19 이전의 일반적인 수익을 비교하여 계산함
 - ▶ 재기지원금은 기본 금액 1,500뉴질랜드달러⁵⁹¹⁾와 풀타임 근무자(Full-Time Equivalent: FTE) 1인당 400뉴질랜드달러⁵⁹²⁾로 구성됨

589) New Zealand, "Taxation (COVID-19 Resurgence Support Payments and Other Matters) Bill," <https://www.legislation.govt.nz/bill/government/2021/0008/5.0/whole.html#LMS452935>, 검색일자: 2021. 2. 22.

590) IBFD, "COVID-19 Pandemic: Parliament Passes COVID-19 Resurgence Support Payments Bill,"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17_nz_1.html, 검색일자: 2021. 2. 22.

591) 2021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3만원임

592) 2021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만원임

- 재기지원금의 기본금액 외 풀타임 근무자 한도는 2만뉴질랜드달러⁵⁹³⁾로 풀타임 근무자를 50명까지 인정하지만, 풀타임 근무자가 50명 이상인 기업도 재기지원금을 한도까지 받을 수 있음

▶ 2021~2022년 과세연도의 최소소득가정 세액공제 기준을 재설정함⁵⁹⁴⁾

- ▶ 최소소득가정 세액공제는 일하는 가족이면서 연간 세후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족에 주어짐
- ▶ 최소소득가정 세액공제의 자격자는 근로소득자이며, 주당 최소 20시간을 일하는 한 부모가정이나,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하는 부부 등이 해당됨
- ▶ 2021~2022년 과세연도 연간 세후소득 기준금액은 3만 576뉴질랜드달러⁵⁹⁵⁾로 전년도 기준금액 2만 9,432뉴질랜드달러⁵⁹⁶⁾보다 1,144뉴질랜드달러⁵⁹⁷⁾ 증가함

나. 주거용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조세제도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1-04호]

▶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 3월 23일 주거용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함⁵⁹⁸⁾

- ▶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거용 부동산(건축)의 양도소득 과세기준 중 하나인 보유기간 기준을 2021년 3월 27일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여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함⁵⁹⁹⁾

593) 2021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47만원임

594) Inland Revenue, "Types of working for Families payments," <https://www.ird.govt.nz/working-for-families/payment-types>, 검색일자: 2021. 2. 25.

595) 2021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18만원임

596) 2021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24만원임

597) 2021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4만원임

598) 뉴질랜드 재무부, "Government property announcements," <https://taxpolicy.ird.govt.nz/news/2021/2021-03-23-government-property-announcements>, 검색일자: 2021. 4. 13.

599) 뉴질랜드 재무부, "The bright-line property rule," <https://www.ird.govt.nz/property/buying-and-selling-residential-property/the-brightline-property-rule>, 검색일자: 2021. 4. 12.

- ▶ 뉴질랜드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한 보유기간(bright-line test)이 지나기 전에 매각한 경우, 재매각하여 차익을 얻을 의도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경상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
 -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은 적용 대상이 아님
 - 2015년 10월 1일부터 2018년 3월 28일 사이에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의 보유기간 기준은 2년, 2018년 3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6일 사이에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의 보유기간 기준은 5년이었음⁶⁰⁰⁾
 - 단, 소유주가 실거주한 주된 주택,⁶⁰¹⁾ 상속받은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배제함
- ▶ 2021년 3월 27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기간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함
- ▶ 이번 개정안은 구축(existing build)을 대상으로 하며, 신축(new builds)에는 기존과 같은 5년의 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함
 - 신축의 정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논의 중임⁶⁰²⁾

〈표 III-1〉 뉴질랜드의 주거용 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 보유기간 기준

(단위: 년)

구분 ¹⁾ / 취득일	~2015.9.30.	2015.10.1.~2018.3.28.	2018.3.29.~2021.3.26.	2021.3.27.~
구축	규정 없음 ²⁾	2	5	10
신축				5

주: 1) 단 소유주가 실거주한 주된 주택, 상속받은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배제함

2) 뉴질랜드는 납세자가 매각 차익을 얻을 의도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매각이 우발적이었다면 비과세해왔음. 보유기간 기준은 매각의도 판정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규정으로서 2015년 10월 1일에 도입되었음

자료: 뉴질랜드 재무부, "The bright-line property rule," <https://www.ird.govt.nz/property/buying-and-selling-residential-property/the-brightline-property-rule>, 검색일자: 2021. 4. 12.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600) 뉴질랜드는 납세자가 매각 차익을 얻을 의도(purpose or with an intention of disposing of it)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매각이 우발적이었다면(eventual sale) 비과세해왔음. 보유기간 기준은 매각의도 판정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규정으로서 2015년 10월 1일에 도입되었음(ITR, "New Zealand: Government announces measures for taxing gains from sales of residential property," <https://www.internationaltaxreview.com/article/b1f9jqk6bgz3rq/new-zealand-government-announces-measures-for-taxing-gains-from-sales-of-residential-property>, 검색일자: 2021. 4. 23.)

601) 실거주한 주된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주택의 50% 이상 면적을 소유주가 자신의 거주용으로 사용했어야 함. 주된 주택의 인정 기준 또한 2021년 3월 27일을 전후하여 일부 변경됨. 기존에는 소유주가 보유기간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실거주하였다면 주된 주택으로 인정했으나 2021년 3월 27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 기준의 10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실거주해야만 주된 주택으로 인정함

602) Deloitte, "Changes to the property tax landscape Major changes to the taxation of land proposed - April 2021," <https://www2.deloitte.com/nz/en/pages/tax/articles/changes-to-the-property-tax-landscape.html>, 검색일자: 2021. 4. 12.

- ▶ 주거용 부동산(건축) 임대소득 이자비용 소득공제제도를 2021년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5년 4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함⁶⁰³⁾
 - ▶ 기존 제도에 따르면 투자자가 주거용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비용을 전액 임대소득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었음
 - ▶ 단,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1년 3월 27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021년 10월 1일부로 이자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없게 됨
 - ▶ 또한 2021년 3월 26일 이전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4단계에 걸쳐 공제 한도가 25%p씩 감소될 예정이며 2025년 4월 1일부터는 전액을 공제할 수 없게 됨
 - ▶ 이번 개정안은 건축을 대상으로 하며, 신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배제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뉴질랜드 정부는 신축에 대해서는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매도한 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에서 차입금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음

〈표 III-2〉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비용 소득공제 축소·폐지안

(단위: %)

과세기간	소득공제할 수 있는 이자비용 비율	
	2021년 3월 27일 이전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2021년 3월 27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2020. 4. 1. ~ 2021. 9. 30.	100	100
2021. 10. 1. ~ 2023. 3. 31.	75	0
2023. 4. 1. ~ 2024. 3. 31.	50	0
2024. 4. 1. ~ 2025. 3. 31.	25	0
2025. 4. 1. ~	0	0

자료: 뉴질랜드 재무부, "Interest deductions on residential property income - Proposed changes," https://www.interest.co.nz/sites/default/files/embedded_images/IR%20FACTSHEET%20Interest%20deductions.pdf, 검색일자: 2021. 4. 12.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603) 뉴질랜드 재무부, "Interest deductions on residential property income - Proposed changes," https://www.interest.co.nz/sites/default/files/embedded_images/IR%20FACTSHEET%20Interest%20deductions.pdf, 검색일자: 2021. 4. 12.

다.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

[조세동향 21-05호]

- ▶ 뉴질랜드 재무부는 2021년 4월 21일, 코로나19 지원책으로서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신청기한을 한시 연장하기로 함⁶⁰⁴⁾

 - ▶ 2020/21 과세연도에 대해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 또는 2019/20 과세연도에 대해 추가 환급(supplementary return)을 신청하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동 조치는 2021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 ▶ 2020/21 과세연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과세연도 구분에 따라 기한일로부터 3개월 후(standard or late balance date) 또는 2021년 8월 7일(early balance date)로 신청기한이 연장됨⁶⁰⁵⁾
 - 반드시 2020/21 과세연도에 승인된 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 2019/20 과세연도에 대해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기한일로부터 60일 후로 신청기한이 연장됨

라. 최저생계보장세액공제 기준 금액 인상

[조세동향 21-06호]

- ▶ 뉴질랜드 재무부는 2021년 5월 21일 최저생계보장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2021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함⁶⁰⁶⁾

 - ▶ 최저생계보장세액공제(minimum family tax credit)는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에

604) 뉴질랜드 재무부, "Variation to sections 33E and 68CC(3) of the Tax Administration Act 1994," <https://www.taxtechnical.ird.govt.nz/-/media/project/ir/tt/pdfs/determinations/covid-19-variation/cov-21-01.pdf?la=en>, 검색일자: 2021. 5. 10.

605) 뉴질랜드의 과세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일반적임(standard balance date). 단 특정한 경우에 다른 회계기간을 과세연도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소득은 3월 31일에 끝나는 소득연도에 번 것으로 간주함. 신고서가 제출된 기간이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late balance date)라면 해당 연도의 3월 31일로 끝나는 소득연도에 번 것으로 간주하고 10월 1일부터 3월 30일 사이(early balance date)라면 그 다음 해 3월 말에 끝나는 소득연도에 번 것으로 봄(양인준, 『주요국의 조세제도-뉴질랜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p. 44~45)

606) 뉴질랜드 재무부, "MFTC threshold increased," <https://taxpolicy.ird.govt.nz/news/2021/2021-05-21-mftc-threshold-increased>, 검색일자: 2021. 6. 14.

기준금액만큼의 세후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임

- ▶ 기준금액(세후 소득 보장금액)은 기존 3만 576뉴질랜드달러에서 3만 1,096뉴질랜드 달러로 520뉴질랜드달러만큼 인상됨⁶⁰⁷⁾

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범위 발표

[조세동향 21-06호]

- ▣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 6월 10일, 올해 10월 도입 예정인 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비용 소득공제 부인·허용 범위를 발표함⁶⁰⁸⁾
 - ▶ 처음 개정안을 발표한 3월 당시에는 신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배제하는지가 미정이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신축 및 예외적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계속 허용하는 방침을 확정함
- ▣ 신축 주거용 부동산이란, 설립·추가 설립·대체·증축을 통해 기존에 없던 주택이 새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609), 610)}
 - ▶ 공터(bare land)에 주택을 새로 설립한 경우: 해당 용지에서 건설되었는지는 불문하므로 조립식 주택을 해당 주거용지에 설치한 경우도 포함함
 - ▶ 기존 주택을 해체(removed or demolished)하고 새로운 주택(또는 복수의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대체한 새로운 주택이 1세대용인지, 다세대용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건축 준공 허가를 받았다면 이를 불문하고 새로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함
 - ▶ 부동산에 주택을 추가 설립한 경우: 독립 시설(stand-alone)인지 부수 시설(attached)인지를 불문함

607) 2021년 6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기준 약 2,441만 5천원(3만 576뉴질랜드달러)에서 약 41만 5천원(520만 뉴질랜드달러) 인상되어 2,483만원(3만 1,096뉴질랜드달러)이 된 것임

608)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1-04호, 2021을 참조

609) 뉴질랜드 정부, “The treatment of new builds under the bright-line test and changes to interest deductibility,” <https://taxpolicy.ird.govt.nz/-/media/project/ir/tp/publications/2021/2021-summary-sheets-interest-limitation-and-bright-line-Rules/2021-summary-sheet-new-builds.pdf>, 검색일자: 2021. 6. 14.

610) 뉴질랜드 정부, “Design of the interest limitation Rule and additional bright-line Rules,” <https://taxpolicy.ird.govt.nz/-/media/project/ir/tp/publications/2021/2021-dd-interest-limitation-and-bright-line-Rules/2021-dd-interest-limitation-and-bright-line-Rules.pdf?modified=20210610001658>, 검색일자: 2021. 6. 25.

- ▶ 기존 주택을 증축하여 2개 이상의 주택을 만든 경우
- ▶ 오피스 빌딩과 같은 상업시설을 아파트 등의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 ▣ 예외적인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숙박시설, 소유주가 거주하며 임대하는 주거용 부동산 등 열거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의미함⁶¹¹⁾
 - ▶ 호텔·모텔 등과 같은 상업용 숙박시설
 - ▶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운영하는 하숙시설(Bed&Breakfasts), 소득 창출 용도로 일부가 사용되는 소유주의 주된 주택(다세대 주택(Flat-rental) 임대와 같은 경우)
 - ▶ 병원·요양원·너싱홈·호스피스 같은 돌봄 시설
 - ▶ 은퇴자 마을(Retirement villages), 농지에 있는 주택(Houses on farmland)
 - ▶ 종업원용 숙소, 학생용 숙소

2 싱가포르

가. 2021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1-02호]

-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1년 2월 16일에 2021년 싱가포르 예산안을 발표함⁶¹²⁾
- ▣ 발표한 2021년 싱가포르 예산안 중 세제개편안에는 기업 지원, 현행 탄소세율 유지, 비영리기구 유치 지원, 적격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대, 전기차 및 전기차 택시 추가 등록세 인하, 도로세 환급 등이 포함됨⁶¹³⁾

611) 뉴질랜드 정부, "What types of properties are affected by the changes to interest deductibility?," <https://taxpolicy.ird.govt.nz/-/media/project/ir/tp/publications/2021/2021-summary-sheets-interest-limitation-a-nd-bright-line-Rules/2021-summary-sheet-affected-properties.pdf>, 검색일자: 2021. 6. 14.

612) Singapore MOF, "2021 Budget Statement to be delivered on Tuesday," 2021. 2. 16., <https://www.mof.gov.sg/news-publications/press-releases/2021-budget-statement-to-be-delivered-on-tuesday-16-february-2021-at-3pm>, 검색일자: 2021. 2. 22.

613) Singapore MOF, "2021 Budget, ANNEX F-1: TAX CHANGES," <https://www.mof.gov.sg/docs/librariesprovider3/>

-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손금의 소급공제(Loss Carry-Back Relief)⁶¹⁴)를 실시함
 - 2021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자본공제액과 이월 결손금(미사용분) 등 적격 공제에 대해 최대 10만싱가포르달러⁶¹⁵) 한도로 3년간 소급공제가 가능함
- ▶ 시설 및 기계장치(Plant and Machinery: P&M)의 자본 지출액에 대해 가속공제를 위한 옵션을 추가함
 - 추가된 옵션은 첫 해에 자본 지출액의 75%를 공제받고 두 번째 해에 자본 지출액의 25%를 공제받는 것임
 - 기업은 싱가포르 「소득세법」 제19A조에 따라 시설 및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33.3%씩 공제를 받는 옵션 또는 자본 지출액이 발생한 평가연도에 100% 공제를 받는 옵션 그리고 추가된 옵션 중에 선택 가능함
- ▶ 현행 탄소세율을 2023년까지 유지함
 -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탄소세를 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 1톤당 5싱가포르달러⁶¹⁶)의 탄소세율을 정함
- ▶ 싱가포르에 비영리기구(Non-for-Profit Organization: NPO)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 적격 비영리기구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 싱가포르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Institutions of a Public Character: IPC) 및 기타 자격 있는 수혜자에 대한 적격 기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5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및 전기차 택시(Electric taxi)의 추가 등록세(Additional Registration Fee: ARF)를 최대 2만싱가포르달러⁶¹⁷)로 2023년 12월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함
- ▶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최대 100%의 도로세 환급이 가능함⁶¹⁸)

budget2021/download/pdf/annexf1.pdf, 검색일자: 2021. 2. 24.; IBFD, "Singapore Extends Incentives for Qualifying Expenses and Extends GST to Imported Low-Value Goods in 2021 Budget,"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16_sg_1.html, 검색일자: 2021. 2. 22.

614) IRAS, "Loss Carry-Back Relief,"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Claiming-Reliefs/Loss-Carry-Back-Relief/>, 검색일자: 2021. 2. 24.

615) 2021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19만원임

616) 2021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10만원임

617) 2021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83만원임

618) LTA, "Road Tax Rebates for Petrol and Petrol-Hybrid Vehicles," <https://www.lta.gov.sg/content/ltagov/en/>

- 환급액의 경우 차량의 배기량 및 최대 적재중량에 따라 결정되어 자격이 있는 수령인에게 자동으로 지급되고, 생계를 위해 차량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임

나.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 간소화 방안 발표

[조세동향 21-04호]

- ▶ 싱가포르 국세청은 2021년 3월 1일에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 간소화 방안을 발표함⁶¹⁹⁾
- ▶ 무신고서비스(No-Filing Service: NFS)⁶²⁰⁾ 대상 납세자에게 2021년 5월부터 직접 세금 청구서(Direct Notice of Assessment: D-NOA)를 발송할 예정임
 - ▶ 싱가포르 「소득세법」 제62조에서 소득세 감사관이 총소득을 비롯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세금 청구서(Notice of Assessment: NOA)를 발행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금 청구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한 내에 싱가포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 단, 무신고 서비스 납세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서신 혹은 SMS를 받았을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 하지만 무신고 서비스 납세자의 경우 소득, 감면, 공제와 관련해서 조정을 할 수 없음
 - 이에, 싱가포르 국세청은 직접 세금청구서를 도입하여 무신고서비스 납세자에게 소득, 감면, 공제 등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자동으로 포함된 청구서를 부과 고지할 예정임
 - ▶ 무신고서비스 대상자들은 신고서상에 소득정보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소득공제 항목의 변경 및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무신고서비스 대상이라 할지라도 싱가포르 국세청 MyTax Portal을 통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 ▶ 싱가포르 납세자 중 약 10만명이 직접 세금청구서를 수령할 예정임

newsroom/2021/2/news-releases/road-tax-rebates-for-petrol-and-petrol-hybrid-vehicles.html, 검색일자: 2021. 2. 24.
 619)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Receive Direct Tax Bills this Tax Season 2021," <https://www.iras.gov.sg/irashome/News-and-Events/Newsroom/Media-Releases-and-Speeches/Media-Releases/2021/Receive-Direct-Tax-Bills-this-Tax-Season-2021/>, 검색일자: 2021. 4. 19.
 620)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No-Filing Service (NFS),"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Filing-your-taxes/Individuals-Required-to-File-Tax/No-Filing-Service-NFS-/>, 검색일자: 2021. 4. 19.

- ▶ 싱가포르 국세청은 무신고 서비스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보험, 부동산 중개인 등 적격 커미션 에이전트(Eligible commission agents), 개인고용 기사, 택시 기사 등이 이번 발표 때 새롭게 무신고서비스 적용 대상에 포함됨
- ▣ 또한, 싱가포르 국세청은 2021년 5월부터 대부분의 신고 안내문을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 2021년도에 약 72만명의 납세자가 디지털화된 신고 안내문 대상에 포함되며, 총 200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디지털화된 신고 안내문을 받을 예정임
- ▶ 납세자는 MyTax Portal에서 신고 안내문 조회 및 발송내역 확인이 가능함

다.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발표 및 공개협의 개시

[조세동향 21-06호]

-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1년 6월 11일, 2021년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협의를 개시함⁶²¹⁾
 - ▶ 「소득세법」 개정안 공개 협의는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2021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함
 - 2021년 싱가포르 예산안에서 발표된 12개 개정안과 싱가포르 「소득세법」 정기검토에서 제안된 24개 개정안이 공개 협의 대상임
 - 공개 협의기간 종료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임
- ▣ 발표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조치, 외국인 투자정책 등이 주요 공개협의 대상임⁶²²⁾
 - ▶ 코로나19 피해 지원 조치에는 ① 적격 결손금 소급공제(Loss Carry-Back), ② 적격 시설 및 기계장치(Plant and Machinery: P&M) 취득에 따른 자본 지출액 가속공제, ③ 특정

621) 싱가포르 재무부, "Public Consultation on Proposed Income Tax(Amendment) Bill 2021," 2021. 6. 11., [https://www.mof.gov.sg/news-publications/public-consultations/public-consultation-on-proposed-income-tax-\(amendment\)-bill-2021](https://www.mof.gov.sg/news-publications/public-consultations/public-consultation-on-proposed-income-tax-(amendment)-bill-2021), 검색일자: 2021. 6. 21.

622) IBFD, "Singapore Opens Public Consultation on Proposed Amendments to Income Tax Act," 2021. 6.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6-16_sg_1.html, 검색일자: 2021. 6. 21.

보수비용(Renovation and Refurbishment: R&R)⁶²³ 특별공제, ④ 적격 기부금 세액공제⁶²⁴ 등의 적용기간 연장이 포함됨

- ▶ 외국인 투자정책과 관련된 개정안에는 ① 국제화를 위한 이중세액공제(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DTDi)⁶²⁵의 조건 변경, ② 이중세액공제(Double Tax Relief: DTR)⁶²⁶ 제도의 적용기간 연장, ③ 금융·재무 센터 특례제도(Fiance & Treasury Centre Incentive: FTC)⁶²⁷의 적용기간 연장, ④ 적격 비영리기구(Non-for-Profit Organization: NPO) 면세혜택 적용기간 연장 등이 포함됨
- 국제화를 위한 이중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싱가포르 기업청에 이중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음
- 개정안에는 싱가포르 기업청의 승인 없이도 해외시장 진출 및 개발활동과 관련한 적격활동 지출액을 최대 15만싱가포르달러⁶²⁸ 한도로 세액공제 청구가 가능함

3 인도

가.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추가 연장 및 탈세제보포털 출시

[조세동향 21-01호]

▣ 인도 국세청은 2020년 12월 30일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추가 연장을 발표함⁶²⁹

- 623) 특정보수비용이란, 전기 공급을 위한 배선 및 일반적인 전력용품 설치, 조명, 온수, 냉수 시스템 설치, 가스시스템, 주방용품, 화장실 설치 등 일반적으로 건물 구조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보수비용을 말함
- 624) 적격 기부금 세액공제란, 싱가포르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Institutions of a Public Character: IPCs) 및 기타 자격 있는 수혜자에 대한 적격 기부금을 최대 250%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 625) 국제화를 위한 이중세액공제란,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해외시장 진출 및 개발 활동과 관련한 적격 활동 지출액에 대하여 최대 2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 626) 이중세액공제란, 국가 간 상호 이중과세회피 협정을 통해 상대방 국가에서 납부한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627) 금융·재무 센터 특례제도란, 싱가포르에 금융재무 센터를 설립한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외 은행 및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628) 2021년 6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652만원임
- 629) Extension of time limits for income tax returns,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84775>, 검색

-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0년 6월 24일에 모든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2021년 1월 15일⁶³⁰⁾로 연장하였지만,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부 납세자들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함
- ▣ 인도 「소득세법」 제1961 제139조 제1항⁶³¹⁾에 의거하여 인도 국세청의 세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납세자와 국외 또는 국내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세무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 또는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기한을 2021년 2월 15일까지 연장함⁶³²⁾
 - ▶ 평가연도 2020~2021년인 기업 또는 개인 납세자가 해당되며, 그밖의 납세자는 2021년 1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 ▣ 인도 중소기업 및 중상층 이하 납세자 중 납부세액이 10만루피⁶³³⁾ 이하인 경우 2021년 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함⁶³⁴⁾
 - ▶ 납세자는 납부기한 추가 연장 가능 여부 및 고지서를 인도 국세청 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⁶³⁵⁾
- ▣ 인도 국세청은 전자세정을 촉진하고 탈세 억제에 대중이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21년 1월 12일 탈세제보 관련 전자포털을 출시함⁶³⁶⁾

일자: 2021. 1. 20.

630) THE TAXATION AND OTHER LAWS (RELAXATION AND AMENDMENT OF CERTAIN PROVISIONS) ACT, https://www.incometaxindia.gov.in/news/taxation_other_laws_relaxation_amed_certain_provisions_act_2020.pdf, 검색일자: 2021. 1. 20.

631) Section 139(1) of the Income-tax Act 1961, https://incometaxindia.gov.in/_layouts/15/dit/pages/viewer.aspx?grp=act&cname=cmsid&cval=10212000000521000&searchfilter=%5B%7B%22crawledpropertykey%22:1,%22value%22:%22act%22,%22searchoperand%22:2%7D,%7B%22crawledpropertykey%22:0,%22value%22:%22income-tax+act,+1961%22,%22searchoperand%22:2%7D,%7B%22crawledpropertykey%22:29,%22value%22:%222019%22,%22searchoperand%22:2%7D%5D&k=&isdlg=0, 검색일자: 2021. 1. 20.

632) Extension of time limits, https://www.incometaxindiaefiling.gov.in/eFiling/Portal/StaticPDF/Press-release-Extension-of-time-limits_30-12-2020.pdf, 검색일자: 2021. 1. 20.

633) 2021년 1월 2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0만원임

634) IBFD, "COVID-19 Pandemic: India Further Extends Filing and Payment Deadlin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1-04_in_1.html, 검색일자: 2021. 1. 20.

635) E-Filing, "Income Tax Department, Government of India," <https://www.incometaxindiaefiling.gov.in/home>, 검색일자: 2021. 1. 20.

636) CBDT launches e-portal for filing complaints regarding tax evasion/Benami Properties/Foreign Undisclosed Assets, <https://www.incometaxindiaefiling.gov.in/eFiling/Portal/StaticPDF/Press-Release-CBDT-launches-e-portal-for-filing-complaints-regarding-dated-12-01-2021.pdf>, 검색일자: 2021. 1. 20.

- ▶ 전자포털에서는 베나미 자산(Benami Properties),⁶³⁷⁾ 해외자산, 미신고된 국내 자산 등에 대한 탈세제보가 가능함⁶³⁸⁾
- ▶ 제보자는 전자포털에서 탈세제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탈세제보의 경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나. 2021년 예산안(Union Budget) 발표

[조세동향 21-02호]

- ▣ 인도 재무부는 2021년 2월 1일 주요 세목과 세무행정 개편안이 포함된 2021년 예산안(Union Budget 2021/22)을 발표함⁶³⁹⁾
 -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세율에는 변동이 없음⁶⁴⁰⁾
 - ▶ 직원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sation: EPFO)⁶⁴¹⁾에 대한 고용주 부담금을 연체할 경우 손금불산입함
 - ▶ 영업권은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지만 구매로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됨
 - ▶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이 은행(Banking Company)에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협동조합은행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⁶⁴²⁾

637) 베나미 자산이란, 본인의 수입원으로 본인 외의 명의로 구입한 자산을 의미함. 본인 외의 명의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기타 친척 등이 포함되며 공동명의재산도 포함됨. 이와 관련된 거래를 베나미 거래라고 칭하며, 베나미 자산거래에는 모든 종류의 자산이 포함됨. 일반적으로 과세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인도 국세청은 정의함

638) IBFD, "India Launches E-Portal for Reporting Tax Evasion-Related Issu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1-13_in_1.html, 검색일자: 2021. 1. 20.

639) IBFD, "Union Budget 2021-Highlight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2-01_in_1#tns_2021-02-01_in_1, 검색일자: 2021. 2. 22.; KEY TO THE BUDGET DOCUMENTS 2021-2022, https://www.indiabudget.gov.in/doc/Key_to_Budget_Document_2021.pdf, 검색일자: 2021. 2. 22.; IMPLEMENTATION OF BUDGET ANNOUNCEMENTS 2020-2021, <https://www.indiabudget.gov.in/doc/impbud2020-21.pdf>, 검색일자: 2021. 2. 22.; THE FINANCE BILL 2021, https://www.indiabudget.gov.in/doc/Finance_Bill.pdf, 검색일자: 2021. 2. 24.

640) IBFD, "Union Budget 2021-Direct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05_in_2.html, 검색일자: 2021. 2. 22.

641) 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sation, http://www.epfindia.gov.in/site_en/For_Employees.php, 검색일자: 2021. 2. 22.

-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소득세율에는 변동이 없음
- ▶ 개인이 최초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원금 및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연간 최대 15만루피⁶⁴³⁾ 한도 이내로 가능함
- ▶ 2021년 2월 1일 이후에 발행된 변액형보험(Unit-Linked Insurance)의 연간 보험료가 25만루피⁶⁴⁴⁾를 초과하는 경우 만기 수익금은 과세됨
- ▶ 비거주 인도인(Non Resident Indian: NRI)⁶⁴⁵⁾은 인도에서 1인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비거주 인도인의 이중과세 철폐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임
- ▶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 및 인프라투자신탁(Infrastructure Investment Trust: InvIT)에 대한 배당금은 원천징수세를 면제함
-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격 스타트업은 면세자격(Tax Holiday for start-ups)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 ▶ 매입세액공제는 공급업체가 전자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 네트워크 포털(Goods and Services Tax Network Portal)에 전표 입력을 한 경우에 가능함⁶⁴⁶⁾
- ▶ 노인 구제책의 일환으로 만 75세 이상 노인 중 연금 및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⁶⁴⁷⁾
 - 단, 연금 및 이자를 지불하는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함
- ▶ 납세자가 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서에 양도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세부사항이 미리채움(Pre-Filled)될 예정임
 - 미리채움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642) IBFD, "Union Budget 2021-Direct Tax, Financial servic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1-02-05_in_2#tns_2021-02-05_in_2, 검색일자: 2021. 2. 24.

643) 2021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9만원임

644) 2021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3만원임

645) 비거주 인도인이란, 인도 시민권자 또는 인도계 사람 중에서 인도 거주자가 아닌 자이며,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인도 태생인 경우와 직전연도 인도에 60일 이상 182일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 해당되고 직전 4개연도 동안 인도에 365일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거주 인도인으로 봄

646) IBFD, "Union Budget 2021-Indirect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05_in_3.html, 검색일자: 2021. 2. 22.

647) IBFD, "Union Budget 2021-Tax Administration and Other Meas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05_in_4.html, 검색일자: 2021. 2. 22.

다. 재정정책에 대한 법률안 개정 가결

[조세동향 21-04호]

- ▾ 2021년 3월 23일 인도 하원은 재무장관이 2월에 발표한 재정법안의 개정안을 가결함⁶⁴⁸⁾
- ▾ 금융 인프라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함

 - ▶ 금융 인프라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소득은 10년 동안 면세될 수 있으며 인도 준비은행이 허가한 개발 금융기관의 소득은 첫 5년 동안 면세될 수 있음
 - 위에 언급된 기관에 대한 자본자산의 적격 양도는 양도소득세 또한 면세될 수도 있음
- ▾ 균등화 부담금(Equalization levy)의 과세 요건을 명확화함

 - ▶ 균등화 부담금 과세 범위의 정의에 대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전자 상거래 공급 또는 서비스로부터의 보수’에 인도 거주자 또는 인도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소유하거나 제공하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화 함
- ▾ 조세체계 전반의 과세의무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함

 - ▶ ‘납세의무가 있는 자(liable to tax)’의 정의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으로 특정 납세의무에 대해 차후에 납세의무의 면제를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를 확대·명확화함
 -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함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의무에 대해 면제 이전에 납세의무가 있는 자 또한 면제된 후와는 별개로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포함됨을 명확화함

라. 디지털세의 적용 대상에 대한 지침 발표

[조세동향 21-05호]

- ▾ 인도 국세청은 2021년 5월 3일, 기업 등에 대한 디지털세 적용의 요건과 관련한 지침을

648) IBFD, “Parliament Passes Amendments to Finance Bill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09_in_1.html, 검색일자: 2021. 4. 27.

발표함⁶⁴⁹⁾

- ▶ 2022년 4월부터 인도에 사업장이 없지만 인도 고객으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는 해외 법인은 디지털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됨
- ▾ 해당 지침은 인도에서의 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정의함
 - ▶ 거래액 기준으로 인도에 있는 사람과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재산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수익이 27만 1천달러⁶⁵⁰⁾를 초과하는 비거주자
 -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 대한 거래가 포함됨
 - ▶ 사용자 기준으로 인도에서 30만명 이상의 사용자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모든 법인
- ▾ 결과적으로 위의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간주함
 - ▶ 이러한 사항은 조세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관할권에 해당하는 법인 중 SEP(Significant Economic Presence)⁶⁵¹⁾ 조항의 영향을 받는 법인만이 해당됨
 - 조세조약은 비거주 법인이 인도에 고정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

649) Bloomberg tax, "India Lays Out Rules Defining Economic Presence for Digital Tax," 2021. 5. 4.,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SUM0OG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mL3VsdHMmYUwNDA3OWY5YTVkOTNkNDk1M2EyMmZiNWQ2ZTZjODciXV0-a8073f285a677124a37d630a64ed6611ca80c41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 검색일자: 2021. 5. 13.

650) 2021년 5월 214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574만 2,200원임

651) '의미있는 경제 존재'라는 개념으로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 운영되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2018년 인도 국내 세법에 도입됨. 인도에서 SEP를 보유한 비거주자는 인도에서 '비즈니스 연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SEP에 귀속되는 소득은 인도에서 과세됨(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4 인도네시아

가. 2021년 코로나19 대응 세제혜택 발표

[조세동향 21-01호]

-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0년 12월 30일 코로나19 대응 세제혜택이 포함된 재무부 규정 제239호(239/PMK.03/2020)를 발표함⁶⁵²⁾
-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의료장비 제조, 기부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세제혜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됨⁶⁵³⁾

 - ▶ 코로나19 진단키트, 개인 방역 마스크 및 장갑, 손세정제, 방역용 소독약품 등의 의료장비를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국내 제조업체는 의료장비 생산에 투입된 비용에 최대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
 - ▶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선정된 기관에 현물 또는 현금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정된 정부기관, 병원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상응하는 대가로 개인 납세자가 수령한 소득은 원천징수세가 면제됨
- ▶ 정부기관, 병원, 제약회사 등이 코로나19 관련 백신, 의약품, 기타 물품을 국내에서 취득 및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⁶⁵⁴⁾

 - ▶ 재무부 규정 제239호는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규정에 명시된 행정 요건을 준수해야 함

652) PERATURAN MENTER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 MOR 239/PMK. 03/2020, <https://jdih.kemenkeu.go.id/api/AppMediaCatalogs/Download/5fe4fa27-7416-4e3f-950c-7a7632dd50d6?ngsw-bypass>, 검색일자: 2021. 1. 20.

653)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0, <https://www.pajak.go.id/sites/default/files/2020-06/Salinan%20PP%20Nomor%2029%20Tahun%202020.pdf>, 검색일자: 2021. 1. 20.

654) COVID-19 Pandemic - Indonesia Further Extends Tax Incentives Period for Certain Goods, Services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1-19_id_1.html, 검색일자: 2021. 1. 20.

나. 코로나19 대응 기업 세제혜택 적용방안 발표

[조세동향 21-02호]

-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1년 2월 2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기업 세제혜택 적용방안이 포함된 재무부 규정 제9호(No. 9/PMK.30/2021: PMK-9)를 발표함⁶⁵⁵⁾
- ▶ 적격 기업은 원천징수세 면제,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세제혜택을 2021년 6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음⁶⁵⁶⁾
 - ▶ 연간 근로소득이 2억루피아⁶⁵⁷⁾를 초과하지 않는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를 면제함
 - ▶ 적격 중소기업(Small to Medium Enterprise: SME)의 법인세 최종 납부세액의 0.5%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담함
 - ▶ 적격 기업의 월선납 법인세 납부세액을 50%까지 감면함
 - 월선납 법인세는 직전연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다음 해에 매월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임
 - ▶ 관개(Water Irrigation) 사업⁶⁵⁸⁾과 관련된 건설업의 경우 최종 분리과세 납부세액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담함
 - 인도네시아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48억루피아⁶⁵⁹⁾ 이하인 개인과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최종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 시공·설계·감리 등의 건설업 범위와 자격에 따라 2~6%의 최종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됨
 - 최종 분리과세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직접 인도네시아 과세관청에 계산, 납부 및 보고를 해야 함
 - ▶ 적격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50억루피아⁶⁶⁰⁾ 한도로 가능함

655) NOMOR 9/PMK.03/2021, <https://jdih.kemenkeu.go.id/download/60b9e432-e111-4a92-a65f-7e760bb67750/9~PMK.03~2021Per.pdf>, 검색일자: 2021. 2. 22.

656) IBFD, "COVID-19 Pandemic: Indonesia Further Extends Tax Incentives and Expands List of Eligible Business Secto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2-05_id_1.html, 검색일자: 2021. 2. 22.

657) 2021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76만원임

658) 관개 사업이란, 작물의 재배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급수 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것을 말함

659) 2021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8천만원임

660) 2021년 3월 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9,400만원임

-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의 경우 환급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세무조사와 환급금 지급이 이뤄짐
- 조기 환급은 저위험 납세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만 해당됨
-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해당되는 기업은 조기 환급의 절차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이 이뤄짐

▶ **세제혜택별 적격 기업 요건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 제9호에서 확인할 수 있음**⁶⁶¹⁾

- ▶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2021년 3월 20일까지 홈페이지(www.pajak.go.id)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다. 부동산 및 자동차 부문 등의 구입에 관한 조세혜택 실시

[조세동향 21-03호]

▶ **인도네시아 재무 장관은 2021년 3월 1일에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혜택을 발표함**⁶⁶²⁾

- ▶ 인도네시아 정부는 58.5조루피아⁶⁶³⁾의 ‘세금과 비즈니스 정책’ 예산 중 부동산 부문에 5조루피아,⁶⁶⁴⁾ 2.99조루피아⁶⁶⁵⁾ 상당의 조세혜택을 할당함
 - 부동산에 대해 정부는 2억루피아⁶⁶⁶⁾ 이하의 판매가격은 전액, 2억루피아에서 5억루피아⁶⁶⁷⁾ 사이의 경우 50%의 신규 구입 자산에 대한 VAT를 부담함
- ▶ 해당 정책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유효함

661) NOMOR 9/PMK.03/2021, pp. 35~59, <https://jdih.kemenkeu.go.id/download/60b9e432-e111-4a92-a65f-7e760bb67750/9-PMK.03-2021Per.pdf>, 검색일자: 2021. 2. 25.

662) Bloomberg Tax, “Indonesia Says Govt to Bear VAT on Home Sales to Push Growth,” (March 1, 2021),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BQQA1K4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bc=W1siU2VhcmNoIFJlc3VsdHMlCl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NGQ0N2EyMzVkM2VhYzExMzY4YTdmMTRmYzY2Mml5YWEiXV0-438dbc4e917b7c19cb5134c7d84e5b89870243ce, 검색일자: 2021. 3. 17.

663) 2021년 3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4조 5,922억 5천만원임

664) 2021년 3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3,925억원임

665) 2021년 3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2,347억 1,500만원임

666) 2021년 3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570만원임

667) 2021년 3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3,925만원임

- ▶ 2021년 2월 1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 부문 사치세에 대한 감면 시행 예정을 공표함

 - ▶ 3~5월의 구매분의 경우 0%의 사치세를 적용하고, 6~8월의 구매분의 경우 사치세의 50% 감면, 9~11월은 25%를 감경함
 - 현재 인도네시아는 사치세를 15~70% 범위로,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를 10~30%로 설정하고 있음

- ▶ 사치세에 대한 조세혜택은 1,500cc 미만의 세단 및 이륜구동 자동차의 구매에 해당됨

 -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인센티브로 인해 차량 생산량이 약 8만 1천대 증가하고, 1.4조루피아⁶⁶⁸⁾의 추가 세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 ▶ 혜택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이며, 세금 감면은 자동차 부문의 투자 확대와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5 일본

가. 2021년 세제개편안 발표

[조세동향 21-01호]

- ▶ 일본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JAPAN)는 2020년 12월 10일에 202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함⁶⁶⁹⁾

- ▶ 2021년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의 투자 촉진, 주택 또는 친환경차 구매 혜택 연장, 장기 일본거주 외국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세정 디지털화 등이 포함됨⁶⁷⁰⁾

668) 2021년 3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1,099억원임

669) Tax Reform, https://www.mof.go.jp/english/tax_policy/tax_reform/index.html, 검색일자: 2021. 1. 26.

670) FY2021 Tax Reform, https://www.mof.go.jp/english/tax_policy/tax_reform/fy2021/03keyhighlight.pdf, 검색일자: 2021. 1. 26.; Highlights of Key Proposals in Japan 2021 Tax Reform Outline,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18_jp_2.html, 검색일자: 2021. 1. 26.

- ▶ 탄소저감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클라우드 컴퓨팅⁶⁷¹⁾과 같이 연결 가능한(Connectable) 디지털 환경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 ▶ 2022년까지 주택대출로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개인은 통상 10년이 아닌 13년간 특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됨
 - 세제개편안 이전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대출로 신규 주택을 구매자하는 개인에게만 세액공제가 허용되었음
- ▶ 친환경차 수요 증진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및 보유자에 대한 기존 세제혜택 기간을 2021년 5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함
 - 친환경차의 연비 수준에 따라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자동차중량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음
- ▶ 일본에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자산은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음
- ▶ 세정 디지털화를 위해 국세 관련 서류에 날인할 의무를 폐지함
 - 책·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캔 저장시스템에 대한 절차와 요구 조건을 완화함

나. 「소득세법」 등 개정안 가결

[조세동향 21-04호]

- ▶ 일본 재무성은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3월 26일 가결함⁶⁷²⁾
- ▶ 해당 개정 법률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구조의 전환과 가계경제의 지원 등을 위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671)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말함

672) IBFD, "Japan Passes 2021 Tax Reform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06_jp_1.html, 검색일자: 2021. 4. 27.

- ▶ 구체적으로 법인 등의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세제혜택,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지원에 대한 법률안을 시행함

▣ 「조세특별조치법」 중 법인 소득 주요 개정 및 창설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사업 적응 설비를 취득한 경우 등의 특별상각 또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창설함⁶⁷³⁾

-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부부터 2023년 3월 31일 사이에 정보기술사업 적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소프트웨어를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정보기술사업 적응을 실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① 취득가액 및 ② 이연된 취득액에 대하여 100분의 30 상당액의 특별상각과 취득가액의 100분의 3(정보기술사업 적응 중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분의 5) 상당액의 특별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에너지 이용 환경 부하 저감사업 적응을 위한 조치로 생산공정 효율화 설비 등을 「조세특별조치법」 시행일부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500억엔⁶⁷⁴⁾을 상한으로 함)의 100분의 50 상당액의 특별상각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생산공정 효율화 설비 등 중 에너지 이용에 의한 환경 부하의 저감에 크게 이바지한 것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상당액의 특별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함

- 특별상각의 경우 상각 대상액에 대해 ①의 취득가액과 ②의 이연된 자산의 합계액의 300억엔⁶⁷⁵⁾을 한도로 함

- 특별세액공제액의 경우 위 정보기술사업 특별세액공제 조치와 에너지 이용 환경 부하 저감사업 특별세액공제 조치를 합산하여 당기 세액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한도로 함

- ▶ 중소기업 구조조정 투자손실 준비금제도를 창설함⁶⁷⁶⁾

- 개정 시행일부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의 인정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 승계 등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또한 이를 그 취득일을 포함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중소기업 구조조정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한 때에는 그 적립한

673) 租税特別措置法第10条の5の6, 第42条の12の7, 第68条の15の7에 해당함

674) 2021년 4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171억 8,619만원임

675) 2021년 4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03억 1,171만원임

676) 「조세특별조치법」 제55조의 2; 제68조의 44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 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함

- 또한, 이 준비금은 그 적립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것이 있는 경우, 그 경과한 준비금의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해 60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익금 금액에 산입함

▶ 「조세특별조치법」 중 개인소득 주요 개정 및 창설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주택 차입금 등에 대한 소득세액의 특별공제에 관한 거주용으로 제공한 기간 등의 특례 조치를 적용함⁶⁷⁷⁾
 - 주택의 신축취득 등(주택 구입 등 또는 공인주택의 신축 등) 특별 특례 취득에 해당하는 자가 그 특별 취득을 한 가옥을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거주용으로 제공한 경우, 주택 차입금 등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그 특별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함
 - 현재 202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거주용으로 사용한 주택의 차입금의 경우 10년 동안 해당 연말 차입금 잔액의 1%를 40만엔⁶⁷⁸⁾의 한도로 세액공제함⁶⁷⁹⁾

6 중국

가.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21-01호]

▶ 중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11일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⁶⁸⁰⁾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개정안인 공고 제45호(Announcement No. 45)를 발표함⁶⁸¹⁾

67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관계 법률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678) 2021년 4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13만원임

679) Japan National Tax Agency, "No.1213 住宅を新築又は新築住宅を取得した場合(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213.htm>, 검색일자: 2021. 4. 27.

680) 집적회로란, 일반적으로 평평한 실리콘 기관 위의 작은 영역에 여러 개의 전자회로가 함께 제작되어 배열되어 있는 복합체를 말함. Integrated circuit, <https://www.britannica.com/technology/integrated-circuit>, 검색일자: 2021. 1. 20.

681) 财政部 税务总局 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公告2020年第45号,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2/c5159888/content.html>, 검색일자: 2021. 1. 20.

- ▶ 중국 재무부 공고 제45호는 2020년 8월에 발표한 국무원 고시 제8호(Notice of State Council [2020] No.8)⁶⁸²⁾의 일부를 개정한 것임
- ▣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소득세(Enterprise Income Tax: EIT) 면제기간이 적용되는 산업의 범위를 확대함
 - ▶ 기업소득세 면제기간이 10년 적용되는 집적회로 라인 폭 제조단위를 0.8미크론 이하에서 28나노미터 이하 제조기업으로 개정함
 - ▶ 집적회로 제조업체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함

〈표 III-3〉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산업 세제혜택 개정안

(단위: 년, %)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산업 유형		기업소득세 면제기간	면제기간 후 기업소득세 세율	최소 운영 기간
개정 전	개정 후			
라인 폭이 0.8미크론 이하인 집적회로 제조업체	라인 폭이 28나노미터 이하인 집적회로 제조업체	10년	기본세율 25% 적용	15년
라인 폭이 65나노미터 이하의 집적회로 제조업체		5년	5년간 12.5% 적용	15년
라인 폭이 130나노미터 이하의 집적회로 제조업체		2년	3년간 12.5% 적용	10년

자료: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12-22_cn_1.html, 검색일자: 2021. 1. 20.

- ▣ 중국 재무부는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산업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기업 투자자본의 출처에 관계 없이 중국에 설립된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산업에 세제혜택을 적용해 나갈 예정임⁶⁸³⁾

682) 国务院关于印发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若干政策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8/04/content_5532370.htm, 검색일자: 2021. 1. 20.

683) 财政部 税务总局 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公告2020年第45号, 八-国际合作政策,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2/c5159888/content.html>, 검색일자: 2021. 1. 20.

나.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년)계획 초안 발표

[조세동향 21-03호]

- ▶ 중국 지도부는 2021년 3월 4일에 개최된 제13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의 제4차 회의에서 제14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초안을 발표함⁶⁸⁴⁾

 -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자국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산업 고도화를 위한 발전을 추구할 예정임

-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는 증치세⁶⁸⁵⁾ 면제 및 세율 인하, 기업소득세율 인하 등의 세제개편안이 포함됨⁶⁸⁶⁾

 - ▶ 소규모 납세자(Small-Scale Taxpayers)의 증치세 면제 월매출액 한도를 10만위안⁶⁸⁷⁾ 이하에서 15만위안⁶⁸⁸⁾ 이하로 5만위안⁶⁸⁹⁾ 인상하고⁶⁹⁰⁾ 소규모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증치세 기본 세율을 3%에서 1%로 낮춤⁶⁹¹⁾
 - 중국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로 구분되는데, 연간 매출액 규모가 500만위안⁶⁹²⁾ 이하(월 매출액 약 41만 6천위안⁶⁹³⁾ 이하일 경우 소규모 납세자로 분류됨
 - 소규모 납세자가 월매출액 15만위안 이하일 경우에는 증치세가 면제되나, 월매출액이

684)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top political advisory body starts annual session," http://english.www.gov.cn/news/topnews/202103/05/content_WS60416b72c6d0719374af9fc0.html, 검색일자: 2021. 3. 18.

685) 증치세란, 중국 내에서 발생한 용역, 서비스 및 재화를 공급 또는 제공할 경우에 과세되는 세목임

686)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port on china's national economic, social development plan," http://english.www.gov.cn/news/topnews/202103/13/content_WS604cb18dc6d0719374afac6b6.html, 검색일자: 2021. 3. 22.

687)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천 700만원임

688)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천 500만원임

689)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60만원임

690) China Taxation Administration, "国家税务总局关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征管问题的公告,"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59/c5162926/content.html>, 검색일자: 2021. 4. 5.

691) IBFD, "China Extends Tax Incentiv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25_cn_1.html, 검색일자: 2021. 3. 28.

692)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억 6천만원임

693)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천만원임

- 15만위안을 초과할 경우 증치세 기본 세율 1%가 적용됨
- 인상된 증치세 면제 월매출액 한도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인하된 증치세 기본 세율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위안⁶⁹⁴ 미만인 영세·소형기업(Micro and Small Enterprises)의 기업소득세율을 50% 인하함⁶⁹⁵
- 연간 과세소득이 300만위안⁶⁹⁶ 미만, 종업원 수 300명 미만, 자산 총액 5천만위안⁶⁹⁷ 미만을 충족할 경우 영세기업에 해당됨
-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위안 미만인 적격 영세기업은 기업소득세율을 5%에서 2.5%로 인하함

〈표 III-4〉 영세·소형기업 기업소득세율

(단위: 위안, %)

연간 과세소득	발표 전 적용세율	발표 후 적용세율
100만위안 미만	5	2.5
100만위안 이상 ~ 300만위안 미만	10	
300만위안 이상	25	

자료: IBFD, "China Announces Various Tax Changes in Working Plan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18_cn_1.html, 검색일자: 2021. 3. 28.; IBFD, Tax incentives for small low-profit enterprises expande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1-11_cn_1.html, 검색일자: 2021. 3. 28.

- ▶ 산업 고도화를 위한 방안에는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디지털경제 과세원칙 수립, 수입세 조정 등의 세제혜택을 개편할 예정임⁶⁹⁸
-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실시함

694)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천만원임

695) IBFD, "China Announces Various Tax Changes in Working Plan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18_cn_1.html, 검색일자: 2021. 3. 28.

696)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1천만원임

697)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6억 2천만원임

698) IBFD, "China Announces Various Tax Changes in Working Plan 20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3-18_cn_1.html, 검색일자: 2021. 3. 28.;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0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ON THE 2021 DRAFT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p. 34~52.

- 제조업의 연구개발비는 100%, 다른 업종의 연구개발비에는 75%의 세액공제혜택이 적용됨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 예정임
- ▶ 디지털경제를 발전시키고 디지털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경제에 대한 과세원칙 등 국제적인 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
- ▶ 고품질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세를 조정할 예정임

다.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년)계획 세부지침 발표

[조세동향 21-04호]

- ▶ 중국 국세청은 2021년도에 발표된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2021~2025년)계획⁶⁹⁹⁾ 중 일부 세제혜택 및 납세편의를 위한 세부지침을 발표함
- ▶ 중국 국세청은 2021년 3월 22일에 출판사의 출판물에 대한 증치세 세제혜택 세부지침이 포함된 회람 [2021] No.10(Circular [2021] No.10)을 발표함⁷⁰⁰⁾
 - ▶ 노인을 위한 정기간행물, 초등·중학교 교과서, 신문, 소수민족 언어로된 출판물 등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징수한 증치세 중 최대 100% 한도로 선 징수 후 환부를 시행함⁷⁰¹⁾
 - 또한, 적격한 책, 잡지, 정기 간행물, 디지털 출판물, 신문 등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징수한 증치세 중 최대 50% 한도로 선 징수 후 환부를 시행함
 - 도소매 단계의 책과 잡지는 증치세가 면제됨
 - ▶ 출판사의 출판물에 대한 증치세 세제혜택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됨
 - 회람 [2021] No.10에는 세제혜택 대상 출판물 및 출판사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음

699)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top political advisory body starts annual session," http://english.www.gov.cn/news/topnews/202103/05/content_WS60416b72c6d0719374af9fc0.html, 검색일자: 2021. 3. 18.

700) 중국 재무부, "关于延续宣传文化增值税优惠政策的公告,"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104/t20210407_3682306.htm, 검색일자: 2021. 4. 15.

701) IBFD, "China Extends Value Added Tax Preferential Treatment to Various Publisher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09_cn_1.html, 검색일자: 2021. 4. 15.

- ▶ 중국 국세청은 2021년 3월 31일에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세제혜택 관련 세부지침이 포함된 회람 [2021] No.13(Circular [2021] No.13)을 발표함⁷⁰²⁾

 - ▶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당기손익으로 계상되는 적격 연구개발비는 100%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전액 소득공제도 가능한 세제혜택을 실시함⁷⁰³⁾
 - 세제혜택이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비는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 등을 개발할 때 발생한 적격 비용을 말함
 - ▶ 무형자산을 형성한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200%를 분할로 소득공제가 가능함
 - ▶ 연구개발비 세제혜택은 2021년 1월 1일부터로 소급적용되며, 제조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제조기업 중 제조활동의 소득이 총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연구개발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중국 국세청은 2021년 4월 12일에 납세편의를 위해 10개 유형의 세목은 단일 신고로 통합하기로 발표함⁷⁰⁴⁾

 - ▶ 2021년 6월 1일부터 납세자는 ① 성진토지사용세(urban land use tax),⁷⁰⁵⁾ ② 주택 재산세(house property Tax), ③ 차량선박세(vehicle and vessel tax), ④ 인지세(stamp duty), ⑤ 경지점용세(farmland use tax),⁷⁰⁶⁾ ⑥ 자원세(resource tax), ⑦ 토지증치세(land appreciation tax),⁷⁰⁷⁾ ⑧ 계세(deed tax),⁷⁰⁸⁾ ⑨ 환경세(environmental tax), ⑩ 담배세(tobacco tax)를 신고할 때 단일 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음⁷⁰⁹⁾
 - ▶ 단일 신고서는 SAT 공고 [2021] No. 9(SAT Public Notice[2021] No. 9)에서 확인 가능함

702) 중국 재무부, “关于进一步完善研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的公告,”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104/t20210402_3680563.htm, 검색일자: 2021. 4. 15.

703) IBFD, “China Increases Super-Deduction of R&D Expenditur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08_cn_1.html, 검색일자: 2021. 4. 15.

704) 중국 국세청, “国家税务总局关于简并税费申报有关事项的公告,”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825/c101434/c5163487/content.html>, 검색일자: 2021. 4. 15.

705) 성진(城镇)토지사용세란, 도시의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도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토지등급 차이로 인한 수입 조절, 토지사용 효율 제고 및 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말함

706) 경지점용세란,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농업용 경지 보호를 위해서 경지를 점용하여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또는 기타 비농업 분야에 사용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함

707) 토지증치세란, 법인 및 개인이 국유토지사용권, 건물, 건물의 부속시설물을 양도하고서 취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함

708) 계세(契稅)란, 이전되는 토지 사용권 및 건축물 소유권의 이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임

709) IBFD, “China Integrates Tax Returns for Various Tax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19_cn_1.html, 검색일자: 2021. 4. 15.

라. 과학 홍보물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발표

[조세동향 21-05호]

- ▾ 중국 국세청은 2021년 4월 9일에 과학 홍보물 수입에 대한 세제혜택이 포함된 공고 [2021] No.26(SAT [2021] No.26)을 발표함⁷¹⁰⁾

 - ▶ 적격 기관에서 과학 홍보와 관련된 전시회 개최, 비디오 등 영상 상영, 방송 등의 권한 및 장비 수입에 소비세 및 증치세를 면제함⁷¹¹⁾

- ▾ 중국 국세청은 2021년 4월 15일,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회람 [2021] No.23(Circular [2021] No.23)을 발표함⁷¹²⁾

 - ▶ 중국 내 적격한 과학연구기관, 기술개발센터, 대학, 도서관 등에서 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 등의 수입에 소비세 및 증치세를 면제함⁷¹³⁾
 - 또한, 적격기관에서 과학 연구, 교육 등을 위해 수입하는 도서 및 자료 등에도 세제혜택이 적용됨

- ▾ 세제혜택은 중국 내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 적격기관은 세제혜택 품목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세제혜택 대상 적격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 [2021] No.26과 회람 [2021] No.23에서 확인할 수 있음

710) 중국 재무부, “关于“十四五”期间支持科普事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104/t20210425_3691994.htm, 검색일자: 2021. 5. 20.

711) IBFD, “China Exempts Import of Science Promotional Materials from Import Duty and Value Added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30_cn_2.html, 검색일자: 2021. 5. 20.

712) 중국 재무부, “财政部 海关总署 税务总局关于十四五期间支持科技创新进口税收政策的通知,”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104/t20210420_3688785.htm, 검색일자: 2021. 5. 20.

713) IBFD, “China Exempts Imports of Necessary Equipment and Materials for Innovations from Import Duties and Value Added Tax,”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23_cn_1.html, 검색일자: 2021. 5. 20.

7 호주

가. 역외금융조직 제도 폐지법안 국회제출

[조세동향 21-04호]

- ▶ 호주 재무부는 2021년 3월 17일, 유해조세제도로 지적된 역외금융조직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714), 715)}
 - ▶ 역외금융조직(Offshore Banking Unit: OBU) 제도는 호주 소재 공인 금융기관(australian registered banks)이 행한 적격 역외금융 활동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을 일반 법인세율(30%)이 아닌 10%의 특혜세율(concessionary rate)로 과세하는 제도임⁷¹⁶⁾
 - ▶ 동 제도는 2018년 OECD와 EU에서 유해조세제도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23/24년도부터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는 날부터 역외금융조직의 신규 설립을 금지하며, 2023/24년도부터 역외금융조직 및 역외금융 활동에 대해 특혜세율을 폐지하고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함
 - 단, 기존에 역외금융조직 제도를 적용받아온 납세자(existing participants)는 2022/23년도까지 적격 역외금융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나. 코로나19 대응 영상 제작자 세액공제 인상

[조세동향 21-05호]

- ▶ 호주 정부는 2021년 4월 11일, 코로나19 지원책으로서 영상 제작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인상하겠다고 발표함⁷¹⁷⁾

714) 호주 재무부, "Amending Australia's Offshore Banking Unit Regime,"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osh-frydenberg-2018/media-releases/amending-australias-offshore-banking-unit-regime-0>, 검색일자: 2021. 4. 12.

715) Deloitte, "Government to close down offshore banking regime," <https://www.taxathand.com/article/16350/Australia/2021/Government-to-close-down-Offshore-Banking-Regime>, 검색일자: 2021. 4. 12.

716) 호주 OBU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천창민 외 6인, 『부산 금융중심지의 펀드산업(백오피스) 특화전략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15, pp. 171~175 참조

- ▶ 영상 제작자가 지출한 적격 제작비용에 대해 장편영화(feature film)의 경우 40%, 그 외 영상(TV와 스트리밍 플랫폼 송신용 드라마·다큐멘터리 등)의 경우 20%의 세액공제(producer offset)를 적용해 왔음⁷¹⁸⁾
- ▶ 장편영화에 대한 공제율을 2021년 7월 1일부터 3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이전과 같은 40%로 유지하고, 그 외 영상에 대한 공제율을 2021년 7월 1일부터 20%에서 30%로 10%p 인상하기로 함
- ▶ 동 인상안은 주된 촬영 및 디지털·시각효과 활동을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한 제작물에 대해 적용함

다. 재무부 2021/22 예산안 제출

[조세동향 21-06호]

- ▼ 호주 재무부는 2021/22 예산안을 2021년 5월 11일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법인세제, 소득세제와 관련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 법인세에 대해 특허박스 제도 도입, 즉시상각 확대 조치 한시 연장,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한시 연장,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 적용 허용 등 조세지원 조치를 둠⁷¹⁹⁾
 - ▶ 특허박스 제도를 2022년 7월 1일부터 도입하여 의학·바이오 특허기술권에서 창출된 소득을 17%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기로 함⁷²⁰⁾
 - 호주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30%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함
 - ▶ 특정 기간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즉시상각 한도금액 한시 인상 조치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기로 함⁷²¹⁾

717) 호주 정부, "Supporting Australian screen production," <https://minister.infrastructure.gov.au/fletcher/media-release/supporting-australian-screen-production>, 검색일자: 2021. 5. 11.

718) 적격 제작비용(Qualifying Australian production expenditure)은 호주에서 제공된 재화와 서비스, 호주 내 토지의 사용, 영화제작 시 호주 내 물품 사용을 위해 지출된 금액을 포함함(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section 376-145).

719) IBFD, "Australia Delivers Budget for 2021/22," 2021. 5.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12_au_1.html, 검색일자: 2021. 6. 14.

720) 호주 재무부, "Tax incentives to support the recovery," https://budget.gov.au/2021-22/content/factsheets/download/factsheet_tax.pdf, 검색일자: 2021. 7. 1.

721) 동 조치는 2020/21 예산안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1/22 예산안은 제도 세부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적용

- ▶ 법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한시 조치 적용기간을 2022/23 회계연도까지로 1년간 연장하기로 함⁷²²⁾, ⁷²³⁾
- ▶ 2023년 7월 1일부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법정내용연수 외에 납세자의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감가상각 대상인 무형자산은 특허권, 저작권,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등임
- ▣ 소득세에 대해 교육비 소득공제 제외금액 삭제, 중·저소득층 세액공제제도 연장 적용 등 조세지원 조치를 둬⁷²⁴⁾
 - ▶ 납세자의 업무 관련 교육비(self-education deductions)는 현재 250호주달러⁷²⁵⁾ 초과분부터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제한을 없앨 예정임
 - 동 개정안은 의회 승인일 이후에 개시되는 소득연도(after the date of assent to the enabling legislation)부터 유효함
 - ▶ 중·저소득층 세액공제(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를 2020/21 과세연도에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지원책으로 2021/22 소득연도에도 연장 적용하도록 함⁷²⁶⁾
 - 동 제도는 2018년에 한시 조치로 도입되었으며 연간 과세소득이 12만 6천호주달러 이하인 납세자가 대상으로, 인당 공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255~1,080호주달러임⁷²⁷⁾

시기만을 1년 연장했음. 세부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06호; 제20-10호, 2020을 참조

722) 동 조치는 2020/21 예산안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1/22 예산안은 제도 세부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적용 시기만을 1년 연장했음. 세부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0-10호, 2020을 참조

723) 2021/22 과세연도의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은 3년임(호주 국세청, “Loss carry back tax offset,” <https://www.ato.gov.au/Business/Loss-carry-back-tax-offset/>, 검색일자: 2021. 6. 14.)

724) IBFD, “Australia Delivers Budget for 2021/22,” 2021. 5.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12_au_1.html, 검색일자: 2021. 6. 14.

725) 2021. 6. 14.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만 4천원임

726) 호주 국세청, “Low and middle income earner tax offsets,”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Offsets-and-rebates/Low-and-middle-income-earner-tax-offsets/>, 검색일자: 2021. 6. 14.

727) 2021년 6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연간 과세소득이 약 1억 845만원(12만 6천호주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약 22만~93만원(255~1,080호주달러)을 세액공제하는 것임

8 홍콩

가. 2021~2022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21-03호]

- ▶ 홍콩 재무부는 2021년 2월 24일에 2021~2022년 예산안(The 2021-22 Budget)을 발표함⁷²⁸⁾

 -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경제안정(Stabilising the Economy)과 국민의 부담 완화(Relieving people's burden)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코로나19 극복(Overcoming the Epidemic)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이 포함됨⁷²⁹⁾

 - ▶ 2020~2021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세(Profits tax) 세액감면이 최대 1만홍콩달러⁷³⁰⁾ 한도로 가능함
 - 사업소득세 세액감면으로 홍콩 정부 수입이 10억 5천만홍콩달러⁷³¹⁾ 절감되지만, 12만 8천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2021~2022년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 갱신비용을 면제함⁷³²⁾
 - 사업자등록 갱신비용은 2020~2021년 과세기간 기준으로 매년 갱신일 경우 2,250홍콩달러,⁷³³⁾ 3년 갱신일 경우 3,950홍콩달러⁷³⁴⁾임
 - 사업자등록 갱신비용 면제로 홍콩 정부 수입이 30억홍콩달러⁷³⁵⁾ 절감되지만, 약 150만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728) 홍콩 재무부, "THE 2021-22 BUDGET," https://www.budget.gov.hk/2021/eng/pdf/e_budget_speech_2021-22.pdf, 검색일자: 2021. 3. 22.

729) 홍콩재무부, 「THE 2021-22 BUDGET」, pp. 9~15.

730)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5만원임

731)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532억 2천만원임

732) Inland Revenue Department, "Business Registration Fee and Levy Table," https://www.ird.gov.hk/eng/pdf/brfee_table.pdf, 검색일자: 2021. 3. 25.

733)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만원임

734)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7만원임

735)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76억 7천만원임

- ▶ 2020~2021년 과세기간의 급여소득세(Salaries tax) 세액감면이 최대 1만홍콩달러 한도로 가능함
 - 급여소득세 세액감면으로 홍콩 정부 수입이 114억홍콩달러⁷³⁶⁾ 절감되지만, 187만 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Building a Liveable City)와 관련하여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안이 포함됨⁷³⁷⁾
 - ▶ 홍콩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Private Car)의 자동차최초등록세(First Registration Tax: FRT)⁷³⁸⁾를 15% 인상함
 - ▶ 또한, 홍콩 정부는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연료로 구동되는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일대일교체(One-for-One Replacement)제도를 시행함
 - 새로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연료로 구동되는 자동차를 폐차한 적격인 소유자에게 최대 28만 7,500홍콩달러⁷³⁹⁾ 한도로 자동차최초등록세를 지원함
 - 전기자동차만 구입한 경우 최대 9만 7,500홍콩달러⁷⁴⁰⁾ 한도로 자동차최초등록세를 지원함
- ▾ 국제 조세 협력(International Tax Co-operation)과 관련하여 홍콩 정부의 BEPS 2.0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함⁷⁴¹⁾
 - ▶ 홍콩은 국제 금융 및 비즈니스 센터로서 국제적 합의에 따라 BEPS 2.0 제안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것임
 - BEPS 2.0에 따른 대부분의 규칙은 다국적 대기업에만 적용되므로 대응 조치를 작성할 때 가능한 한 현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세제도의 단순성(Simplicity), 확실성(Certainty), 공정성(Fairness)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홍콩의 과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규정 준수 부담을 최소화할 것임

736)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6,632억원임

737) 홍콩재무부, 「THE 2021-22 BUDGET」, pp. 47~55.

738) 자동차최초등록세란, 홍콩에서 자동차 구입 후 최초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하며,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다름

739)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천 196만원임

740) 2021년 3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천 422만원임

741) 홍콩재무부, 「THE 2021-22 BUDGET」, p. 64.

-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홍콩에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IV 국제기구

1 OECD

가. 코로나19 관련 이전가격 지침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21-01호]

▼ OECD는 2020년 12월 18일 코로나19 관련 이전가격 지침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함⁷⁴²⁾

- ▶ 지침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유형의 사실 관계와 이슈에 대하여 OECD 이전가격지침의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실제 적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함
- ▶ 보고서는 코로나19에서 발생하거나 강화될 수 있는 네 가지 주된 이슈에 대하여 정상가격원칙이 적용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음
 - 이전가격 정책 비교 분석
 - 다국적기업의 손실 및 코로나19 특별 비용의 배분
 - 정부 지원 프로그램
 - 기존 이전가격 사전 협약(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s)의 적용 수준

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제 조세조약 지침 재검토

[조세동향 21-02호]

▼ OECD는 2021년 1월 21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제 조세조약 지침(Guidance on Impact

742) OECD,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oecd.org/tax/transfer-pricing/guidance-on-the-transfer-pricing-implications-of-the-covid-19-pandemic.htm>, 검색일자: 2021. 1. 27.; EY, "OECD releases guidance on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COVID-19 pandemic,"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releases-guidance-on-transfer-pricing-implications-of-covid-19-pandemic, 검색일자: 2021. 1. 20.

of COVID-19 Crisis on International Tax Treaty Rules)을 업데이트함⁷⁴³⁾

- ▶ 2020년 4월 3일에 발표된 지침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상황들을 추가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논의된 지침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함
- ▶ 고정사업장 창설, 기업 및 개인의 거주지 변경, 고용소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공중보건 조치로 인한 재택근무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이므로 새로운 고정사업장 창설이나 기존의 고정사업장 폐지가 불가능함을 명시함
 - ▶ 공중보건 조치에 따른 재택근무는 고용주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예외적인 사건으로 재택근무의 영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홈오피스를 고정사업장으로 만들 수 없음
 - ▶ 대리인(agent)이 공중보건 조치에 따라 재택근무 중에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활동을 체결한다고 하여 새로운 고정사업장을 창설할 수 없음
 -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대리인이 관행적/반복적으로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해온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창설할 수도 있음
 - ▶ 코로나19 유행의 특수한 상황으로 건설 현장의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상황이 법인 및 개인의 거주지를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 ▶ 특히, 업데이트된 지침은 공중보건 조치에 따라 이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중거주자의 경우 영구주택을 가질 가능성이 없는 한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지 판정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 업데이트된 지침은 고용소득과 관련한 예외적인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 공중보건 조치로 인하여 이동이 금지된 직원은 OECD 모델의 제15조 2항에 따른 거

743) IBFD, "COVID-19 Pandemic: OECD Revisits Guidance on Impact of COVID-19 Crisis on International Tax Treaty Rul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1-22_o2_1.html, 검색일자: 2021. 2. 16.; EY, "OECD Secretariat issues updated guidance on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secretariat-issues-updated-guidance-on-tax-treaties-and-the, 검색일자: 2021. 2. 18.

주일수 산정 시 해당 관할권에서 추가로 소요된 일수를 무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⁷⁴⁴⁾

- ▶ 종업원이 다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고용주를 위하여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 종업원의 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 권리가 다른 관할권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과세 권리는 기존 과세 권리를 대체할 수 있음

다. BEPS Action 5에 관한 2021~2025 상호 검토 절차 발표

[조세동향 21-03호]

▣ 2021년 2월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Action 5(유해 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의 투명성 체계(Transparency Framework)에 관한 상호 검토 절차를 위한 평가 기준과 방법론을 발표함⁷⁴⁵⁾

- ▶ Action 5는 BEPS프로젝트의 15개 Action 중에서 BEPS 참여국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최소 기준임⁷⁴⁶⁾
 - 최소 기준은 적시에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상호 검토를 수행함
- ▶ Action 5의 투명성 체계는 BEPS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납세자별 판결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요구함
- ▶ 해당 상호 검토 절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됨

▣ 상호 검토 절차는 평가 기준 및 방법론을 바탕으로 유해조세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 FHTP)에 의해 수행됨

- ▶ 평가 기준은 정보수집 절차, 정보 교환, 정보 비밀 유지, 통계 네 가지 요소를 포함

744) OECD, "ARTICLES OF THE MODEL CONVEN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CAPITAL," <https://www.oecd.org/ctp/treaties/articles-model-tax-convention-2017.pdf>, 검색일자: 2021. 3. 2.

745) OECD, "OECD agrees new peer review process to foster transparency on tax rulings," <http://www.oecd.org/tax/beps/oecd-agrees-new-peer-review-process-to-foster-transparency-on-tax-rulings.htm>, 검색일자: 2021. 3. 23.; OECD, Action 5 Harmful tax practices, <http://www.oecd.org/tax/beps/beps-actions/action5/>, 검색일자: 2021. 3. 23.; EY, "OECD releases new transparency framework for Action 5 for 2021 through 2025," <https://globaltaxnews.ey.com/news/2021-5238-oecd-releases-new-transparency-framework-for-action-5-for-2021-through-2025>, 검색일자: 2021. 3. 22.

746) 그 외 최소 기준으로는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해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 Action 14(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가 있음

하며, 방법론은 관련 자료 수집 절차, 보고서 준비 및 승인, 수정 및 해석, 검토 보고서의 기밀성 유지 등을 포함함

▾ 평가 기준의 정보수집 절차와 관련하여, 관할권은 조세 예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 범주 및 각 범주의 조세예규에 관한 식별이 필요함

- ▶ 관할권은 BEPS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래의 범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함
 - 특정 조세우대제도에 관한 예규
 - 이전가격에 관한 일방적 사전가격승인제도(APA) 또는 역외거래에 대한 예규
 - 과세이익을 하향 조정시키는 국제거래에 관한 예규
 - 고정사업장에 관한 예규
 - 특수관계인 및 도관에 관한 예규
- ▶ 관할권은 각 범주의 과거/미래 예규를 식별해야 하며, 과거/미래 예규의 정의는 관할권에 따라 다름
 - 관할권은 OECD/G20 국가, BEPS 포괄적 이행체계 신규 가입국가, 개발도상국가 등으로 구분됨

▾ 평가 기준의 정보 교환 요소와 관련하여, 관할권은 투명성 체계 범주 내의 조세예규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교환해야 하며, 아래의 항목이 요구됨

- ▶ 정보의 자발적 교환 및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국내 법적 체계를 보유함
- ▶ 예규에 관한 정보가 과도한 지연 없이 국제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관할 당국에 전달 되도록 적절한 시스템을 설치함
- ▶ 과거 예규에 관하여 가능한 빠른 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 ▶ 미래 예규에 관하여 관할 당국은 늦어도 3개월 이내에 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라. BEPS Action 6 조세조약 쇼핑 방지에 관한 3차 상호검토 결과 발표

[조세동향 21-04호]

▾ 2021년 4월 1일 OECD는 BEPS Action 6에 따른 조세조약 쇼핑 방지에 관한 2020년 3차 상호검토 보고서를 발표함⁷⁴⁷⁾

- ▶ Action 6는 BEPS 참여국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 기준으로,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원국은 최소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상호검토에 매년 참여하고 있음
- ▶ 이번 2020년 상호검토 보고서는 포괄적 이행체계(IF)에 속한 137개 회원국이 각각 체결한 조세조약에 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하고 있음
- ▼ 3차 상호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다자간 협약(MLI)이 Action 6 최소 기준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다자간 협약(MLI)은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존의 양자 간 조세조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며, 2018년 7월 1일 발효됨⁷⁴⁷⁾
 - ▶ 다자간 협약을 통하여 다루어지는 조약은 지난 상호검토 이후 500% 증가하였으며,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 관할권과 그렇지 않은 관할권 간의 최소 기준 이행에 차이가 존재함
 -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 관할권의 평균 최소 기준 이행 비율은 30%인 반면,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관할권의 평균 최소 기준 이행 비율은 1.5%인 것으로 나타남
 - ▶ 이에, 2021년 상호검토의 주요 목표는 관할권의 다자간 협약 비준을 장려하여 관할권 간 최소 기준 이행 격차를 해소하고,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임

2 EU

가. EU 디지털세 도입 관련 로드맵 발표

[조세동향 21-01호]

- ▼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1월 14일 EU 디지털세(Digital Levy)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747) OECD, "Prevention of Tax Treaty Abuse-Third Peer Review Report on Treaty Shopping: Inclusive Framework on BEPS: Action 6," https://www.oecd-ilibrary.org/sites/d6cecb8-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d6cecb8-en&csp_=69067adddb126b3ca25f6ba7aeb358be&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section-d1e130, 검색일자: 2021. 4. 20.

748) OECD, "Action 15 Multilateral Instrument," <https://www.oecd.org/tax/beps/beps-actions/action15/>, 검색일자: 2021. 4. 27.

절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간함⁷⁴⁹⁾

- ▶ 디지털세 도입의 목적은 디지털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공정하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로드맵은 세 가지의 정책을 제안함
 - 법인세의 추가 세액이 EU 내에서 특정 디지털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들에 부과되어야 함
 - EU 내에서 수행되는 특정 디지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함
 - EU 내 기업 간의 디지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함
- ▶ 로드맵은 국제적인 합의 도달에 협력하고 로드맵 및 의견수렴 절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G20과 OECD의 작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21일 2021-2027 재건 계획 및 EU 예산에 합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재원을 보충하고 지원하기 위한 일부분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 디지털세 지침(directive)을 위한 제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1일 도입할 계획임

나. EU 행정협력지침 개정안(DAC7) 유럽의회 승인

[조세동향 21-03호]

- ▼ 2021년 3월 10일 유럽의회는 디지털 거래 과세에 관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협력지침 개정안(DAC7)을 승인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됨⁷⁵⁰⁾
 - ▶ 온라인 플랫폼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을 회원국에 보고해야 하고, 세무 당국은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할 의무가 있음

749) European Commission, "A fair & competitive digital economy-digital levy,"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836-Digital-Levy>, 검색일자: 2021. 1. 27.; EY, "European Commission launches consultation on EU digital levy," https://www.ey.com/en_gl/tax-alerts/european-commission-launches-consultation-on-eu-digital-levy, 검색일자: 2021. 1. 20.

750) 유럽 의회, "Better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uthorities on taxation of digital trading,"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10304IPR99217/better-cooperation-between-national-authorities-on-taxation-of-digital-trading>, 검색일자: 2021. 3. 22.; 유럽 의회,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10 March 2021 on the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COM(2020)0314-C9-0213/2020-2020/0148(CNS)),"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1-0072_EN.html, 검색일자: 2021. 3. 22.

- ▶ 비EU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도 EU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단일 회원국에 플랫폼을 등록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얻은 수입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함
 - ▶ 플랫폼 등록 시 비EU 온라인 플랫폼은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있는 회원국에 등록해야 함
 - ▶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은 EU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정보 요청 시 세무당국은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 정보 요청을 받은 세무당국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이용 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회원국 세무당국에 자동으로 전달해야 함
 -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2년 말까지 정보 교환의 효과성을 포함하여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국가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 2022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세무당국에 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제3국과 새로운 이전가격 사전합의(양자 또는 다자간)를 할 수 없음

다. 필수품 및 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 유럽의회 제출

[조세동향 21-05호]

-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12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유럽연합이 회원국에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함⁷⁵¹⁾
 - ▶ 코로나19 기간 동안 유럽 집행위원회 및 EU 관련 기관들이 회원국에 배분할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수입 또는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은 다음을 포함함
 - 진단검사 및 검사재료, 실험장비
 - 개인보호 장비(예: 장갑, 마스크, 가운, 소독제품 및 장비)

751) 유럽 집행위원회, "Coronavirus Response: Commission proposes to exempt vital goods and services distributed by the EU from VAT in times of crisis," 2021. 4. 1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1642, 검색일자: 2021. 5. 20.; IBFD, "COVID-19 Pandemic: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to Exempt from VAT Vital Goods and Services Distributed by Bodies of the European Union in Times of Crisis," 2021. 4.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4-13_e2_1.html, 검색일자: 2021. 5. 17.

- 텐트, 캠프용 침대, 의류 및 음식
 - 수색 및 구조 장비, 모래주머니, 구멍조끼, 구멍보트
 - 항균제 및 항생제, 화학물질 해독제, 방사선 손상 치료제, 항독소, 요오드 정제
 - 혈액 제제 또는 항체
 - 방사선 측정 장치
 - 필요 제품의 개발, 생산 및 조달, 연구 및 혁신 활동, 제품의 전략적 비축 의약품 면허, 검역시설, 임상시험, 방역작업 등
- ▶ 2021년 4월 30일까지 회원국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 조항을 채택하고 발표해야 하며,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라. 의료 및 보호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세동향 21-05호]

-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19일, 코로나19 기간 동안 제3국에서 의료기기 및 보호 장비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일시적 면제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⁷⁵²⁾
- ▶ 본 규정은 지난 2020년 4월 3일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어 2020년 1월 30일부터 소급 적용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3회 연장됨
 - ▶ 해당 규정은 EU 관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함
 - EU 관세 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EU 부가가치세 관련 지침(Council Directive 2009/132/EC)에서는 특정 상품의 최종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제시하고 있음
 - ▶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주정부 관련 기관(병원, 정부기관 등) 및 회원국 내 관련 당국이 승인한 자선단체임

752) 유럽 집행위원회, "COVID-19: Waiving VAT and customs duties on vital medical equipment," 2021. 4. 20.,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ews/commission-decides-extend-customs-and-vat-waiver-imports-medical-and-protective-equipment-needed-fight-pandemic_en, 검색일자: 2021. 5. 19.

마. 유럽 의회, 재정 프로그램 법안 최종 승인

[조세동향 21-06호]

- ▼ 유럽의회는 2021년 5월 20일, 조세 분야 협력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Fiscalis programme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2021-2027) 법안을 최종 승인함⁷⁵³⁾

 - ▶ 법안은 2021년 5월 28일부로 발효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 ▼ 본 프로그램은 EU 회원국 간의 IT 조세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EU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 동안 2억 6,900만유로⁷⁵⁴⁾의 예산이 책정됨

 - ▶ 회원국들의 세무당국 간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조세포탈을 방지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으로, 이를 위하여 ① EU 회원국들 간 더욱 연결된 IT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②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③ 위험 관리 및 감사에 관한 공동 조치를 시행하고, ④ 혁신 및 새로운 경제모델 시행을 통한 EU 경쟁력을 강화함
 - ▶ 프로그램 예산의 70% 이상은 조세포탈의 방지를 위하여 EU 회원국들의 세무당국 간 정보 교환에 필수적인 IT 시스템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⁷⁵⁵⁾

바. 유럽 집행위원회, 새로운 조세정책 제안

[조세동향 21-06호]

- ▼ 2021년 5월 18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21세기 기업 과세에 관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on Business Taxation for the 21st century)을 발간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 지원 및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세체계를 촉진하기 위한 장·단기 비전을 제시함⁷⁵⁶⁾

753) IBFD, “European Commission Approves Agreement Reached on Fiscalis Programme 2021-2027,” 2021. 5.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25_e2_2.html, 검색일자: 2021. 6. 14.; 유럽 집행위원회, “Fiscalis 2021-2027,”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fiscalis-2021-2027_en, 검색일자: 2021. 6. 14.

754) 2021년 7월 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06억원임

755) 유럽 집행위원회, “EU financial programme worth €270 million to support Member State tax authorities enters into force,” 2021. 5. 28.,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ews/eu-financial-programme-worth-%E2%82%AC270-million-support-member-state-tax-authorities-enters-force_en, 검색일자: 2021. 6. 14.

756) 유럽 집행위원회, “Future-proof taxation-Commission proposes new, ambitious business tax agenda,” 2021. 5. 18.,

- ▼ 2023년까지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을 위한 단일 법인세 규정집인 “유럽 비즈니스: 소득세 프레임워크(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 이하 BEFIT)”를 발표함
 - ▶ BEFIT는 세무 행정 부담을 줄이며, 회원국 간의 과세권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고, 조세회피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또한, 집행위원회는 공정한 조세체계를 위한 향후 2년 동안의 의제를 발표함
 - ▶ 중소기업의 국내 손실 처리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the domestic treatment of losses)을 채택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시점에 이익을 보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에 대한 2020~2021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 2022년 1분기까지 부채-자본 편향 감소 공제(Debt Equity Bias Reduction Allowance: DEBRA) 입법안을 제안함
 - 현 「법인세법」하에서는 부채 조달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고, 자본 조달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음
 -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가 부채 조달을 더욱 부추겨 기업의 파산 위험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위의 입법안을 추진하고자 함
 - ▶ 2022년까지 EU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 공표를 위한 입법을 제안함
 - ▶ 2021년 4분기까지 새로운 조세회피방지지침(ATAD 3)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체가 없는 EU 내 페이퍼컴퍼니가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함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news/future-proof-taxation-%E2%80%93-commission-proposes-new-ambitious-business-tax-agenda_en, 검색일자: 2021. 6. 14.; 유럽 집행위원회,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 Business Taxation for the 21st Century,” 2021. 5. 18.,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default/files/communication_on_business_taxation_for_the_21st_century.pdf, 검색일자: 2021. 6. 14.; 유럽 집행위원회, “Communication on Business Taxation for the 21st Century,”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communication-business-taxation-21st-century_en, 검색일자: 2021. 6. 18.; IBFD, “European Commission Presents ATAD 3, EU Single Corporate Tax Rulebook and Business Tax Agenda for Next Years,” 2021. 5.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05-19_e2_1.html, 검색일자: 2021. 6. 28.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1년 제1호

2021년 7월 27일 인쇄

2021년 7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 재 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TEL : 044-414-2114(代), www.kipf.re.kr